

1996 년도

사 업 보 고

REPORT ON ACTIVITIE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1996 년도

사 업 보 고

REPORT ON ACTIVITIE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머 리 말

지난 1년 노동계는 그 어느해 못지 않게 분주했고 노동운동은 한단계 발전을 위해 심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노동법개악저지를 위한 우리의 끈질긴 투쟁이었습니다. 작년 5월 9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금년 3월 10일 노동법개정안이 발표될 때까지 우리는 노동악법개정투쟁에 총역량을 모았습니다.

작년 11월 24일 여의도고수부지에서 열린 노총의 11만 노동자대회, 사상 처음으로 공동개최한 노총과 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작년말과 1월의 총파업, 이외에도 크고 작은 수많은 집회와 행사 등은 노동현장이 살아있음을 정부와 자본가에게 확실히 깨닫게 하였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정치활동과 정치파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우리의 총파업은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리라 불법으로 투쟁하리라'는 우리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결과 국제경쟁력강화, 세계화, 경제위기 이데올로기를 무기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철저히 외면하려 했던 정부와 자본가의 시도는 노동자들의 분노와 단결에 주춤했습니다. 이에 정리해고제 등을 내용으로 작년말 여당 단독으로 새벽 날치기통과된 노동악법을 재개정토록 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다시 논의되어 마련된 노동법 개정 여야합의안은 안타깝게도 노동계의 요구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었습니다. 무노동무임금원칙 법제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 노사자율로 해결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까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노사자지원칙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전임자임금지급 금지규정은 노동조합의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일부에서는 이제 노동운동은 끝났다는 위기의식까지 느끼게 하는 개악안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노동법개정안의 재개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묶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노동법개정과정은 우리에게 한국노동운동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우선 총파업과정에서 나타난 기업별노조 체제의 한계는 산별노조로의 전환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개정된 노동법이 여야의 주고받기식 정치타협으로 누더기법이 된 사실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얼마나 시급한가 하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노동법개정과정에서 양분되어 있는 노동계의 분열을 악용, 노동자의 반발을 약화시키려는 획책을 꾸며 노동계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국제경쟁시대를 예감하면서 우리는 정부와 자본이 더욱 경제논리로 무장하리라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의 노동법개정작업은 그 전초전이었으며 산재민영화, 근로자파견제 도입계획 등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노동운동은 앞서 언급된 산별노조로의 전환,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노동계통일 등을 향해 한발한발 함께 전진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1997년 5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유재섭

선 언

민족의 번영과 조국의 평화적 남북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깃발아래 굳게 뭉쳤다.

국가산업의 근간을 이룬 금속산업발전을 두 어깨에 메고 이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일사불란한 운동체제아래 노동자의 생활 향상과 사회적 지위를 드높이기 위하여 전진 또는 전진하련다.

우리 노동자는 확고한 단결력과 피끓는 동지애로써 민주주의 제원칙하에 노사평등의 산업민주주의 구현을 통한 국가발전에 전력을 다하여 근로대중의 복지사회건설을 이룩하고자 한다.

이제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이 나라 국민의 주시와 관심속에 사회정의실현에 과감하게 전진하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의 실천을 기하고 산업평화의 계속적인 유지로 자손만대의 영광스러운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발전에 매진 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 연 맹

강 령

1. 우리는 노동조합의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 힘과
슬기를 모아 조국의 번영과 민주적 평화통일의
선봉이 된다.
2. 우리는 자유, 정의, 평등의 운동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정치활동에 참여, 민주노동운동
의 항구적 발전을 기한다.
3. 우리는 확고한 단결로써 노동자의 지위향상과 국
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국가 실현을 기한다.
4. 우리는 건전한 노동정신으로써 조합원의 총의와
역량을 집중하여 노동권존중의 산업민주화를 기
한다.
5. 우리는 노동자의 교육훈련과 문화향상에 강력한
실현을 기한다.
6. 우리는 민주우방의 노동자와 국제적 유대를 강화
하여 세계평화에 공헌한다.

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 연 맹

연 혁

서기 1959년 3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 부산지구 철공노동조합을 주체로 하여 탄생하였으나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여 오던중 서기 1960년 10월 대한조선공사를 주축으로 한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하여 사실상 제 2노조로 등장하게 되어 긴요한 총단결 과정은 혼미상태에 이르게 되어 당시노련에서는 또다시 서기 1960년 10월에 인천중공업회사를 주축으로 한 이른바 전국철강노동조합연맹 결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제 3노조가 등장하는 과정에 처하여 오던중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으로 인하여 노동단체가 해체되고 동년 8월3일 공포된 법률 제 672 호에 의하여 단일산업별 체제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어 결성되었다. 그러나 1980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1981년 2월 23일 개최된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거쳐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으로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혁 일람표

대 회 명	개최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 무 처 (국) 장	당 시 조합원수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맹 결 성 대 회	59. 3.	유 익 배	한승궁, 이원석		
한국금속노동조합 연맹 결 성 대 회	60. 10	임 한 식		김 사 옥	
전국철강노동조합	60. 10.		준비위원회: 임한식 준비부위원회:송영준,김재범		
전국금속노동조합 결 성 대 회 제 2차대의원대회	61. 8.25 62. 7. 2	지 연 일 (인 천 중공업)	김재범(대한중기),이수영(삼 양산업),이령(금천철공)	박 종 현 (삼성기계)	609
제3차 대의원대회 (임시대회)	63. 4.12	박 종 현 (삼성기계)	유귀형(한국전력기계),이수 영(삼양산업),권종오(한국기 계)	김 득 성 (기아산업)	5,034
제4차 대의원대회	64. 4.30		유귀형(한국전력기계), 박세 천(한국기계)	“	8,455
제5차 대의원대회	65. 4.30		최종규(금성사),이명구(인천 강업)	이 건 성 (인천중공업)	9,110
제6차 대의원대회	66. 1. 8	박 세 천 (한국기계)	최종규(금성사),김병용(기아 산업),박종선(한국공업)	허 만 성 (인천중공업)	9,984
제7차 대의원대회	67. 4.27		최종규(금성사),김병용(기아 산업),이의용(인천중공업)	홍 순 모 (일진기계)	14,038
제8차 대의원대회	68. 4.30		“	“	15,223
임시대의원대회	68. 9.20	김 병 용 (기아산업)	최종규(금성사),이성학(조선 기업),문익모(이천전기),이규 운(봉신주철),강준석(한국베 아링)	이 태 용 (인천중공업)	17,947
제 9차대의원대회	69. 4.29	“	문익모(이천전기),이규운(봉 신주철),강준모(한국베아링), 허재업(조선공사)(보선),강 기태(금성사)보선	이 현 구 (한국기계) - 보선	23,960

대 회 명	개최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무처 (국) 장	당 시 조합원수
제10차대의원대회	70. 4.30	김 병 용 (기아산업)	강기태(금성사),정남수(조선),하준(조선기업),이우년(한국기계)	최 종 규 (금성사)	25,217
제11차대의원대회	71. 4.16	“	정남수(조선),하준(조선기업),문익모(이천전기)(보선)	최 종 규 (금성사)	27,306
제12차대의원대회	72. 4.28	“	“	“	“
제13차대의원대회	73. 4.25	김 병 용 (기아산업)	문익모(이천전기),강준석(한국베아링),정부경(금성사),한달수(대한전선),팽종출(조선공사),김정배(대한중기)	최 종 규 (금성사)	27,246
제14차대의원대회	74. 4.30	“	“	“	43,856
제15차대의원대회	75. 4.23	“	“	“	53,293
제16차대의원대회	76. 4.21	“	강준석(한국베아링),정부경(금성사),하준(승리기계),한달수(대한전선)	“	72,809
제17차대의원대회	77. 4.27	“	“	“	92,756
제18차대의원대회	78. 5.20	“	“	“	112,891
제19차대의원대회	79. 5.11	김 병 용 (기아산업)	하준(경북지부),정남수(부산지부),이헌구(대우중공업),팽종출(조선공사),이중석(남서울지부),정낙균(금성전선)	최 종 규 (금성사)	138,668
제20차대의원대회	80. 6.17	“	“	“	126,140
제21차대의원대회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결성 임시 대의원대회,정기대 의원대회 같음)	81. 2.23	팽 종 출 (조선공사) -보선	최종규(금성사),민정식(금성사),박인상(조기),이준(화천),한창석(인천제철),김장선(대한전선),이상숙(금성통신),권수태(대림자동차)	김 성 문 (대한전선)	108,8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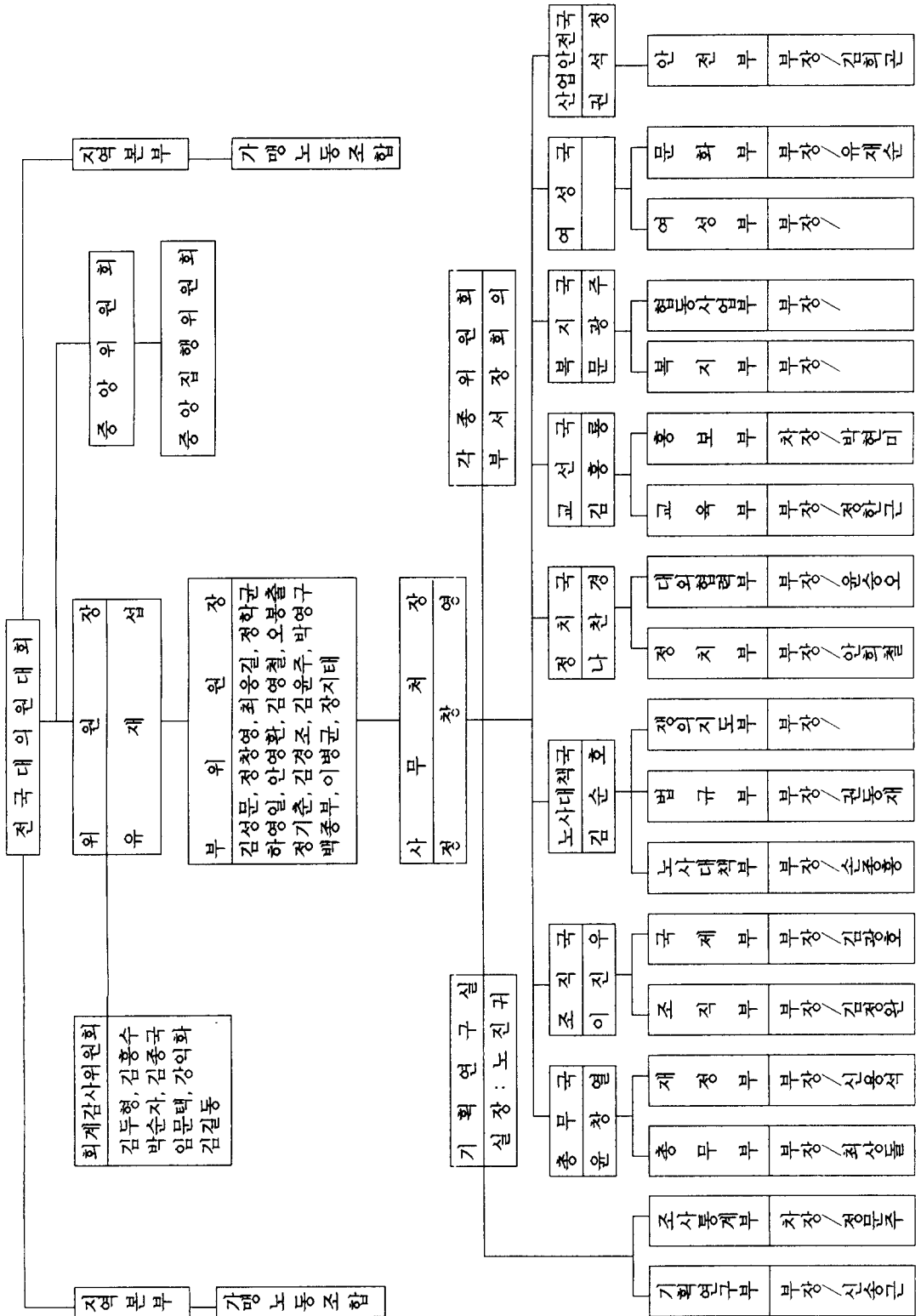
대 회 명	개최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무처 (국)장	당 시 조합원수
제22차대의원대회 (1983,1984년은 중앙위원회로 같 음)	82. 5. 7	팽 종 출 (조선공사)	권수태(대림자동차),박인상(조기),민정식(금성사),김장선(대우전자),한창석(인천제철), 조태식(효성중공업),최정원(대선조선),이성균(새한자동차 ,허성원(금성전선)	김 성 문 (대한전선)	99,594
제23차대의원대회	85. 5.30	민 정 식 (금성사)	권수태(대림자동차),박인상(조기),김세민(기아산업),김장 선(대우전자),최경환(금성알 프스),강창령(동부제강),최규 문(국제종합기계)김장화(아 세아자동차),유철규(평화크랏 치)	한 창 석 (인천제철)	119,636
제24차대의원대회	86. 5.23	민 정 식 (금성사)	권수태(대림자동차),박인상(조기), 김세민(기아산업), 김 장선(대우전자), 최경환(금성 알프스), 강창령(동부제강), 최규문(국제종합기계)김장화 (아세아자동차),유철규(평화 크랏치)	한 창 석 (인천제철)	119,445
제25차대의원대회	87. 5.22	“	“	“	138,990
제26차대의원대회	88. 5.27	박 인 상 (조기)	김세민(기아산업), 김장선(대 우전자),유철규(평화크랏치) 강영섭(금성사),임창기(대한 중기),박기식(연합철강),정기 춘(화천),이영복(현대자동차), 이금수(크라운전자),양동생(대우조선),박병윤(대우통신), 이성균(대우자동차),차경준(한국중공업)	김 성 문 (대한전선)	295,864
제27차대의원대회	89. 5.26	“	김장선(대우전자), 강영섭(금성사),박기식(연합 철강),정기춘(화천),이영복(현 대자동차),박병윤(대우통신), 이성균(대우자동차),차경준(한국중공업)	“	356,900

대 회 명	개최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무처 (국)장	당 시 조합원수
제28차대의원대회	90. 5.11	박 인 상 (조 기)	김장선(대우전자), 강영섭(금성사),박기식(연합철강),정기춘(화천),박병윤(대우통신),이성균(대우자동차),차경준(한국중공업)	김 성 문 (대한전선)	389,060
제29차대의원대회	91. 5.15	“	수석:김장선(대우전자) 상임: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박기식(연합철강),유재섭(금성사),박병윤(대우통신),정기춘(화천),차경준(한국중공업),정학균(대동조선),제선수(삼미종합특수강),박영호(영창약기),피희중(동해전장),염성태(대우중공업),양재석(동부제강),강규석(기아특수강),박영구(럭키금속),전덕진(현대전자),허관무(기아자동차)	최 용 길 (동양강철)	272,078
제30차대의원대회	92. 5.13	“	“	“	262,078
제31차대의원대회	93. 5.20	박 인 상 (조 기)	수석:김장선(대우전자) 상임: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박기식(연합철강),유재섭(금성사),박병윤(대우통신),정기춘(화천),차경준(한국중공업),정학균(대동조선),제선수(삼미종합특수강),박영호(영창약기),피희중(동해전장),염성태(대우중공업),양재석(동부제강),강규석(기아특수강),박영구(럭키금속),전덕진(현대전자),허관무(기아자동차),김영철(현대전자),김관태(기아자동차)	정 창 영 (금성전선)	

대 회 명	개최일	위원장	부 위 원 장	사무처 (국) 장	당 시 조합원수
제32차대의원대회	94. 5.17	박 인 상 (조 기)	상임: 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최웅길(동양강철) 유재섭(금성사),정학균(대동조선),안영환(동부제강)김영철(현대전자),박천석(기아서비스),전재환(대우중공업),정기춘(화천),제선수(삼미종합특수강),박영호(영창악기),김동교(인천제철),오봉출(한진섬유기계),박영구(럭키금속),하영일(금성전선),박한주(코리아스파이서),김경조(쌍용중공업),김윤주(범양냉방),백종부(부산파이프)	정 창 영 (금성전선)	243,271
제33차대의원대회	95. 5.12	박 인 상 (조 기)	상임: 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최웅길(동양강철) 유재섭(금성사),정학균(대동조선),안영환(동부제강)김영철(현대전자),박천석(기아서비스),전재환(대우중공업),정기춘(화천),제선수(삼미종합특수강),박영호(영창악기),김동교(인천제철),오봉출(한진섬유기계),박영구(럭키금속),하영일(금성전선),박한주(코리아스파이서),김경조(쌍용중공업),김윤주(범양냉방),백종부(부산파이프),이병균(대우전자),장지태(경창산업)	정 창 영 (금성전선)	183,200

대 회 명	개최일	위원장	부 위 원 장	사무처 (국) 장	당 시 조합원수
제34차대의원대회	96. 5.15	유 재 섭 (LG전자) -보선	상임: 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LG전선), 최용길(동양강철) 정학균(대동조선),안영환(동부 제강)김영철(현대전자),정기춘 (화천),오봉출(한진섬유기계), 박영구(럭키금속),하영일(LG 전선),김경조(쌍용중공업),김윤 주(범양냉방),백종부(부산파이 프),이병균(대우전자),장지태(경창산업)	정 창 영 (LG전선)	160,327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조직기구표



● 임 원

직 책	성 명	소 속 조 합 명	직 책	성 명	소 속 조 합 명
위 원 장	유 재 섭	L G 전 자	부위원장	박 영 구	L G 금 속
부위원장	김 성 문	대 한 전 선	“	정 기 준	화 천 기 공
“	최 응 길	동 양 강 철	“	백 종 부	세 아 제 강
부위원장 사무처장	정 창 영	L G 전 선	“	이 병 균	대 우 전 자
부위원장	정 학 균	대 동 조 선	“	장 지 태	경 창 산 업
“	안 영 환	동 부 제 강	회계감사	김 두 형	대 성 공 업
“	김 영 철	현 대 전 자	“	김 홍 수	L G 산 전
“	오 봉 출	한진 섬유 기계	“	박 순 자	로 움 코 리아
“	하 영 일	L G 전 선	“	김 종 국	L G 전자 부품
“	김 경 조	쌍용중공업대구	“	임 문 택	기 아 특 수 강
“	김 윤 주	범 양 냉 방	“	강 의 화	대 한 전 선
			“	김 길 동	L G 전 자

● 지역본부의장

지 역 본 부	의 장	지 역 본 부	의 장
서 울 지 역 본 부	신 성 균	경 남 지 역 본 부	강 석 수
경 기 지 역 본 부	하 영 일	울 산 지 역 본 부	김 복 천
인 천 지 역 본 부	황 창 배	대구.경북지역본부	김 무 호
대 전 지 역 본 부	김 두 형	포 향 지 역 본 부	백 종 부
충 남 지 역 본 부	강 한 우	구 미 지 역 본 부	박 병 도
충 북 지 역 본 부	김 홍 수	광주.전남지역본부	정 기 준
부 산 지 역 본 부	오 봉 출	전 북 지 역 본 부	백 병 기

● 중앙위원 (당연직제외)

97. 3. 31 현재

성명소속	성명소속	성명소속
정한식 LG창원1	이철구 LG전자구로	서갑순 한국특수공구
이대영 풍성전기	신철신 일산업	김수룡 대광다이캐스트
김정근 대우전자주안	성용주 현대엘리베이터	윤선옥 태광에로이카
임홍순 한국가구	송성수 대덕전자	오광수 반도기계
조재천 오양공조기	임종국 세광알미늄	이쌍봉 서울차체
이병옥 태양금속	장건 L G전선	최진하 일진
신현철 삼아알미늄	장동원 삼화제관	지수식 삼영전자
최광철 서울제강	허원 현대전자	윤무영 신한주철
이은물 대림통상	박재혁 한국사프	황대선 대선조선
박군호 대한이연	신경선 삼천리기계	문정도 강남조선
서복호 동국제강	강진호 연합철강	이동호 한일제관
차윤환 한국주철관	정운국 한국오르강철	신태기 L G금속
최해경 한국중천	주태화 삼성제침	윤태길 아세아종합기계
정병철 세신정밀	김춘종 미주금속	서윤배 평화발레오
전형태 대일공업	김운이 삼협산업	박철우 부산파이프
정문호 삼도기전	김장수 일성기계	김길득 태평양금속
이용대 대한중석	이동익 동일기업	강학중 그린산업
정용목 세왕금속	한상환 한영알미늄	

● 중앙집행위원

97. 3. 31 현재

성명소속	성명소속	성명소속
천광희 LG전자	강영일 조 기	김규호 부산정기
이종진 성신	성무용 L G전자	이형일 뉴맥스
남진우 삼목강업	정상영 현대전자	남상규 삼선공업
김과한 해태전자	박정화 동아전기	김우배 덕양산업
심경수 경신공업	조동권 화신테크	
박병용 대창단조	장영일 미주제강	

● 실.국장

97. 3. 31. 현재

직	책	성	명	소	속	직	책	성	명	소	속
기획연구실장		노	진	귀	본 노 련	총 무 국 장		윤	창	열	본 노 련
조 직 국 장		이	진	우	본 노 련	정 치 국 장		나	찬	경	L G 전 자
교 선 국 장		김	홍	룡	영 창 악 기	노사대책국장		김	순	호	삼 양 중 기
산업안전국장		권	석	정	한 샘	복 지 국 장		문	광	주	세 진 전 자

● 부서부장. 직원

직	책	성	명	소	속	직	책	성	명	소	속
기획연구부장		신	송	근	동국종합전자	재 정 부 장		신	용	석	LG전자부품
총 무 부 장		최	상	돌	현 대 공 업	노사대책부장		손	종	홍	대 한 제 당
조 직 부 장		김	정	완	본 노 련	대외협력부장		윤	승	오	화신 제작소
국 제 부 장		김	광	호	대 덕 산 업	문 화 부 장		유	재	순	쌍 신 전 기
법 규 부 장		권	동	재	오리엔탈정공	교 육 부 장		정	한	근	동 해 전 장
정 치 부 장		안	희	철	홍 진 기 연	안 전 부 장		김	희	곤	고려 용접봉
홍 보 차 장		박	현	미	본 노 련	조사통계차장		정	문	주	본 노 련
직	원	김	영	미	본 노 련	직	원	백	명	아	본 노 련

총론

1. 국내외 정세

- 제 1절 세계경제 동향
- 제 2절 국내경제 동향
- 제 3절 국내정치 동향

2. 노동동향

- 제 1절 노사관계
- 제 2절 임금정책
- 제 3절 노동법 개정

1. 96년 국내외 정세

제 1 절 세계경제 동향

1. 세계경제질서 동향

1) 다자간 자유무역체제(WTO)의 활성화

95년 1월에 출범한 WTO체제는 96년에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강대국들의 일방적인 쌍무협상 압력에 대항하여 다자간 무역분쟁 조정기능¹⁾을 정비하는 한편, 통신 분야 등 미타결 분야의 개방 협상을 통해 강제적인 자유무역 질서를 확대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발도상국 경제를 위협하는 환경이나(그린라운드:GR) 노동(블루라운드:BR)의 무역연계 작업이 96년 하반기 WTO 무대에서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비중있는 통상분쟁 요인²⁾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 WTO 체제에서의 경제 지역주의의 확대

주1) 95년 1월 WTO 출범이후 9월까지 총18개의 소송사건이 발생함. 이 가운데 미국과 관련된 무역분쟁 소송은 9건으로 제소(提訴)가 6건, 피소(被訴)가 3건. EU와 관련된 것은 제소가 7건, 피소가 1건. 일본과 관련된 것은 피소가 1건임.

이 중 미국과 피소된 소송의 예를 들면, 미국의 홍콩산(産) 모직셔츠에 대한 긴급 수입규제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홍콩이 제소하여 승소한 바 있음.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수입육류 저장기간에 대해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여 허용기간을 연장시키는데 성공한 바 있음.

앞으로 WTO를 이용한 무역분쟁 해결은 95년 중에 있었던 것보다 96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주2) 무역과 노동의 연계(사회조항) 문제는 WTO 출범 이후 본격적인 협상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개발도상국들이 노동권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것은 선진국의 보호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WTO가 지금의 추진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무역과 노동의 연계 문제를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선진국의 가장 큰 문제는 실업이고 이 실업은 개발도상국의 값싼 노동력 때문에 발생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선진국의 주장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처럼 무역과 노동의 연계 문제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경제적 이해 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에 WTO의 협상 의제 상정에 있어 뜨거운 감자인 것임.

세계 무역 활성화의 장애요인은 자국 경제의 보호를 위한 인위적인 무역 장벽도 있겠지만 WTO체제 아래서의 다자주의는 지리적인 거리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리적 거리가 가까운 국가들간에 또는 제도적 문화적 거리가 가까운 국가들간에 경제 지역주의가 계속 형성되고 확대되어 왔다.

<표 1-1>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

	지 역	1993	1994	1995	1996
경제성장률	전세계 (%)	2.5	3.6	3.8	4.1
	선진국	1.2	3.1	2.5	2.4
	미국	3.1	4.1	2.9	2.0
	일본	-0.2	0.5	0.5	2.2
	EU	-0.4	2.8	3.2	3.1
	독일	-1.2	2.9	2.6	2.9
	개도국	6.1	6.2	6.1	6.2
	구소련및동구	-9.1	-9.5	-2.1	3.4
실업률	선진국전체	8.1	8.1	7.6	7.9
	미국	6.8	6.1	5.7	5.9
	일본	2.9	2.9	3.1	3.2
	EU	11.0	11.6	11.1	10.6
	독일	8.8	9.6	9.1	8.7
물가상승률	선진국전체	3.0	2.4	2.6	3.5
	미국	3.0	2.6	3.0	3.3
	일본	1.3	0.7	0.3	0.7
	EU	3.8	3.1	3.1	2.8
	개도국	43.1	48.1	19.5	13.0
	구소련및동구	675.2	301.3	147.7	25.4

이러한 경제 지역주의는 그 지역의 국가간에 무역의 자유화를 촉진하고 생산성 증가 등의 혜택을 주는 면도 있지만, 그 지역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에게는 배타적인 무역정책을 펼칠 위험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접근이 용이한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이 증가하고 투자가 활발해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 유치를 위한 저임경쟁을 촉발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노동자 생활을 압박하고 국가간의 수직관계를 고착화 시킬 우려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지역주의의 활성화가 세계 무역 자유화에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기구와 WTO사이의 제도적 일관성을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은 96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 세계 경제전망

선진국 경제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조정을 겪으면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겠지만 2.4% 수준의 안정성장을 시현하고, 개도국이 올해에도 6%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어 세계경제는 90년 들어 가장 높은 4.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의 경우 베트남의 회원국 가입에 따른 지역내 시장 확대와 외국인 직접 투자 증대에 힘입어 8.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이며, 구소련 및 동구권이 90년대 이후 경제정책의 후유증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해오다 외국인 투자의 증가와 인접국과의 교역량 증가로 올해 6년만에 플러스 성장을 시현하며 약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1-2> 국제 원자재 가격 전망 (단위 : %)

	94 년	95 년	96 년
원 유	-2.4	7.8	-7.0
기타 원자재	12.4	13.8	-3.4
비 철 금 속	11.9	12.1	-0.3
공업 농산물	9.6	-1.8	-0.6

자 료 : 국제통화기금 (IMF)

이러한 세계경제의 안정성장은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교역 장벽의 완화와 이에 따른 경쟁촉진, 가격파괴 현상 확대, 생산요소 이동의 원활화, 원유 등 원자재의 가격안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세계 무역을 이끄는 선진국의 자본재를 비롯한 설비투자용 수입이 줄어들어 무역 증가율이 4.5% 정도로 낮아지겠지만,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른 자본재 수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개도국의 수입 신장률이 5.9% - 12.9%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교역 증가율도 지난해보다는 둔화되어 96년에는 6.6%대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1-3> IMF의 세계교역 증가율 전망 (단위 : %)

	1994	1995	1996
세 계	10.5	8.0	6.6
선 진 국	10.0	7.1	5.5
미 국	15.0	6.4	2.4
일 본	13.7	13.6	5.3
개 도 국	12.1	11.8	10.2
아시아	14.2	11.8	12.9
중남미	34.6	-0.6	5.9
* 85년~95년 연평균 세계교역 신장률 : 6.0%			

제 2 절 국내경제전망

국내경제는 93년 1월을 기점으로 지난 3년간의 경기확장세를 벗어나 점차 둔화되었지만 성장률은 크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국내총생산(GDP)이 7.4% 내외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1-4> 각 기관별 96년 경제전망 (단위 : 전년대비 증가율 %, 억 달러)

	KDI	조세研	금융研	LG研	현대研	삼성研	대우研
국 내 총 생 산	7.5	6.6	7.0	7.4	7.2	6.8	7.1
총 소 비	6.7	7.1	7.7	7.0	6.8	6.5	6.5
* 민간소비	7.1	7.2	8.0	7.7	7.3	6.7	7.2
총고정자본형성	8.2	8.9	8.7	6.1	6.6	6.3	7.2
* 설비투자	8.9	8.7	9.6	5.5	7.5	7.0	7.5
* 건설투자	7.6	9.1	8.0	6.6	6.0	5.8	6.9
경 상 수 지	-56	-75	-64	-57	-56	-64	-63
무 역 수 지	-25	-38	-29	-24	-31	-48	-32
수 출 증 가 율	13.1	13.0	13.4	15.8	14.6	18.5	14.1
수 입 증 가 율	10.7	10.0	15.8	12.8	11.5	14.6	12.1
생산자물가상승률	3.5	2.2	2.6	3.4	2.5	2.9	1.8
소비자물가상승률	4.0	4.8	4.5	4.8	5.0	4.9	4.7

1. 물가동향

경기확장기 동안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은 경기 확장이 시작된 93년 1월부터 11분기가 지난 95년 3/4분기까지 5%대를 유지하였다. 이번 경기 확장기 동안의 소비자 물가는 상승률도 낮지만 변동폭도 작아 다른 경기 확장기³⁾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특징을 보였다.

<표 1-4> 물가변동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93년	94년	95년6월	95년7월	95년8월	95년9월
소비자 물가	4.8	6.2	4.3	3.8	3.5	4.7
생산자 물가	1.5	2.8	5.9	5.7	4.6	5.2

올해에도 물가는 안정기조가 유지되어 소비자 물가는 4.0 - 5.0%의 상승률을, 생산자 물가는 1.8 - 3.5%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물가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올해 경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물가상승 압력도 누그러지리라는 것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지속되리라는 것, 불안한 양상을 보였던 원유 등의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내리라는 것, 그리고 최종재의 수입가격을 하락시켜 국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가안정 요인의 비중이 물가상승 요인의 비중보다 더 커서 물가안정세를 전망하지만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소비패턴의 고급화에 따른 과시적인 소비행태, 서비스 부문의 가격 상승, 충선을 앞두고 선거자금용으로 통화(최소 5천억원 이상)가 많이 풀릴 경우 등-들이 만만치 않게 상존하고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수출전망

96년도 수출전망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변수는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엔화 환율의 움직임이다.

주3) 80년 3/4분기 부터 시작된 경기 확장기에는 고물가 상황이 이어져 상당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대를 크게 상회하였다가 확장국면이 끝날 무렵에 안정되는 추세를 나타낸 바 있음.

또한 85년 중반기를 기점으로한 경기 확장기에도 3저 현상에 힘입어 기록적인 저물가 상태가 유지되었으나 7분기 이후에는 물가가 꾸준히 상승하여 7%대를 상회하였음.

엔화의 대미 달러가치는 95년초 하락세를 보였으나 95년 상반기까지 보합세를-달러당 102 ~ 110엔 사이- 유지하다가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완만한 상승 추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향후의 엔화 환율 변동이 수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화의 미 달러화에 대한 가치는 올해 말까지 절상 추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원화의 환율 변동은 올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5>

품목별 수출전망

(단위 : 억달러, 전년대비%)

	1994년	1995년(추정)	1996년(전망)
일 차 산 품	38 (18.6)	61 (60.2)	74 (21.3)
* 광 산 물	7 (78.3)	26 (273.4)	35 (31.8)
경공업 제품	262 (6.3)	285 (8.7)	300 (5.3)
* 섬 유 류	173 (8.8)	187 (8.2)	200 (6.9)
직 물	88 (21.3)	101 (14.9)	114 (12.8)
제 품	67 (-6.7)	62 (-7.1)	59 (-5.7)
* 신 발	18 (-22.9)	15 (-13.6)	14 (-10.9)
* 플라스틱	17 (12.3)	22 (29.8)	25 (13.6)
* 타 이 어	12 (8.9)	14 (10.3)	14 (2.9)
* 가 족	16 (20.0)	18 (13.1)	18 (2.0)
중화학 제품	660 (21.4)	914 (38.5)	1,103 (20.7)
* 화 공 품	60 (29.1)	86 (43.2)	97 (13.2)
* 철강제품	56 (-15.5)	73 (30.5)	73 (-0.6)
* 일반기계	42 (37.6)	56 (33.3)	67 (20.2)
* 전기전자	315 (30.0)	450 (42.8)	587 (30.5)
산업용	55 (10.8)	74 (35.5)	88 (19.2)
부 품	178 (61.4)	286 (60.2)	408 (43.0)
가정용	71 (13.7)	76 (35.5)	74 (-2.1)
* 자 동 차	53 (17.7)	87 (64.6)	101 (16.0)
* 선 박	49 (32.5)	54 (8.7)	62 (14.9)

그러나, 경기 연착륙을 유도해온 정부가 가파른 원화 절상에 따른 수출 둔화를 방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화 절상의 수출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수출전망을 살펴보면, 올해 선진국 경기가 크게 호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과 고실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EU국가들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덤핑 제소 등의 무역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선진국에 대한 수출 전망은 그리 밝은 편이 아니다.

반면, 50% 이상의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도국의 경기는 계속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에도 개도국에 대한 수출은 여전히 높은 증가 추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표 1-6> 지역별 수출전망 (단위 : 억달러, 전년대비 %)

	1994	1995	1996
총 수출	960(16.8)	1,260(31.2)	1,477(17.2)
선진국	488(13.7)	633(29.7)	745(17.7)
미국	206(13.3)	245(19.2)	289(18.0)
일본	135(16.9)	171(26.5)	200(17.0)
EU	112(19.5)	165(46.7)	198(20.0)
개도국	472(201)	627(32.8)	732(16.7)
아세안	114(22.1)	166(45.6)	202(21.7)
중남미	64(30.7)	80(24.4)	88(10.0)
중국	62(20.4)	92(48.4)	115(25.0)

자료: 무역협회

그밖에,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법인으로부터의 국산 자본재와 원자재에 대한 수출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과 저임금을 노린 노동집약적 부문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시장 다변화 등도 수출 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3. 수입전망

96년도 수입 전망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변수는 설비투자과 수출의 변동추이이다. 올해 수출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기업들이 설비투자 확대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예상과 그동안 진행되어온 설비투자의 상당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 등으로 하여 자본재 수입 증가율은 앞으로도 계속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엔화 환율의 안정으로 인해 엔고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온 자본재 국산화 노력이 주춤해질 경우 일본산 자본재 수입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표 1-6>

용도별 수입전망

(단위: 억달러, 전년대비 %)

	94 년	95 년	96 년
총 수 입	1,023 (22.1)	1,357 (32.6)	1,546 (13.9)
원 자 재	509 (14.8)	679 (33.5)	774 (14.0)
원 유	88 (-3.0)	110 (23.9)	129 (17.3)
기 타	420 (19.4)	569 (35.5)	645 (13.4)
자 본 재	407 (32.1)	538 (32.3)	609 (13.2)
소 비 재	108 (24.3)	140 (29.2)	163 (16.4)
양 곡	19 (8.1)	23 (21.3)	27 (17.4)
기 타	89 (28.4)	117 (30.9)	136 (16.2)
수 출 용	324 (16.4)	454 (39.9)	533 (17.4)
내 수 용	699 (25.0)	903 (29.2)	1,013 (12.2)

<표 1-7> 지역별 무역수지 전망

(단위 : 억달러, 전년대비%, 무역수지는 증감액)

	95년(추정)	96 년 (전 망)		
		수 출	수 입	무 역 수 지
전 체	-97(-33)	1,477(17.2)	1,546(13.9)	-69(+28)
미 국	-64(-54)	283(18.0)	354(14.6)	-65(-1)
일 본	-160(-41)	200(17.0)	369(11.5)	-169(-9)
E U	-17(+16)	198(20.0)	205(12.6)	-7(+10)
아세안	68(+31)	202(21.7)	112(14.3)	90(+22)
중남미	41(+9)	88(10.0)	44(12.8)	44(+3)
중 국	16(+9)	115(25.0)	92(21.1)	23(+7)
기 타	19(-4)	385(12.9)	370(14.9)	15(-4)

한편, 국내시장 개방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게다가 국내 소비의 고급화, 다양화 추세를 감안하면 특히 선진국산 고가 내구 소비재의 수입은 계속 높은 증가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3 절 국내정치전망

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사회는 몇가지 주요한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시피 30여년간의 뿌리깊은 군사독재의 기반이 붕괴되고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국제적 냉전질서의 와해를 배경으로 국내 냉전 수구세력의 입지가 점차 축소될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군부의 지위가 급격히 낮아지는 대신 재벌의 정치,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선거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의 정치적 결사와 정치활동을 각종 노동악법과 국가보안법, 선거제도 등의 법적 제도적 장벽으로 가로막고 있는 현실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도구로서 선거가 활용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할지라도, 어떤 정치세력도 선거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지 않고서는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기 어려운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라 할 것이다.

넷째로,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이고 무단적인 탄압에서 언론을 동원한 고립화, 자본우위의 협조적 노사관계 강요를 통한 간접 노동통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와 궤도를 같이하여 자본의 노무관리 방식도 신경영전략 아래 다양한 변화를 하고 있다.

끝으로, 노동자와 국민의 생활과 의식이 현실안정적 지향성과 다원주의적 경향성으로 확대되고 요구수준이 다양화되고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1. 현 정세의 성격

95년 6월 지자제 선거를 시발로 96년 4월 국회의원 총선, 97년 12월 대통령 선거, 98년 6월 지자제 선거 등의 권력교체기라는 확대된 정치 공간 속에서 한국노총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중운동, 통일운동, 시민운동 등이 제각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에따라 노동자와 국민의 자주적 권리의식이 한층 고양되고 정치적 진출이 가속화되어 노동악법의 개정, 사회개혁 요구의 실현 뿐만아니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질적으로 이룩하는 역사적 전환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김영삼 정부는 95년 6월 지자제 선거에서의 참패를 만회하고 96년 총선에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태우 비자금 수사,

5.18특별법 제정, 노태우-전두환 구속 등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정치권 사정 내지 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5,6공 청산과 개혁조치는 3당 합당이라는 정권의 근본으로 인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전두환-노태우 재판이 잇달아 열리고 일련의 개혁 조치가 가시화 되면 국민들의 지지도가 부분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예상도 할 수 있다.

한편 한국경제는 대외적으로 WTO 체제의 수립에 따라 경제 개방이 확대되고, OECD 가입이 추진되는 등 경제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 관료의 부정부패로 인해 경제의 효율성과 경제운용의 합리성이 저해받고 있으며, 임금억제와 노동탄압으로 노동자들의 근로의욕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누적된 문제를 김영삼 정부는 규제완화, 시장경제 강화, 민간주도 경제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재벌 주도의 경제를 강화하고 있다.

2. 남북관계

북미합의 이후 경수로 협상이 타결되면서 북미간의 관계개선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어 합의사항 이행에는 당분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다시 북일관계의 개선을 유도하여 동북아 질서 재편을 가져올 것이며 한반도에서는 휴전체제의 종식과 새로운 정치협력관계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미관계의 정상화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한다. 자본의 흡수통일, 미국주도의 동북아 질서 구축 기도와 자주통일, 한반도 평화 보장 요구 사이의 근본적인 이해관계 차이로 인하여 새로운 긴장이 조성될 수도 있다. 또한 김영삼 정부가 북미관계, 북일관계의 진전을 차단하는 방향에서 통일정책을 운용하고 있고 대북 강경책을 펴고 있음으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유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6년 총선과 임단투에서도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악용하려 할 것이며 정부 주도의 남북경협을 제외한 민간교류와 민간통일 행사는 불허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정부의 이러한 경색된 자세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최근 쌀지원때 보인 일련의 자세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은 예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남북관계는 현상 유지의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하겠

다. 북한은 96년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한 공세적 전술에서 벗어나 소위 3대 진지강화론을 주장하며 북한 내부정비를 최우선 목적으로하는 수세적 전술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 홍수 피해 등의 총체적 경제난국에 대한 미봉책으로 분석되며 아직도 북한의 지배층은 개혁과 개방을 통한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현 체제 유지를 절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은 대외분야에서 대미평화 체계수립을 선차적 과제로 내세우면서도 남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협력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냉각국면을 지속할 뜻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어 남북관계의 진전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반도는 주변정세의 변화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의 요구는 높아질 것이고 북한 김정일의 주석직 승계를 기점으로 책임있는 정상간의 대화는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제 15대 국회의원 총선거

96년 총선은 대선정국의 전초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할 수 있다. 총선 결과에 따라 현 4당체제와 3김시대의 변화의 조짐이 일어날 것이고, 각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이 빠르게 이루어져 정계개편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시기의 주요쟁점으로는 집권 중반을 넘긴 김영삼 정부에 대한 심판, 5.18비자금을 비롯한 5.6공 청산의 평가, 대선지원금 공방, 김대중의 정계복귀와 대선자금 수수에 대한 평가, 정치권 및 재벌에 대한 사정의 평가, 세대교체 논쟁 및 지역할거주의의 공방 등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요쟁점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기보다는 여전히 지역분할적 투표행태가 총선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은 노동운동 세력에게 뿐만아니라 모든 민중운동, 시민운동에게 있어 정치적 진출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노동조합의 96년 임단투 준비기(또는 교섭기)와 맞물려 있으므로 하여 생활임금의 확보, 노동법의 개정, 제반 복지실현을 위한 유리한 공간이라

는 의미도 갖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총선시기 다양하고 활발한 임단투활동 뿐만아니라 정치활동을 전개하여 노동자의 주인의식, 정치의식을 높이고 사회정치적 영향력과 대국민 영향력을 높여야할 것이다.

지금 국민 대부분에게는 반여당 정서도 있고 기성정치권에 대한 혐오감 속에 세대교체와 지역 할거주의 타파라는 의식도 광범위하게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혁과 수구, 양김과 세대교체, 지역패권과 지역할거주의 등의 현상적 대립이 복잡하게 중층화 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명망가 위주의 개별적 진출이 아니라 조직력과 조합원의 대중적 기반에 기초하여 총선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운동과 연대하여 정치세력화의 지역기반을 구축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노동동향

지난 96년도 노동정세는 상반기 총선거에 따른 임단투와 중하반기 노동법 개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96년도 한해를 관통했던 노동법 개정의 문제는 김영삼 정권과 신한국당에 의한 날치기 악법 개정으로 인해 전체 노동진영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는 올해 연초 벽두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96년초 정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노사정 중앙 조직간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책정하도록 유도하였으나 노총에서 강력히 반대하면서 독자적인 요구안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는 95년도와 비슷한 공익연구단을 설치하여 노동생산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6.6%의 낮은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김영삼 정권의 신경제정책에 따른 것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동자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96년도 임금 교섭의 결과를 살펴보면, 4월 총선과 시기가 맞물렸던 '96년 임단투는 전술적 차원에서 예년보다 다소 늦게 교섭을 시작하게 된다. 이는 '95년 임단투가 지자체 선거와 연계되었던 점을 미루어 노동조합에게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임금교섭의 횡수가 92년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였던 것이 작년도 들어서면서 92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여 96년도 임금교섭의 속도는 출발지연과 주행중 정체현상으로 더딘 진척도를 나타냈었다.

한편, 정부 노동정책은 노사화합에 기초한 사용자 힘의 우위 정책을 시도하여 기업에 대한 노무관리 서비스 지원, 노사화합 결의대회 (또는 영구적 무파업 선언)등을 유도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하철노조, 조폐공사, 한국통신 등 공공부문 노조는 교섭시기를 통일하여 대정부 교섭의 수위와 압력을 높여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달성하였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올해 임금교섭의 주요 쟁점사항으로 등장했던 노동시간 단축, 작업 중지권이 과거 선도기업 정도에 머무르던 것이 대개의 사업장마다 요구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96년도 4월 정부는 청와대 직속기구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법에 대한 개정작업을 착수한다. 그러나 11월초 정부는 일방적으로 노개위 활동을 중단시킨 채 정부단독으로 노개추를 구성하여 노개위 공익위원이 제시한 내용보다도 후퇴한 노동법 개정안을 작성한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권과 신한국당은 12월26일 새벽6시 국회의사당에서 155명의 날치기 거수기를 동원하여 노동법, 안기부법 등 11개항의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즉각적으로 총파업을 단행하였으며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총파업을 지지하는 한편, 날치기 노동법은 원천무효임을 천명하여 김영삼 정권은 출범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은 자기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총파업 조기진압을 통해 노동계 및 민주세력에 대한 초토화 전략을 꿈꾸고 있다.

임기 1년을 남기고 있는 김영삼 정권의 강경한 태도는 향후 노동계의 총파업투쟁을 더욱 드세게 몰아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전개되고 있는 싸움이 '민주주의 수호'라는 측면에서 노동자들로 국한된 투쟁이 아니라 시민·환경운동단체, 종교계, 변호사, 교수, 언론인, 청년학생, 넥타이부대 등 전국민적으로 반김영삼 반신한국당의 정서가 확대되고 있으며 분노가 촉발되고 있는 점들을 미루어볼 때 김영삼 정권과 신한국당은 자충수에 갇히어 정권의 최후를 맞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제 1절 노사관계전망

1995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구도는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

우선 1987년 이후의 노사관계 격동기를 통하여 지속적인 대립과 대결의 구도를 자본우위와 협력적 구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 -세계화와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력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95년 한해동안 2,800여개 사업장에서 노사화합 선언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하던 재야노조가 민노총이라는 전국조직을 출범 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제2노총으로 정비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통신사건을 계기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가 뚜렷하게 부각 되고 그동안 소홀히 해오던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를 재점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큰 흐름은 별다른 변화없이 96년에는 단지 모양새만 조금 씩 변해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즉 정부는 세계화를 구실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노사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정책을 지속시킬 것이다. 반면, 노사분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노동자에 대한 직접통제를 더욱 강화하여 노사자율원칙을 거스를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일례가 지난 95년 12월 노동부장관이 정부가 올해부터 기업에 대해 노무관리서비스를 제공할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 주 내용은 노사관계에 선도적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 및 공기업에 대해 정부가 노무관리진단팀을 구성하여 노사관계의 갈등요인을 미리미리 점검, 개선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단순한 노사화합결의대회를 독려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자본우위의 본격적인 협력적 노사관계의 신노사관계의 틀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판단되며 한편, 신격영전략이나 새로운 노동통제전술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자보측에 제공하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에도 역시 공공부문이 노사관계의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정부 차원에서도 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10개 정부 각 부처 관계국장으로 공공부문 노사화합 지원 협의회를 구성, 공공부문 노조의 전임자 수를 크게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마찰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공부문의 임금인상률이 올해 예산 지침에 종래와는 달리 5-8%로 반영되어 있어 임금교섭과정에서 불안요인은 없지않겠는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있다.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있는 자본측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략산업에서의 경기호황을 반영하여 노동자들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하면서도 생산현장에 대한 노동통제를 강화하고 정규직을 축소하고 비정규직을 확대대하여 고용불안을 제도화하며, 노동자 의식을 마비시키기 이

한 기업문화 운동을 확산하고 능력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신경영 전략과 노사화합 선언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개량화와 무력화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 2 절 임금정책 전망

90년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임금억제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91-92년 총액임금제를 앞세운 임금억제정책이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실효성을 갖지 못하자 93-94년에는 노.경총 임금합의를 앞세워 임금억제정책을 관철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노.경총 임금합의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95년 그나마 노.경총 임금합의가 무산되자 몇몇 학자들을 내세워 95년도 임금연구회를 급조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에도 역시 정부는 '공익연구단' 등의 관변학자들을 동원해 사실상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임금인상 억제 수단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1-8>

실제 임금인상률 추이

	1991	1992	1993	1994	1995
정부 임금가이드라인 (%)	5.0	5.0	4.7-8.9	5.0-8.7	5.6-8.6
실 제 임 금 인 상 률(%)	17.5	15.2	12.2	12.7	12.5

이렇듯 임금가이드라인에 정부가 집착하는 이유는 '그나마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이 1-2%라도 낮아진 것이 아니냐'라는 잘못된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과 정부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설문조사결과 '95년도 공익연구단의 임금준거안에 의해 사용자의 81.2%, 노조의 69.7%가 임금협상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임금준거안이 실

제 임금인상률을 상대적으로 하락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정부가 자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96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9%, 공공부문 가이드라인 5-8%를 감안할 때 96년도 공익연구단이 제시한 임금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의 둔화와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 등을 기초로 하여 작년보다 낮은 수준인 6.6%를 1월8일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억제정책은 한국노총- 지난해 12월21일 개최되었던 중앙위원회에서 정부와 사용자의 임금억제정책을 단호히 거부하고 독자적인 임투 및 경영참여, 정경유착 근절, 정치활동 강화 등을 주요활동 사업으로 확정 천명한 바 있음 -뿐만아니라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용자의 임금정책을 살펴보면 그동안 사용자의 집단인 경총에서는 사실상 정부정책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강하게 드러났다. 금년도 역시 경총은 다시한번 노총과의 임금합의를 원하고 있으나 현 노동계에서의 강력한 반대의사로 인하여 임금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노총에서 독자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경총 역시 공익연구단이 제시하는 임금정책을 수용할 것으로 보여지나 노총이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경우에는 공익연구단보다 낮은 수준인 대략 5%대에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5.6공 정경유착에 의한 비자금 파문으로 인하여 경총의 강력한 권고안을 일선에 하달하기는 어렵다는 평도 제출되고있는 실정이다. 즉, 정치인에게는 수백억원을 헌납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경제상황을 내세워 기업성장 등을 운운하며 임금을 억제하기가 더이상 어렵다는 것이 그들의 자평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선기업에서는 올해 임금교섭에서는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제 3절 노동법 개정 전망

노동계에서 끊임없이 주장해왔을 뿐만아니라 ILO에서 3차례나 권고 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에 따른 노동법 개정 압력 움직임에도 김영삼 정부는 노동법 개정을 지연 또는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노동관계법 개정연구위원회 기초소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 6급 이하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제3자개입 금지 조항 삭제, 공익사업 직권중재 폐지, 행정관청 업무조사 및 단체협약 취소변경권의 삭제 등 현행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의 일부를 개정하고 정리하고 요건의 완화,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휴업수당 삭감, 생리휴가의 무급화, 주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등 근로기준법을 편법 개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근로자파견법을 포장만 바꾸어 집요하게 추진하는 등 고용관련 법률이 새로 추진되거나 개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한편, 한국노총에서 강력히 정책건의하고 있는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이 적용이 실현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연구활동

목 차

○ 평가와 개선방향

1. 96정책세미나 개최
2. 노동판례집 제작

평가와 개선방향

금번 회계년도에는 첫째 노사개혁추진에 의한 노동법 개정 전망에 따라 복수노조시대의 도래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문제는 금속산업의 노동계통합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문제도 동시에 논의하였다. 두번째로는 재정자립문제에 대해 심각히 검토하고 논의하였다.

복수노조 부분에 있어서는 복수노조체제의 도래가 불가피하며 복수노조시대가 되면 노동계가 분열될 가능성이 크므로 통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금속산업 노동조합 통일은 양대 노총간의 통합보다 쉬울 수 있고 또 양대노총의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분석되었으며 금속산업 노조의 통합을 위해 국제활동등 공동사업을 전개키로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민주노총 산하조직들과의 간헐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구체적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단지 조직들간에 서로 적대의식을 버리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재정자립방안 강구에 있어서는 특판사업과 인쇄사업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특판사업이 전개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조직강화 문제, 산별체제 구축문제, 노동조직의 정치세력화 문제, 독과점에 대한 대책 문제, 노동계통합문제등이 진지하게 논의되어 구체화되어 나갈 필요가 있다.

1. '96 정책세미나 개최

(1) 일시 : 96.7.9-10

(2) 노총 중앙교육원

(3) 참석자수

(4) 일정표

96. 7. 9(화)	12:00 - 13:00	중식
	13:00 - 13:30	등록
	13:30 - 14:00	개회식
	14:00 - 15:20	노동운동의 현재세와 우리의 대응방안 (한국노총 위원장 박인상)
	15:20 - 15:30	휴식
	15:30 - 18:30	주제발표 및 토론 주제1 : 복수노조시대 도래와 우리의 대응 (기획실장)
		주제2 : 재정운영 개선방향 (총무국장)
		주제3 : 복지사업방안 1 (여성국장)
		복지사업방안 2 (교육국장)
		토론
96.7.10(수)	18:30 - 19:30	석식
	07:00 - 08:00	조식
	09:00 - 10:30	금속노동운동 발전 및 통합전망 (민주금속연맹 부위원장 문성현)
	10:30 - 10:40	휴식
	10:40 - 11:40	당면노동정세에 대한 대응방안 당면정세 및 '96임투경과보고 (노사대책국장)
		대응방안 토의 결의문 채택
	11:40 - 12:00	결론 및 폐회
	12:00 - 13:00	중식

(5) 결의문 채택

'96임투와 노사관계개혁을 둘러싼 오늘의 정세는 혼미에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노사관계개혁은 갈등만 유발한 채 명확한 전망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해고자 복직, 작업중지권, 노동시간단축을 둘러싼 사용자측의 거센 저항은 오히려 노사관계의 불안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또한 노사관계개혁 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정을 포함한 모든 개혁사항들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재경원이 변형근로,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등을 입법화하겠다고 나서 노동자의 분노를 야기시키고 있다. 우리는 자금의 갈등과 혼란이 정권교체기나 경기불황의 국면으로까지 직결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와 사용자측의 자중과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투명한 활동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천명한다.

다 음

1. 우리는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수립에 적극 동참한다!
1. 우리는 노사 당사자를 배제한 어떤 노사관계개혁도 반대한다!
1. 우리는 단결권의 완전보장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정치활동의 완전 보장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어떤 노동법 개악도 반대한다!
1. 우리는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근로자파견제 입법을 강력 반대한다!
1. 우리는 공익사업의 강제중재제도의 철폐를 강력 요구한다!
1. 우리는 노동위원회법의 전면적 개선을 촉구한다!
1. 우리는 경영참가법의 제정을 강력 요구한다!
1. 우리는 사용자측의 경영권 주장을 규탄한다!
1. 우리는 우리의 요구조건 관철을 위해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투쟁에 적극 동참한다!

1996년 7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96정책세미나

<토론자료 1>

복수노조체제 도입전망과 대응방안

1) 복수노조체제 도입전망

(1) 불투명한 상태이나 노개위 권고안에서는 상급 복수로 될 가능성이 큼

- * 노사관계 개혁은 노개위의 권고안 작성, 권고안의 시행 및 제도화라는 두 단계를 거치게 되므로 변수의 작용이 많다. 현재 노개위의 활동 자체도 불투명하다.
- * 노사관계개혁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과 비관적인 전망이 공존하고 있다.

0 낙관적 전망의 이유

- 개혁 완수의 정치적 의미
- 민노총의 합법화에 대한 학자들간의 공감대 큼
 - * 지하철 파업등에 대한 유화적 조치
- 기업경영의 유연성 도모를 위한 경제부처 의지가 강함

0 비관적 전망의 이유

- 논쟁적인 이슈를 포괄하고 있다
- 경영자측이 반대하거나 소극적이다
 - * 현재상태로도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 가능
 - 민노총에 대한 의구심
 -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의구심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2) 머지않은 장래에 도입될 것임(OECD가입, 민노총의 대정부 유화적 태도)

(3) 복수노조체제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민노총이 실질적으로 인정받게 돼 복수체제가 될 것임(국제적 인정, 정부와 기업의 비공식적 인정)

2) 복수체제하에서의 노조운동 전망

- (1) 노선에 따른 추가적 조직분열이 있을 수 있음
- (2) 금속의 경우 업종분과가 별도로 독립할 가능성이 큼
- (3) 노조 조직간의 연합이나 이합집산이 있을 수 있음
- (4) 기업별 노조들이 상급조직에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3) 노조 조직간 경쟁이 일어나 단위사업장에서의 해게모니 쟁탈전이 지속될 것임. 그 결과 조직간 감정대립도 격화될 수 있음
- (4) 노조운동의 정치적 역량은 약화되기 쉬움

3) 복수노조체제에의 대응

조직확대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노동계 통합을 단계적으로 모색한다.

- * 복수체제하에서 노조운동의 약화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자율적인 노조통합이다. 금속산업의 통합은 노조운동의 정치적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증대시키며 노조운동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가) 조직확대강화 방안

(1) 조직내적 방안

재정확보 : 수익사업, 예산의 효율적 집행

운동성 보강 : 사용자의 노조정책에 따른 차별화전략을

구사하되 노조탄압에 대해서는 강경대응

밀착지원체제 강구 : 연맹, 지역본부에서 구체적 노력 배가

홍보망 구축 : 임원, 지역본부, 각 지구 홍보망 구축을

통한 신속홍보

(2) 타조직에 대한 방안 : 0 지부단위 준회원화 방안 검토

0 비가맹 사업장에 대한 조직책 확보작업

(3) 미조직 사업장 조직화 : 0 삼성, 포철 조직을 위한 범사회적

연대기구 추진

0 신개발 공단지구 조직화 노력집중

나) 노동계통합 전망과 과제

<전망>

- (1) 노총과 민노총간의 통합은 쉽지 않다(양조직간 업종구분이 비교적 명확)
- (2) 금속산업에 있어의 통합은 각 단위노조의 동질성으로 인해 보다 용이할 수 있다

<금속산업 상급조직 현황>

조 직 명	대표자	결성일	조직수	조합원수	소속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유재섭	61.8.25	541개	169,628명	한국노총
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	단병호	96.1.21	115개	71,000명	민주노총
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	배범식	95.11.4	31개	55,809명	민주노총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맹	이영희	91.7	금속24	금속84,000	민주노총

- * 민노총 소속 3개조직은 96.5.16 민노총 국제금속협의회(KCTU IMC)를 결성한바 있으며 96년말까지 통합을 향한 진일보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

<본노련의 과제>

* 통합을 위한 활동

- 현실적으로 통합 장애요인들이 크다.

- ① 노총과 민노총의 분열.경쟁
- ② 민노총이나 그 산하조직은 합법화에 더 큰 비중을 둠
- ③ 조직간 폐쇄성으로 인한 오해의 골이 깊음
- ④ 조직간 경쟁으로 감정대립이 계속될 것임

- 통합 촉진을 위해서는

0 상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불필요한 오해 제거 방안

본부조직간 교류

단위노조간부간 교류 : IMF세미나

- * 세미나 기간중 상호비방하거나 자기조직 선전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 필요.

0 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작업

0 독자의 운동노선을 견지하는 가운데 운동성 강화로 차이제거

0 금속통합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제안

*통합금속조직의 형태

노총과 민노총이 현존하는 한 금속산업도 노총 산하조직과 민노총 산하조직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상태에서 통합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그런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IMF-JC나 덴마크의 금속중앙조직과 같은 조직형식이 연구 검토될 필요가 있다. IMF-JC나 덴마크 금속중앙조직은 각기 령고나 덴마크 노총(LO)에 가입하지 않으며 대신 그 산하조직들은 자기가 원하는 상급단체에 가입하고 자기가 원하는 정당을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조직형식이 검토되기 위해서는 모든 조직들이 금속통합조직에 반드시 참여한다는 전제가 확실히 서야 하며 또 상호간에 두터운 신뢰가 있어야 한다.

<토론자료 2>

재정운영 개선방향

가. 징수활동 강화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맹비 채납조합을 최소화 한다.

- ① 맹비 징수내용을 매월 점검하여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장기채납 조합순으로 납부촉촉 (전화, 직접방문)을 강화한다.
- ② 가맹노조의 조합원수와 노련납부 조합원수의 차이가 있는 일부 노동조합에 대하여 납부 인원수를 현실화 하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안 - 전화권고, 지역본부와 노련이 합동으로 방문하여 권고)

나. 징수방법의 개선

① 맹비 징수를 지역본부에 위임하는 방법

현재 노련에 직접 맹비를 납부(부산,대구경북,전남광주 지역제외) 하고 있는 방식을 지역본부를 경유하여 맹비를 납부하는 방법

㉠ 장점

- 지역본부와 노련의 맹비 징수가 비교적 용이하다.
- 지역본부 미참여 조직의 참여를 유도할수 있다.
- 지역본부 조직이 강화되어 대외적으로 과시적 효과가 있다.

㉡ 단점

- 단위노조의 맹비 지출일자와 노련의 영수증 발행일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수일 - 50 여일)
- 지역본부의 영수금액(조합원수)과 노련납부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일부 지역본부에서 맹비의 납부를 당해지역본부의 이해관계와 결부시키거나 지역본부에서 일시차용으로 납부가 지연될수 있다.

② 맴비의 정수를 정액방식에서 물가임금 연동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노총산하 회원조합중 공기업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4-5개 산별에서 맴비의 정수를 물가.임금의 변화에 연동시키고 있음.

<제도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조합비 정수내용의 확인 절차와 방법
- 노동운동의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수비율의 변동(증.감)에 대한 예측
- 대의원배정등 권리부여 방법의 연구

0 정수율 산출(예)

정수율 : 9.1 % (단위노동조합이 정수한 조합비 기준)
 $500원 / (550,000 \times 1/100)$

0 정수율 산출의 조건

- 조합원 기본급 평균 금액 : 550,000원
- 조합비 정수율 1% 내외(추정)

한국노총 회원조합 명비징수액

산 별	금 액	비 율 (%)	기 타	비 고
섬 유	550			
화 학	500			95 년 인상
연 합	580			
철 도		기본급의 1 %		기말수당 3%
광 산	95 년 700원 + 주요탄광의 임금인상을 평균치가 자동인상			
전 력		통상임금의 1 %		
외 기	단위노조 조합비의 25%로 규정하고 특성에 따라 비율조정, 수출자유지역 200원, 주한미군 10%			
통 신		조합비 징수액의 10%		약 1000원-1500원
항 운	600 원+징수조합비의 5%			약 1500원
선 원	350			회관임대수입
금 용	150+450			
담배인삼		임금의(5/1000)		임금(통상+상여)
자동차		2% × 12%		통상임금
관 광	800			95 년 인상
체 신		기본급의 1.3% 일괄징수		
택 시	1000		매년100원씩 인상	
금 속	500			96 년 인상
출 판				
고무산업				
도시철도				

다. 징수제도의 개선

③ 노련멤버와 지역본부 분담금을 일괄징수하여 운영비를 영달하는 방법

현재 노련에 납부하고 있는 멤버(500원/1인)를 지역본부 분담금과 합산하여 징수하는 방안으로

징수예상액 : $973 + \alpha$ 원/인당(월)

※ α = 지역본부 운영비 증가예상분

산출근거 : (6년도 노련 예산액 860,000,000원 + 지역본부 예산액 425,418,710원)/110,000명/12월=973 원

징수의 방법

- 모든 가맹노조가 멤버 (멤버+지역본부 분담금)를 노련으로 납부해야 함
- 노련은 미리 정해진 영달방법에 따라 지역본부에 영달함.
(지역본부에서는 분담금 형식의 비용을 가맹노조에서 징수 할수 없음)
- 노련에 납부하는 멤버를 지역본부에서 징수하여 노련에 납부하는 방안도 연구할수 있음.

㉠ 장점

- 징수의 체계를 일원화한다.
- 지역본부는 조직관리와 고유의 업무에 전념할수 있다.
- 가예산을 수립할때 조합비 납부처가 많다는 지적을 줄일수 있다.

㉡ 단점

- 일반적으로 노련 멤버가 대폭인상된것 같은 느낌을 준다.
- 일부 노조의 경우 실제멤버가 인상된다.
- 지역조직 관리에 소극적인 내용과 활동이 있을수 있다.
- 수입범위내 지출이라는 원칙이 무시되고 청구금액내 지출이라는 모순된 원칙이 강조될수 있다.
- 노련의 수입내용과 관계없이 지역본부의 모든활동비의 영달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본부 예결산 및 분담금 정수내역

	95년지출액	196년예산액	정 수		직원급여
			기 본	1인당	
서 울	33,770,913	35,258,510	100이상 15,000 100미만 10,000	250	남700,000 150%
경 기	34,819,040	59,714,570	10,000	120	여550,000 200%
인 천	35,605,791	42,147,722	15.000/100명 미만	150/100 명이상	여583,000 550%
대 전	6,450,000	8,100,000		400	
충 남	13,524,174	17,826,786		300	여오십,4백%
충 북	22,471,230	24,255,550	10,000	300	여4십,4백%
부 산	26,235,970	42,606,733		350	여오십,4백%
경 남	39,445,875	54,956,434	5,000	130	남칠십,450%
울 산	18,971,927	18,168,047		300	여560,000 600%
대구. 경북	31,215,543	39,050,820		200	여550,000 500%
포 함	18,801,180	21,606,985		300	여415,000 500%
구 미	16,516,080	19,967,775		80	여539,000 500%
광주. 전남	18,972,640	28,318,778		400	여530,000 400%
전 북	(6,720,000)	6,720,000		200	
계	332,240,363	425,418,710			

- * 대구.경북은 회관임대수입이 있음
- * 광주.전남은 대표자회의시 10,000원씩 거출
- * 전북은 한도액이 50,000원임

<토론자료 3>

복지사업방안 1

1) 목적과 취지

(1) 재원확보를 통한 재정자립에 기여

수익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재원확보를 통해 연맹활동의 활성화를 도모

(2) 산업재해 조합원 돕기

갑작스런 산업재해를 당해 곤경에 처한 조합원을 돕는 활동을 전개함

(3) 소비조합기능

중간이윤을 줄이므로서 저렴한 가격과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여 소비조합의 기능을 대행

(4) 연맹과 단위노조의 연대감 확대 및 시도지역본부 활성화에 기여

복지사업을 함으로서 통신 및 왕래로 인한 상호의 소속감 및 연대감을 강화.

2) 복지사업 추진위원회

복지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규정은 중앙위원회를 통하여 제정한다.

3) 현 기획유통시장의 구조

(1) 제품생산업체

① 대기업

가전3사를 비롯하여 현대, 삼보, 코오롱 등으로 전국에 대리점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

② 중소기업

종업원 50~500명의 기업으로 대기업의 납품을 주로하는 기업과 기념품, 기획상품을 제조판매하는기업들로 대기업에 비하여 자본과 조직이 열악하나 나름대로 실속있는 회사들도 다수 있음.

③ 가내 수공업, 영세업체

주로 화곡동, 성남, 안양, 수원 등 수도권 외곽에 분포하여 일정한 소비자를 직접상대하는 판로는 없이 유통업체등에 판매를 의종하며 단순 하청식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

④ 특산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활성화되고지 노련하고 있으나 현 상태는 미흡한 상황이나 근간에 체계를 갖추게 될 것임.

예) 제주:옥돔, 영광:굴비 담양:죽가공품, 대구:사과 등

2) 유통업체

① 대기업

가격파괴의 흐름에 매출의 하락을 보강하고 가격파괴업체와 경쟁을 위하여 기업마다 특판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유지하고 있는 대리점과 마찰을 우려하여 적극적이며 공개적인 활동은 자제하나 기업매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예) 엘지전자 특판부, 삼성전자 특판부, 신세계백화점 특판부, 롯데백화점 특판부, 삼보컴퓨터 특판부 등

② 중소기업

중소기업들도 특판부 등 유통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주요 대기업 특판부에 상품을 납품하는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음.

③ 기업유통업체

- 일반적으로 납품가격의 10~20%정도의 이윤을 형성하고 있음
- 중국, 대만제품을 수입하여 신용카드 통신판매나 신문의 통신판매를 주로 하여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있음.
- 충무로 강남 등지에 사무실만 유지하며 중간마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4) 노동조합의 재정사업 사례

(1) 관광노련

- ▶ 시행시기: 1995. 2
- ▶ 방식: 기념품사업(통신판매방식)
- ▶ 연맹 복지사업본부가 직접 기획유통을 관할하고 있음.
- ▶ 1년간 사업실적: 80여건

(2) 전교조(참교육생활사업단)

- ▶ 초기 투쟁사업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출발하여 중계단위로 조직유통이 중심
- ▶ 3년정부터 기획유통으로 전환되어 의류 및 문구류가 주를 이루고 있음.
- ▶ 일부품목의 경우 자체제작을하고 있음.
- ▶ 참교육사의 수익금은 자체운영비를 제외하고 전교조 중앙활동으로 들어가고 있음.

(3) 사무노련

- ▶ 시행시기: 1995년 1월
- ▶ 인원: 상근은 남녀 각1명씩, 비상근은 재정사업 위원5~7명
- ▶ 방 식: 통신판매(별도의 카다로그를 업체부담으로 제작하여 단위노조에 홍보토록함.)
전시판매(일정기간 단위노조와 연계하여 강당, 식당 등에 사내
진시판매형식)
- ▶ 취급상품:회화테이프, 기획물 비디오, 교육용 비디오테이프, 지역특산품, 생활용품, 기획상품
- ▶ 기념품사업 :회사의 선물은 관여하지 않으나 단위노조의 창립기념품은 연맹 재정사업단에서 하도록 결의 및 유도
- ▶ 연간매출액: 10-15억원

(4) 병원노련

- ▶ 인원: 재정위원1 명
- ▶ 방식: 통신판매(업체부담으로 카다로그를 제작하여 단위노조에 홍보하여 신청하게 함)
전시특판(병원은 지구언, 환자, 환자가족 등의 출입이 잦으므로 병원
주차장, 식당 등에서 전시판매하여 병원연맹이 주로 이용하는 방식)

(5) 전국 새마을금고 연합회(복지회)

▶인원:10명

▶사업방식: 기념품

복지국에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 새마을금고에공급

예) 치약, 공구세트, 저금통 등 통신판매

전국2000여개의 새마을금고에 별도의 카다로그를 업체부담으로 제작하여 판매

▶매출규모: 연간 60~100억원

5) 복지사업 방안

(1) 기념품사업

① 판매방식

▶ 기존유통시장에 대한 이해정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연맹이 직접운영여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운영이 가능함.

▶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80%이상의 조합에서 정기적으로 기념품을 제작하고 있어 기념품사업에 대한 홍보선전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이용건수를 확대시켜나가야 할것임.

② 효과

재정적 기여로 인한 조직활동의 활성화 도모

(2) 특판사업

① 방식

▶ 신청 사업장 확보

단위노동조합을 연계하여 다수의 사업을 확보하여 순회 판매토록 하여 납품업체로 하여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유도

▶사업의 특수성

입학이나 졸업, 휴가, 연말연시, 민족고유 명절 등의 특수를 이용하여야 매출을 증가할 수 있음.

② 장점

㉞ 별도의 물적요소(자본금, 시설투자 등) 투입없이도 자체운영이 용이함.

▶연맹의 역할은 생산자와 소비자(단위노동조합)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알선, 중계자로서

의 역할을 수행

- ▶ 생산자의 경우, 폭넓은 유통시장의 확보, 인건비 절감등의 효과
- ▶ 소비자(조합원)의 경우, 일반시장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싼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상품을 제공받아 소비욕구 를 충족(일반시장 판매가 보다 40~ 60% 정도 할인)

㉔ 정상적인 유통구조의 방식을 동원

기념품사업의 경우 대개가 제품단가를 낮추기위해 덤핌, 외국산제품을 사용하는게 일반적이나 특판사업은 국내 제조업체와 직접거래를 통하여 중간유통구조를 생략 함으로서 상품의 단가를 낮추기때문에 편법적인 유통구조를 동원하지 않는다.

㉕ 기념품사업, 통신판매사업에 비하여 연맹의 개입이 적으므로 연맹에서의 관리가 용이 함

㉖ 가맹사업체의 제품(도루코, 세신실업, 엘지전자 등)을 활용할수 있어 단위노조의 노사 간에 역할이 증대될수 있음

③ 단점

㉗ 소비자(조합원)의 자발적인 구매욕구에 의하여 수요가 결정되므로 기획상품 선정이 결정적 역할함

㉘ 조합원을 대상으로하는 개별판매형식(소량주문에 소량판매)

④ 운영방안

㉙ 운영계획 수립 : 복지사업에 대한 대원칙 공유시기

- 중단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 단위노조에 대하여 홍보선전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

㉚ 시범적인 운영 : 국내유통기획시장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연맹의 중장기적 사업전략 을 수립하는 시기

- 한시적으로 시한(6개월 전후)을 두고 시범적 운영
- 제품 제조업체 문제점 파악
- 소비자(조합원)의 욕구심리 조사

㉛ 본궤도 돌입(본격적으로 운영): ①,②시기 동안에 조사 및 경험된 역량을 발판으로 본궤도상에 진입하는 시기

⑤ 효과

- 재정적 기여
- 저렴하며 고품질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욕구충족 대외적으로 연맹의 적극적인 위상을 과시
- 조합원이 상품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므로써 불만을 극소화시킬수 있음.

(3)통신판매사업

통신판매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조합원에게 홍보를 할 수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1)판매방식

①계절적영향(졸업·입학시즌, 연말, 명절 등)에 맞는 기획상품을 설정(보통 1년에 4~5회 실시)

- ②가맹사업장에 상품안내책자를 우편발송
- ③연맹으로 신청사업장을 접수
- ④상품 제조업체에 주문상품 통보
- ⑤주문상품배달(전국배달가능, 3~4일후 배달)

2)상품선정

통신판매는 상품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여야하므로 상품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

3)상품선정방식

추천상품의 시장조사보고서와 상품을 연맹이 위임한 재정위원이 확인하여 선정.

4)부대비용처리

선정상품의 업체로 하여금 비용부담을 하게 하여 연맹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함.

5)운영방안

①운영계획 수립 및 시범적 운영 :

▶재정사업에 대한 대원칙 공유시기

▶국내유통기획시장의 구조 파악,연맹의 중장기적 사업전략을 수립하는 시기

- 중단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 단위노조에 대하여 홍보선전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

·한시적으로 시한(6개월 전후)을 두고 시범적 운영

·제품 제조업체 문제점 파악

·소비자(조합원)의 욕구심리 조사

②한시적으로 시한(6개월 전후)을 두고 시범적 운영

③본제도 돌입(본격적으로 운영): ①,②시기 동안에 조사 및 경험된 역량을 발판으로 본
제도상에 진입하는 시기

장 점	단 점
·다른 판매방식보다 매출액이 많음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할 수있음 ·연맹 비용이 필요하지 않음 ·전국에 걸쳐 홍보 및 판매가 가능 ·단위노조에 많은 부담을 주지 않음	·조합원이 카다로그 기대에 비하여 실망을 느낄 수 있음 ·카다로그와 다른 유사상품 보급을 감시하여야 함 ·재고보다 많은 수여가 발생할수 있어 보급기간이 늦어 질수 있음 ·조합원의 반품처리시 비용발생

- 한국노총 제휴카드 -

※ 한국노총카드란

한국노총과 평화은행이 제휴하여 발행하는 신용카드입니다.

※ 특징

- 회원의 이미지와 공산력 향상.
- 카드 사용대금의 일부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
- 별도의 디자인으로 발급.
- 카드휴대시 조합원증 또는 신분증으로 대용.
(국내최초의 사진카드 발급은행으로서 회원의 신원증명이 가능)
- 얼굴있는 카드로 타인의 부정사용을 미연에 방지.
- 목돈 필요시 신속하고 편리한 카드로론을 최고 3,000만원 까지 제공

※ 목적

신용카드로 조합제정을 확보하고 평화은행과 한국노총이 상호 서비스의 인적,물적, 결합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함.

※ 금속노련 평화은행카드 현황 (96. 1. 1- 96. 5. 30 현재)

총 좌 수 : 585

이용좌수 : 274

이용금액 : 428,687,000원

연체좌수 : 64

연체금액 : 31,740,000원

이용수수료 : 214,674

(이용금액은 현금 서비스 포함 금액임)

예) 제휴카드 1만명 가입시

-권유비 : (1만명 X 1,000 = 1천만원)

※ 카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유

- 연맹재정 확보.
- 카드이용시 특별 할인 서비스.
- 신속한 은행 대출 서비스.

○ 조합원 신분증 대용으로 소비조합 및 각종복지시설 이용.

0 보험사업 개요

○ 보험이란

- 노동력의 댓가인 임금을 주요한 소득으로 하는 노동자는 자신 또는 가족의 조기사망이나 질병, 상해로 인한 소득의 중단 내지 비용의 증가나 자신의 정년퇴직이나 중도실직에 따른 소득의 중단으로 경제적 불안정에 처할 수 있음.
- 보험은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협동으로 공동재산을 형성하여 보험수익자를 보호하는 상호부조제도임.

- 보험 — 생명보험 — 개인보험 : 암보험, 생활보장보험, 개인연금
— 단체보험 : 중퇴보험, 직장인보장보험, 단체정기보험
- 손해보험 — 단기보험 : 자동차종합보험, 화재보험 등 다양
— 장기보험 : 장기화재, 장기상해보험(메직카종합보험) 등

○ 보험가입의 필요성

- 물가의 안정, 투자재원의 형성, 소득의 재분배,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등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가짐.
- 기업의 측면에서는 생산성의 향상, 노사관계의 안정, 기업의 사원의 위험관리 등에 크게 기여함.
- 개인적으로는 보다 확대된 복지급여를 향유케 하거나 기존의 보험제도를 한층 효율적으로 이용케 함.

○ 보험가입효과

☞ 기업은

- 사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해 근무의욕 고취
- 보험계약의 유지를 위한 이직율의 감소로 직업안정
-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등으로 부족한 산재합의금을 마련하여 경비절감
- 세제혜택 및 자금유통의 수단으로 활용

☞ 노동자는

-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으로 생활안정
- 보험료 할인혜택 및 고액보장
- 회사부담시 실질임금 상승
- 세제혜택 및 개별계약 전환 가능

☞ 노동조합은

- 재정확보로 적극적인 조직활동 가능

○ 보험가입예시

☞ 직장인보장보험에 가입하면

(1천명의 남자, 월 보험료 3만원, 10년5배형)

노동자는

- 교통재해사망이나 1급장해시 6,115만원, 재해사망시 3,700만원, 일반사망시 1,223만원의 보험금, 입원시 1일, 입원료 1만원을 지급받았으며 만기시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에 각종 이익배당금 등을 합하여 지급받음
-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와 단체보험 할인혜택을 받으며 낮은 보험료로 고액보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품임.
- 중도퇴직에 따른 개별전환이 자유로우며 산재보험 등에 중복하여 보험료 지급함.
- 보험료 부담을 기업이 대신하면 실질임금의 인상효과도 있음.

노동조합은

- $1,000\text{명} \times 30,000\text{원} \times 303\% = 9\text{천}9\text{십만원의 재정수익이 예상되면}$
- 이는 타 회사의 모집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3배에 해당함.
- 한편 ,조건과 상황에 따라 부가적인 지원이 가능함.

☞ 자동차종합보험에 단체가입하면

(1천명의 자동차보험가입자, 연 보험료 평균 50만원)

노동자는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혜택을 가지며 보험료 2% 할인을 받음
- 계약갱신에 따른 번거로움을 일시에 처리하여 편의
- 가입자에 제시하는 각종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받음.
- 보상서비스의 신속한 처리

노동조합은

- 1,000명 X 50만원 X 7.5% = 3천7백5십만원 재정수익의 예상되며
- 이는 타 보험대리에서 제시할 수 없는 서비스이며
- 조합원의 결집된 힘을 갖는 계기가 될수 있음.

☞ LG히트종합보험에 가입하면

(1천명,월 보험료 39,000원,10년 10배형)

노동자는

- 교통제해 사망이나 1급장해시 1억원,의료비 200만원,1일 생활비 4만원,특정 여가활동으로 사망시 5천만원을 지급받으면 만기시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음.
-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와 단체가입시,자동이체시 각 1%의 보험료 할인받음.
- 선택에 의해 질병사망이나 암보장,무보험상해,암치료 비용 등을 보장받음.
- 보험료 부담을 기업이 대신할 때 실질임금 인상효과가 있음.

노동조합은

- 1,000명 X 39,000원 X 350% = 1억3천6백5십만원의 재정수익이 예상되며
- 이는 타 보험모집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3배에 해당하며
- 부가적으로 각종 판촉물 및 지원이 가능함.

<토론자료 3>

복지사업방안 2(인쇄사업)

1. 시장성에 대한 검토

○ 인쇄업은 인쇄소와 발주자간의 원고발송,교정등의 잦은 왕래가 필요하므로 1차 수도권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크기를 설정했으며 전국적인 확대는 각지역 본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 나갈것임.

2. 운영방안에 대하여

1) 제1안 (시설투자하여 직영하는방안)

○ 시설투자

시 설 명	가 격
1. 사무실,작업장	1층사용,전기동력 시설 1,000,000
2. 마스타 제판기 1대	신품 8,000,000 (중고 5,000,000)
3. 인쇄기계 (마스타,옵셀,칼라가능) 1대	신품 20,000,000 (중고 10,000,000)
4. 절단기 1대	10,000,000
5. 컴퓨터 (사식) 1대	4,000,000
6. 복사기 1대	4,000,000
7. 명함기 (금바퀴 포함) 1대	5,000,000

※ 동판,칼라인쇄 (대형,대량),제본은 외주하는것이 경제적임.

※ 약 4,000만원 - 5,500만원 소요

※ 재료비 등 부대비용 1,000만원

※ 약 6,000만원 소요후 가동 가능

○ 운영요원

- 컴퓨터 사식	여 1 명	연봉 1,200만원 (월 100만원)
- 도안사	남 1 명	연봉 2,000만원 (월 160만원)
- 기계운영	남 1 명	연봉 2,000만원 (월 160만원)
- 영업,제본,절단	남 1 명	연봉 2,000만원 (월 160만원)

○ 손익계산 (월간)

인 건 비	전 기 료	조 세	기타 활동비	계
6,000,000	500,000	500,000	1,000,000	8,000,000

※ 재료비는 매출액의 20%로 했을 경우, 월간 손익 분기점은 매출액으로 10,000,000원임.

※ 앞서 나열한 사업장들이 모두 동참 했을 경우.

$$15,000,000 \times (1-0.2) - 8,000,000 = 4,000,000 \text{원 수익}$$

※ 투자비에 대한 이자 (700,000원)를 빼면 = 3,300,000원 수익

※ 사무실 임대비 월 1,000,000원을 빼면 = 2,300,000원 수익

장 점	단 점
- 비어있는 사무실 활용 고수익가능	- 나열한 사업장들의 참여가능성 불투명
- 향후 수익사업들에 대한 경험 축적	- 자본투자에 대한 위험도
- 노동조합 관련 전문성 반영	- 직영에 따른 업무 복잡

2) 제2안 (용역)

○ 인쇄업무에 정통한자 (건적,외주거래처 확보)를 1명 고용하여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량만 수주, 외주 처리하여 중간마진을 수입

- 마진율을 매출액 대비 10%로 했을 경우

$$15,000,000 \times 10\% = 1,500,000 \text{원}$$

※ 한사람 인건비 밖에 안됨.

- 인원을 고용하지 않고 연맹 직원들이 직접 할 경우 (구역별로 분할하여)

수익증가는 있으나 업무의 복잡성 제기

※어떻게 하든 이안은 인쇄업무의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인쇄물의

경우 수요충족불가, 따라서 신용도 실추로 인한 장래성 없음

3) 제3안 (특정 인쇄소 지정)

- 지역별로 특정 인쇄소를 지정하여 그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속 사업장 인쇄물을 특정 인쇄소와 거래케하고 매출 발생시 일정액(율)의 수수료를 징수토록함.
- 전국적으로 약 3,000만원(월)매출 발생시 5% 수수료 받는다면 1,500,000원 고정수입

장 점	단 점
- 전국적으로 가능 - 자본투자 및 복잡성 없음	- 소속 사업장들의 거래여부 불투명 - 인쇄소들의 동참 여부

4) 제4안 (동업)

적절한 동업자들 선정하여 조건을 제시하고 동업으로 운영한다.

- 조 건 -

연 맹	업 자
가. 사무실 제공,물량수주 책임	기본설비,운영책임
나. 사무실 제공,물량수주,기본설비	운영책임

장 점 (가안시)	단 점
- 경험 없어도 가능.경험축적 - 운영에 대한 부담 감소 - 투자비 없음	- 수익성 떨어짐 - 동업자 찾기 어려움

3. 결 론

검토해본 결과 제1안은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고, 관리운영에 있어 금전과 결부되는데 연맹이 직접 나서는데 대한 문제가 있고, 제2안은 수익성이 문제가 되며, 제3안이나 제4안 “가”안이 적절할것 같음. 그러나 어떤 방안을 채택하더라도 기존 인쇄업장과의 거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 인쇄업무에 동참시키는 문제가 최대 난제일것임. 인쇄업의 가격경쟁 원칙의 문란등은 본노련의 노동관련 전문성및 연대감으로 극복하여야 함.

2. 노동판매집 제작

총 무 활 동

목 차

1. 회의활동

- 1) 1996 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2) 중앙 위원회 개최
- 3)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 4) 기타회의

2 . 기타활동

- 1) 노총 장학금 배정지급

1. 회 의 활 동

1) 96 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가. 일 시 : 1996 년 5 월 15 일 (10 시)
 나. 장 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강당
 다. 참 석 자 : 재적 418 명중 357 명 참석
 라. 결 의 사 항

의 안	결 의 사 항
가. 95 년도 사업보고 나. 95 년도 결산보고 다. 위원장 보선	원안통과 결의 원안통과 결의 유제섭후보 당선 (총투표자 355 명, 찬성 313 표, 반대 29표, 기권,무효 13 표) 중앙위원 23명 보선, 노총파견대의원 125명 선출 (총투표자 278 명, 찬성 265, 반대 13 표)
라. 중앙위원보선 및 노총파견대의원 선출	중앙위원 동부제강 강창영. 동아건설 정세영. 범양냉방 한기홍 한 샘 한승인. 경원세기 심재윤. 삼화전자 유일열 대우통신 김영국. 수산특장 김관태. 맥슨전자 조잔용 삼화전기 전병준. 대동조선 현억조. 한보철강 최창대 풍성전기창원 박양현. LG산전 주성민. 고려아연 조한제 세운공업 박용도. 평화산업 신석곤. 삼립산업 이복교 기아특수강 이정식. 한일전기 우태율.대우전자 이정환 한국알프스 조삼담. 화성기업 김우석 노총파견대의원 LG 전자 유제섭. 대한전선 김성문. 동양강철 최웅길 LG 전선 정창영. L G전선 하영일. 현대전자 김영철 화 천 정기춘.한진섬유기계 오봉출.대우전자 이병곤

의 안	결 의 사 항
	쌍용중공업대구 김경조. 범양냉방 김윤주. 영창악기 박영호. 경창산업 장지태.평화크랏치 김무호 삼미종합특수강 제선수. 코리아스파이서 박한주. 세아제강 백종부.L G 금속 박영구. 인천제철 김동교. 대한전선 강익화. L G전자 김길동. 대성공업 김두형. LG산전 김홍수. 로움코리아 박순자.LG전자부품 김종국 L G 정밀 박병도. 정일공업 김복천. 대우전자 황창배. 오토론 신성균. 창원공업 강석수. 삼 신 강한우. 우민주철 백병기. 삼양중기 김순호. 영창악기 김홍룡. 세진전자 문광주. 경방기계 박상범. L G 전자 강영섭. LG 전자 나찬경. LG 전자 천광희. L G 전자 정한식. L G 전자 김영준. LG 전자 이칠구. 대우전자 전용구. 대우전자 박상민. 대우전자 이정환. 동부제강 강창영. 동아건설 정세영.롯데알미늄 전기홍. 풍성전기 이대영 한국시그네틱스 최현숙. 한국특수공구 서갑순. 대광다이캐스트 김수룡.LG전선 장건.대원전선 장정환. 삼화전자 유일열. 해태전자 김과한. 현대전자 정상영. 현대엘레베이터 성용주.현대전자 윤동현. 현대전자 이승현. 현대전자 허 원. 경원세기 심재윤. 경원세기 장진수. 삼영전자 지수식. 삼목강업 남진우. 신한일전기 이준덕. 한 샘 권석정. 신한주철 윤무영. 서울차체 이쌍봉.세광알미늄 엄종국. 일 진 최진하. 태양금속 이병옥. 대림통상 이은물.대우통신 김영국. 대한제당 손종홍. 영창악기 장태훈. 신호스틸 양정우. 한국샤프 박재혁. 한영알미늄 한상환.서울제강 최광걸 수산특장 김관태. 연합전선 김종덕 . 뉴맥스 이형일. 삼화전기 전병준. 에 넥 스 권성하 . 강 남 문정도. 대동조선 현억조. 대창단조 박병용

의 안	결 의 사 항
	동국제강 서복호, 부산정기 김규호, 연합철강 강진호, 조 기 강영일, 한국주철관 차운환, 한보철강 최창대, 세방전지 김환수, 세신실업 이진희, 한국중천 최해경, 삼천리자전거 김영택, 한일제관 이동호, LG산전 주성민, LG금속 신태기, 고려아연 조한재, 덕양산업 김우배, 대한알미늄 한경남, 동해전장 정한근, 삼립산업 이복교, 아세아종합기계 윤태길, 평화발레오 서운배, 삼성제침 주태화, 대한중석 이용대, 화신제작소 윤승오, 화신테크 조동권, LG정보통신 이규성, LG반도체 강영철, 태평양금속 김길득, 한국전자 이대영, 그린산업 강학중, 동일기업 이동익, 세아제강 박철우, 포철노재 송만현, LG전자부품 신용석, 한국알프스 조삼담, 기아특수강 이정식, 한일전기 우태율, 대 성 정순남. 마. 96 년도 사업계획 수립 원안 통과 결의 바. 96 년도 예산수립 땡비를 96. 6. 1 자로 100원인상 (400원→500원)하여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토론후 원안통과 결의 사. 결의문 채택 원안 채택 결의

대 회 선 언 문

오늘 우리 대의원 일동은 금속노동자의 결의와 힘을 결집하여 우리가 처한 위기와 불확실성을 돌파키 위해 단결의 정신으로 간단없는 전진을 기록할 것을 다짐하면서 1996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코자 한다.

우리는 지금 사회 제부문에 있어 거센 변화의 물결이 휩쓸고 있으며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산업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화라는 정치적 슬로건은 경제제1주의의 보수화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산업현장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영합리화는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자본통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획득된 성과들은 자본의 교묘한 공세속에서 나날이 잠식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그간 정부와 자본측의 이와같은 노동정책이 결국 파탄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함과 동시에 노사관계의 정상화조치를 강력히 촉구하여 왔다.

이러한 시점에 노사관계 개혁의 문제가 정부로부터 본격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 조치를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개혁의 미명하에 노동기본권 및 노동조건을 개악을 시도한다면 이의 분쇄를 위해 모든 조직적 노력을 다 경주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자의 총단결만이 개혁다운 개혁을 담보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서 금속노동자의 총단결에 매진할 것이며 아울러 모든 동지들이 작은 차이를 버리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확립키 위해 총단결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인식에 기초하여 금속노동자가 하나의 대오로써 굳세게 전진키 위한 활동방향을 정립할 것이며 오늘의 토론과 결의를 기초로 하여 성과있는 96년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조합원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1996년 5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1996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대 회 사

대의원 동지 여러분! 먼저 정말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들을 격려해주시기 위해 각 산별에서 위원장님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우리 금속노련을 대표하여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자상한 마음으로 우리 활동을 지도하고 독려해주신 역대 선배 여러분과 또 평소 우리 금속노련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동지와 내외 귀빈들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평소 우리 금속노련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해주신 국제금속노련에서 이번에 특별히 말렌타키 사무총장과 고지마 동아세아 사무소장이 참석해주셨고 또 그간 일본의 노동운동을 주도해왔으며 국제노동운동에 있어서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다시피하고 있는 일본 IMF-JC에서도 아지마 사무국장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또 과거 오랜기간 교류를 가져왔으나 양측의 사정으로 교류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작년도부터 교류가 재개되어 IMF-ROCC 우위원장께서 특별히 참석해주셨습니다. 국제연대를 위해 이렇게 먼걸음을 해주신 동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에게 있어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채찍질 해주시고 지원해주신 관계로 저는 노총의 심부름꾼이라는 영광을 안게됐습니다만 오늘은 고별의 자리가 됨과 동시에 새로운 만남의 자리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금속노련 8년의 생활이 커다란 감화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적, 자주적 노동운동의 활화산이 활활 타오르던 격동기에 금속을 맡아 같이 열심히 뛰었고 또 89년부터 시작된 탄압의 하강국면을 맞아 동고동락을 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격변기에 노총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도 그랬고 당선된 직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그 정신으로 노총의 개혁과 노동계 통합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다 바칠 각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현실운동인 것이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여러분 기대에 못미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계획대로 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금속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소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께서 계속 채찍질 하여주시고 격려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국 노동운동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노사관계개혁 방안을 입안하는 과정에 우리 노동자들이 어떻게 참여하여 영향력을 미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분열되어 대처를 잘못한다면 노동운동은 오랜기간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반대로 우리가 단결하여 우리의 요구를 잘 관철해낸다면 그간 침체의 길을 걷고 있던 우리의 노동운동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기주의적 자세를 버리고 큰 이익이 무엇인가를 잘 고려하여 대동단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금속노련에 있어서는 금속노동자의 대동단결 방안을 강구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금속산업에는 사실상 3개의 노동조직이 있습니다만 서로 현실적인 인식과 실용적 자세를 가지고 대동단결이야 말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속산업 노동자의 통일은 한국 노동운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계기점이 될 것입니다. 금속산업의 통일은 한국 노동운동이 진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힘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출신수범하여 통합을 위한 기반을 다져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국제금속노련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국제 노동운동조직에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긍정적 노력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합니다만 우선 이 어려운 시기에 음으로 양으로 단일화를 해주신데 대해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새로운 집행부가 힘있게 출범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선배의 한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새 집행부는 용기와 능력을 십이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어려운 시기에 금속노련의 발전과 금속노동자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대회를 기점으로 본인보다 더 열심히 땀 수 있는 금속노련 체제가 갖추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금년도 임투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저는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는 시점까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만 저에 대한 계속적인 체찍질을 바라며 노총에 대해서도 노총이 올바르게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5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인상

결 의 문

세계화와 경영합리화를 기치로 한 노동자 공세가 중단되지 아니한 채 노사관계 개혁의 기치가 새로히 올려지고 있다. 그간 노사관계의 대수술을 요구해온 우리는 금번 노사관계 개혁이 민주적 제도 수립차원에서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권을 완전 보장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며 노동기본권과 노동조건의 저하를 수반하는 어떤 개혁도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다 음

1. 정부는 모든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완전 보장하라!
1. 정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라!
1. 정부는 제3자개입금지조항을 완전 철폐하라!
1. 정부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자유를 즉각 보장하라!
1. 정부는 직권중재제도를 완전 철폐하라!
1. 정부는 방위산업과 수출자유지역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
1. 정부는 경영참가법 제정으로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적극 보장하라!
1. 정부는 소유와 경영분리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1. 우리는 파견법과 파트타임법, 변형근로제, 정리해고요건 완화를 강력히 반대한다!
1. 우리는 휴일 및 전임자 삭감을 위한 어떤 시도도 적극 반대한다!
1. 정부와 사용자는 부품업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장치를 적극 강구하라!
1. 우리는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일방적 고용정책을 강력 반대한다!
1. 우리는 노동강화와 노조약화의 일방적 능률주의 임금정책을 강력 규탄한다!
1. 우리는 현장에 기초한 책임있는 합리적 운동노선을 추구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속의 노조운동을 강력 전개한다!
1. 우리는 노동계 통합을 위한 노총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금속산업 노동자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할 것을 선언하며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금속산업의 모든 노동자가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한다!

1996년 5월 15일

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 연 맹
96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2. 회 의 활 동

(1) 제 115 차 중앙위원회 및 제 2 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1996 년 5 월 14 일 15 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결의사항

① 96 년도 정기대의원 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가) 회의자료 2쪽의 회순을 원안 상정하기로 결의하다.

나) 95 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를 원안상정하기로 결의하다.

다) 96년도 사업계획중 노사대책국에서는 97년 임투시기에 단위노조의 조직쟁의, 법규, 교육선전부장들에 대하여 임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원안상정하기로 결의하다.

라) 96 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단위노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노총
맹비의 50원인상과 물가인상요인을 반영하여 맹비를 100원 인상하
여 편성한 96년도 예산에 대하여 토의후 원안대로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다.

마) 결의문을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결의하다.

② 회계처리규정을 개정결의하고 선거관리 위원회 규정안중 제 23조 단 서를 삭제하고 제 27조 3항의 3차투표에서도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한 경우 재 입후보할수 없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개정 결의하다.

③ 전북지역본부의 결성을 인준결의하다.

④ 성신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지노위에서는 복직결정되고 중앙 노동위원회에서 번복된데 대해 해고 조합원이 복직 될수 있도록 노력 해 줄것을 장진수 위원이 건의하다.

선거 관리 규정

개정 96. 5. 14.

제1장 총 칙

제1조 (제정근거) 본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이하 본노련이라 칭한다)
규약 제 38조에 의거하여 선거관리 규정으로 제정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위원장 입후보자를 사전에 선거인에게 공지케 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요소를 지양하여
공정히 선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 본 규정은 규약 제38조에 따라 본 노련 위원장 선거에 적용한다.

제4조 (선거인) 본 규정에 선거인이라 함은 규약제 23조에 의거하여 가맹노조
와 지역본부에서 선출된 본 노련 파견 대의원을 칭한다.

제5조(피선거권,자격상실)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① 규약제 50조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자도 선거일 현재까지 징계기간중에 있는자.
- ②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조합의 조합원.

제6조 (선출) 입후보등록이 공고된 위원장입후보자는 본규정 제4조 대의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 (선관위 구성)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되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 (사무의 취급) 본 규정 제7조의 선거관리 위원은 위원장1명, 사무국장 1명, 위원 3명으로 동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며 간사1명을 두어 사무를 취급케하고 본 규정 제3조의 위원장 선거후 자연 해산 한다.

제9조 (선관위 임무) 선거관리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 ② 선거공고 및 후보자 등록

- ③ 선거인명부 작성
- ④ 참관인의 신청 등록
- ⑤ 투개표의 관리
- ⑥ 선거운동방법의 관리
- ⑦ 선거무효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처리
- ⑧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선거관리위원의 사임)선거관리위원이 위원장에 입후보 하고자 할때는 입후보 등록 직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3장 입후보등록 및 사퇴

제11조 (등록) 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일 15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입후보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이력서 1통
- ② 재직 증명서 1통
- ③ 위원장 입후보 등록서 (서식제 1호) 1통
- ④ 입후보 취지문
- ⑤ 추천서 (조합원 50명 이상)

제12조 (등록확정 및 무효)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 등록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 본 규정 제5조 및 제1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때에는 입후보등록을 확정하여 선거10일 전까지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사결과 본 규정 제5조 및 제 1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결함이 있을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입후보 사퇴)

- ①입후보 등록을 필하고 등록확정후 또는 확정전에 입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때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퇴서(서식제2호)를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전항의 경우 선거관리 위원회로 사퇴서 접수 즉시 본인 입회하에 입후보 등록 신청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하며,이 절차가 끝나면 사퇴가 확정된 것으로 한다.

제14조 (공고)선거관리 위원회는 등록된 입후보자를 선거일 8일전에 선거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운동

제15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입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관위의 후보 등록이 확정된 날로부터 투표전일 까지로 한다.

제16조 (합동유세의 실시) 깨끗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고 각 후보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합동유세를 실시한다.

- ① 합동유세의 실시 및 횟수 - 아래의 4개권 지역별로 1회씩 선관위 주관 하에 공동으로 실시하고 선거 당일 투표전에 1회 실시한다.

○지역

- 서울,경기,인천,강원지역
- 대전,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기타지역
- 경남,부산,울산지역
- 대구,경북,구미,포항지역

- ② 후보자별 유세시간

- 합동유세 : 1회기준 30분이내로 제한
- 선거당일 : 1회기준 15분이내로 제한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의 일시.장소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 공고 하여야 한다.

- ④ 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 순위는 연설회 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되 불참시는 연설을 포기한것으로 본다.

제17조 (홍보물 제작 및 배포의 제한) 선거에 사용하는 각 후보의 선거 홍보물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제작 되어야 한다.

- 규격 A3 용지 양면 3매 이하
 책자형 소형 유인물(27cmX19cm)
- 종류 : 각 2종이하

제18조 (홍보물 등록) 전조의 홍보물을 배포하기 전에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원본을 제출하여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19조 (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중 각 후보나 운동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지지를 얻기위한 목적으로 금품,숙식,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② 단위조직을 방문하는 행위
- ③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④ 선관위의 선거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0조 (선거관리비용)합동유세등 선거관리 비용은 공탁금과 연맹재정으로 한다.

제21조 (제재)본 규정을 위반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고하거나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22조 (선거인 명부작성)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 명단을 작성하고 후보자가 요청시 그 명단을 교부한다.

제23조 (투표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교부할때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여권등으로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투표지 (서식제5호)를 배부하고 선거케 한다.

제24조 (참관인)입후보자가 선거관리 위원회에 지명한 참관인 2명에 한하여 선관위가 배부한 비표를 착용하고 투.개표에 참관할수 있다.

제25조 (개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각 후보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투.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6조 (무효표)다음 각호에 해당될때는 무효표로 한다.

- ① 기표난 외 또는 선에 기표한것.
- ② 이중으로 기표된것.
- ③ 지정된 기표구가 아닌것으로 기표된것.
- ④ 기표를 하지 아니한 백지 투표지
- ⑤ 선거관리 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지
- ⑥ 기타 선거관리위원회나 당해 대의원대회에서 무효로 결정한것

제5장 당선인

제27조 (당선인의 결정.공고)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완료 즉시 투표인수의 과반수를 얻은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공고 하여야 한다.
- ② 단일 입후보자는 가부 신임 투표로 확정 한다.
- ③ 경선의 경우 1차투표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고 득점자만을 대상으로 3차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제6장 이의신청

제28조 (이의신청의 처리)

- ①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등이 투개표 실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때에는 선관위의 의결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선거 종료후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때에는 선거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관계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처리결과를 7일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29조 (부정선거의 처리) 선관위는 이의신청외에도 선거기간중 동 규정 제19조 각 호를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을시는 선거무효.당선무효 또는 경고처분의 결의를 할 수 있다.

제7장 부 칙

제30조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중앙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과 재적인원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

제31조 본 규정의 미비점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

제32조 본 규정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입후보 등록 신청서

- 1.소 속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
- 2.성 명 : (한글)
- (한자)
- 3.본 적 :
- 4.주 소 :
- 5.주민등록번호:
- 성 별 : 남. 여.
- 6.노조직위 :
- 조합경력 : 년
- 7.학력 및 경력

상기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선거
에 있어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후보자) (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1. 이 력 서 1통
2. 재직증명원 1통
3. 추 천 서 (조합원 50명이상)
4. 입 후보 취지문

접수일시 : 19 년 월 일 시 분

(서식 2)

입후보 사퇴서

1.소 속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
2.성 명 : ○성별 : 남. 여.
3.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

상기인은 금번 실시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선거에 입후
 보 하였으나 ()사정으로 사퇴하고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사퇴인 : (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3)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후보자 등록공고

년 월 일 시행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로서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다 음

소 속	직 위	성 명	연령	성 별	학 력

년 월 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인)

(서식 4)

선거운동원 및 참관인 신청서

년 월 일 시행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선거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거 운동원과 참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신청인) (인)

1. 선거운동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2. 참관인 신청서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서식 5)

투 표 지

○ 단일 입후보시 서식

투 표 용 지	
입후보자 성 명	
찬 성	반 대
19 년 월 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인)	

○ 다수 입후보시 서식

투 표 용 지		
기 호	성 명	기 표 란
19 년 월 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인)		

(서식 6)

위원장 선거인명부

19 년도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번 호	소 속 노 동 조 합	성 명	날 인

(2) 제 116 차 중앙위원회 및 제 3 차 중앙집행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가. 일 시 : 96 년 8 월 23 일 (10 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결의사항

- ①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활동, 96년도 임투진행현황, 노사대책활동, 복지사업활동 내용을 보고하다.
- ② 복지사업 운영규정을 제정하다.
- ③ 12시에 창립 35주년 기념식 및 자축연을 개최하다.

복지사업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1996년 8월 23일 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이하 “노련”이라 한다)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복지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① 연맹차원의 복지사업 기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 ② 재정자립사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복지관련 사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3조 (사업원칙) 복지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 ① 조합원의 복지 도모
- ② 조합원에 대한 신용을 우선으로 한다.
- ③ 양질의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 ④ 사업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한다.

제4조 (구성) ① 복지사업위원회는 본노련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본노련 위원장이 임원 및 지역본부 의장 회의의 인준을 받아 위촉한다. 의장은 위원장이 담당한다.

② 위원회 업무를 지원키 위해 실무간사 1명을 두며 본노련 복지국장을 실무간사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복지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 ② 관련물품, 업자 선정 및 계약,해약에 관한 사항
- ③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
- ④ 복지사업운영예산안 심의
- ⑤ 복지사업 관련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할 시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된다. 가부동수시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 (복지사업기금) 복지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의 추진을 위해 복지기금을 두며 복지기금은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 ①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한 것
- ② 복지사업운영에 따른 수익
- ③ 기타 출연금

제8조(복지사업기금의 운영) ①복지사업운영기금의 운용은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한다. 단 97년도 정기대의원대회까지의 비용지출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노련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복지사업운영기금의 회계년도는 본노련 일반회계 회계년도와 같다.

③ 복지사업기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 1) 복지사업 예산
- 2) 위원회운영 및 활동경비
- 3) 기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일반회계로의 이체
- 4) 복지기금 적립분

제9조(회계감사) 복지사업기금운영에 관한 감사는 본노련 회계감사위원회에서 일반회계 감사시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10조 (보고) 위원회는 위원회가 수행한 복지사업의 결과와 재정보고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행한다.

제11조 (대행업체의 선정) 위원회는 복지사업추진상 필요가 있을 시 특정사업에 관하여 일정업체를 협력업체로 지정하여 그업체가 본노련 대행업체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제12조 (규정의 개폐) 본 운영규정의 개폐는 본노련 중앙위원회에서 행한다.

제13조 (효력) 본규정의 효력은 통과일로부터 발생한다.

계 약 서(참고용)

당사는 다음과 같은 약정하에 귀노련에서 실시하는 다음의 사업에 참여할 것을 귀 노련과 계약합니다.

1. 사업명 :
2. 제품명 :
3. 제품특징 : 상품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귀노련에 인도된 견본과 같음.
4. 판매가격 :
5. 판매방법 :
6. 광고기간 :
7. 판매기간 :
8. 제품인도일 :

계약인 1.

2.

약 정 사 항

1. (책임소재) 제품판매는 당사가 담당하며 그에 따른 제반 책임도 당사가 진다
2. (공급 및 비용부담) 당사가 책임지며 그에 따른 제 비용(방송비, 포장비등)은 당사가 부담하겠음.
3. (교체 및 반품) 판매한 제품중 품질불량, 기간경과, 액정위반등으로 인하여 교체나 반품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구매자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겠음.
4. (판매금액의 입금) 판매금액의 입금은 귀 노련 통장으로 함.
5. (대금지급) 판매대금의 결제는 입금되는 매월의 말일에 행함.
6. (수수료 지급) 판매한 제품의 판매대금 총액의 () %를 판매대금 결제시 현금으로 귀 노련에 수수료로 지급하겠으며 본 수수료는 당사에 지급할 판매대금에서 공제함.
7. (사후봉사) 판매한 제품의 사후봉사는 판매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겠으며 사후봉사 기간중에는 별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으며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교체하겠음.
8. (광고문 작성 및 인도) 제품 광고지는 당사에서 제작하여 귀 노련에 인도하며 광고문안은 귀 노련의 사전동의를 얻어 작성하겠음.
9. (재해보험) 당사는 공급한 제품의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월평균 매출액에 상응하는 재해보험에 가입함.
10. (판매중지) ① 당사가 공급한 제품의 공급가격이 귀 노련의 시장조사결과 허위임이 판명되어 귀 노련의 요청이 있을시 판매를 즉각 중지함.
② 당사가 공급한 제품이 불량품으로 구매자로부터 물의를 야기시킨 경우 귀 노련의 요청이 있을시 판매를 즉각 중지함.
11. (손해배상) 판매가격을 허위로 기재하여 판매하거나 판매가격이 부가가치세 포함이 공장도가격보다 높게 판매되는 등 부정판매를 하였을 경우와 발생한 피해액은 물론 피해액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 노련에 배상하겠음.
12. (통제준수) 본 약정의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는 귀 노련의 제통제를 준수함.
13. (명예존중) 본 약정의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는 귀 노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이며 명예훼손 행위가 있을시는 귀 노련이 요구하는 명예회복조치와 민사적 보상을 행함.

14. (허위행위) 본 약정의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는 일체의 허위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한 행위가 발생시는 귀 노련이 요구하는 조치를 즉각 취함.
15. (부당행위) 당사는 본 약정의 사업이외의 사업에 있어서 귀 노련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귀 노련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아니하며 그러한 행위의 발생시 귀 노련이 요구하는 조치를 즉각 취함.
16. (관련서류 제출) 개인별 판매내역등 귀 노련이 필요로 하는 자료는 요구양식에 의거 기일내 어김없이 작성 제출하겠음.
17. (약정해지) 본 약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사항을 지키지 아니 하였을시는 귀 노련이 일방적으로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으며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손해액에 대하여는 배액을 변상하겠음.
18. (손해배상 및 위약금) 본 약정사업에 따른 각종 배상금이나 위약금은 판매대금통장에서 우선 공제되며 잔액은 별도로 지급됨.
19. (조문해석) 본 약정서의 조문해석에 대하여 이해가 상반 될시에는 귀 노련이 정하는 바에 따르겠음.
20. (재판시) 본 약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귀 노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겠음.

년 월 일

약 정 인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복지사업운영위원회 의장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개인 또는 법인) 1부
 3. 사용인감계 1부
 4. 회사설명서 1부

(3) 제 117 차 중앙위원회 및 제 4 차 중앙집행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가. 일 시 : 96 년 12 월 20 일 (15 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결의사항

- ① 생존권사수 및 노동악법 분쇄결의대회 결과를 설명보고하고 생존권사수 및 노동악법 분쇄투쟁경과를 보고하고 쟁의발생 및 쟁의 행위결의사업장과 투쟁성금 납부자 명단과 노동법 개악 반대서명 사업장을 보고하다.
- ② 향후의 활동방향 및 투쟁대책에 대하여 토의하다.
 - 투쟁지시 및 홍보가 중복되지않고 일관성있게 효과적으로 해주기바라며
 - 쟁의결의 및 삭발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조직에 대해 재명을 비롯한 징계가 검토 되어야 한다.
 -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전조직 대표자가 국회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 노총 위원장이 단식투쟁을 쉽게 풀것에 대하여 지적되어야 하고
 - 정부, 신한국당에 대한 비판홍보물을 무차별 살포하고
 - 노동법의 국회통과를 시종 반대할것인지, 수정안을 제출할것인지, 목표 재설정 검토되어야 한다.
 - 일부 산별위원장 및 시도본부장이 삭발지시도 안지키고 각종 투쟁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것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 파업유보에 대한 현장설득이 매우 어려웠으며 스스로 우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강력한 정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 ③ 노련에 접수된 투쟁성금은 노총에 전달하되 노련의 최소한의 투쟁활동비를 이 성금에서 부담하고 결과를 추후 보고한다.

(4) 제 118 차 중앙위원회 및 제 5 차 중앙집행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가. 일 시 : 97 년 2 월 20 일 (14 : 30 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결의사항

① 97년도 임금인상 요구의 건에 대하여 토의하고

-노총 및 산별의 요구내용을 참고하여 97 년도 임금인상 요구율은 12.4% (통상임금기준 92,567원)로 하되 노동법의 개정 내용에 따른 임금 손실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요구하며, 조합원 규모별, 업종별로 임금수준의 차이가 다양하므로 사업장 단위의 특성을 감안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하도록 한다.

② 97 회계년도 가예산 수립의 건에 대하여는 사무처 원안대로 결의하다.

③ 회계처리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는 사무처 원안대로 결의하다.

④ 여비지급 규칙에 개정안에 대하여는 사무처 원안대로 결의하되 현재 임원, 직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내용을 임원여비 수준으로 통합한다.

⑤ 기타토의

- 노동법 개악 무효화 투쟁과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현장감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야 하며 계획적인 활동과 지침이 시달되어야 한다.
- 제조업 산별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단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며, 전국적인 홍보체계의 어려움이 있다면 지역별 홍보체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 최근의 분위기와 관련하여 탈퇴하는 조직에 대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
- 맹비를 체납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주기 바란다.

회계규정 개정내용

조 항	개 정 안
제 30 조 (계약방법)	계약의 방법은 다음기준에의한다 1. 일반경쟁 입찰 ① 예정가격 1억원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 ② 예정대가 3,000만원 이상인 재산의 매입,매각 ③ ①호 및 ② 호이외의 계약으로써 예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일때 2. 지명경쟁 입찰 ① 예정가격이 1,000만원이상 1억원미만인 공사 또는 제조 ② 예정대가 1,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의 재산의 매입,매각 ③ ①호 및 ②호 이외의 계약으로써 예정가격이 1,0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인때 3. 수의계약 ① 예정가격 1,000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제조, 예정대가 1,000만원미만인 재산의 매각 또는 매입 ② ① 호 이외의 계약으로써 예정 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때 ③ ④ ⑤ ⑥ 수의계약일 경우 예정가격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할수 있으며 계약서 작성을 생략 할수 있다. ----- ----- 다만 계약금액이 200 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

(5) 제 6 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97 년 3 월 27 일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결의사항

국회 조한천의원이 내방하여 중집에 참석하여 당선인사를 하다.

- 97 학년도 한국노총 장학재단 장학금 배정내용을 설명보고하다.

① 97년도 정기대의원 대회 개최에 관하여 토의하고

- 대회를 97. 5. 16 (10시)에 한국노총 대강당에서 개최하며

② 대의원배정을 위한 맴비납부 마감일시를 97. 4. 15 17시까지로 결의하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은 사무처 안대로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④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 김성문 사무국장 : 이병균 위원 : 정기춘, 김영철, 강창영

간사 : 이진우를 선임하며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선관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진행토록 한다.

⑤ 모범조합원 표창은

- 단위노조는 97. 3월말 기준 맴비납부 조합원 1,000명이상인 노조에 1명 배정하고, 5,000명이상인 노조에 1명을 추가로 배정하며

- 지역본부는 기본 1명 배정하고

10,000명이상인 지역본부에 1명을 추가배정한다.

4) 기 타 회 의

(1)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가. 일 시 : 96 년 4 월 2 일 (14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결의사항

① 96 년도 노총장학금 배정내용을 보고하다.

② 96 년도 정기대의원 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 96 년도 정기대의원 대회는 96 년 5 월 15 일(수) 10시에 한국노총 대강당에서 개최하며 대의원 배정을 위한 맴비 납부 마감일을 96년 4월 15일 17시로 한다.

- 3 개 소위원회(규약심의, 사업계획, 예산)는 중앙집행위원 전원을 3 개 소위원회로 분할 구성하여 운영한다.

- 정기대의원 대회 표창은

96 년 3 월말 기준 맴비납부 조합원이 2,000명이상 노조에 1명,

10,000 명이상 노조에 추가 1명 배정하고, 지역본부에 기본 1명

배정하고, 10,000 명이상인 노조를 제외하고 10,000 명이상인 지역

본부에는 1 명 추가 배정한다.

- ③ 96 년도 정기대회에서는 위원장 잔여임기 1 년에 대한 보선을 실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회의 결의로 상근임원이 선정하도록 위임하고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추인을 얻도록 한다.

(2)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개최

가. 일 시 : 1996 년 5 월 29 일 15 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결의사항

- ① 쌍용중공업 산기사업부 신규조직 경과와 포스코홀스 신규조직 경과를 조직국에서 보고하다.
- ② 대성정공 노사분쟁경과와 부일산업 분규의 내용을 노사대책국에서 보고하다
- ③ 96. 6월 하순경에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 노련의 재정운영상황을 상세히 보고하고 대책을 토의 하겠으며.
 - 지역본부단위로 노련맹비를 징수하는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으며
 - 재정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수익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정책세미나에서 토론하도록 한다.

(3)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개최

가. 일 시 : 1996 년 11 월 13 일 14 시

나. 장 소 : 노총 대전지역 본부 회의실

다. 결의사항

- 한국노총의 「생존권사수 및 노동악법 분쇄 결의대회」 개최에 대하여
- 노개위의 활동내용과 노개위가 정부에 보고한 최종안을 설명 보고하고
 - 11월 24일에 개최하는 결의대회에 최대한으로 많은 인원이 참석하도록 적극 독려한다.
 - 지방에서 상경할 경우 미리 교통편을 확보하여 동원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개최

가. 일 시 : 1997 년 1 월 8 일 14 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내 용

1월 9일 10시에 개최하는 노총대표자 회의에서 우리노련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개진하기로 결의한다.

- ① 노총의 총파업 지시에 따른 참여도가 매우 낮았으며 대기업 사업장의 불참으로 군소업체의 파업이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 ② 총파업 지도부의 지시 및 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정사항이 자주 바뀌어 혼선이 일어났다.
- ③ 대체적으로 2차총파업에는 어려움이 많겠으나 공공부문 노조가 앞장서고 노총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투쟁을 지시한다면 총파업에 최대한으로 참여하겠다.
- ④ 민주노총과의 연대활동도 고려되어야 하겠다.
- ⑤ 무조건적이 투쟁보다 현실을 직시하는 안목도 필요하다고 본다.

(5)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개최

가. 일 시 : 1997 년 2 월 20 일 10:30 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결의사항

- ① 97 년도 임금인상 요구율은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12.4% 요구안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② 97 회계년도 가예산은 사무처 원안대로 중앙위원회에 상정한다.
- ③ 회계처리 규정 개정안은 사무처 원안대로 중앙위원회에 상정한다.
- ④ 여비지급규칙 개정안은 사무처 원안대로 중앙위원회에 상정한다.

(6) 96 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수검

가. 일 시 : 1996 년 10 월 31 일 14 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내 용 : 96. 4. 1 - 96. 9. 30까지 회계처리 내역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다.

(7) 96 년도 하반기 회계감사수검

가. 일 시 : 1997 년 4 월 24 일 14 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내 용 : 96. 10. 1 - 97. 3. 31까지 회계처리 내역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다.

(8) 소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1996 년 5 월 3 일 14 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결의사항

사무처에서 작성한 96년도 사업계획 및 96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 토의된 결과를 정기대의원 대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하다.

(9) 한국노총 97 년도 정기대의원대회 대의원 파견

가. 일 시 : 1997 년 2 월 28 일 10 시

나. 장 소 : 한국노총 대강당

다. 노총 파견대의원 56 명을 파견하다.

2. 기 타 활 동

1) 한국노총 장학금 배정

한국노총 장학재단에서 우리노련에 배정된 96 학년도 장학금 133,990,000원을 맹비남부 실적에 따라 가맹노조에 배정하였다.

년도별 장학금 수혜내역

년도별	중	고	전문대	대	계	지 급 금 액
77 년	16	12			28	1,520,000
78	91	68			159	9,765,000
79	118	86			204	13,960,000
80	165	120			285	21,525,000
81	130	42			172	30,980,000
82	127	49			176	37,980,000
83	140	37		2	179	41,680,000
84	68	9			77	16,480,000
85	84	8			92	19,000,000
86	84	8			92	19,000,000
87	71	12			83	19,650,000
88	149	64			213	60,990,000
89	128	58		1	187	59,210,000
90	199	51		1	251	80,900,000
91	261	47		1	309	114,770,000
92	231	58	1	3	292	116,960,000
93	165	72		2	240	117,860,000
94	61	87	기 타)1	1	150	96,390,000
95	56	103	기 타)1		160	115,910,000
96	61	104			165	133,990,000
계	2,397	1,100	3	11	3,511	1,086,060,000

조 직 활 동

목 차

○ 평가 및 개선방안

1. 지역본부별 노동조합 현황
 - 지역본부 임원명단
 - 단위노동조합 현황
2. 지부현황
3. 신규조직현황
4. 임원개선 조직체 현황
5. 해산 및 이탈노동조합 현황
6. 년도별 조합원 증감 현황
7. 지역별 조합원 월별 현황
8. 기타 활동

평가및 개선방안

우리노동계는 정부로부터 그 어느때 보다 강한 도전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하면서 ○ 공동선의 추구 ○ 자율과 자치 ○ 참여와 협력 ○ 인간중시의 능력개발 그리고 제도,의식,관행의 세계화라는 5가지 덕목을 축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에 대해 노사 모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노개위 발족과 더불어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개별적 노사관계법을 맞바꾸려는 의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특히 세계화와 국제경쟁력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그 목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간 100여개의 노사합의사항이 도출되고 주요쟁점사항을 2차개혁과제로 넘어가는듯 했으나 신한국당의 새벽 날치기 통과로 인해 노동계에 경악과 함께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었다. 그때부터 시작된 생존권 사수 및 노동악법 분쇄 결의의지는 전국의 노동자에게 위기의식과 함께 결속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심어주었다.

전 조직의 투쟁에 의해 노동법이 재 개정되었으나 제 2의 계약으로 끝나므로써 지속적인 노동법 재개정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제 복수노조의 시대가 개막되었고 우리는 조직의 경쟁력을 통해 조직관리와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확대를 기해 나가므로써 전통의 금속노련을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13.8 %라는 낮은 조직율은 노동조합의 정치, 사회적 위상 제고가 곤란하고 노사간 힘의 대등성 부재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빈발, 노동조합간의 양극화 현상, 상급조직의 분열과 이념상 혼란으로 중간노조의 양산, 노조재정의 취약성, 특히 개정된 노동조합법 중 전임자 임금 불지급, 대체근로허용, 무노동무임금의 악법으로 인해 조직의 힘이 크게 약화될 뿐만아니라 이탈조직이 생겨나므로써 조직의 이완 현상이 크게 나타날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조직국은 이러한 문제점등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① 지역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당해지역의 압력단체로서 지역내 조직끼리 연대를 강화해 나갈수 있도록 하고 ② 단위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집중성, 연대성을 통한 튼튼한 조직, 강한조직으로 체질을 개선시켜 나가는데 주력하며 ③ 현장 대중동원 능력강화, 토론을 통한 의식의 제고, 교육을 통한 현장투쟁을 결합시켜 나가므로써 조합원 스스로의 위상을 정립시키며 ④ 조직의 재정비, 확대 강화기간을 설정하여 휴면노조, 유명노조를 정상화 시키고 ⑤ 신규조직을 확대강화해나가므로써 단결력을 제고시켜 나갈계획이다.

1. 지역본부별 노동조합 현황

1) 서울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9. 12. 28.
 ②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 가 57
 ③ 전화 번호 : 676 - 4823 FAX : 676 - 4824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신 성 균	오 트 론	96. 12. 23.
지도위원	서 갑 순	한국특수공구	96. 12. 23.
지도위원	강 창 영	동 부 제 강	96. 12. 23.
부 의 장	김 광 현	풍 우 실 업	96. 12. 23.
부 의 장	이 칠 구	LG전자 구로지부	96. 12. 23.
부 의 장	김 형 식	대한전선 시흥지부	96. 12. 23.
사무국장	선 기 노	제 일 종 공	96. 12. 23.
정책실장	김 진 태	엘 코 코 리 아	96. 12. 23.
행정조정실장	이 명 선	청 우 공 업	96. 12. 23.
회계감사	문 광 주	세 진 전 자	96. 12. 23.
회계감사	이 대 영	풍 성 전 기	96. 12. 23.
회계감사	김 영 배	대한전선 계전지부	96. 12. 23.

⑤ 서울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LG산전노동조합	870727	주 성 민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31번지	엘레베이터
LG전자노동조합	630530	나 찬 경	영등포구 문래동 6 가 36 LG강서빌딩	가전제품
거평시그네틱스노동조합	670908	김 원 중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72	반도체
경보전기노동조합	910412	이 주 형	서울시 성동구 성수 2 가 284 - 5	전기계기
남성텔레콤노동조합	770212	오 갑 순	서울시 금천구 가리봉동 345 - 30	카스테레오
대우전자노동조합	830402	이 병 균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노총회관 409	가전제품
대한전선노동조합	720615	강 익 화	서울시 금천구 시흥1동 104	광통신전선
동부제강노동조합	660429	강 창 영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23	강관,철관
동아건설노동조합	740629	김 상 수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20 - 23	건설업
동해노동조합	890224	이 경 옥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81-2	카스테레오
로움코리아노동조합	780627	양 명 연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 - 11	저항기
롯데알미늄노동조합	760407	이 국 만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05	알미늄호일
롯데전자노동조합	870821	안 재 현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33	오디오
모토로라코리아노동조합	881219	김 명 옥	서울시 성동구 광장동 445	반도체
샤프전자노동조합	900508	이 상 호	강서구 등촌3동 661-10 샤프빌딩 4 층	계산기
세진전자노동조합	770123	문 광 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 - 19	키보드
신한전기노동조합	810519	범 상 철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5 가 27	전기부품
오트론노동조합	880201	신 성 균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35 - 2	전화기
제일종공노동조합	820223	선 기 노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 가 34	감속기
청우공업노동조합	880510	이 명 선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 가 96 - 1	펌프
풍성전기노동조합	670228	이 대 영	서울시 성동구 성수 1 가 656 - 335	자동차부품
풍우실업노동조합	891109	김 광 현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37	장식용전구
한국TDK노동조합	960225	박 미 영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70 번지	반도체
한국음향노동조합	850425	김 중 화	서울시 금천구 가리봉동 371 - 41	스피커
한국전자부품노동조합	890328	이 병 원	서울시 금천구 가리봉동 79 - 2	스피커
한국특수공구노동조합	620331	서 갑 순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5 가 1	절삭공구

2) 경기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2. 9. 27.
 ②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 8 동 377
 ③ 전화 번호 : (0343) 42 - 3666 FAX : (0343) 45 - 2816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하 영 일	L G 전 선	88. 10. 20.
부 의 장	강 익 화	대 한 전 선	88. 10. 20.
부 의 장	나 찬 경	LG전자평택지부	88. 10. 20.
부 의 장	이 종 진	성 신	91. 10. 29.
부 의 장	권 석 정	한 샘	91. 10. 29.
부 의 장	김 윤 재	대 우 통 신	91. 10. 29.
부 의 장	최 진 하	일 진	90. 10. 30.
부 의 장	엄 종 국	세 광 알미늄	90. 10. 30.
부 의 장	임 홍 순	한 국 가 구	90. 10. 30.
부 의 장	김 수 룡	대광다이캐스트	90. 10. 30.
부 의 장	김 길 동	LG전자청주지부	82. 9. 27.
부 의 장	이 병 옥	태 양 금 속	95. 11. 9.
부 의 장	장 건	L G 전 선	95. 11. 9.
사무국장	박 정 화	동 아 정 기	91. 10. 29.
회계감사	이 병 도	배영설비기공	94. 10. 31.
회계감사	신 철	신 일 산 업	94. 10. 31.
회계감사	김 일 섭	LG전자오산지부	94. 10. 31.

⑤ 경기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LG전선노동조합	670512	장 전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555 번지	전선
경동산업노동조합	881213	박 영 규	경기도 파주군 월롱면 위전리 546-11	라지에타
경원산업노동조합	870824	강 장 규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 34 - 3	밧데리
계선산업노동조합	870828	윤 창 수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마교리 153-2	철재가구
고신열관리노동조합	880623	경 명 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9 - 1	산업용버너
관수노동조합	890515	류 내 열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현암3리 372	
국제전기노동조합	880919	최 병 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60 - 1	전구
기경실업노동조합	870825	이 금 호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781 - 1	구조물
기영산업노동조합	880325	서 광 술	시흥시 정왕동 1260-1 (2나 202호)	자동차부품
남북노동조합	890224	한 석 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초부리 80 - 1	자동차부품
남일전지노동조합	771204	김 한 설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병점리 399-4	밧데리
대광다이캐스트노동조합	880307	김 수 룡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25	자동차부품
대기노동조합	890220	이 강 훈	경기도 군포시 당동 7 - 5	자동차부품
대기산업노동조합	890224	유 원 기	경기도 시흥시 장왕동 1264	자동차부품
대성전선노동조합	780219	김 창 압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513	전선
대승노동조합	961125	권 무 영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325-4	
대신기계노동조합	880517	강 호 석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쾌량리 480 - 1	자동차부품
대웅산업노동조합	941123	이 상 곧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계록리 273-11	
대원전선노동조합	870731	배 승 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138 - 77	전선
대한제작소노동조합	810131	이 두 중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522	기계제작
동서기공노동조합		김 중 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92 - 5	
동신중공업노동조합	900604	이 규 산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백봉리 산 66	조립식주택
동신타강노동조합	881226	이 주 완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중리 833 - 7	가전제품
동아정기노동조합	870817	조 동 진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북리 862 - 8	자동차부품
동양매직노동조합	921110	이 준 용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동화리 100-2	가전제품
동양사노동조합	961025	이 순 녀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86-5	
동일제강노동조합	850614	진 대 환	안성군 미양면 구수리 미양제2지방산업단지 로프	
동화계량기노동조합	870814	박 귀 배	경기도 김포군 대곶면 대능리 126 - 10	주유기
동희산기노동조합	910523	설 한 수	시흥시 정왕동 1279 번지 3나 301호	자동차부품
두산제관노동조합	880418	이 성 찬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8 - 1	알미늄캔
두원정공노동조합	870827	박 흥 서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건지리 180	
배영설비노동조합	890424	이 병 도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상하리 472 - 7	공조기
범양냉방노동조합	770703	한 기 흥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9 - 4	에어콘
보원무역노동조합	870814	하 병 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8 - 6	액자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부승정밀노동조합	880816	김 광 대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442 - 5	B.O
산내들인슈노동조합	901121	주 현 중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도림리 39-2	조립식판넬
삼아알미늄노동조합	890217	신 현 철	경기도 안양시 박달2동 111 - 2	알미늄
삼영전자노동조합	880828	지 수 식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60 - 1	컨텐츠
삼원산업노동조합	860603	전 인 권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 봉암리 234	자동차부품
삼한노동조합	870723	양 신 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00-5	전화기부품
삼화왕관노동조합	970203	이 효 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	병뚜껑
삼화전자노동조합	941121	이 해 용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장지리 211-1	전자부품
삼화제관노동조합	880816	장 동 원	경기도 송탄시 모곡동 445	음료캔
서원풍력기계노동조합	881107	최 상 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1 - 2	산업선풍기
서진다이킨노동조합	910125	김 은 익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80 - 9	자동차부품
서진산업노동조합	760226	고 흥 준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26-5	자동차부품
선일기계노동조합	880611	임 상 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40	자동차부품
성문전자노동조합	901230	김 정 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41-6	가전제품
신라엔지니어링노동조합	880516	김 수 영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진사리 10 - 2	금형프레스
신진전기노동조합	870828	유 연 각	경기도 수원시 평동 145 - 1	각종기계
아세아조인트노동조합	890108	김 광 민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구양리 262	배관자재
오공금속노동조합	880609	강 영 술	경기도 용인시 고림동 612 - 1	자동차부품
유성정밀노동조합	880910	김 선 영	광주군 광주읍 태전리 272 - 20	변압기
이화다이아몬드노동조합	880312	서 성 원	경기도 오산시 원동 520 - 2	절삭용공구
이화전기노동조합	880718	김 광 식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태전리 272 -120	전자부품
장안공업노동조합	790316	이 산 응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 224 - 1	전기소켓
정문정보노동조합	970118	홍 전 화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영천리 122-5	컴퓨터디스켓
진영기전노동조합	880302	백 용 연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하갈리 237 - 4	실린더밸브
진우노동조합	910710	최 정 철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사랑리 137 - 6	자동차부품
창흥정밀노동조합	870919	김 기 섭	시흥시 정왕동 1265-8 시화공단 2라 207	자동차부품
철도컨테이너정비노동조합	900605	임 승 재	경기도 의왕시 이동 산 1-1	컨테이너
코발트전기노동조합	890718	한 재 결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409 - 1	전기다리미
태광에로이카노동조합	921019	윤 선 옥	경기도 안양시 안양 7 동 191-1	음향기기
퍼시픽콘트롤즈노동조합	910206	장 현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288	자동제어기
필코전자노동조합	870826	윤 문 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380	전자부품
한국가구노동조합	680904	임 홍 순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풍무리 38 - 1	가구
한국버그전자 노동조합	931112	한 광 수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수하리 345-4	전자부품
한국번디노동조합	870719	양 봉 광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신리 206 - 1	강관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한국브레이크노동조합	880420	김 현 진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북리 608-23	브레이크
한국에이.엠.피노동조합	891101	윤 정 일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양기리 451 - 9	전자부품
한국열교환기노동조합	870831	최 용 만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6리 517	열교환기
한국일촉노동조합	930517	김 충 식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3-3	게이지
한국체인노동조합	870826	최 상 봉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건지리 177	체인
한국키스톤발브노동조합	880709	주 택 근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계록리 270-4	밸브
한독분말야금노동조합	930310	이 문 성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석우리 55-1	자동차부품
해태전자노동조합	870919	한 길 수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독정리 461	가전제품
현대엘리베이터노동조합	870814	성 용 주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 산 136 - 1	엘리베이터
현대전자노동조합	870814	김 영 철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 산 136 - 1	컴퓨터
희성전선노동조합	680503	김 영 기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66	전선
대륙자원노동조합	920122	함 종 원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11 - 19	
대한전자재료노동조합	880807	문 봉 운	부천시 오정구 내동 124	
로렌스시계노동조합	890201	조 규 덕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73 - 27 호	시계
루-보노동조합	880511	이 원 근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29-13	배아링
반도기계노동조합	870820	오 광 수	부천시 남구 송내동 409-3	호이스트크레인
삼양중기노동조합	840708	이 성 수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34	각종산업기기
삼협전자노동조합	890407	김 상 태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20 - 8	카스테레오
성신노동조합	870728	유 진 화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56 - 5	펌프
신한일전기노동조합	740518	이 준 덕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31	필트
신한주철노동조합	740720	윤 무 영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 3 동 135	주물
우진전자노동조합	870902	전 경 준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54 - 5	전자부품
풍정산업노동조합	871112	안 재 식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76 - 1	자동차부품
흥진기연노동조합	890225	안 회 철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65-6	크레인
T.R.W 노동조합	950817	정 상 모	안산시 원시동 780-3	자동차부품
경방기계노동조합	880629	강 영 석	안산시 성곡동 644 - 2	타자기
경용기계노동조합	840527	송 두 영	안산시 성곡동 646-5 반월공단 B 602-7	기계
광명기전노동조합	900828	김 창 중	안산시 목내동 451 - 3	배전차단기
광명전기노동조합	870815	이 명 구	안산시 목내동 389번지 28-15	전기제품
기린산업노동조합	900714	차 상 목	안산시 목내동 403 번지 16 브록	판넬
남성기계노동조합	890410	이 철 수	안산시 신길동 1054-1	크레인
남양공업노동조합	950327	노 춘 용	안산시 목내동 390	
대경화성노동조합	890113	정 근 화	안산시 공단 B동 608-31	자동차부품
대덕산업노동조합	871211	김 광 호	안산시 목내동 475 - 15 B	인쇄회로기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대덕전자노동조합	871228	박 광 원	안산시 목내동 390 - 1	PCB전자
대륙전선노동조합	871202	김 영 규	안산시 원시동 731 - 9, B 4 - 10	전선
대아볼트노동조합	870813	김 병 호	안산시 원시동 824 - 6	볼트
동광제작소노동조합	870930	정 영 배	안산시 원시동 769 - 11	철재가구
동성진흥공업노동조합	871029	이 상 섭	안산시 목내동 445 - 4, B 15 - 1	케이블추레
동성진흥노동조합	891128	홍 원 상	안산시 성곡동 610 - 6 B 18-17	방음벽
동진알루미늄노동조합	890403	최 종 강	안산시 성곡동 4 라 302	알미늄
배명금속노동조합	880307	김 원 덕	안산시 초지동 654-2 (9B 71-1)	스텐레스
삼기기계노동조합	781013	장 인 권	안산시 원시동 726-4, 반월 B 1-45	자동차부품
삼목강업노동조합	880418	박 용 국	안산시 초지동 654-3 반월 9-71-2	자동차부품
삼선공업노동조합	880622	김 석	안산시 목내동 393-1	
삼영기계노동조합	890328	정 해 용	안산시 성곡동 B 602 - 18	자동차부품
삼천리열처리노동조합	890509	백 영 민	안산시 성곡동 638 - 1	
서울라디에타노동조합	880116	백 승 철	안산시 원시동 724, 반월공단 B1 - 21	전자부품
서울차체노동조합	671013	이 쌍 봉	안산시 신길동 1125	자동차부품
성안기계노동조합	890515	최 관 섭	안산시 성곡동 646 - 4 (602브릭)	기계제작
성진산업노동조합	870822	임 병 우	안산시 원시동 731 - 8 (4B,9L)	자동차부품
세강물산노동조합	900423	이 유 용	안산시 성곡동 638 - 4	강선
세광알루미늄노동조합	860831	엄 종 국	안산시 초지동 9 브릭 651	주방기구
신명전기노동조합	850522	이 명 재	안산시 원시동 835-4(반월공단 9B-1L)	변압기
신아전기노동조합	800326	신 은 철	안산시 원시동 779 - 10	
신일산업노동조합	770425	신 철	안산시 사사동 119	선풍기
신일정밀노동조합	890916	배 영 숙	안산시 사사동 123	전자부품
신호기전노동조합	880508	이 종 현	안산시 원시동 735	
아메리칸스탠다드코리아	870822	김 영 운	안산시 목내동 398 - 14	수도꼭지
오양공조기노동조합	870817	조 재 천	안산시 원시동 817, B 1 - 89	모터
우진공업노동조합	890512	한 창 기	안산시 원시동 770 - 1, 11 B 17 L	스파크브러
일진노동조합	870822	최 진 하	안산시 목내동 472 - 1	알미늄
제원전자노동조합	890407	서 문 숙	안산시 성곡동 646-6 반월공단 602-9B	전자부품
중원전기노동조합	880516	김 원 곤	안산시 원시동 727 - 9	전기용품
진영공업노동조합	940325	김 종 성	안산시 원시동 778-5	자동차부품
태양금속노동조합	760526	이 병 욱	안산시 성곡동 595	볼트
태일정밀노동조합	880423	송 기 선	안산시 목내동 456 - 1	컴퓨터
한국캠브리지필터노조	900216	이 한 규	안산시 원시동 781 - 5	전자부품
한샘노동조합	800401	한 승 인	안산시 성곡동 665 시화공단 5라 201	주방기기
화일볼트노동조합	870525	고 인 성	안산시 원시동 779 - 2	볼트
홍진정공노동조합	881119	이 정 한	안산시 원시동 780 - 1, 10 - 8 브룩	가전제품

3) 인천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1. 11. 2.
 ②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1089 - 3 근로자복지회관 3 층
 ③ 전화 번호 : (032) 437 - 8505 FAX : (032) 437 - 8504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황 창 배	대 우 전 자	95. 6. 28.
수석부의장	한 상 환	한 영 알미늄	“
부 의 장	이 은 물	대 립 통 상	“
부 의 장	방 수 복	한 국 이엑스	“
부 의 장	박 재 혁	한 국 샤 프	“
부 의 장	정 길 환	삼 성 정 밀	“
회계감사	이 준 선	영 품 기 계	“
회계감사	김 현 섭	도 투 락	“
회계감사	황 중 환	한 국 차 량	“
사무국장	손 중 홍	대 한 제 당	“
기획실장	장 영 일	미 주 제 강	“

⑤ 인천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금영실업노동조합	870706	서 용 우	남동구 고잔동 639-1 남동2단지 70B-2L	선반
대동시스템노동조합	890711	양 승 종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607-2 남동 3B3L	케이블
대림통상노동조합	870812	이 은 물	인천시 서구 가좌동 524 - 4	주방기
대우통신노동조합	810302	김 영 국	인천시 서구 가좌동 531 - 1	컴퓨터
대한제당노동조합	690602	손 중 홍	인천시 중구 북성동 1 가 6 - 14	제당,사료
대한제쇄노동조합	630223	조 래 홍	인천시 남구 도화3동 740	땃
도투락인천공장노동조합	880705	김 현 섭	인천시 서구 가좌동 577 - 3	주물
동보노동조합	870910	최 화 영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606 - 1 12B-2L	자동차부품
로알철도노동조합	870725	한 중 윤	인천시 부평구 청천2동 414-3	수도꼭지
미주제강노동조합	470809	이 강 전	인천시 남구 도화동 696	제강
부국철강노동조합	880208	최 영 진	인천시 남구 도화3동 686	철강
삼성공업노동조합	870810	오 인 상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남동공단 4 B 1L	자동차부품
삼성정밀노동조합	890414	정 길 환	남동구 논현동 429-9 남동공단 21B-11L	주방기기
삼송공업노동조합	870824	김 철 소	인천시 부평구 청천2동 419-2	케스타
서울제강노동조합	880209	최 광 질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558 - 7	철강
성지공업노동조합	890915	황 길 복	남동구 고잔동 674-4 남동공단 86B 5L	중기부품
세일기계노동조합	871019	나 용 길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남동공단 3B 1L	자동차부품
신양전기노동조합	940204	유 기 화	인천시 서구 가좌동 525 - 5	보온병
신호금속노동조합	920501	김 학 배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74 86B-1L	특수관
신호스틸노동조합	800508	박 창 옥	인천시 남구 학익동 468 번지	강관
쌍용정공노동조합	870818	권 태 연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94	공작기계
영풍기계노동조합	870820	이 준 선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557 - 3	공구
유림전자노동조합	960828	강 정 순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32B 11L	
인천전기노동조합	610825	이 준 기	인천시 동구 화수동 5 - 5	충전기기
인천자동차노동조합	880314	김 명 석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 - 79	차량정비
한국샤프노동조합	880610	박 재 혁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418	음향기기
한국이엑스노동조합	820319	방 수 복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628-5(41B 6L)	산업기계
한일알미늄노동조합	761027	한 상 환	인천시 서구 가좌동 525 - 4	비철금속
한일류브공업노동조합	930515	조 병 현	인천시 서구 경서동 689 - 3	브레이크
후지테크코리아노동조	870827	김 규 완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62-2 98B 3L	승강기
희성금속노동조합	870823	허 규 선	인천시 서구 가좌동 548 - 1	용접봉

4) 대전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1. 1. 30.

②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1 - 185

③ 전화 번호 : (042) 273 - 5786 FAX : (042) 273 - 2555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 장	김 두 형	대 성 공 업(주)	94. 3. 31.
부 의 장	김 재 동	대 아 공 업	94. 3. 31.
사무국장	윤 익 병	남 선 기 공	94. 3. 31.
회계감사	김 희 중	동 양 금 속	94. 3. 31.

⑤ 대전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남선기공노동조합	740221	윤 익 병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450 - 10	밀링
대성공업노동조합	781015	김 진 순	대전시 동구 성남 1 동 180 (7/5)	양식기류
대성노동조합	790112	정 순 남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1-14	
대아공업노동조합	890315	김 재 동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40-35 (2공업단지)	후레임
동방의료양행노동조합	890126	박 희 국	대전시 동구 삼성동 302 - 128	일회용주사
동양금속노동조합	780807	김 희 중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40 - 55	주물
세아중기노동조합	870101	김 창 구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제4공단 11-2BL	
중앙공업노동조합	730127	안 진 용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290 - 7	농기계
한국중기노동조합	880522	라 정 만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43 - 2	주물.주강

5) 충남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96. 5. 10.

②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0 - 1 중앙빌딩 4층

③ 전화 번호 : (0418) 41 - 6970 FAX : (0417) 41 - 6970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강 한 우	삼 신	95. 5. 10.
수석부의장	신 경 선	삼천리 기계	95. 5. 10.
부 의 장	설 광 섭	L G 금 속	95. 5. 10.
자문의원	류 근 식	동 아 건 설	95. 5. 10.
회계감사	이 철 수	상 지 전 자	95. 5. 10.
회계감사	이 종 각	두 원 공 조	96. 11. 24
사무국장	김 관 태	수 산 정 밀	95. 5. 10.
조직국장	양 시 준	동 양 철 관	96. 2. 24.
교선국장	강 홍 진	경신공업아산지부	95. 5. 10.
노사대책국장	김 성 종	금 성 정 공	95. 5. 10.
조사통계국장	김 갑 성	대 기 시 트	96. 11. 24.
여성국장	유 재 순	한국쌍신전기	95. 5. 10.
산업안전국장	백 중 형	대동브레이크	97. 2. 24.
총무국장	최 중 석	부 천 공 조	97. 2. 24.

⑤ 충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LG하니웰노동조합	890601	김 원 기	충남 천안시 차암동 56 천안 제 2 공단	제조서비스
건화전기공업노동조합	940707	김 기 준	충남 아산군 인주면 관암리 429 - 2	고압차단기
국제특수금속노동조합	710513	이 홍 배	충남 연기군 동면 웅암리 산 666 - 8	
금성정공노동조합	950412	김 성 종	충남 당진군 순성면 광천리 산 18	자동차부품
대기시트노동조합	950925	김 갑 성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산 58-3	자동차부품
대동브레이크노동조합	951017	백 중 형	충남 천안시 병천면 가천리 306-1	브레이크류
대흥노동조합	850618	오 수 영	충남 천안시 두정동 488	자동차정비
동양산업기계노동조합	921023	최 명 우	충남 예산군 호음리 산 75-55	다크시설
동양철관노동조합	870825	양 시 준	충남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57 번지	특수관
동일알루미늄노동조합	950727	박 종 선	충남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378-1	알루미늄제조
두원공조노동조합	901217	이 중 각	충남 아산군 음봉면 원남리 산 16-1	자동차에어콘
부천공조노동조합	950821	최 종 석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52-2	자동차부품
삼신노동조합	870729	강 한 우	충남 천안시 두정동 63 - 6	밸브류
삼천리기계노동조합	890601	신 경 선	충남 천안군 성환읍 성환리 419	기계제작
상지전자노동조합	900201	이 철 수	충남 연기군 전의면 신방리 73	전화기
서흥강재노동조합	961203	박 종 회	충남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280	
성일산업노동조합	960812	김 춘 호	충남 천안군 성남면 용원리 97	자동차부품
수산정밀노동조합	930709	김 관 태	충남 아산군 음봉면 월랑리 산 94	섬유기계
수산특장노동조합	950508	김 성 규	충남 아산시 음봉면 쌍용리 산3-1	특장차제조
에프케이엘동화노동조합	900206	심 수 경	충남 천안군 성환읍 대흥리 338 - 13	전자부품
용암산업노동조합	950404	김 용 성	충남 천안군 광덕면 신덕리 162	
진로인더스트리즈노동조합	870826	강 웅 석	충남 천안군 풍세면 보성리 569	전선류
평산공업노동조합	961028	김 진 호	충남 아산시 둔포면 산절리 170 - 1	
포스코홀스노동조합	960327	이 승 재	충남 천안시 성거읍 오목리 27	반도체칩
한국쌍신전기노동조합	760426	유 재 순	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 614 - 1	콘덴서
한성실업노동조합	870818	안 성 환	예산군 음봉면 지성리 웅봉농공단지 6BL	자동차부품
환영철강노동조합	950117	홍 성 태	충남 당진군 석문면 삼화리 650-7	철근,앵글

6) 충북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8. 12. 31.

② 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00 - 15 번지

③ 전화 번호 : (0431) 67 - 1418 FAX : (0431) 66 - 5088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김 홍 수	L G 산 전	94. 12. 15.
부 의 장	권 성 하	에 넥 스	94. 12. 15.
부 의 장	왕 용 호	한 국 야 금	94. 12. 15.
부 의 장	이 형 일	뉴 맥 스	94. 12. 15.
사무국장	이 형 일	뉴 맥 스	94. 12. 15.
회계감사	박 재 형	맥 스 전 자	94. 12. 15.
회계감사	권 영 혁	대 성 셀 틱	94. 12. 15.

⑤ 충북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국제종합기계노동조합	740201	조 준 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11 - 1	농기구
극동전선노동조합	870822	안 승 필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95	전선
뉴맥스노동조합	880427	이 형 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7 - 15	사무기기
대농중공업노동조합	941231	이 관 희	충북 청주시 송정동 27-5	중장기
대성셀틱노동조합	890419	이 형 기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313 - 69	가스보일러
동성금속노동조합	910309	노 성 환	충북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 160	엔진베어링
동신오미야법랑노동조합	891116	송 성 철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60 - 1	건축내장재
동아건설청주노동조합	870615	한 규 정	충북 청원군 남이면 상발리 213-1	건설업
동유물산노동조합	850218	홍 웅 기	충북 음성군 삼성면 선정리 572-1	자동차부품
맥슨전자노동조합	820511	조 잔 용	충북 청주시 향정동 70-55	무선전화기
삼화전기노동조합	900131	전 병 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92	콘덴서
세진-다지마노동조합	910603	이 송 립	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850	스텐레스
에넥스노동조합	870810	정 운 석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555	주방기기
제일공업노동조합	890412	김 영 기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802 - 2	렌지후드
한국야금노동조합	910204	왕 용 호	충북 청주시 송정동 53 - 16	초경합금

7) 부산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0. 12. 29.
 ② 소재지 :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 - 240
 ③ 전화 번호 : (051) 644 - 4613 FAX : (051) 647 - 8770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오 봉 출	한진섬유기계	97. 1. 31
부 의 장	서 복 호	동 국 제 강	"
"	강 진 호	연 합 철 강	"
"	김 회 근	고 려 용접봉	"
"	최 창 대	한 보 철 강	"
"	차 윤 환	한국 주철관	"
"	정 운 국	한국오루강침	"
"	변 진 섭	대 성 사	"
"	강 영 일	조 기	"
"	현 익 조	대 동 조 선	"
조직국장	이 재 섭	부 산 주 공	"
노사대책국장	전 용 구	조 선 선 재	"
복지국장	이 승 우	적 고	"
회계감사	서 영 택	부 산 주 공	"
회계감사	전 용 구	조 선 선 재	"

⑤ 부산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강남노동조합	780319	문 정 도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399	선박
고려용접봉노동조합	840617	김 희 근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21 - 3	용접봉
고려제강노동조합	820610	윤 한 철	부산시 남구 망미 2 동 475	제강
고성산업노동조합	870806	이 한 봉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 - 12	수도밸브
극동금속노동조합	890403	김 대 성	부산시 사상구 감전4동 124 - 1	선재
내쇼날정공노동조합	940303	김 영 중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1467-1	금형
대명공업노동조합	880303	유 덕 기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28 - 11	차량부품
대선조선노동조합	681203	황 대 선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4 가 12	조선
대성노동조합	940107	조 현 기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 151-4	TV부품
대성사노동조합	760330	변 진 섭	부산시 동래구 안락 2 동 107 - 16	자동차부품
대창단조노동조합	750510	박 병 용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952 - 3	크랭크
대창중기노동조합	900410	이 규 대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508-5	주강
대한제강노동조합	890420	김 재 한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 - 16	철강
동국제강노동조합	870901	서 복 호	부산시 남구 용호 1 동 177	철근
동기브레이크노동조합	890828	김 찬 식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527	라이닝
동승기업노동조합	870901	추 진 호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 1 동 791-1	기계부속
동아금속노동조합	871017	장 진 용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79 - 7	기계부속
동아전기노동조합	770801	이 원 복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8	기계부속
동영공업노동조합	871018	서 병 준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48 - 9	밸브
동화정기노동조합	870910	김 재 술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506 - 2	선박의장
문화공업노동조합	931111	권 상 근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361 - 7	자동차부품
부산링구노동조합	780430	김 병 옥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503-1	차량부품
부산선박목의장노동조합	930324	박 후 철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2 가 77	선박수리
부산수리조선노동조합	870620	김 민 원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5 가 29	선박수리
부산정기노동조합	790301	김 규 호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521 - 3	차량부품
부산주공노동조합	880420	서 영 택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15	주물
부영철강노동조합	890703	박 호 길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24-5	선재압연
삼공사노동조합	870213	류 국 부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532	선박비
삼창중공업노동조합	790629	남 상 록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32-2	산업기계
삼천리열처리노동조합	870824	서 중 울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353 - 5	기계부품
성광밴드노동조합	751119	안 용 길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520	밴드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세동산업노동조합	880418	전 채 목	부산시 남구 감만 1 동 254 - 48	금속용기
세웅증합건설노동조합	890320	오 태 일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5 가 29	선박
세진노동조합	890202	석 정 린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529	조선업
신동방노동조합	751109	류 필 열	부산시 연제구 연산 1 동 581 - 4	철문
연합조선노동조합	571015	이 창 만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1 가 122	조선업
연합철강노동조합	770212	강 진 호	부산시 남구 감만동 588 - 1	냉연강판
오리엔탈정공노동조합	900217	권 동 재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 - 18	조선자재
적고노동조합	880712	이 승 우	부산시 사하구 감천 1 동 702	기계부품
제일전기노동조합	770319	조 성 래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 - 31	스윗치
제일중기노동조합	760225	오 성 택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519-3	산업기계
조광공업노동조합	891211	심 규 섭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515-14	밸브
조기노동조합	671217	강 영 일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1 가 99	기계수리
조선선재노동조합	880726	전 용 구	부산시 남구 우암 1 동 39	용접봉
태광벤드노동조합	760206	양 재 권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534	벤드
태양금속노동조합	960523	변 성 진	부산시 사하구 장림1동 1089-5	도금
태양사노동조합	870811	이 형 연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 267 - 1	식기류
한국선재노동조합	890508	최 승 진	부산시 사상구 감전 1 동 148-1	도금철사
한국오루강침노동조합	890406	정 운 국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660 - 1	미십바늘
한국주철관노동조합	800419	차 윤 환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 - 19	주물
한보부산제강소노동조합	800226	최 창 대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90	철강
한일밸브노동조합	950216	윤 승 제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154-1	철강
한진섬유기계노동조합	700410	오 봉 출	부산시 금정구 부곡4동 799 - 3	직기제작
한창트랜스노동조합	930506	박 경 덕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 158-6	트랜스
형진공업노동조합	890716	민 규 식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18 - 6	못,철사

8) 경남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1. 1. 9.
 ②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용호동 73 번지
 ③ 전화 번호 : (0551) 84 - 4021 FAX : (0551) 87 - 5052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강 석 수	창 원 공 업	96. 4. 19.
부 의 장	정 한 식	LG전자 창원1지부	96. 4. 19.
부 의 장	김 영 준	LG전자 창원2지부	96. 4. 19.
부 의 장	김 환 수	세 방 전 지	96. 4. 19.
부 의 장	박 한 봉	삼 성 라디에타	96. 4. 19.
부 의 장	임 태 진	한 국 철 강	96. 4. 19.
부 의 장	최 정 호	한 국 씨 티 즈	97. 1. 30.
부 의 장	이 동 호	한 일 제 관	96. 4. 19.
부 의 장	차 성 탁	LG 전 자 부 품	97. 1. 30.
부 의 장	강 현 호	대 동 기 어	96. 4. 19.
부 의 장	김 성 천	한 국 스 핀 들	96. 4. 19.
부 의 장	박 양 현	풍 성 전 기	97. 1. 30.
회계감사	박 재 원	동 호 전 기	96. 4. 19.
회계감사	이 문 호	효 성 기 계	96. 4. 19.
회계감사	서 기 호	태 평 양 밸 브	96. 4. 19.

⑤ 경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고려상사노동조합	870321	김 진 섭	경남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131-1	와이어로프
고려파이프노동조합	960622	박 지 환	경남 창원시 성산동 65	파이프
대동기어노동조합	760526	강 현 호	경남 사천군 사남면 유천리 71	각종기어
대동정비노동조합	891004	하 상 기	경남 진주시 상대 2 동 33 - 126	자동차정비
대동조선노동조합	880827	현 억 조	경남 진해시 원포동 139	조선업
대명공업노동조합	881124	이 신 호	경남 창원시 팔룡동 24 - 1	증장비부품
대신공업노동조합	870821	윤 영 진	경남 사천군 사남면 월성리 413	농기계부품
대신금속노동조합	961126	이 덕 세	경남 창원시 팔룡동 24	특수차부품
대창크랭크노동조합	931022	김 경 중	경남 김해군 생림면 나전리 685	크랭크
동진전기노동조합	890216	정 남 진	경남 김해군 진영읍 죽곡리 9 - 4	전기모타
동호전기노동조합	880530	박 재 원	경남 진양군 지수면 송내리 산 58-1	컴퓨터헤드
두원중공업노동조합	800114	정 진 용	경남 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650	해상기
삼성라디에터노동조합	850404	박 한 봉	경남 창원시 내동 456 - 4	라디에타
삼송노동조합	880128	김 호 규	경남 창원시 성주동 52 - 3	자동차안전벨트
삼우금속노동조합	800610	최 경 호	경남 창원시 남산동 604 - 17	표면처리
삼원금속노동조합	770502	김 유 규	경남 김해시 안동 430 - 5	안테나
삼천리자전거노동조합	601024	고 선 일	경남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289	자전거
삼한노동조합	870813	진 옥 규	경남 창원시 웅남동 40 - 2	자동차부품
상농기업노동조합	780828	문 열 주	경남 양산시 유산동 476 - 68	프라스틱사출
세방전지노동조합	760728	이 중 철	경남 창원시 남산동 601 - 2	축전지
세신노동조합	751120	이 유 정	경남 양산시 유산동 334 - 14	공구
세신정밀노동조합	800421	정 병 철	경남 양산시 산막동 311	주방기구
세원중공업노동조합	881102	허 영 환	경남 창원시 신촌동 72	프렌트
세일공업노동조합	880414	백 기 형	경남 진주시 상대동 33 - 50	농기구
수산스타노동조합	870819	김 용 환	경남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974 -7	프린트
스리스타노동조합	890426	김 덕 관	경남 창원시 성주동 53-2	알미늄라디에타
양지금속노동조합	881206	곽 평 호	경남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3 - 4	
영진기계노동조합	890318	김 익 수	경남 김해시 안동 161 - 7	자동차부품
영흥철강노동조합	870917	윤 삼 수	경남 창원시 신촌동 71 - 1	와이어로프
우신흥산노동조합	890817	최 기 자	경남 양산군 양산읍 하북정리 291-6	손톱깎기
적고정밀노동조합	960430	이 명 우	경남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1 - 4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제일정밀노동조합	810618	권 창 수	경남 창원시 내동 456 - 8, A 2 브록	정밀부품
진흥철강노동조합	880310	박 정 화	경남 양산시 유산동 333 - 1	아연철선
창신산업노동조합	871006	김 영 철	경남 창원시 양곡동 192 - 4	농기계
창원공업노동조합	870907	이 동 수	경남 창원시 남산동 604 - 4	단조품
창원기화기노동조합	871022	조 용 환	경남 창원시 이동 853 - 12	자동차부품
충무연합조선노동조합	860503	김 점 덕	경남 통영시 봉평동 162 - 4	목조선
코렉스스포츠노동조합	880503	변 학 기	창원시 성산동 70 번지(사서함 75호)	자전거
태양코팅노동조합	890902	김 희 열	경남 창원시 성산동 43	주방기구
태주실업노동조합	880909	이 인 호	경남 창원시 성주동 48 - 5	주물
태평양밸브노동조합	890324	서 기 호	경남 양산시 산막동 310-8	밸브
태화기계노동조합	790706	최 종 룰	경남 창원시 남산동 604-5	각종연삭공
풍성전기창원노동조합	890308	박 양 현	경남 창원시 성산동 47	전장품
풍성정밀노동조합	800515	이 재 근	경남 창원시 외동 853 - 11	자동차계기
한국NOK이글노동조합	960325	정 익 수	경남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38	
한국동양유전노동조합	870820	이 동 명	경남 통영시 도남1동 468	전자부품
한국삼미노동조합	920207	구 향 주	경남 진해시 이동 1	전자부품
한국스핀들노동조합	880718	김 성 천	경남 김해시 안동 161 - 12	전자부품
한국시티즌노동조합	871210	최 정 호	경남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654-4	시계
한국일선노동조합	880705	조 영 철	경남 마산시 양덕동 974-17	전자부품
한국정상화성노동조합	880704	심 문 보	경남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654-4	싸이클튠브
한국중천노동조합	870811	최 해 경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974 - 17	타임스위치
한국지엠비노동조합	881115	길 윤 근	경남 창원시 성산동 48	자동차부품
한국카시오노동조합	890203	이 선 중	경남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654 - 4	전자시계
한덕산업노동조합	881014	전 영 섭	경남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658 - 10	못
한일기계노동조합	900118	하 영 황	경남 양산군 웅상읍 덕계리 89-12	자동차부품
한일제관노동조합	870817	이 동 호	경남 양산시 유산동 211	캔
한진금속노동조합	810309	김 현 옥	경남 진해시 남양동 360 - 1	주물
한화기계노동조합	630225	장 준 영	경남 창원시 내동 452-9	베어링
효성기계노동조합	830326	이 문 호	경남 창원시 성산동 77	모타싸이클

9) 울산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9. 9. 1.

② 소재지 :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3동 168 - 7

③ 전화 번호 : (0522) 76 - 5880 FAX : (0522) 74 - 9631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김 복 천	정 일 공 업	96. 1. 17.
부 의 장	신 택 기	L G 금 속	95. 10. 10.
사무국장	김 우 배	덕 양 산 업	96. 6. 27.
교육선전국장	노 현 돈	동 회 산 업	94. 12. 1.
회계감사	조 한 제	고 려 아 연	96. 6. 27.

⑤ 울산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LG금속노동조합	830321	신 택 기	울산시 울주구 온산읍 대정리 70	동판등
고려아연노동조합	771009	조 한 제	울산시 울주구 온산면 대정리 505	아연괴
금강공업노동조합	900811	백 동 현	울산시 울주구 삼남면 가천리 140-25	건설자재
대일공업노동조합	850607	오 세 영	울주구 두서면 전음리 두서농공 302	자동차부품
대한알루미늄노동조합	780803	남 송 희	울산시 중구 여천동 1	인코트
덕양산업노동조합	870810	김 우 배	울산시 중구 연암동 945	자동차부품
동희산업노동조합	870811	김 태 년	울산시 남구 개운동 218	자동차부품
부산기업노동조합	890508	강 성 구	울산시 남구 여천동 750 - 2	자동차부품
삼주기계노동조합	881216	문 성 일	울산시 중구 효문동 750 - 1	자동차부품
세운공업노동조합	870813	박 용 도	울산시 중구 연암동 936	자동차부품
우영산업노동조합	870829	연 기 섭	울산시 중구 연암동 714 - 15	자동차부품
정일공업노동조합	870912	김 복 천	울산시 중구 효문동 212 -11	자동차부품
정일기업노동조합	881004	박 복 순	울산시 중구 양정동 700	자동차부품
진도노동조합	850131	조 동 형	울산시 울주구 상북면 길천리 1 - 26	콘테이너
한진프라스틱노동조합	960628	문 부 근	울산시 중구 연암동 728	자동차부품
현대공업노동조합	890321	최 상 돌	울산시 남구 부곡동 산 271-6	자동차부품

10) 대구.경북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1. 1. 10.

②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4 - 73

③ 전화 번호 : (053) 564 - 0128 FAX : (053) 564 - 0127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지도위원	장 지 태	경 창 산 업	96. 1. 30.
의 장	김 무 호	한국과워트레인	“
부 의 장	권 대 훈	영 진	“
“	윤 승 오	화 신	“
“	이 복 교	삼 립 산 업	“
“	김 춘 종	미 주 금 속	“
“	정 한 근	동 해 전 장	“
회계감사	전 봉 진	성 신	“
회계감사	박 인 환	대 원 기 계	“
회계감사	손 순 석	신 아 금 속	“
회계감사	김 형 호	대 동 금 속	“
기획실장	나 영 섭	일 지 산 업	“
사무국장	주 태 화	삼 성 제 침	“
조직국장			
교육국장	김 윤 이	삼 협 산 업	“
총무부장	서 윤 배	평 화 발 레 오	“
조직부장	신 석 곤	평 화 산 업	“
교육부장	남 달 희	대 철	“
조사통계부장	복 윤 규	경 용 기 계	“
노사대책부장	이 중 환	삼 익 공 업	“
복지부장	조 성 철	창 원 기 화 기	“
기획부장	김 연 국	한국과워트레인	“
체육부장	김 채 민	삼 립 전 기	“
안전대책부장	안 병 호	남 선 알 미 늬	“
법규부장	이 인 철	삼 도 기 전	“
홍보부장	김 순 창	평 화 정 공	“

⑤ 대구.경북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건영중강노동조합	961016	김 인 상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922-11	
경창산업노동조합	850720	장 지 태	대구시 서구 중리동 1072	자동차부품
경창와이퍼시스템노동조합	880907	백 영 식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400 - 86	자동차부품
경창정공노동조합	880909	김 인 태	대구시 북구 검단동 887 - 13	자동차부품
금용기계노동조합	900324	복 윤 규	대구시 북구 노원 3 가 666 - 1	기계제작
남산알미늄노동조합	680825	안 병 호	대구시 동구 방촌동 1050	알미늄
남양금속노동조합	881109	조 희 성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본리리 29	주물
대동금속노동조합	880216	김 형 호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본리동 29-18	주물
대리정밀노동조합	880714	임 종 춘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북리 1-121	자동차부품
대성정기노동조합	900410	권 광 희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400 - 32	자동차부품
대원기계공업노동조합	881010	박 인 환	대구시 서구 이현동 44 - 26	섬유기계
대철노동조합	701022	남 달 희	대구시 북구 노원 3 가 205 - 1	자동차부품
대한소결금속노동조합	881021	이 영 우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본리리 29-10	다이캐스팅
대한중석노동조합	810121	이 용 대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304	
동국강재노동조합	881101	공 석 철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북리 1 - 16	철골
동서물산노동조합	880413	이 길 호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100 - 45	쌀고제작
동양주물노동조합	880319	최 원 규	대구시 서구 중리동 1120	주물
동원금속대구노동조합	900201	윤 화 진	대구시 서구 이현동 42 - 6	자동차부품
동해전장노동조합	890227	정 한 근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3 - 3	자동차부품
명성기계노동조합	890607	김 종 호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587-11	자동차부품
미주금속노동조합	780816	김 춘 종	대구시 서구 이현동 42 - 39	자동차부품
미주실업노동조합	960708	김 영 찬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고봉리 226-5	
삼도기전노동조합	870824	이 인 철	대구시 서구 이현동 45 - 55	자동차부품
삼립산업노동조합	680618	이 복 교	대구시 북구 노원 3 가 236 - 3	자동차부품
삼립전기노동조합	910410	김 채 민	대구시 북구 검단동 887 - 4	자동차부품
삼익공업노동조합	870818	이 중 환	대구시 북구 침산동 750	줄
삼익정공노동조합	890816	오 탁 상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925-2 42 B-3L	기계제작
삼협산업노동조합	870328	김 윤 이	대구시 달서구 장동 647 - 3	자동차부품
상신브레이크노동조합	870729	김 대 용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북리 1-37	브레이크라이닝
성산노동조합	890309	전 봉 진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 43 B 4 L	자동차부품
신생공업노동조합	720601	이 영 웅	대구시 북구 침산 3 동 260 - 1	튕날
쌍용중공업대구공장노조	750410	이 경 문	달서구 성서 2차단지 1지구 18B 2L	섬유기계
아세아산업노동조합	800301	이 회 도	달서구 월성동 1788 성서2단지 2지구 34L	농기계
아세아종합기계노동조합	870621	윤 태 길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금동 168	농기계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영남주물노동조합	711001	박 민 식	대구시 북구 노원 3 가 234	주물
영일기공노동조합	891205	권 오 갑	대구시 북구 검단동 887 - 31	자전거부품
영진노동조합	851115	권 태 훈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100 - 52	자동차부품
영풍제관노동조합	890531	이 성 곤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본리동 29 - 42	음료수캔
이수전자노동조합	890420	최 진 희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본리동 29 - 54	
평화발레오노동조합	890128	서 윤 배	대구시 달서구 장동 성서공단 105 B	자동차부품
평화산업노동조합	750410	신 석 곤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본리리 29 - 17	자동차부품
평화오일쉴노동조합	781014	유 길 호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본리리 29 - 88	자동차부품
평화정공노동조합	880920	김 순 창	대구시 서구 중리동 1055	자동차부품
한국브레트노동조합	920610	김 석 진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본리동 103-21	숏트볼
한국성산노동조합	950426	백 승 조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본리리 103-31	
한국파워트레인노동조합	731130	김 연 국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597-10	자동차부품
협업제작소노동조합	680610	신 기 봉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358-87	양산
화신테크노동조합	880429	손 민 호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44 B - 2 L	자동차부품
경신공업노동조합	931104	서 동 해	경북 경주시 황성동 42	자동차부품
남중농기사노동조합	830327	노 하 철	경북 김천시 신음동 111 - 1	농기계
대부기공노동조합	890518	홍 정 표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12 - 2	자동차부품
대영베어링노동조합	810331	전 재 광	경북 김천시 신음동 79 - 3	베어링
대한전선영주공장노조	950714	김 택 우	경북 영주시 적서동 250	스테인레스
동아산업노동조합	961018	박 동 식	경북 경주시 황성동 1074	
동원금속노동조합	891124	김 상 권	경북 경산시 진량면 양지동 330 - 1	자동차부품
삼립정공노동조합	920615	조 채 웅	경북 경산군 진량면 당곡리 산 22-1	자동차부품
삼성제침노동조합	910527	주 태 화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997-2	제침
세명기업노동조합	750619	오 재 학	경북 경산시 진량면 진량공단 1120	자동차부품
세왕금속노동조합	870827	이 동 구	경북 영천시 망정동 390	병뚜껑
세원물산노동조합	870828	손 광 희	경북 영천시 도남동 196	
신삼익노동조합	880818	이 상 준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991-6	쌀고
신아금속노동조합	841026	손 순 석	경북 영천시 본촌동 440	자동차부품
영신정공노동조합	890520	권 진 택	경북 경주군 천북면 오야리 408	자동차부품
유진전장노동조합	930712	강 환 영	경산시 진량면 선상리 1210-2	자동차부품
일지산업노동조합	890201	나 영 섭	경북 경산시 진량면 신상리 1210-3	자동차부품
전우개발노동조합	881208	민 경 선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360	변압기
진영종합기계노동조합	810314	한 재 원	경북 김천시 대광동 1000 - 28	농기계
화신노동조합	880504	윤 승 오	경북 영천시 연하동 412	자동차부품

11) 구미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93. 2. 10.
 ② 소재지 : 구미시 공단동 262 - 2 번지
 ③ 전화 번호 : (0546) 464 - 3643 FAX : (0546) 464 - 3643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박 병 도	L G 정 밀	96. 11. 15.
부 의 장	천 광 회	L G 전자 1지부	“
부 의 장	장 석 춘	L G 전자 2지부	“
부 의 장	장 인 환	대 우 전 자	“
부 의 장	김 경 구	델 코	“
부 의 장	한 경 석	클레스트라하우저만	“
사무국장	신 송 근	동국종합전자	“
조직국장	김 유 연	LG 실 트 론	“
노사대책국장	김 상 일	정 화	“
기획홍보국장	김 진 섭	한 국 신 영	“
교육선전국장	김 충 원	새 한 전 자	“
문화체육국장	이 상 근	두 산 전 자	“
회계감사	김 현 철	한국대화금속	“
회계감사	이 명 희	고 려 전 기	“

⑤ 구미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LG마이크로닉스노동조합	870814	노 승 표	구미시 구포동 624	새도우
LG반도체노동조합	900209	강 영 철	구미시 임수동 171	반도체
LG정밀노동조합	870817	이 상 민	구미시 공단동 133	계측기
LG정보통신노동조합	830705	이 규 성	구미시 공단동 299	교환기
고려전기노동조합	901126	이 명 회	구미시 공단동 171	고일
동국종합전자노동조합	870813	신 송 근	구미시 공단2동 321	카세트
두고전자노동조합	890208	임 순 용	구미시 공단동 163	PCB히타
두산전자노동조합	870820	이 상 근	구미시 구포동 644	키판원판
새한전자노동조합	880622	김 충 원	구미시 공단동 130 - 7	키판원판
신성기업노동조합	881023	이 완 석	구미시 공단동 153	PCB
실트론노동조합	890106	김 유 연	구미시 임수동 274	반도체
오리온금속노동조합	880818	김 우 철	구미시 공단동 148	CRT부품
일성기계노동조합	820903	김 장 수	구미시 공단동 194	염색기
정화노동조합	740611	김 상 일	구미시 공단동 169	PCB
클레스트라하우저만노조	890224	한 경 석	구미시 황상동 502 - 4	철재칸막이
태평양금속노동조합	880728	김 길 득	구미시 공단동 298	영구자석
한국대화금속노동조합	890320	김 현 철	구미시 공단동 128	샷시
한국델코전지노동조합	870819	김 경 구	구미시 황상동 495	자동차배터리
한국신영노동조합	870818	김 진 섭	구미시 공단동 162	콘덴서
한국아이지모타노동조합	890406	권 영 미	구미시 공단동 142	소형모타

12) 포항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91. 11. 23.

② 소재지 : 포항시 남구 대도동 632 - 11

③ 전화 번호 : (0562) 83 - 3728 FAX : (0562) 83 - 3729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백 종 부	부산파이프	96. 12. 8.
부 의 장	강 학 중	그 린 산 업	“
부 의 장	김 형 복	동 일 철 강	“
사무국장	김 도 론	현대종합금속	“
조직국장	강 진 유	성 우 정 공	“
노사대책국장	이 동 익	동 일 기 업	“
기획국장	김 우 석	화 성 기 업	“
회계감사	김 병 수	세아특수강	“
회계감사	김 용 수	코 스 티	“

⑤ 포항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 조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그린산업노동조합	880701	강 학 중	포항시 남구 대도동 94-1 보훈후생관 5층	철강
동방금속공업노동조합	890701	이 재 광	포항시 남구 호동 567	특수선재
동일기업노동조합	880704	이 동 익	포항시 남구 해도 1동 432-1	철강
삼정강업노동조합	890208	장 영 재	포항시 남구 괴동동 967	철강
성우정공노동조합	890610	강 진 유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28	자동차부품
세아제강노동조합	740311	박 철 우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1	강관
세아특수강노동조합	890321	김 병 수	포항시 남구 장흥동 747	냉각압조용
조선선재노동조합	881210	전 문 중	포항시 남구 장흥동 865	선재
코스틸노동조합	880424	김 용 수	포항시 남구 호동 286	철근
포철노재정비부문노조	880629	신 갑 식	포항시 남구 호동 611	고로보수
포철산기노동조합	880629	강 기 태	포항시 남구 장흥동 322 - 4	정비
한금노동조합	901205	오 정 회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74	냉간압연
화성기업노동조합	890324	김 우 석	포항시 남구 해도1동 8-8	철강
흥화공업노동조합	870825	장 세 중	포항시 남구 괴동동 117	철구조물

13) 광주.전남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0. 12. 30.

② 소 재 지 : 전남광역시 북구 유동 40 번지

③ 전화 번호 : (062) 524 - 8581 FAX : (062) 528 - 8671

④ 임원 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정 기 춘	화 천 기 공	96. 1. 23.
부 의 장	김 응 표	LG전자부품	96. 1. 23.
부 의 장	김 상 곤	태 성 기 공	96. 1. 23.
사무국장	신 용 석	LG전자부품	96. 1. 23.
회계감사	권 일 수	서 울 차 체	96. 1. 23.
회계감사	장 경 식	부 국 철 강	96. 1. 23.
회계감사	김 영 수	광 동 정 밀	96. 1. 23.

⑤ 전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LG전자부품노동조합	741007	김 응 표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78 - 1	전자부품
광동정밀노동조합	910424	김 영 수	전남 승주군 서면 선평리 256 - 5	제철
금성기계노동조합	780404	문 병 주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84	자동차부품
남선선반노동조합	780719	김 동 회	광주시 광산구 오선동 273 - 6	공작기계
로케트전기노동조합	760213	남 규 현	광주시 북구 일곡동 758	
부국산업노동조합	881101	김 동 인	전남 광양시 금호동 644	제철
부국철강노동조합	881108	장 경 식	광주시 광산구 안청동 738-1	제철
부성시트노동조합	960506	문 만 오	광주시 서구 마록동 162 - 10	자동차부품
아름기공노동조합	870811	김 경 범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곡리 681 - 1	유압유니트
일진산업노동조합	870820	강 성 찬	광주시 광산구 안청동 729 - 6	자동차시트
천기제강노동조합	850617	이 길 남	전남 순천시 서면 석평리 291	와이어로프
케엠사노동조합	911126	김 영 환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854	밀장뼈
태성기공노동조합	881224	김 상 곤	전남 승주군 서면 압곡리 720	제철
하남전자노동조합	850317	박 기 출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85 - 1	알미늄
한국신광전자노동조합	891126	유 영 수	전남 승주군 서면 선평리 35	전자부품
한국알프스노동조합	890516	조 삼 담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70 - 1	전자부품
화천기공노동조합	770328	송 응 규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76 - 1	전자부품

14) 전북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96. 4. 10.
 ② 소재지 : 전북 군산시 소룡동 466
 ③ 전화 번호 : (0654) 63 - 8637 FAX : (0654) 63 - 8637
 ④ 임원 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백 병 기	우 민 주 철	96. 4. 10.
부 의 장	양 남 용	동 양 기 업	96. 4. 10.
사무국장	강 철 순	회 성 전 선	96. 4. 10.
회계감사	김 순 남	한 화 기 계	96. 4. 10.
교육국장	김 두 한	대 봉 전 선	96. 4. 10.

⑤ 전북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기아특수강노동조합	660506	이 정 석	전북 군산시 소룡동 1 - 6	철도차량
대봉전선노동조합	890305	김 두 한	전북 익산시 팔봉동 839 - 1	전선마그넷
동양기업노동조합	880428	양 남 용	전북 군산시 경암동 486 - 7	재단가위
우민주철노동조합	871110	백 병 기	전북 군산시 소룡동 466	상수도관

15) 강원지역산하 단위노조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도루코산업노동조합	950629	유 갑 열	원주시 문막읍 건동리 203 - 1	주방기구
속초지역노동조합	700126	신 종 찬	속초시 금호동 482-5 근로복지회관	조선수리
쌍용중공업산기노동조합	960511	김 선 기	동해시 삼화동 200	기계설비
이수세라믹노동조합	930714	정 규 문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5-12	세라믹
한일전기노동조합	751021	우 태 울	원주시 우산동 공업단지 10 브릭	가전제품

2. 지부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LG산전노동조합 서울지부	870701	김 성 수	충구 을지로 2 가 165 - 1 (동화빌딩2층)
LG전자노동조합 서울지부	630530	이 칠 구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9 - 9
대한전선노동조합 시흥전선지부	760615	김 형 식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13 - 119
대한전선노동조합 시흥계전지부	760615	김 영 배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96
LG금속노동조합 장항지부	830127	설 광 섭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78
동아건설노동조합 천안지부	740629	류 근 식	충남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315 - 4
진로인더스트리츠노동조합 목천	910701	강 태 근	충남 천안군 목천면 소사리 242-2
LG산전노동조합 천안지부	870727	최 진 구	충남 천안군 목천면 삼성리 181
동아건설노동조합기계사업소지부	880611	정 세 영	충남 아산시 실옥동 250
경신공업노동조합 아산지부	890713	강 홍 진	충남 아산군 음봉면 덕지리 463-5
현대전자노동조합 청주지부	941001	윤 동 현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37-21
LG산전노동조합 청주지부	740319	이 윤 탁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
LG전자노동조합 청주지부	630530	권 종 안	충북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50
두산전자노동조합 증평지부	881015	배 부 관	충북 괴산군 증평읍 용강리 산 661
삼화전기노동조합 충주지부	960201	박 철	충북 충주시 목행동 240-4
동양철관노동조합 충주지부	910126	박 종 선	충북 충주시 용탄동 168
동국제강노동조합 인천지부	890220	김 재 업	인천시 동구 송현3동 1
대우전자노동조합 인천지부	830328	전 용 구	인천시 남구 용현5동 604
LG산전노동조합 인천지부	870725	안 효 균	인천시 남구 주안동 1385 - 1
태평양금속노동조합부평지부	870817	신 춘 승	인천시 북구 갈산동 14-3
동부제강노동조합 인천지부	660429	백 승 탁	인천시 서구 가좌동 590 - 1
대림통상노동조합 인천지부	860901	김 정 남	인천시 서구 가좌동 539 - 2
경신공업노동조합 인천지부	871001	김 현 숙	인천시 서구 가좌동 538 - 3
대우전자노동조합 주안지부	830328	김 정 근	인천시 서구 가좌3동 541 - 5
대림통상노동조합 김포지부	870813	김 효 중	인천시 서구 금곡동 158 - 6
대우통신노동조합 소래지부	810302	강 인 호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360 - 3
신호금속노동조합 시흥지부	920510	유 대 종	시흥시 시화공단 3나 706 1277-5 번지
서울차량노동조합 시흥지부	671003	백 정 훈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272
한영알미늄노동조합 안산지부	761024	김 윤 식	안산시 원시동 833 - 2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대한전선노동조합 안산지부	870808	이 항 래	안산시 성곡동 603번지 20블럭
롯데알미늄노동조합 반월지부	760408	김 천 섭	안산시 원시동 822
삼도기전노동조합 안산지부	880324	오 세 광	안산시 성곡동 605 - 9
대경화성노동조합제2공장지부	930331	김 남 수	안산시 성곡동 638 번지
서울차체노동조합 반월지부	671013	고 홍 선	안산시 신길동 1125
반도기계노동조합반월지부	890703	박 태 영	안산시 신길동 1058 - 7
대한전선노동조합 안양전선지부	760615	신 향 철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785
LG전선노동조합 안양지부	670512	방 한 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
LG전선노동조합 군포지부	870924	조 홍 수	경기도 군포읍 당정동 200
한일제관노동조합 수원지부	870817	김 진 국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와우리 12
일진노동조합 통신지부	870822	송 정 규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안녕 2 리 산 7
LG산전노동조합 오산지부	870727	임 찬 섭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736
LG전자노동조합 오산지부	710514	이 명 학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379
세진전자노동조합 오산지부	770123	유 재 열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157
LG전자노동조합 평택지부	630530	박 노 원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청호리 산 19 - 1
정일공업노동조합 평택지부	870921	정 기 열	경기도 평택군 고덕면 율포리 28 - 5
동아건설노동조합 미사리지부	740629	백 락 재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5 - 5
대우전자노동조합 여주지부	870902	신 중 철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점동리 185
서울차체노동조합 광주지부	671013	김 형 곤	광주시 서구 내방동 643
세방전지노동조합 광주지부	891216	이 관 우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500 - 4
대우전자노동조합 광주지부	830402	조 정 훈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81 - 1
포철노재정비부문노조 광양지부	880723	천 용 택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57-2
삼정강업노동조합 광양지부	890805	박 상 옥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55 - 1
희성전선노동조합 전주지부	890124	강 철 순	전북 전주시 팔복동 3 가 408
동아건설노동조합 부산지부	871108	김 덕 갑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 - 37
고려제강노동조합 수영지부	820606	이 재 근	부산시 남구 망미동 475
동부제강노동조합 부산지부	660429	김 세 호	부산시 북구 학장동 725 - 4
LG전자노동조합 김해지부	791009	김 권 하	경남 김해시 안동 259 - 1
적고노동조합 김해지부	880712	이 성 숙	경남 김해군 진영읍 죽곡리 10-1 유목농공
LG전자부품노동조합 양산지부	741007	차 성 탁	경남 양산시 북정동 191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고려제강노동조합 유산지부	840815	박 병 도	경남 양산시 유산동 127 - 27
고려제강노동조합 양산지부	850613	홍 종 성	경남 양산군 상북면 소토리 753 - 1
LG전자노동조합 창원1지부	630505	정 한 식	경남 창원시 가음정동 391 - 2
삼선공업노동조합 창원지부	880622	남 상 규	경남 창원시 성주동 54
동아건설노동조합창원볼트지부	920125	송 식 진	경남 창원시 대원동 91 - 92
세아제강노동조합 창원지부	740311	윤 종 삼	경남 창원시 웅남동 50
LG산전노동조합 창원지부	870701	심 만 재	경남 창원시 성산동 74
서울차체노동조합 창원지부	671013	이 지 택	경남 창원시 차룡공단 10 - 3 블록
LG전자노동조합 창원2지부	880122	김 영 준	경남 창원시 성산동 76
대한제당노동조합 울산지부	900213	최 병 우	울산시 남구 용잠동 480
대일공업노동조합 연양지부	850605	서 삼 석	울산시 울주구 상북면 양동리 216
창원기화기노동조합 대구지부	930312	조 성 칠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095 - 11
남선알미늄노동조합 달성지부	680825	김 선 희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본리동 29 - 13
LG전선노동조합 구미지부	670512	김 중 기	구미시 공단동 190
LG전자노동조합 구미1지부	630505	천 광 회	경북 구미시 공단동 184
대우전자노동조합 구미지부	830328	장 인 한	경북 구미시 공단동 296
LG전자노동조합 구미2지부	920124	장 석 춘	경북 구미시 진평동 6 B
LG전자노동조합 구미3지부	950308	변 재 환	경북 구미시 진평동 642
화신노동조합도남지부	970228	최 장 국	경북 영천시 도남동 193
화신노동조합봉동지부	880504	이 석 기	경북 영천시 봉동 646
경신공업노동조합 강동지부	871001	송 경 하	경북 경주군 강동면 오금리 산 11
동국제강노동조합 포항지부	870901	김 정 영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67
동부제강노동조합 포항지부	880720	한 규 호	경북 포항시 괴동동 792 - 1
한국주철관노동조합 포항지부	890117	김 말 내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 - 138

3. 신규조직현황

노 동 조 합 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소 재 지	주 생산품
대성정공	강 병 찬	96. 4. 9.	인천시 고잔동 남동공단 2단지	컴퓨터부품 리프트
알리막	고 남 곤	96. 4. 26.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138-1	
부일산업	이 호 진	96. 4. 30.	양산시 웅상읍 소추리 35	
광명산업	문 용 기	96. 5. 9.	아산시 영인면 역리 340-30	자동차부품 기계설비 변압기
쌍용중공업산기	김 선 기	96. 5. 11.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200	
진 광	이 상 철	96. 5. 16.	용인시 남사면 풍리 705	
경동냉열산업	백 보 현	96. 5. 22.	부산시 사하구 장림1동 528	기계금속
태양금속	변 성 진	96. 5. 23.	“ 1089-5	
신광정밀	정 팔 용	96. 6. 14.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3B 2L	
진보공업	전 승 재	96. 6. 27.	경기도 송탄시 모곡동 436-7	자동차부품
한진프라스틱	강 경 택	96. 7. 3.	울산시 중구 연암동 728	“
미주실업	김 영 찬	96. 7. 8.	달성군 논공면 고봉리 226-5	“
성일산업	김 춘 호	96. 8. 12.	천안시 성남면 용원리 97	“
한성기계	김 성 백	96. 8. 19.	군산시 소룡동 537-1	“
유림전자	장 정 순	96. 8. 28.	남동구 남동공단 32B 11L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
건영중강	김 인 상	96. 10. 16.	달서구 월암동 922-11	
동아산업	박 동 식	96. 10. 18.	경주시 황성동 1074	
동양사	이 순 녀	96. 10. 25.	시흥시 은행동 286-5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 다트시설
평산공업	김 진 호	96. 10. 28.	아산시 산점리 170-1	
대승	권 무 영	96. 11. 25.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325-4	
서흥강재	박 종 희	96. 12. 3.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280	디스켓복제 병마개 자동차부품
정문정보	홍 전 화	97. 1. 18.	화성군 동탄면 영천리 122-5	
삼화왕관	이 효 주	97. 2. 5.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	
명화공업	서 문 수	97. 2. 28.	안산시 원시동 720-2	자동차부품
동서기공	김 종 춘	97. 3. 12.	시흥시 정왕동 1292-5	
도로코엔지니어링	신 종 윤	97. 3. 31.	시흥시 논곡동 162-3	

4. 임원개선 조직체 현황 (대표자)

노동조합 명	대 표 자		임원(대표자) 개 선 일 자			대 회 구 분
	신	구				
서울지역						
거평시그네텍스	김원종	최현숙				임시총회
남성 텔레콤	김명란	오갑순	97.	2.	21.	정기총회
동 해	이회영	이경옥	97.	2.	1.	“
로옴코리아	양명연	박순자	96.	7.	26.	“
롯데알미늄	이국만	전기홍	97.	1.	4.	“
롯데 전자	안재현	차명재	96.	8.	14	“
경기지역						
기 경 실 업	이금호	이문경	97.	2.	28.	
동화계량기	박귀배	왕환규				
풍 정 산 업	안재식	이문식	97.	3.		
동 서 기 공	김종춘	박성진	97.	3.		
동 회 산 기	설한수	이규익	97.	3.		
창 흥 정 밀	최진수	김기섭				
두 원 정 공	박홍석	정춘식				
LG산전(지부)	임찬석	유태승	97.	1.	1.	
이화다이아몬드	서성원	성세현				
경 용 기 계	송두영	유한국				
대 덕 산 업	박광원	송성수	96.	12.	28.	
삼 목 강 업	박용국	남진우	96.	12.		
배 명 금 속	김원덕	이순구				
인천지역						
미 주 제 강	이강전	장영일	96.	8.	30.	정기총회
신 호 스 털	박창욱	양정우	96.	12.	24.	“
대 한 제 쇠	조태홍	한해근	97.	2.	22.	“
신 양 전 기	유기화	유재원	97.	2.		“
충남지역						
FKL 동 화	심수경	박준택	96.	10.	8.	임시총회
수 산 특 장	김성규	이광세	97.	2.	26.	정기총회
진로인더스리즈	강웅석	김종덕	96.	9.	1.	정기총회
포스코홀스	이승재	전수문	97.	3.	8.	정기총회
한 성 실 업	안성환	박근수	97.	8.	1.	정기총회

노동조합 명	대 표 자		임원(대표자) 개 선 일 자	대 회 구 분
	신	구		
부산지역				
극 동 금 속	김대성	성민기	97.	임시총회
(주) 대 성	조현기	류대열	96. 9. 12.	정기총회
대 일 공 업	오세웅	전형태	97.	“
대창 크랑크	김경중	이준기	97. 10. 20.	“
동기브레이크	김찬식	김영수	96. 11. 1.	“
동 승 기 업	추진호	백진현	96. 9. 2.	“
동 아 금 속	장진용	윤상의	96. 11. 1.	“
성 광 밴 드	안용길	배명렬	96.	“
세웅종합건설	오태일	김용민	97.	“
세 진	석정련	김근수	96. 12. 31.	“
태 양 사	이형연	김근박	96. 8. 26.	“
경남지역				
LG산전창원지부	심만재	주성민	96. 5. 16.	정기총회
한 국 일 선	조영철	박기훈	96. 6. 27.	“
수 산 스 타	김용환	안병세	96. 7. 26.	“
영 흥 철 강	윤삼수	전덕봉	96. 9. 2.	“
삼천리자전거	고선일	김영택	96. 8. 8.	“
창 원 공 업	이동수	강석수	96. 8. 21.	“
세 신	이유정	이진희	96. 8. 31.	“
유 성 금 속	김기천	손성국	96. 3. 23.	임시총회
창 신 산 업	김영철	박철도	96. 10. 5.	정기총회
창원 기화기	조용환	김성철	96. 10. 18.	“
삼 한	진옥규	유병호	96. 12. 12.	임시총회
태 화 기 계	최종률	오광식	96. 12. 13.	정기총회
한국 카시오	이선중	육태봉	96. 12. 27.	“
세 방 전 지	이종철	김환수	96. 2. 14.	“

노동조합 명	대 표 자		임원(대표자) 개 선 일 자	대 회 구 분
	신	구		
울산지역				
동 회 산 업	김태년	오상철	97. 2. 10.	정기총회
대한알루미늄	남송희	한경남	96. 11. 1.	“
대일공업언양지부	서삼석	민영일	97. 3. 10.	“
진 도	조동형	양용진	97. 1. 18.	“
풍산온산지부	정명수	정홍렬	96. 10. 11.	“
한진프라스틱	문부근	손영환	97. 3. 31.	“
대구.경북지역				
금 용 기 계	복윤규	김주현	96. 2.	
대 성 정 기	권광희	이종규	96. 4. 21.	
대 철	남달희	조규원	96. 2.	
동 양 주 물	최원규	이광희	96. 4. 27.	
동원금속대구공장	윤화진	이상수	96. 8.	
삼 도 기 전	이인철	정문호		
삼 의 공 업	이중환	하태광		
아세아 산업	이희도	서우환		
평 화 산 업	신석곤	신윤섭		
세 왕 금 속	이동구	정용목		
포항지역				
한 금	오정희	박영화	96. 11. 6.	정기총회
구미지역				
LG 정 밀	이상민	원종도	96. 11. 21.	대의원대회
대우전자구미지부	장인환	이정환	96. 9. 3.	지부장직무대행
신 성 기 업	이완석	김동환	96. 12. 22.	정기총회
광주.전남지역				
화 천 기 공	송웅규	수명주		정기총회
대우전자광주지부	조정훈	박상민		임시대회
서 울 차 체	김형곤	김홍규		정기총회
세 방 전 지	조희권	이관우		“
남 선 선 반	김동희	임경련		“

5-1. 해산노동조합현황

노 동 조 합 명	대표자	결성일자	해산일자	조합원수	해산사유
경기지역					
연 화 정 밀	유지택	88. 7. 27.	96. 4.	35	기능마비
태 양 강 업	이완규	88. 5. 6.	96. 5.	40	합 병
서 울 주 철	김선호	88. 4. 27.	96. 4.	100	폐 업
인천지역					
승 일 제 관	김성국	88. 6. 1.	96. 7.	100	해 산
한국화학장치	이길훈	89. 1. 24.	97. 2.	65	해 산
충남지역					
광 명 산 업			96. 8.	70	기능마비
선 진 기 업	고태근	95. 4. 15.	96. 5.	50	기능마비
서 흥 강 제	박종희	96. 12. 3.	97. 1.	50	기능마비
세기마이크로텍	이정근	96. 8. 2.	96. 10.	13	폐 업
부산지역					
대 립 정 기	김영구	91. 4. 3.	96. 4.	30	부 도
대립철공장	진재욱	88.10. 26.	96. 5.	40	“
명 성	김병규	76. 7. 31.		75	“
서 일	진영희	88. 6. 29.	96. 10.	70	“
팔 미 금 속	하태봉			60	기능마비
국 제 벨 브	정영재	84. 4. 9.	96. 9.	104	부 도
대구.경북지역					
협립제작소	신기봉	96. 6. 1.	96. 6. 1.	70	부 도
광주.전남지역					
포 스 털	신만호	88. 7. 18.	96. 9. 20.	55	회사합병
강원지역					
대우국민차춘천정비	임석모	93. 7. 12.	96. 5.	20	기능마비

5-2. 이탈조직 노동조합현황

노 동 조 합 명	대표자	탈 퇴 일 자	이 탈 사 유
경기지역			
금 성 공 업		96. 7.	규약변경
경 원 세 기		97. 1.	규약변경
인천지역			
경 동 산 업	박선태	96. 10.	규약변경
서 홍	김명석	96. 6. 14.	규약변경
영 창 약 기	이상우	97. 1.	규약변경
코리아스파이서	박한주	97. 1.	규약변경
충남지역			
평 산 공 업	김진호	97. 1.	규약변경
충북지역			
동아건설 청주	한규정	97. 2.	규약변경
경남지역			
제 일 정 밀	권창수	97. 1. 27.	규약변경
구미지역			
한 국 전 자	이대영	96.	규약변경

6. 년도별 조합원 증감현황

(1996. 3월말현재)

년도 구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조직체수		1,324	1,295	895	817	700	641	603	541
조 합 원 수	남	269,091	293,035	234,523	197,120	177,038	213,808	143,488	123,628
	여	87,809	96,025	78,027	64,958	55,436	59,463	52,124	45,875
	계	356,900	389,060	312,550	262,078	232,474	273,474	195,612	169,628
조합원증감		+61,036	+32,169	-76,510	-50,472	-29,604	+40,797	-77,659	-25,984
조직체증감		+795	-29	-400	-78	-117	-59	-38	-62

7. 지역별 조합원 월별현황

지 역	월 별											
	96. 4	5	6	7	8	9	10	11	12	97. 1	2	3
서울	남	29,580	29,580	29,570	29,570	29,570	27,416	27,585	27,441	27,441	25,674	23,374
	여	9,796	9,796	14,689	14,689	14,689	11,124	11,144	11,136	11,136	12,171	12,171
	계	39,376	39,376	39,333	39,333	39,333	38,540	38,729	38,577	38,577	37,845	35,545
경기	남	25,108	25,108	24,322	24,322	24,322	37,873	28,151	27,662	27,662	28,425	28,425
	여	10,991	10,991	10,832	10,832	10,832	10,844	11,341	11,299	11,299	10,744	10,744
	계	36,099	36,099	35,154	35,154	35,154	48,717	39,492	38,961	38,961	39,169	39,169
인천	남	8,307	8,307	9,644	9,644	9,644	9,336	9,272	9,272	9,272	4,610	4,629
	여	6,381	6,381	6,038	6,038	6,038	2,630	2,553	2,533	2,533	1,777	1,807
	계	14,688	14,688	15,682	15,682	15,682	11,966	11,825	11,805	11,805	6,387	6,436
대전	남	922	922	822	822	822	369	369	443	443	425	425
	여	357	357	197	197	197	150	150	150	150	148	148
	계	1,279	1,279	1,019	1,019	1,019	519	519	593	593	573	573
충남	남	2,523	2,523	2,525	2,525	2,525	2,885	3,008	3,008	3,008	3,155	3,092
	여	429	429	429	429	429	429	509	509	509	547	552
	계	2,952	2,952	2,954	2,954	2,954	3,314	3,517	3,517	3,517	3,702	3,644
충북	남	1,921	1,921	1,667	1,667	1,667	1,867	1,867	1,867	1,867	2,512	1,912
	여	1,394	1,394	1,394	1,394	1,394	1,394	1,394	1,394	1,394	1,363	1,503
	계	3,315	3,315	3,261	3,261	3,261	3,261	3,261	3,261	3,261	3,875	3,415
부산	남	9,741	9,741	9,349	9,349	9,349	9,807	9,807	9,807	9,807	8,999	8,817
	여	1,185	1,185	1,159	1,159	1,159	1,172	1,172	1,172	1,172	1,152	1,144
	계	10,926	10,926	10,508	10,508	10,508	10,979	10,979	10,979	10,979	10,151	9,961
경남	남	18,712	18,712	14,528	14,528	14,528	8,759	8,839	8,461	8,461	8,773	8,208
	여	7,228	7,228	6,930	6,930	6,930	5,573	5,573	2,496	2,496	2,429	2,410
	계	25,940	25,940	21,458	21,458	21,458	14,332	14,412	10,957	10,957	11,202	10,618
울산	남	4,392	4,392	3,846	3,846	3,846	4,422	4,422	4,478	4,478	5,113	4,757
	여	977	977	946	946	946	971	971	776	776	628	583
	계	5,369	5,369	4,792	4,792	4,792	5,393	5,393	5,254	5,254	5,741	5,340
대구경북	남	10,068	10,068	9,889	9,889	9,889	10,906	9,677	9,697	9,697	9,951	10,013
	여	4,337	4,337	4,273	4,273	4,273	4,269	4,269	4,268	4,268	4,082	4,097
	계	14,405	14,405	13,432	13,432	13,432	15,175	13,946	13,965	13,965	14,033	14,110
구미	남	2,964	2,964	2,904	2,904	2,904	2,964	2,964	2,964	2,964	2,342	2,342
	여	2,207	2,207	2,157	2,157	2,157	2,207	2,207	2,207	2,207	1,351	1,351
	계	5,171	5,171	5,061	5,061	5,061	5,171	5,171	5,171	5,171	3,693	3,693
포항	남	3,736	3,736	3,736	3,736	3,736	3,631	3,740	3,740	3,740	3,077	3,107
	여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계	3,778	3,778	3,778	3,778	3,778	3,673	3,782	3,782	3,782	3,119	3,149
전남광주	남	773	773	773	773	773	801	732	1,190	1,190	1,213	1,431
	여	494	494	494	494	494	494	494	3,606	3,606	2,169	2,379
	계	1,267	1,267	1,267	1,267	1,267	1,295	1,226	4,796	4,796	3,382	3,810
전북	남	1,901	1,901	1,882	1,882	1,882	1,862	1,895	1,895	1,895	1,789	1,789
	여	69	69	69	69	69	69	69	69	69	67	67
	계	1,970	1,970	1,951	1,951	1,951	1,931	1,964	1,964	1,964	1,856	1,856

9. 기타활동

1) 96년도 5.1 노동절 기념대회 참석

- 명 칭 : 96년도 5. 1 노동절 기념대회
- 일 시 : 1996. 5. 1 10:00
- 장 소 : 올림픽 역도경기장
- 참석자 : 서울,경기,인천지역 조합원 및 가족

2) 96 년도 노동절 모범 조합원

- 노총위원장상 표창 : 제일정공 위원장 선기노
- 노동부장관표창 : (주) 일진 위원장 최진하

3) 회의활동

① 산별조직 담당자 회의

- 일 시 : 1996. 4. 3. (10:30)
- 장 소 : 노총 회의실
- 안 건 : 노동절 기념행사에 관한사항

② 산별조직 담당자 회의

- 일 시 : 1996. 4. 17. (14:00)
- 장 소 : 노총 회의실
- 안 건 : 노동절 기념대회 준비에 관한사항

③ 노총중앙위원회 회의(1차)

- 일 시 : 1996. 4. 17. (14:00)
- 장 소 : 노총 회의실
- 안 건 :
 - 최근 노동동향과 노총의 대응방안
 - 노총 사무총국 규정 개정(안) 심의
 - 기타토의사항

④ 산별조직 담당자 회의

- 일 시 : 1996. 5. 9. (17:00)
- 장 소 : 노총 회의실
- 안 건 :
 - 96 년도 노동절 기념대회 평가에 관한사항
 - 기타토의사항

- ⑤ 산별조직 담당자 및 노사대책 담당장 연석회의
 - 일 시 : 1996. 8. 27. (14:00)
 - 장 소 : 노총 회의실
 - 안 건 : · 거평시그네텍스 노사분규대책에 관한사항
- ⑥ 노동법의 민주적 개정 및 사회개혁촉구 중앙대책본부회의
 - 일 시 : 1996. 9. 4. (14:00)
 - 장 소 : 노총 회의실
 - 안 건 : · 노개위 활동에 관한 사항
 - 기타토의사항
- ⑦ 노총 중앙위원회 회의 (2차)
 - 일 시 : 1996. 10. 15. (14:00)
 - 장 소 : 노총 회의실
 - 안 건 : · 노개위 활동에 관한 사항
 - 중앙대책본부 활동에 관한사항
 - 노총 사무총국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사항
 - 기타토의사항
- ⑧ 산별조직담당자 회의
 - 일 시 : 1996. 10. 29. (10:00)
 - 장 소 : 노총 회의실
 - 안 건 : · 노개위 활동에 관한 사항
 -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사항
 - 기타토의사항
- ⑨ 산별조직담당자 회의
 - 일 시 : 1996. 11. 1. (14:00)
 - 장 소 : 노총 회의실
 - 안 건 : · 전국노조 대표자 대회에 관한 사항
 - 기타토의사항
- ⑩ 산별 정책.조직담당자 회의
 - 일 시 : 1996. 11. 8. (15:00)
 - 장 소 : 노총 회의실
 - 안 건 : · 노동법 개정 내용보고 및 대응방안
 - 기타토의사항

⑪ 산별조직 담당자 회의

- 일 시 : 1996. 11. 13. (11:00)
- 장 소 : 노총 회의실
- 안 건 : · 생존권 사수 및 노동악법 분쇄 결의대회에 관한사항
· 기타토의사항

⑫ 산별조직 담당자 회의

- 일 시 : 1996. 11. 21. (10:00)
- 장 소 : 노총 회의실
- 안 건 : · 생존권 사수 및 노동악법 분쇄 결의대회에 관한사항
· 기타토의사항

⑬ 산별조직 담당자 회의

- 일 시 : 1996. 11. 29. (16:00)
- 장 소 : 노총 회의실
- 안 건 : · 생존권 사수 및 노동악법 분쇄 결의대회 분석 및 평가
· 기타토의사항

⑭ 산별조직 담당자 회의

- 일 시 : 1996. 12. 24. (14:00)
- 장 소 : 노총 회의실
- 안 건 : · 비상 전국노조 대표자 대회에 관한사항
· 기타토의사항

⑮ 산별조직 담당자 회의

- 일 시 : 1997. 1. 21. (10:00)
- 장 소 : 노총 회의실
- 안 건 : 민주노총과의 연대집회에 관한사항

⑯ 산별조직 담당자 회의

- 일 시 : 1997. 1. 23. (11:00)
- 장 소 : 노총 회의실
- 안 건 : · 전국노동자 연대집회에 관한사항
· 기타토의사항

⑰ 산별조직 담당자 회의

- 일 시 : 1997. 2. 25. (11:00)
- 장 소 : 노총 회의실
- 안 건 : · 97년도 전국대의원대회에 관한사항
· 기타토의사항

⑩ 97년도 노총 전국대의원대회 분과위원 회의

- 일 시 : 1997. 2. 27. (10:00)
- 장 소 : 노총 회의실, 강당
- 분과위원 : 자격심사위원회, 의안심의 및 의사운영위원회.
조직 및 노사대책위원회, 재정위원회, 홍보교육위원회

4) 한국합섬 노조 탄압규탄 및 분신사태 해결 촉구대회

- 일 시 : 1996. 5. 11 (14:00)
- 장 소 : 탑골공원
- 참석인원 : 산별 5명이상

5) 노동법 개정에 따른 대응전략 세미나

- 일 시 : 1996. 6. 25 - 27 (2박 3일)
- 장 소 : 한국전력 속초 연수원
- 안 건 : ○ 노동조합법 3 조 5 호 철폐에 따른 한국노총의 대응방안
○ 신규조직 결성 및 기존조직의 활성화방안

6) 생존권 사수 및 금융자율화 정착을 위한 금융노동자대회 연대투쟁

- 일 시 : 1996. 11. 2. (15:00)
- 장 소 : 여의도 교수부지
- 참석인원 : 150명

7) 생존권 사수 및 노동악법 분쇄 결의대회

- 일 시 : 1996. 11. 24. (14:00)
- 장 소 : 여의도 교수부지
- 참석인원 : 10,000명

8) 생존권 사수와 노동악법 분쇄를 위한 대시민 선전활동

- 일 시 : 1996. 11. 20. (07:00 - 09:00)
- 장 소 : 신림역 부근
- 참석인원 : 연맹 상근직원 16명

- 9) 96 년도 노총 비상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참석
- 일 시 : 1996. 12. 9. (14:00)
 - 장 소 : 노총회의실
 - 목 적 : ○ 생존권사수 및 노동악법 분쇄에 관한사항
○ 기타토의사항
- 10) 노동악법 규탄대회
- 일 시 : 1996. 12. 5. (13:00-14:00)
 - 장 소 : 과천 제 2 종합청사
 - 참석인원 : 50명
- 11) 비상 전국노조대표자 대회
- 일 시 : 1996. 12. 27. (14:00)
 - 장 소 : 여의도광장
 - 참 석 : 노조대표자 및 간부
- 12) 임시국회 저지를 위한 규탄집회
- 일 시 : 1996. 12. 20. (14:00)
 - 장 소 : 여의도 신한국당 앞
 - 참석인원 : 연맹상근자 및 경인지역간부 50명
- 13) 노동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
- 일 시 : 1996. 12. 12. (13:00)
 - 장 소 :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
 - 참석인원 : 연맹상근자 및 경인지역간부 50명
- 14) 날치기노동악법 철폐를 위한 전국노동자 연대집회
- 일 시 : 1997. 1. 26. (13:00)
 - 장 소 : 여의도 광장(KBS 앞)
 - 참석인원 : 서울.경기.인천.강원.충남. 대전.충북지역간부
- 15) 한국노총-국제노동단체 연대 결의대회
- 일 시 : 1997. 1. 11. (14:00)
 - 장 소 : 한국노총 8층강당
 - 참석인원 : 연맹상근 직원 및 서울.경기.인천지역간부 50명

16) 날치기 노동악법 무효화 및 민주적 노동법 개정 촉구대회

- 일 시 : 1997. 3. 6. (14:00)
- 장 소 : 대림엔지니어링 빌딩 앞(극회앞)
- 참석인원 : 연맹상근 직원 및 경인지역 간부 200명

17) 노총 96년 정기전국 대의원 대회 참석

- 일 시 : 1997. 2. 28. (10:00)
- 장 소 : 한국노총 8층강당
- 주요결의 내용
 - 가) 임원선출(사무총장 - 이남순)
 - 나) 중앙위원 선출
 - 다) 96년 사업보고 및 97 년 사업계획
- 참석 : 연노총파견대의원 56 명
- 노총위원장 표창 : 연합철강 위원장 강진호
덕양산업 위원장 김우배

18) 97 년도 노총 중앙위원 선출

- 일 시 : 1997. 2. 28.
- 인 원 : 당연직 4 명
선출직 10 명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금 속 노 련	위 원 장	유 재 섭	당 연 직
노총경기지역본부	의 장	강 영 섭	"
노총대구지역본부	의 장	김 경 조	"
노총광주지역본부	의 장	정 기 춘	"
현 대 전 자	위 원 장	김 영 철	선 출 직
대 우 전 자	"	이 병 균	"
L G 전 자	"	나 찬 경	"
노총중부지역지부	의 장	김 윤 주	"
금속경기본부	"	하 영 일	"
금속부산본부	"	오 봉 출	"
대 한 전 선	위 원 장	강 익 화	"
금속충북본부	의 장	김 홍 수	"
금속인천본부	"	황 창 배	"
금속대구.경북	"	김 무 호	"

국제 활동

목 차

○ 평가와 개선방향

1. 제6회 한일금속노조 고위간부회의 개최
2. 국제회의 파견
3. 해외노조간부 방문
4. 해외노조간부 초청
5. '96 IMF메이데이 메시지

평가와 개선방향

세계의 제조업이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국제금속노련의 활동도 아시아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시아지역을 4개의 지구단위로 나누어 각 지구마다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토의케 함으로써 논의의 현장감을 강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대만,홍콩과 함께 동북아지구에 소속되어 있으며 제1회회의를 도쿄에서 가진 바 있다.

복수노조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제활동에 있어서도 양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민노총 소속 금속산업 조직들이 민노총 금속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국제금속노련에 가맹한 바 있지만 이들 조직들이 금속연맹, 자동차연맹,현충련등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96년도에 민노총 국제금속협의회(KCTU-IMC)로 명칭변경한 바 있다. 국제금속노련에 양대조직이 가맹함에 따라 국제금속노련은 양대조직이 공동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실제로 양조직간의 협의.조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96년도에 IMF여성워크숍을 공동개최하였으며 산업안전세미나의 공동개최도 추진된 바 있다.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많은 나라들에서 국제활동을 통한 공동활동, 조직통합등이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국제활동은 분열된 금속산업의 조직들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자극제로 작용할 것이다.

국제금속노련은 97년 5월에 총회를 갖는다. 이 총회에서는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따라잡기위한 운동노선들이 제기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운동방향을 신중히 검토하여 우리의 운동노선정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1. 제6회 한일금속노조고위간부회의 개최

(1) 일시 : 1996년 11월 19일

(2) 장소 : 서울 타워호텔

(3) 참석자

<일본대표>

IMF-JC 도꾸모또 테루히또	IMF-JC 의장
수즈끼 가쓰토시	IMF-JC 부의장, 전기연합 위원장
에또 벤이찌로	IMF-JC 부의장, 철강노련 위원장
기따우라 마사오끼	IMF-JC 부의장, 금속기계 위원장
도꾸나가 나오끼	IMF-JC 부의장, 전국전선 위원장
히메노 쇼조	IMF-JC 부의장, 비철연합 위원장
고지마 세이고	IMF-JC 부의장, IMF동아시아사무소장
아지마 유꾸오	IMF-JC 사무국장
오오노 고지	전금연합 사무차장
수다 세이지	조선중기노련 부위원장
이와이 신야	IMF-JC 국제부

<한국대표>

유재섭	금속노련 위원장
김성문	금속노련 부위원장
최웅길	금속노련 부위원장
정창영	금속노련 사무차장
하영일	금속노련 부위원장, 금속노련 경기지역본부 의장
오봉출	금속노련 부위원장, 금속노련 부산지역본부 의장
박영구	금속노련 부위원장

라찬경	LG전자노동조합 위원장
노진귀	금속노련 기획실장
윤창열	금속노련 총무국장
김정완	금속노련 조직부장
박현미	금속노련 홍보차장
김영미	금속노련 사무원

(4) 일정표

1996년 11월 19일

10:00 - 10:40	개회식 한국금속노련 위원장 유재섭 IMF-JC 의장 도꾸모또 테루히토
10:40 - 11:00	휴식
11:00 - 12:30	한국의 정치.경제.노동상황 보고 및 토론
12:30 - 14:00	중식
14:00 - 15:00	특강, 노사관계개혁의 추진 현황 및 전망 (박인상 노총 위원장)
15:00 - 15:20	휴식
15:20 - 16:50	일본의 정치.경제.노동상황보고 및 토론
16:50 - 17:30	양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및 폐회
18:30 - 20:30	석식
20:30 - 22:30	환송회

<자료 1>

한 국 보 고 서

1. 정치경제정세

금년도 초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년전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와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는 수도권에 있어서 여당, 특히 국민회의가 압승을 거둔데 비해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여당인 신한국당이 압승하였습니다. 여당인 신한국당은 전체의석의 46.5%인 139석을 획득했으며 제1야당인 국민회의는 26.4%인 79석, 보수적 야당인 자유민주연합은 16.7%인 50석, 소위 양심적 지식인을 후보로 내세웠던 민주당은 5.0%인 15석, 그리고 나머지 16석은 무소속 후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일반적 기대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함에 따라 여당이 선거에서 누릴 수 있었던 프리미엄이 상당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야당의 승리가 예견되었으나 국민은 안정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거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의석을 차지했으며 과반수 의석 확보를 위해 무소속이나 일부 야당위원을 흡수하여 현재 153석으로 과반수인 150석을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당의 이와같은 과반수 확보정책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두야당은 공조체제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역별 정당지지 양상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부산.경남지역에 있어서 신한국당, 호남지역에 있어서의 국민회의 지지는 이미 굳혀진 것이지만 충청권에 있어서의 자유민주연합 지지가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났고 경북지역의 자유민주연합으로의 이동도 새로운 양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수를 표방하는 자유민주연합의 상승은 새로운 정치적 변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각제를 통한 권력분점을 추구하는 자유민주연합은 캐스팅 보우트를 지렛대로 하여 내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각제 도입에 관하여는 현정부가 내각제 도입을 위한 개헌은 하지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현 대통령의 임기내에는 그것이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자금 또한 주요 정치이슈가 되었습니다. 정치자금의 문제는 두 전대통

령의 구속을 가져왔으며 쿠데타에 대한 사법적 판단까지 가져왔습니다. 선거자금은 또한 수명의 지방자치단체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속과 자격박탈을 가져왔으며 금번의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도 그 영향권에 들어있습니다. 선거자금과 관련된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판단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정치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한간의 민족문제는 그간 화해무드조성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잠수함에 의한 공비투입사건으로 인해 다시 크게 악화되었으며 일각에서는 북한의 흉년에 의한 북한정권의 붕괴도 예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지난 3년간의 경제호황으로부터 불황의 국면으로 경기가 하강할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 - 9%성장하던 경제가 6%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100억불선이던 대외경상적자도 200억불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5-6%하던 물가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 경기하강의 주요 요인은 반도체, 철강,조선, 자동차산업등의 불황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간 반도체가 초호황을 누렸고 그에 따른 시설투자가 급증한 것을 감안할 때 체감적인 경기하강 정도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의 심각성은 이윤율저하의 측면에서도 예기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불황국면에 대해 정부는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경제장관과 경제수석비서관의 경질과 함께 '경제위기론'쪽으로 입장을 급선회시킨 바 있고 '고비용 저효율의 저성장시대의 돌입'이라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으며 '경쟁력 10%이상올리기'정책을 내걸었습니다. 그러자 주요 기업들은 '생산성 10%올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보수적 정책으로 선회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경영자측은 소위 고임금, 고금리, 高地價, 高物流價등 4高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왔습니다만 현정부에 의해 이러한 인식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명목금리 13.8%,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율 17.0%등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으며 땅값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방에 있어서는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자의 저효율에 강조점이 주어지고 있다는데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2. 노동정세

다음은 노동정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경제위기론을 앞세운 과격한 보수경제정책을 추구하려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소위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근로자파견제, 파트타임제등의 제도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선회에 앞서 이미 재벌급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소위 '총액임금 동결'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회사임원급의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시위를 하였습니다. 총액임금 동결이란 임금을 줄이든 고용을 줄이든 하여 임금총액수준을 동결한다는 말이 두개인 칼과 같은 것으로 이쪽으로 휘둘러도 노동자가 다치고 저쪽으로 휘둘러도 노동자가 다치는 그런 정책인 것입니다. 실제 다수의 기업들은 기업조직 개편, 감원, 능률급 도입등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영자측 정책과 정부정책의 보수화는 노사관계개혁에도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朴仁相 勞總委員長께서도 특강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현정부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서 하겠다는 당초의 방침을 바꾸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향'에서 노동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속노련은 노총과 같이 노사관계개혁이 근로조건 저하나 노동운동진영의 약화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경쟁력강화를 위해 일방적 법개정을 강행한다면 노총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노사관계개혁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지만 우리 노동자나 노동조합운동에 대해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라는 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금번 노사관계개혁에 영향력을 끼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책임을 거의 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데 커다

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으로는 결정기구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노사관계개혁을 통해 노동운동진영은 더욱더 분열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극심해질 것이며 노조운동의 집단주의는 더욱더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사관계개혁의 일방적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투쟁할 것이며 아울러 노동계통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호소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노사관계개혁을 통해 일부 노조는 합법화가 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현재의 우리노조운동의 상태를 볼 때 정부와 사용자측의 분열공작속에 말려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계 통합을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할 것이며 특히 금속산업의 통합이야말로 우리나라 노동계통합의 기초가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으나 조직간 적대감은 상당정도 해소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조직이 합법화되어 정상적 조직으로 자리잡게 된다면 통합을 위한 논의는 더욱더 진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금년도 임금교섭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한국통신이나 지하철등의 공공부문의 교섭이 긴박한 상황속에서 전개되기는 했으나 노사관계개혁과 맞물린 정부의 양보정책으로 인해 노조측이 예상외의 성과를 거두었고 제조업에서는 주 40시간 노동제나 산업안전 차원의 작업중지권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 있어서는 평균 7.8%인상을 획득하여 양호한 수준을 보였고 분규건수도 현재까지 81건이 발생하여 작년도 85건과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금속노련 산하 사업장의 경우 평균적으로 14.6%를 요구하여 10%인상을 관철했으며 30여개의 노조에서 주 40시간- 42시간의 노동시간단축을 획득하였습니다. 쟁의행위 돌입 건수는 총 18건으로 작년도 14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일 본 보 고 서

1. 일반경제정세

① 우리나라 경제는 1992, 93, 94년도 3년간에 걸쳐 거의 제로성장을 계속 해왔다. 1달러 = 80엔의 초엔고, 阪神.淡路 대지진의 영향등에 의해 경기는 94년말 이래 다시 급강하를 보여주고 95년 전반에는 일시적 불황에 빠졌다. 그러나 95년 4월의 逆플라자 합의에 기초한 엔고 시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95년 가을이래 경기는 다시 회복기조로 전환되었다.

95년도 실질성장율은 2.2%로 되고 3년간에 걸친 제로성장은 마침내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96년 2.4분기도 같은 3.4%로 견실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② 경기에 관한 諸지표를 보면 광공업 생산지수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95년 여름이래 신장율이 둔화하고 96년 6월에는 일시 마이너스로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조금 회복해 3.4분기에는 전년 대비 3.8%로 되었다.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통계(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수)도 95년 4.4분기이래 거의 전년대비 10%정도의 신장이 계속되었다. 그후 96년 7월에는 22.0%, 8월에는 11.4%로 되었다.

신설주택착공호수는 지가의 하락에 수반된 주택가격의 저하, 주택대부 금리의 저하에 의해 96년 2.4분기 전년대비 13.2%, 3.4분기 17.9%로 커다란 확대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소비에 관해서는 약세의 추이이다. 근로자가계의 개인소비는 96년 1.4분기에는 명목으로 전년대비 2.5%증가했지만 4-8월기에는 0.3%에 머물렀다. 판매통계로 보더라도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96년 4월이래 전년대비 마이너스 기조로 바뀌고 있다.

개인소비 부진에 관해서는 칼렌다관계, 식중독의 유행등이 영향을 주고 있지만 소득의 침체도 그 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자가계의 가처분소득은 96년 1.4분기에는 전년대비 1.4% 증가했지만 2.4분기에는 0.6%의 신장에 머물렀다.

소비자물가상승율은 95년도에는 마이너스 0.1%였다. 소비자물가상승율이

마이너스가 되었던 것은 1950년대 이래의 처음이다. 96년에 들어서서부터도 안정추이에 있고 4-10월기의 전년대비 상승율은 0.2%이다.

상승율로서는 포함세이지만 에네르기,교통등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물가수준이 제외국에 비해 높은 상황은 변함이 없다. 95년 데이터에 의하면 도쿄의 물가는 뉴욕의 1.59배, 런던의 1.52배, 파리의 1.34배이다. 그중에서도 에네르기 요금은 뉴욕의 2.17배, 런던의 1.91배에 달하고 있다. 공공요금은 원가를 합하고 거기에 이윤을 더하여 설정되는 제도로 되어 있다.

그것이 공익산업에 있어서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공공요금이 비싼 주요 원인이다. 우리는 공공요금의 가격설정예 민간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반영시키는 상한가격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③ 금후의 우리나라의 경기동향이지만 96년도의 실질국내총생산 증가율에 관해서는 96년초의 정부전망치는 2.5%이다. 최근 발표된 민간조사기관의 발표로도 대략 2.5%정도라고 생각되고 있다.

그렇지만 97년도에 관해서는 민간조사기관의 예측평균으로 1.5%이며 96년도에 비해 둔화될 전망이다. 97년 4월부터의 소비세를 인상등도 있어 개인 소비가 더욱 떨어지는 것이 그 요인으로서 생각되고 있다. 95, 96년도로 2년간 계속된 2%대의 성장이 확보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력으로 간주되고 있는 3%정도를 달성하려 하고 있고 97년의 임금인상등을 비롯해 노동조합으로서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 정치정세

자유민주당,일본사회당,신당 사끼가게 3당연립에 의한 무라야마 내각은 94년 6월 발족했다. 많은 현안을 처리해왔지만 금융기관의 불량채권처리문제와 오키나와 미군기지문제의 취급이 혼미로 치닫는 가운데 96년 1월에 퇴진했다. 여당 3당은 계속해 연립정권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자민당의 하시모토 총재가 수상에 취임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당은 사회민주당으로 옷갈아입고 또 사끼가게와의 합병등을 중심으로 하는 신당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96년 10월 사민당, 사끼가게로부터 다수의 의원이 참가하여 민주당을 결성했다.

이러한 가운데 10월 20일의 총선거는 소선거구 비례대표 並立制라는 새로운 제도하에서 행해졌다. 자유당은 현재의 211석으로부터 총 의석 과반수에 육박하는 239석을 획득했다. 야당.신진당은 현재의 의석을 유지하지 못한 156석이 되었다. 민주당은 현재 의석을 유지해 52석이 되었다. 한편 사민당, 사きが끼는 각각 15석, 2석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의거하여 하시모토 수상은 각 정당과 정권협약에 들어 갔다. 연립여당인 사민당과 사きが끼는 지금까지처럼 각료는 내지 않지만 여당으로서 閣外 협력을 하는 것으로 했다. 민주당은 정권에 참가하지 않았고 자민당과 개별정책에 관해 협력관계를 맺는 것으로 합의했다.

3. 일본의 가장 중요한 과제(구조개혁)

차기정권이 어떤 틀로 되든 기본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에는 변함이 없다. 경제는 완만한 회복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선 경기회복의 유지를 도모하는 일이다. 중기적 관점으로부터는 경제의 세계화, 초고령화에 대처해 새로운 발전단계를 추구해나가기 위해 우리나라는 구조개혁을 한층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구조개혁의 제1의 과제는 행정개혁의 단행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적자는 선진국중 최악의 상황으로 되어 있다. 또 미증유의 초고령화를 맞이함에 있어서 개호 시스템등 초고령화 대응의 제도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재정제건을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省廳의 정리.통합.간소화, 특수법인의 정리.통합.간소화.민영화를 비롯한 행정기구개혁에 우선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하시모토정권의 명운을 좌우하는 것으로서 감시해나가야 한다.

또 우리나라의 행정은 많은 규제를 두고 있고 그것들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IMF-JC는 지금까지 이러한 규제의 정리.철폐에 노력해왔다. 일부 경영측은 이에 편승하여 산업별 최저임금이나 노동기준등에 관해서도 철폐.완화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시장경제를 유효.공정히 기능시키기 위한 물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우리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 불공평 세제 시정을 중심으로한 세제개혁이다. 97년 4월부터 소비세율을 3%부터 5%까지 인상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 우리로서는 소비세율 인상

에 대해서는 행정개혁, 불공평세제 시정, 경기회복이 불가결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불공평 세제로서는 소비자가 소매업자에게 지불한 소비세가 소매업자로부터 납세되지 않고 소매업자에게 남아버리는 상황이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세액공제에 있어서의 청구서의 도입등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소득세등에서는 납세자 번호제와 종합과세의 도입에 의한 소득보전의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노동경제의 동향

① 노동수급의 장기동향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1년에 피크를 맞이하지만 노동력 인구도 21세기에 들어서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총인구에서 점하는 노동력 인구의 비율은 2000년 이래 저하했지만 그것으로도 1988년이전보다는 높은 노동력율이 확보될 전망이다.

노동력 인구의 연령구성은 20대는 2000년 전후부터 30대는 2010년 이래 그 비율이 저하경향으로 된다. 40-50대의 중고령층은 소위 ‘團塊의 세대’가 이 연령층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은 금후 완만히 저하한다.

일본의 커다란 과제로서 초고령화에 의한 연금, 의료, 고령자 복지가 들어지고 있다. 기업내의 과제로서는 60세이래의 취로확보와 임금, 처우의 양태가 초점이다. IMF-JC로서는 현재 장기안정고용을 전제로 하는 임금고용제도를 제안해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② 현재의 고용동향

실업률은 지금까지 70년대 전반까지 고도성장하에서 1%대의 추이이지만 오일쇼크후의 구조변화도 있고 해 그후 2%대로 되었다. 93년의 엔고에 의한 생산의 해외이전, 거품경제의 붕괴에 의한 영향으로 3%대로 되고 현재 9월단계이지만 3.3%라는 전례없는 고수준이다. 이것이 개선될 전망은 현재로는 기업의 리스트락취령 동향으로부터 판단하면 어렵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특징은 별지에서 보여지는 바와같이 청년층 실업률이 6%대로 높다는 것이다. 가족을 가지고 있는 중고령층은 다행히 2%대에 머물고 있다.

취업자는 일본 전체로 9월 현재 6,569명이다. 그 중에서 제조업은 1,487명이고 93년까지는 선진공업국에서 유일하게 증가를 계속하고 있지만 그후 감소로 전환되었다. 금속산업은 92년에 759만으로 사상최고를 기록했지만

역시 그후 감소하고 95년에는 7,000만인을 밑돌았다. 96년에 들어서서 개선의 징후가 보이고 9월에는 710만명까지로 회복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고용의 공동화에 제동이 걸릴지 어떨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경제의 세계화 속에서 금속산업의 각기업은 생산거점의 해외전개를 진척시키고 있고 일본 국내로부터 고용과 기술.기능이 없어질 '산업의 공동화'가 근심된다. IMF-JC로서 고용의 공동화 해결을 향해 대정부 요청등을 하고 있다. 또 독자의 금속산업정책으로서 기술.기능을 계승.육성하는 것, 금속산업이 산업분야 창출.신규사업 개척.신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환경.재생, 정보.통신,주택등의 분야에서 신고용을 확보하는 것 등 경영측에의 작용을 비롯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5. IMF-JC의 임금노동정책

① 인간적인 장기 안정고용 시스템

선진주요국, 신흥공업국, 발전도상국,시장경제이행국이 모조리 시장경제에 참가하여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나라도 산업.경제의 구조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안정고용', '연공임금'등 소위 일본적 고용시스템으로는 구조전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견해가 일경련등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장기안정고용, 연공임금은 기업의 장기적 발전과 근로자의 생활향상에 있어서 매우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며 구조전환을 위해서도 오히려 유효하다고 한다.

예를들면 기업에 있어서 교육훈련투자가 헛되지 않다. 또 장기에 걸쳐 노동자의 능력.업적을 파악할 수 있고 인사배치나 임금결정을 효율있게 행할 수 있다. 근로자의 필요생계비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는 연공임금제도도 합리적이다.

또 장기안정고용이기 때문에야말로 생산현장의 근로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숙련기능을 형성.전승.축적할 수 있다. 또 원가절감, 품질향상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산업구조의 전환기에는 노사의 노력으로 직종전환,배치전환에 유연히 대응해 왔다.

우리나라 산업.기업이 세계화경제를 극복해가는데는 신산업.신규사업.신상품을 창출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독창성과 독자의 기술.기능이야말로 기업발전의 기반이고 그를 위해서는 인적.자본 중시의 사고방식을 관철하고 장

기적으로는 근로자의 능력을 발전시켜 가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한편 산업구조의 전환에 의해 신산업,신규사업이 창출되고 종래의 산업으로부터 고용의 이동이 필요하게 된다. 혹은 저생산성의 산업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이 도모되는 경우도 고용의 이동을 불가피하게 한다는 것이 생각되어진다. 지금까지의 일본의 노동시장에서는 이러한 고용의 이동에 대해 유효한 메카니즘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동하는 노동자가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이동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노동시장의 정비,근로자에게 있어서 고용이동이 불리하게 되지 않는 고용이동에 대응할 수 있는 임금.처우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근로자 개개인이 자신의 생애 플랜 생애생활설계를 세울 수 있는 듯한 직업생활이 중요하다.

② 새로운 임금.처우제도

글로벌 경제화 속에서 신산업.신규사업.신상품의 창출에 대응할 수 있는 독창성있는 정보분석이나 사고.판단,문제발견.해결능력이 근로자에 대해 구해지게 되고 금후 실현해야 할 구체적인 임금.처우제도는 다양한 인재가 특징을 살리는 전문직 능력을 중시하는 複線型 인사제도이다.

직무그룹으로서 ① 지금까지의 소위 일반직.기능직에 상당하고 우리나라 제조업에 있어서의 현장 강점의 원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간직’, ② 상당하는 업무에 관해서 매우 높은 지식과 숙련을 보유하고 그것에 기초해 주체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전문직, ③ 제품만드는 기술의 상징적 존재로서 ‘직장의 신’이라고 불리워지는듯한 고도의 숙련을 지니고 있는 기술자, 업계를 주도하는 연구.개발자나 영업직,법무직.디자이너등 고도의 자격.재능을 발휘하는 자유업적인 전문직등으로 되어 있는 ‘슈퍼 전문직’, ④ 인재의 육성, 현장정보의 정리와 경영 고위직에의 전달, 경영 대방침의 현장에의 철저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직등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임금제도에서는 생활급으로서의 연공급과 직능급 2본위가 일반적이다. 이것에 의해 노동의 대가와 생활보장이라는 임금의 두가지 성격을 임금제도 속에 짜넣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변화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직무의 각 그룹마다 연공급과 직능급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근로자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히 주택대여와 교육비의 부담이 중견층에 있어 매우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고 이 세대에 있어서의 생계비와

임금 간에는 커다란 마이너스 갭이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연공급에 관해서는 임금 커브를 20대 후반부터 급속히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 기본정책에서 연간 5개월로 하고 있는 일시금이나 퇴직금제도에 관해서도 임금제도와의 관계를 포함해 있어야 할 모습에 관해서 검토하고 있다.

<별지> 1996년 9월 연령계급별 완전실업률 및 대전년 동월 증감
(총무청 통계국 노동력 조사)

연령	계		남 자		여 자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15-24	6.6%	동률	6.8%	0.2%포인트상승	6.4%	0.2%p저하
25-34	3.8%	동률	3.2%	0.3%포인트상승	4.9%	0.5%p저하
35-44	2.3%	동률	2.1%	0.2%포인트상승	2.4%	0.5%p저하
45-54	2.0%	0.1%포인트저하	2.0%	0.1%포인트저하	2.0%	0.2%p저하
55-64	4.1%	0.5%포인트상승	5.1%	0.7%포인트상승	2.5%	0.2%p상승
65이상	1.0%	0.3%포인트저하	1.3%	0.4%포인트저하	0.5%	0.1%p저하

2. 국제회의 파견

1) IMF아시아전기세미나

(1) 일시 : 1996. 4. 15 - 4. 16

(2) 장소 : 호주 시드니

(3) 참석자 : 본노련 사무처장 정창영

본노련 기획실장 노진귀

(4) 회의주제 : 21세기 전자산업의 전망

전자산업의 세계화와 노동자에의 영향

아시아 노조간 연대 및 협력

2) 제7회IMF아시아조선회의

- (1) 일시 : 1996. 4. 24 - 4. 25
- (2) 장소 : 타이완 타이페이
- (3) 참석자 : 본노련 조선분과 의장 정학균
본노련 기획실장 노진귀
- (4) 회의주제 : 조선산업의 현황
조선산업 노조운동 현황

3) 제1회IMF동아시아회의 참석

- (1) 일시 : 1996. 5. 8 - 5. 10
- (2) 장소 : 일본 도쿄
- (3) 참석자 : 본노련 기획실장 노진귀
- (4) 회의주제 : 세계화국면에 있어서의 각국 노조운동 현황
노조간 연대에 관한 사항

4) 96년도 IMF중앙위원회

- (1) 일시 : 1996. 6. 12 - 6. 18
- (2) 장소 : 스웨덴 고텐버그
- (3) 참석자 : 본노련 위원장 유재섭
본노련 기획실장 노진귀
LG전자노조 기획실장 정일진
- (4) 활동사항 : 중앙위원회 참석
IMF산업안전세미나 한국개최건 논의
스웨덴 지원산업 논의
덴마크 금속노조 방문

5) 제35회 IMF-JC대회 참석

- (1) 일시 : 1996.9.1 - 9.5
- (2) 장소 : 일본 도쿄
- (3) 참석자 : 본노련 위원장 유재섭
- (4) 활동사항 : 대회참석

6) 제25회 일본자동차총련대회 참석

- (1) 일시 : 1996.9.3 - 9.7
- (2) 장소 : 일본 도쿄
- (3) 참석자 : 본노련 위원장 유재섭
- (4) 활동사항 : 대회참석

7) 제87회 일본철강노련대회 참석

- (1) 일시 : 1996. 9. 9 - 9. 14
- (2) 장소 : 일본 오까야마
- (3) 참석자 : 본노련 포항지역본부 의장 백종부
- (4) 활동사항 : 대회참석
공장견학

8) 제5회 IMF아시아 철강세미나

- (1) 일시 : 1996.10.21 - 10.23
- (2) 장소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3) 참석자 : 동부제강노조 위원장 강창영
동일제강노조 위원장 이동익
- (3) 회의주제 : 가. 철강산업의 현황 및 전망
나. 기술변화와 고용에의 영향, 기술훈련
다. 산업안전
라. 노동조합권 및 국제협력

9) 신임대표자 일본연수

- (1) 일시 : 1996.10.16 - 10.24
- (2) 연수국 : 일본
- (3) 참석자 명단

본노련	부위원장	최응길
LG전자	사무국장	성무용
대우전자	지부장	김수도
태양금속	위원장	이병욱
화천기공	위원장	오병호

대농중공업	위원장	이관희
경원산업	위원장	강장규
대동기어	위원장	강현호
동원금속	위원장	김상권
신한주철	위원장	윤무영

10) IMF-ROCC대회 참석

- (1) 일시 : 1996. 10. 28 -10.29
- (2) 장소 : 타이완 카오슝
- (3) 참석자 : 본노련 위원장 유재섭
- (4) 활동사항 : 대회참석
아시아금속노조 세미나 참석
공장견학

11) 일본조선중기노련 초청 일본연수

- (1) 일시 : 1996. 12. 8- 12.14
- (2) 연수국 : 일본
- (3) 참석자 명단

강남조선	부위원장	홍석윤
세웅종합건설	부위원장	박주원
대동조선	복지대책부장	한창석
대선조선	총무부장	임금택
세진노조	수석부위원장	정영옥
본노련	부위원장	정학균

12) 영국노동사정 조사단 파견

- (1) 일시 : 1996. 12. 7 - 12. 14
- (2) 조사국 : 영국
- (3) 참석자 : 본노련 기획실장 노진귀
LG전자노조 조사부장 이호성
대우전자 대외협력실장 김만용
- (4) 활동사항 : AEEU 주요활동사항 연수
공장견학

3. 해외노조간부 방문

1) 이시가와지마 노조간부 방문

- (1) 일시 : 96. 5. 28
- (2) 방문자 : 이시가와지마 노조간부 야마다 요시아끼외 10명
- (3) 활동 : 본노련 방문, 강남조선 견학

2) 폴란드노조간부 방문

- (1) 일시 : 1996. 6. 7
- (2) 방문자 : 폴란드 OPZZ 위원장외 4명
- (3) 활동 : 본노련 방문

3) IMF동아시아 사무소 부소장 방문

- (1) 일시 : 96. 10. 17 - 10. 19
- (2) 방문자 : IMF동아시아사무소 소장 하따 쓰네오
- (3) 활동 : IMF산업안전세미나 한국개최건 업무협의

4) 영국 AEEU 노조간부 방문

- (1) 일시 : 1996. 11. 2 - 11. 4
- (2) 방문자 : AEEU 국제국장 찰리 백켄지
AEEU 집행위원 배리 데이비스
- (3) 활동 : 본노련 방문 교류건 논의
현대전자 견학 및 노조방문

4. 해외노조간부 초청

1) 본노련 '96정기대회에의 초청

- (1) 피초청인 : IMF 사무총장 마르첼로 말렌타키
IMF동아시아 사무소 고지마 세이고
IMF-ROCC 위원장 우 하이레이

(2) 초청기간 : 마르첼로 말렌타키, 고지마 세이고 : 96. 5. 14 - 5. 16

우 하이라이 : 96. 5. 14 - 5. 17

(3) 활동사항 : 대회 참석

노총 방문

노동연구원 방문

LG전자 평택공장 견학

5. '96 IMF 메이데이 메세지

5월 1일은 전세계적으로 노동자 및 노동조합 권리를 축하하는 공휴일로 인정되고 있다. 이 날은 전세계의 노동자들이 노조원으로서의 단체행동을 통해 이룩한 진보에 대해 생각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어 어떤 행동을 우선적으로 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날이다.

오늘날 세계에 있어 주요 문제의 하나는 실업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많은 사용자들은 고용비용의 삭감을 추구해왔고 특히 파트타임, 하청노동의 사용을 통해 비임금 사회수혜의 감소를 추구해왔다. 고용안정이 크게 감소되는 파트 타임, 하청노동은 개발국들의 고용노동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구에 있어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구매력이 악화되고, 그에 따른 생활수준이 악화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은 급격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이 있음에도 기대할 만큼의 경제적·사회적 복지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이들 떠오르는 산업국에서 창출되고 있는 고용은 거의가 외국 다국적 기업의 투자에 의한 것이다. 이들 다국적 기업들은 그들 나라에 있어 일반적인 낮은 노무비뿐만 아니라 낮은 사회비용 및 낮은 환경기준을 이용키 위해 자본과 기술을 이들 나라로 이전시키고 있다. 그들은 거기서 전량은 아니지만 대부분을 개발국으로 수출키 위한 상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투자는 수출자유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은 그들 나라에 다국적기업들이 투자하도록 설득하고 자극하기 위해 수출자유지역들을 설치해왔으며 낮은 기준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자국의 사

회보호수준들이 다국적기업에 적용이 안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떠오르는 나라 다수에서 노조 존립이 허용안되고 있거나 허용되더라도 국가의 통제나 제약이 너무 심해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으며 실제로는 회사 이익을 지키는 ‘사회적 경찰’에 불과한 상태이다. 결국 임금 및 사회적 규정은 매우 열악하며 노동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공정한 몫을 획득케 하는 진정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를 세우는데 있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개발국의 임금, 노동조건, 사회적 규정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저비용장치들을 이용한다. 그 결과 경제하강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노동자는 누가 더 낮은 비용을 제공할 수 있는지의 기초 위에서 일자리 경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은 그러한 것들이 소위 자유시장 체제의 냉혹한 결과인 것처럼 기만하는 속들여다 보이는 시도를 하고 있다.

단기적 수익성 추구에 있어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 노동인구의 구매력을 감소시킴으로써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생산품에 대한 수요 수준을 낮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 상품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거나 구매능력이 없는 곳에서 생산되고 있다.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고객이 충분히 없다면 그것들이 얼마나 싸게 생산되느냐는 문제가 안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노동의 공급자, 즉 생산의 요소일뿐만 아니라 고객이며 투표인이다. 다국적기업이나 정부는 공히 이러한 측면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세계화 과정은 각국과 사회각층이 전반적 소비수준을 증대시킴으로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더 그렇다.

그러나 이들 다국적기업 경영자, 그리고 슬프게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의 기본적 철학이 세계화가 제공하는 기회를 부의 증대보다는 부의 재분배차원에서 이용하려는 것이다. 그 결과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격차는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기 원하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기 자신 이외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개인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스스로를 보살필 수 없는 자를 집단적으로 부양하는 사회에 살면서 사회 모든 부분에 대해 공정한 법의 기초를 만드는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은 시민이며 투표인으로서 우리가 내려야 할 기본적 선택사항이며 이들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하는 정부를 선택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 일반이 이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사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제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그래서 지나친 상태를 방지키 위해 그들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사회에서 경영자에게 고용비용을 삭감하고 그래서 이윤을 증대시키며 그런 이윤을 근거로 자신들의 임금을 수십만달러나 받는데 그런 이윤의 증대를 위해 임금을 삭감토록 지시하는 데는 기본적인 잘못이 있다.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은 노조선거든 정부선거이든 그 선거때마다 우리의 손에 해답이 주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런 기회 이용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 20년간의 경험을 볼 때 노조활동은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충분하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그들의 자주적 민주적 조직을 통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형성하고 그들이 창조한 부의 공정 분배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최저한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본적 인권 및 노동조합권의 기본적 법률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노사대책 · 법규활동

목 차

○ 평가 및 개선방안

1. 쟁의발생 및 쟁의행위사업장 현황
2. 질의회시
3. 노동악법 철폐투쟁에 대한 평가및
투쟁방향
4. 쟁의행위 발생신고 사업장(노동법관련)
5. 노동악법 철폐투쟁에 동참한 사업장
6. 노동쟁의 지도지침

평가 및 개선방향

노사대책국에서는 지난 1동안 임투순회교육과 쟁의사업장 지도 및 지원, 법규해석에 관한 질의회시 노동법 개정에 대한 대응 활동 및 노동악법 저지투쟁을 전개하였다.

96 년 임단투 쟁의발생신고를 한 사업장이 41개, 쟁의행위사업장이 17개사업장(18건)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쟁의기간이 늘어났으며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기도 하였다. 또한 단체행동의 유형을 보면 부분파업, 시한부파업, 전면파업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고 회사의 협박이나 회유에 쉽게 동요되는 현상도 볼수 있었다. 향후 개선방향으로는 임금 요구안이 실현가능성있게 합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교섭방법 또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속전속결로 진행되어야 할것이며 조합원들의 편견도 바로잡아야 할것이다. 또한 새로 제정된 노동관계법하에서는 산별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할것이다. 노동법 개정에 대한 대응활동으로 정부의 자본 편향적 개정을 우려하여 조합원 교육 및 집회, 정당방문, 각종토론회 참석등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법 개정을 갈망했으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한 현실점에서 결국 여당의 날치기 통과로 노동계 사상유례없는 총파업을 유발하게 되었고 각계 각층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투쟁을 전개하여 문민독재의 사과를 유발시켰으나 결국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날치기법과 큰 차이없이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의 존엄성마저 무시당하는 악법으로 제정되었다.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이 제정립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노동악법 분쇄투쟁을 전개해 나아가야 할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별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며 노동계의 통합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조직의 힘을 배가하여 노동악법을 분쇄해야 할것이다.

1. 쟁의발생 및 쟁의행위사업장 현황

1) 쟁의발생 및 쟁의행위 사업장 (타결)

지역	조합명	대표자	조합원	요구및 쟁점사항	진행사항
부산	고성산업	이한봉	50	정액135,000(18.5%),상여금 100%, 노조수정안:7만원 (9.6%)상여금100%, 사측제시안:75,000원	발생신고:5.7 행위신고:5.20 단체행동:부분파업,교섭회수:7차타결
인천	영창악기	장태훈	2400	기본 125,850(22.68%),고용안정, 타결:기본 13.5%,여성임금 100원추가, 고용운체발생시 노사합의등, 고용문제(297명 인사대기발령)	행위신고일:4.23, 단체행동:부분파업, 교섭회수:10차타결 총파업:6.25, 고용문제백지화:6.27
충남	포스코홀스	전수문	650	타결:기본 14%,상여금 800%,조합비공제,토직금누진제등	발생신고일:5.13 교섭회수:14차타결
	대동브레이크	백중형	115	단협개정	발생신고일:2.14 행위신고일 :2.26 단체행동:부분파업, 교섭회수:22차타결
	대우공업	이홍재	90	단협개정	발생신고일:2.13 행위신고일:2.23 단체행동:전면파업 교섭회수:7차타결
	동일알루미늄	박종선	93	단협개정	발생신고일:4.17 단체행동 :준법투쟁, 교섭회수:14차타결
	동양철관	양시준	180	신호그룹인수반대	7일파업, 4.19-4.23
포항	한금	박영화	58	기본64,800원 상여금800%	발생신고일:5.25 기본 66000원타결
경기	두산제관	이성찬	367	기본 81522원,각종수당요구	발생신고일:5.2 타결일:5.18
서울	동해	이경옥	88	기본13.2%,상여금570→600	발생신고:6.3,6.14:타결

지역	조합명	대표자	조합원	요구및 쟁점사항	진행사항
서울	롯데전자	차명재	390	기본4만(9.27%)근속수당인상, 학자금, 고용 기본OTHr 상여포함등	발생신고:6.17 17차타결
경기	산내들인슈	주현중	30	기본72000, 호봉 6천인상, 근속수당, 상여금지급시기조정	발생신고 6.17, 13차타결
경기	신한주철	윤무영	325	기본4만5천, 상여50%, 성과급 20만원 타결	발생신고일:6.12, 쟁의행위투표:6.27 6.25(8차타결)
경북	경신공업	심경수	1200	주42시간, 상여금700%, 각종수당인상	발생신고일:6.21 단체행동:잔업거부, 13차타결
전북	우민주철	백병기	221	기본15%, 생산성과수당89817원(월별지급)사측결요구	발생신고:5.20 단체행동:파업 6.18타결
경남	풍성정밀	이재근	330	기본16.98%, 상여 650→700%, OT30시간, 주40시간	발생신고:6.17 쟁의신고 :6.29
서울	대우전자	이병균	7700	기본9.18%, 주42시간, 자기개발비5만원(신), 가족수당8천원등	발생신고: 6.22 7.10 타결
경기	현대전자	김영철	8900	기본12.02(6만원), 유니온샐, 주40시간, 상여100%, 자기개발비5만원, 기숙사등	발생신고 : 6.21 7.10 타결
인천	희성금속	허규선	140	기본10.72%, 자기개발수당5만원, 유치원비3만원등	발생일:6.22 타결일:7.10타결
인천	한국샤프	박제혁	592	기본12% (52,560)	발생:6.17 7.12타결
인천	미주제강	장영일	190	기본10.31%(57,000)상여100% 각종수당인상	발생:6.21 6.26타결
경남	풍성전기	박양현	500	기본10.04%(6만원)주42시간, 성과급30만원상여50%등	발생:6.17, 7.2타결

지역	조합명	대표자	조합원	요구및 쟁점사항	진행사항
인천	대한제당	손중홍	280	기본11.08%(75,016원),년말 성과급100%지급,상여50%, 노동시간240→226Hr,휴가 비,현장수당	발생신고:6.26 7.12 타결
인천	우일정밀		50	기본 12.5%(66,000)	발생신고:7.2 7/3타결
부산	연합조선	이창만	116	기본9%타결	쟁발신고:6.19 7.1타결
경기	경용기계	송두영	46	기본95,000 수당2만원,상여 금 기750→통800% 복지기 금2천만원증자,성과급100% ,하기휴가1일추가등	발생신고:6.17 행위신 고일 :6.28 7.15타결
경남	삼송	김호규	63	기본85500,주43시간,근속수 당5천원	발생신고:5.6, 7.8타결
	유성금속	손성국	130	노조 기본21%→15%	발생신고:6.17 7.1타결
충남	환영철강	홍성태	223	기본7%(시급150원)제수당 인상(생산장려금,호보테이 블조정)	발생신고:6.12 타결
구미	IG모타	박미숙	50	통상12.7% 전임자축소	발생신고:6.5 행위신 고:6.17 7.1타결
서울	롯데 알미늄	전기홍	804	노조:기본13.5% 상여50% 사특:기본7,근속수당:2년(신) +2000	쟁발신고:7.9(97%결의) 행위찬반투표:7.12
서울	시그네틱 스	최현숙	665	기본11.5%(8만) 품질향상 구당,교통수당	쟁발신고:7.5 찬반:7.13(83%찬성)
경기	한국 브레이크	유환철	187	기본13.85% 상여100%,가 족수당통상화	쟁발신고:6.25
경북	대동금속	김형호	134	기본9100 상여 850%	발생신고:6.14
부산	태양사	김근박	230	기본15%(64994)상여금,학 자금전액,각종수당인상	발생신고:6.8 행위신 고:6.18 6.22까지 시한 부파업

2) 거평시그네틱스

회 사 개 요

1996년 9월 회사설립(한국시그네틱스) - 100% 외자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설립된 반도체 제조업체

1967년 9월 노동조합 설립 - 전국외국기관 노동조합 한국시그네틱스 분회 결성(조합원 300명)

1995년 5월 필립스로부터 국내 거평그룹으로 인수

1996년 5월 96년 단체협상 시작

1996년 8월 위장 직장폐쇄

구 분	사 원 수	조 합 원 수	평균연령	평균근속
남	250 여명	100 여명	40 세	12 년
여	650 여명	550 여명	29 세	7 년

사 건 개 요

- ▶ 거평인수이후 회사의 비인간적 노무관리 및 조합말살정책 실시
- ▶ 이러한 정책으로 회사에 대한 불신이 쌓여오다가 인수 두달후, 95년 단체협상 기간중 인 95년 7월부터 조합원인 일부직책에서 비공개 수당 지급된 것이 공개되면서 불신 증폭, 전조합원들이 자연발생적, 산발적으로 회사에 해명요구 면담신청
- ▶ 면담신청과정중 회사의 책임있는 설명 회피로 면담신청이 계속되면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전체조합원이 함께 한 일에 대해 전, 현직 조합간부등 21명에 대해 해고 등 중징계, 형사고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조합비 가압류
- ▶ 96년 7월 쟁의행위신고후 20여일간 일2시간 이내 총13시간의 부분파업에 대하여 공격적 직장폐쇄(부분파업 계획시 회사에 공문발송, 직장폐쇄 직전에는 정상근무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무조건적인 계획에 의한 공격적 직장폐쇄)
- ▶ 직장폐쇄이후 비인간적, 비도덕적인 폭행 등 자행
- ▶ 노사합의 이후에도 계속적인 부당노동행위 자행

사 건 경 위

요구안 제출에서 직장폐쇄까지

4월 30일 - 요구안 제출

5월 20일 - 1차교섭(8월 16일까지 12차교섭)

5월 29일 - 조합원인 작업반장에게 비공개로 잔업수당이 작년 7월부터 지급된 사실이
현장에 공개

6월 5일 - 비공개 수당 지급에 대하여 부서별로 자연발생적, 산발적으로 회사에 해명요
구 면담신청

6월 7일 - 조합간부 및 조합원 일부 징계위원회 회부, 인사대기발령

6월 8일 - 전조합원 인사대기발령 자처하며 인사부 앞 집합, 징계철회 요구

6월 10일 - 인사대기발령(21명)

- 형사고발 10명(위원장 포함)

6월 26일 - 손해배상청구 소장접수(2억 7천), 조합비 100% 및 형사고발자 임금 50% 가
압류

6월 28일 - 쟁의발생신고(지방노동위원회, 강서구청)

6월 29일 - 징계위원회 결과발표(해고 9명, 정직 5명, 감봉 7명), 중징계(정직, 해고)
에 대한 조합의 합의요청 통보

7월 3일 - 7일 - 3차에 걸친 중징계 합의 회의

7월 10일 - 단체협약 “중징계는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합의없
이 징계 최종결정, 발표(해고 7명, 정직 7명)

- 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구제신청 및 노동부 남부사무소에 “연장근로 및 중징
계 조합과 합의” 조합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고발 접수

7월 12일 - 해고무효소송

7월 13일 -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7월 15일 - 쟁의행위 신고(지방노동위원회, 강서구청)

7월 26일 - 8월 16일 - 1일 2시간이내 총 13시간 부분파업

8월 16일 - 징계, 민, 형사 고소 철회 및 고용안정 요구안 제출

8월 18일 - 직장폐쇄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거평인수 직후 회사의 불신조장 사례

- ▶ 인수이후 바로 기존 단체협약에 대한 개약(안) 제시 - 전임자 대폭 축소, 조합 활동 시간 축소, 유니온샵을 오픈샵으로 변경 등 주로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개약(안) 제시
- ▶ 임금지급일 사전 통보없이 몇차례 지연
- ▶ 산재 임금저하
- ▶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조합원 대해 관례와는 달리 사전 통보없이 결근처리
- ▶ 노사합의에 의한 근무시간 중 조합간부 조합활동보고 및 계획 전달시간 금지
- ▶ 단체협약 제3조에 의거, 임시직 채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임시직 채용
- ▶ 근무형태 변경(SHIFT 기간 조정) 및 식당 외주 등에 대해 전 사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시도
- ▶ SHIFT 대체금지 : 그동안 업무에 지장만 없으면 개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SHIFT 를 조정할수 있었던 것을 전면금지, 건강, 육아문제등의 사정으로 부득이 해당 SHIFT근무를 못할 경우 휴직 강요 및 사직유도

▶ 불합리한 작업 전화 배치 : 50세가 넘는 30년동안 청소업무를 담당해 온 남자 조합원을 OPERATER(여자 조합원이 근무하는 장비를 다루거나 세밀한 검사를 하는 정밀한 작업) 또는 젊은 남자들도 하기 힘든 무거운 약품등을 옮기는 무리한 작업으로 배치, 자연 사직유도

▶ 단체협약으로 약속된 조합원 범위를 비조합원으로 대체

직장폐쇄 이후

8월 18일 - 직장폐쇄, 정문등 회사 출입 봉쇄, 용역 60여명 배치

- 조합원 정문 앞 철야농성 시작, 직장폐쇄 철회 조합 출입요구
- 농성해체를 시도하며 구사대들이 소방호수로 2차례 물벼락, 돌, 병등을 던져 조합원 부상자 다수 발생(병원 후송)

8월 19일 - 용역 교대시키기 위해 정문개방 시도하며 또한 차례 소방호수로 물뿌림, 조합원 부상자 발생

- 후문으로 부식 및 조합원 투입하려다 조합원들이 조합원 투입에 항의하자 구사대들이 여자조합원들을 무차별하게 폭행, 조합원 부상자 다수 발생

8월 23일 - 40여명의 폭력배 투입, 폭력배를 앞세워 물품반입 및 반출시도, 제품 반출을 저지하는 조합원들 폭행, 부상자 다수 발생(병원 후송)

8월 24일 - 생산품 반출 재시도

- 조합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정문앞에 누워 생산품 반출을 저지하자 폭력배, 비조합원들이 정문앞에 세워둔 노총차를 부수고 조합원들을 폭행
- 공권력 투입, 경찰들은 회사의 불법적인 폭행 만행에 대해서는 방관하며 집회신고를 마친 합법적인 집회임도 체류탄까지 쏘며 노동조합의 무조건적인 해산을 요구, 조합간부 및 조합원 31명 연행, 즉심으로 벌금형을 가함.

8월 25일 - 8월 임금 지급일, 임금체불 (9월 13일 지급)

8월 26일~ - 가정통신문과 전화로 회유, 협박 : 직장폐쇄는 풀지 않고 개인별로 전화하여 언제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해고다, 부서를 없애버리겠다. 일정정도만 들어오면 나머지 인원은 필요없다.

8월 28일 - 9월 5일 - 조합에서는 대화로 풀려고 계획된 집회도 취소하며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진전없음.

9월 6일 - 잠정합의

9월 7일 - 가조인

9월 9일 - 임시대의원대회(단체교섭 체결 인준)
- 조인식

9월 10일 - 직장폐쇄 철회 : 전체출근

96 년 교섭과정 중 회사의 비인간적 노무관리 및 조합말살정책

- ▶ 일부직책에 대해 비공개 수당을 지급한 회사의 부당한 정책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고 전체가 한일에 대해 조합활동을 열심히 해온 조합간부 및 조합원 21명을 주동자로 몰아 해고 등 중징계,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에 대해 형사고발, 형사고발자에 대해 2억 7천 손해배상 청구 및 임금 50%, 조합비 100%가압류
- ▶ 조합간부 움직임 일일이 체크, 감시
- ▶ 쉬는 시간 1,2분 늦었다고 상사가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았다고 회사의 비인간적인 행동에 항의했다고 사사건건 징계위원회에 회부 또는 해고 시키겠다고 협박
- ▶ 화장실 입구에서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체크, 화장실 갔다 오는 사람을 붙잡고 어느 화장실을 갔느냐까지 꼬투리를 잡으며 생리적인 현상을 쉬는 시간에만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지시
- ▶ 근무인원중 일부는 OTHERS로 해서 무력감을 주고 나머지 일부는 OTHERS로 한 인원의 몫까지 일하도록 노동강도를 강화하여 사직 유도
- ▶ 파업시간 이외에 생산량에 따른 무노동 무임금 적용
- ▶ 전사원 하기 휴가시 조합원이 현장, 식당에 부착한 홍보물 강제 철폐 및 조합의 현장 출입문 폐쇄
- ▶ 조합원이 다시 부착한 현장홍보물을 비조합원 50여명이 무더기로 몰려와 강제철폐

- ▶ 개인적인 인신공격이 있는 홍보물을 제거해 주면 다신 홍보물을 철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현장에 부착한 홍보물 전체를 깨끗이 정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당과 회사 철조망의 주민 홍보물을 또다시 강제 철거 - 파업유도,
(철거를 막고 있는 조합원 앞에서 칼을 휘두르며 난도질을 함)
- ▶ 조합의 현장 출입문 재폐쇄(용접)
- ▶ 조합에서 파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법으로 직장폐쇄 감행
- ▶ 직장폐쇄시 조합 출입을 허용해야 함에도 조합원은 물론 위원장 등 의장단의 조합 출입도 봉쇄
- ▶ 회사정문을 봉쇄하여 정문앞에 모여 있던 조합원들에게 소방용 호수로 폐수를 뿌리고 돌을 던지고, 몽둥이, 발등으로 구타하는 등 무자비한 행동을 자행
- ▶ 경비용역투입, 폭력배 투입
- ▶ 직장폐쇄는 풀지 않고 개인별로 전화하여 언제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해고다, 부서를 없애버리겠다. 일정정도만 들어오면 나머지 인원은 필요없다고 협박
- ▶ 8월분 임금 체불
- ▶ 어린이집 폐쇄

노사합의 이후 계속적인 부당노동행위

- ▶ 직장폐쇄 기간중에 용접으로 폐쇄한 조합의 현장 출입문 계속폐쇄
 - 추후 조합사무실 이전 약속
- ▶ 유니온샵으로 그동안 노사합의로 임금에서 일괄공제 해 오던 조합비를 조합원 개개인의 서명으로 조합비 공제를 하겠다며 오픈샵 유도 - 8,9월 조합비 공제 안함.
- ▶ 휴가신청시 휴일 O/T를 해야만 인정하겠다고 하며 휴가도 받아주지 않고 O/T강요
- ▶ 직장폐쇄 기간동안 끝까지 남아 직장폐쇄 철회농성을 한 조합원에 대하여 보복성 조치 및 차별
 - 직장폐쇄 철회후 분리 교육
 - 늦게 복귀한 조합원에 대하여 부서이동, 라인이동 및 OTHERS로 배치

- 부서배치 및 근무조 편성시 차별 (직장폐쇄시 일찍 들어온 사람 요구 우선 배려 - 기존에 다른 사람이 하던 일이나 근무조를 원할 경우 배려)
- 상품권 차별지급(8월말까지 들어온 사람 - 10만원권, 합의직전까지 들어온 사람 - 5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하며 직장폐쇄 철회 이후에 들어온 사람 분리)
- 보통 5분도 지각 체크를 하는데 일찍 복귀한 사람이 장시간 지각을 했는데도 지각 체크를 하지 않음.

거평시그네틱스 문제점

차별대우 (근기법 제 5조 위반)

거평그룹에서 작년 5월 시그네틱스를 인수한 후 같은해 7월부터 금년 5월사이에 리더걸 (작업반장)들에게만 실제 잔업여부와 무관하게 잔업수당을 지급하여 일반 근로자와 차별 대우를 함.

과잉징계(근기법 제4조 및 단체협약 위반)

차별대우에 항의하는 조합원에게 7명해고, 7명정직, 7명 감봉조치하였으며 노조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징계함으로써 단체협약을 위반함. 또 징계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노조활동 정도에 따라 회사가 자의적으로 함.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이전 직장폐쇄함.(쟁의조정법 제17조 위반)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가능(쟁의조정법 제17조)한 바 거평시그네틱스노동조합은 7월 15일 쟁의행위신고 이후 전면파업을 자제한 채 7월 27일부터 8월 16일 사이에 총 13시간의 부분파업을 하였고 이후로는 집단행동의 계획이 없었으나 회사측은 정상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8월 18일 오전을 기해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노동자들을 강제로 사업장 밖으로 내쫓음으로써 쟁의조정법 제 17조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지노위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시정조치가 없었음,

직장폐쇄 기간중 노조사무실 출입을 금지함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더라도 노조사무실이 공장내에 있을 경우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은 허용되어야 하나 거평시그네틱스는 직장폐쇄일인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정문을 봉쇄한채 조합원은 물론 노조간부의 조합사무실 출입마저 가로막아 4명의 노조간부가 7일간 노조사무실에 감금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쟁의기간중 쟁의와 관계없는 자의 채용(쟁의조정법 제 15조 위반)

거평시그네틱스는 지난 8월 18일 직장폐쇄 이후 협상이 타결될때까지 쟁의와 관련없는 자를 고용해 사용했으며 특히 이들중에는 농성노동자들을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등 전문폭력배들도 끼어 있어 대화와 협상을 통한 거평시그네틱스의 사태해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는데 이는 쟁의기간중 쟁의와 관계없는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수 없도록 한 쟁의조정법 제 15조를 위반한 사항인데도 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많은 사업장에서 노조의 쟁의행위에 맞서 전문폭력배를 고용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

직장폐쇄기간중 조합원을 선별해 작업시킴

(노동조합법 제39조 위반 - 부당노동행위임)

직장폐쇄는 회사가 조합원의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인바, 회사는 직장폐쇄공고문에서 기간을 단체협약체결시 까지라고 명시했으면서도 직장폐쇄기간중 조합원을 회유, 협박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8월 31일부터는 조합원을 선별해서 작업시키는 등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무력화시키는 위장직장폐쇄를 단행함. 노동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용자를 도와줌.

교섭타결이후 부당한 보복조치

(노동조합법 제 39조 위반 -부당노동행위임)

1996. 9. 10 - 현장에서선 업무량 과다로 잔업을 하면서 노조간부를 비롯해 조합활동에 적극 참여했던 7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출입을 통제함.

1996. 9. - 생산3부 현장에 업무량 과다로 교육자들이 라인에 복귀하였으나 본 업무는 다른 작업자가 잔업을 하면서까지無理하게 처리하면서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기존작업자는 잡일을 시킴.

1996. 9. 18 - 조합원들 대다수가 교육생들 라인복귀를 요구하며 잔업을 거부하자 잔업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휴가를 인정하겠다고 공식 통보함.

1996. 9 - 추석선물을 주면서 직장폐쇄기간중인 8월말까지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은 10만원, 타결이전에 복귀한 조합원은 5만원, 타결이후에 복귀한 조합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등 심한 차별대우를 함.

타 결 내 용

- 임금인상(남자 5만 - 6만 2천원, 여자 4만6천원)
- 품질향상수당 월 5천원지급
- 노조와 조합원들에 의해 야기된 불법조업 중단사태에 대해 노조는 회사측에 서면으로 사과하고 분규관련자 및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되 해고 정당판정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선처에 따른다.
- 회사와 노조는 96년 단체교섭기간중에 발생한 사안을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상대방에 대한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합의 즉시 취하한다.
- 회사와 노조는 향후 생산성 향상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경영권과 근로권을 상호 존중한다.

5) 상급단체의 역할

- 금속연맹

연맹 유재섭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지도, 지원, 노사대책국장 현장 상주파견 및 지도, 지원, 지역본부의장 및 중앙위원 격려 방문

- 한국노총

노총차량지원 및 현장에 실무자 파견, 실국장 지도, 지원

3)포스코홀스 노동조합 경과보고

포스코홀스는 1990 년 12월 18일 설립등기하여 6년된 회사로 현재 종업원은 약 900명에 이르고 포항제철 40%, 삼성 20%, 미국 MEMC사 40%의 지분을 갖춘 국내 2개그룹과 외국 1개사의 주주로 이루어진 회사로서 반도체소재인 실리콘웨이퍼를 제조하는 업체이다.

포스코홀스 노동조합은 1996년 3월 29일 설립하였고 그 당시 62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96 임단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졌으나 '노동법 개악 분쇄 투쟁 및 생존권사수 결의대회'에 의한 한국노총 총파업에 참가후 조합원 340명으로 감소, 현재 유지되고 있다.

간단하게 포스코홀스노동조합의 그간의 상황 정리를 하면....

▶ '96년 12월 3일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에서 위원장 불신임에 의한 총회 회부 결의

=> 조합에서는 당시 위원장의 유언비어와 관련 회사의 책략이라는 판단하에 좀더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총회를 미루었음.

▶ '96년 12월 10일 임시대의원대회 위원장 불신임에 대해 재차 논의

=> 조합에서는 우선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보류하기로 함.

▶ '96년 12월 13일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 조합원 84% 찬성으로 결의

=> 회사에서는 당시 투표하면 51%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있었음.

▶ ‘97년 1월 13일 회사의 고병기 이사와 조합의 임원진이 어떤형태의 파업을 할것인가에 대하여 논의 하였고 조합에서는 회사의 입장을 고려 부분파업을 단행하고 현장에서 일 할사람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붙잡지 않겠다. 그리고 단결정 생산팀과 설비등에 한해서는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나, 단결정 생산팀은 조합원의 뜻에 따라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교대로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입장표명을 함. 이에 회사에서는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되, 인사반영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97년 1월 14,15일 총파업에 조합원 320명 참여

=> 회사에서는 파업기간중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 한하여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였고 파업이후 파업참가 조합원에게 이틀간의 무계결근 처리, 급여감소, 인사고과 반영, 승진 승급시 누락 적용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함.

▶ ‘97년 1월 16일 조합을 상대로 쟁위행위금지 가처분 통지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법으로부터 받음.

=> 회사에서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인당 3백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말을 주임, 반장, 교육을 통해 현장에 흘려보냈고, 현장에서는 주임, 대리의 조합원 면담시 ‘회사가 어렵다, 손해배상을 한다,

조합간부가 왜 사임 했겠나“등 유언비어를 흘려 조합원 탈퇴를 종용, 회사의 추천인에 의해 조합원 탈퇴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 ‘97 년 1월 24일 조합원 집단 탈퇴 불과 10일만에 200명 가량의 조합원 탈퇴

=> 이중에는 본인의 자의에 의한 탈퇴가 아니였다는 진술서와 함께 재가입 의사를 밝힌 사람도 많다.

▶ '97년 1월 16일 생산현장에서 주임이 조합원 구타한 사건 발생

=> 설날 연휴시 근무인원 배정중 파업에 참여한 사람을 근무에서 배제한 이유로 발단, 전화통화를 마치고 근무중인 조합원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러 안전화를 신은 상태에서 발로 조합원 왼쪽 정강이를 걷어 찬 사건

=> 조합에서는 2월 25일 천안경찰서에 형사고발접수한 상태이다.

▶ '97년 2월 13일 조합원 임시총회 개최

=> 그간 끊임없이 문제시 되어 왔던 “위원장 불신임 찬반투표”를 실시 현재는 제2대 위원장 선임시까지 수석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 '97년 2월 13일 손해배상청구 우편물 접수

=> 회사는 이날 손해배상청구를 조합원에게 한 것이 아니라 조합의 임원진 4명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장을 보내왔다.(집으로 우편을 이용)

노조는 그간에 있었던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약위반사항 그리고 관리자의 조합원 폭행건 등의 사건들을 서류로 정리하여 관할 행정관서에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으며 파업과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상급단체와 연대하여 변호사 선임등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금속연맹 활동사항

2/18 연맹 유제섭 위원장은 김순호 노사대책국장을 파견, 충남본부 강한우 의장과 한국노총 충남본부 천안지역지부 방문, 모연창 노총본부의장과 포스코홀스 노조 방문. 경과보고를 받고 회사측 전무(사장 부재중)를 만나, 원만히 해결할 것을 촉구, 회사측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3/17일 회사측의 반성은 커녕 총파업에 참여 했던 조합원을 승급에서 누락시켜 내부분열을 조장하고 노조를 와해 또는 무력화 시켜 97 임단협에서 우위를 확보하려고 계속 탄압가중

당연맹 노사대책국장은 한국노총 남일삼 노사대책국장과 강훈중 노사대책 부장과 금속총남본부 강한우 의장과 한국노총 충남본부 천안지역지부를 방문, 홍제복 의장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보고받고 한국노총 충남본부 모연창 의장, 천안지부 홍제복의장, 금속총남본부 강한우 의장과 포스코홀스 노조를 방문, 전무를 호출하여 격렬히 비난하고 사장 출두요구, 사장과 면담하여 회사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항의와 대안을 제시함.

대안 : ① 회사는 조합원 탈퇴유도를 즉각 중단하고 다시 조합에 가입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 ② 회사는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해 승급누락 시킨것을 회복시킬 것. ③ 회사는 이번일을 도모한 책임자를 인사조치 할것. 이것이 이루어질 경우 노동조합이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상급단체에서 책임지고 지도 할 것을 약속함.

이에 회사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시간 여유를 요청 진상조사단은 다시 노동부 지방사무소 소장을 방문, 포스코홀스의 노무관리를 올바르게 지도하고 이번 문제가 원만히 해결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고 약속을 받음.

※ 준비했던 고소.고발 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유보. 차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과 금속연맹이 지역본부와 투쟁 계획을 세워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의함.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탄압 규탄대회

(중가관리자의 횡포, 이대로 괜찮은가?)

1997 년 1월 26일 저녁 20:00시경

파업참가로 인한 업무상 불이익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알려달라는 조합원의 요구에 대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일축해 버린후 그것도 모자라 작업중인 조합원에게 폭언 및 구타를 가한 ○○○ 주임의 행태는 포스코홀스 중간관리자의 한모습을 여실히 보여준것이다.

○○○ 주임은 과거에도 한차례 조합원들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일이 얼마 경과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또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 주임이 과연 중간관리자로서의 충분한 자질이 되는지 반문해 보지 않을수 없다.

현장에서 작업자 개개인의 업무수행 능력을 최대한 높여주고 또한 그로 인해 원활한 작업환경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가장 일선에서 나서는 자리가 현장의 주임이 아닌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 주임의 행태는 일 개인의 문제로 보아 넘겨서만은 안된다.

옛말에 ‘한마리의 미꾸라지가 물 전체를 흐트러트린다’는 말이 있다.

한사람의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그가 몸담고 있는 전체를 흐려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한사람의 관리자로써 그의 역할과 책임의 소재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또한 한 작업장에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까지의 일련의 상황들을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럴때만이 소신껏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른 관리자들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또한 현장에서의 더 이상의 동요를 막는 최선의 해결책이 될것이다.

따라서 당 노동조합은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 현장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로써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 회사측의 사주로 밖에 생각할수 없으며 이번 사태를 회사는 책임을 통감하고 해결할 것을 조합은 강력히 촉구하며 계속되는 노조탄압에 다음과 같은 투쟁을 전개한다.

1. 조합은 2월 5일 ○○○주임에 대해 형사적 고소와 부당노동행위 고발조치를 집행한다.
2. 김동섭 사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조합원 앞에 공개사과하라.
3. 이번 사태의 주범인 ○○○주임을 회사는 2월 4일까지 징계(의원면직)조치하라
4. 조합원의 의지를 모아 2월 5일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및 규탄대회를 실시한다.
5. 이번 사태가 조합원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은 언론보도 및 모든 메스컴을 통하여 대대적 홍보와 아울러 지역노조 및 상부단체와 연대하여 대규모 집회를 실시한다.

포스코홀스 노사관계의 새로운 출발

‘96년 3월 노조 설립이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상호간의 이해부족과 견해차이에 관한 것으로 회사와 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골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초 노동법개정문제를 둘러싼 조합의 파업단행은 포스코홀스 역사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가슴아픈 경험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인해 회사는 파업으로 인한 직간접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 생산현장동료 직원들간에는 파업 참가직원과 불참한 직원으로 나뉘어져 감정의 골과 거리감이 발생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조합은 현재의 갈등, 오해등 불필요한 여건을 가급적 빨리 해소하는 것이 회사와 사원 모두를 위하여 슬기로운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97년 3월 노동조합 집행부가 새로이 출범하면서 「노사화합」을 제시하고 조합운영방향의 수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회사와 조합, 그리고 직원 모두가 상호간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여야 하겠으며 무성한 말잔치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협력적 노사관계를 실현해 가는 출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금년들어 점점 어려워지는 회사의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지난 1월의 파업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점들을 치유하고 전직원이 하나되어 밝고

알찬 포스코홀스를 가꾸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조합과 회사가 오랫동안 여러차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우리 포스코홀스 가족 모두는 또다시 하나로 뭉쳐 세계적 반도체 산업의 침체로 인한 회사의 경영위기를 타개하고 회사를 반석위에 올려 놓는데 뜻을 모아 갑시다.

< 조합의 입장 >

1. 노동법 개정문제와 관련하여 전면 파업이라는 투쟁방법을 선택하여 회사의 조업에 피해를 초래케 한점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 한편 파업기간중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직원, 그리고 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신 관리감독자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한다.
3. 앞으로 적법하지 않은 파업은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만약 이러한 파업을 했을때는 이에 관련한 급여,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아울러 조합에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위반 및 고소고발건 등은 이를 제기하지 않으며 제소된 사항은 즉시 취하한다.

< 회사의 입장 >

조합의 화합적 조치에 대하여 회사도 협력적 노사관계의 새출발을 다지고 모든 직원이 하나로 되는데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하여

1. '97. 1. 14. - 1. 15의 파업참여가 무계결근처리됨으로써 발생한 호봉승급 및 승격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의 적용을 전면 백지화한다.
2. '97. 1. 14. - 1. 15 의 파업과 관련하여 현재 B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조합간부에 대하여는 회사는 조합과 합의하여 조속히 처리한다.
3. 회사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차별하거나 특별히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4.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야 하며 회사와 조합은 이를 강요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관리감독자가 회사의 입장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식되게 한 점이나, 노사관계운영에 있어서 단체협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식되게 처리한 사안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회사는 이를 시정하도록 한다.

포스코홀스 가족여러분 ! 비온뒤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조합원이든 아니든 모두가 하나입니다. 해묵은 감정이나 앙금을 이제 뒤로 합시다. 그리고 「밝은일터」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과 뜻을 모읍시다. 그리하여 마음과 정이 통하는 훈훈한 직장을 만들고 각자의 업무에 충실하여 고객에게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한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고 주주에게는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답을 하는 건전기업으로 성장해서 21세기 국가 경제발전에 초석이 될수 있도록 합시다.

< 이면사항 >

1. 조합원 구타건에 대해서는 이면상의 합의하에 해당 주임 이덕조에 대해서는 부서발령 인사조치를 취하고 송대호 조합원에게는 잡배치(현부서에서 근무지만 바뀜)를 취하고 징계위원회에 걸쳐서 미세한 경고조치로 끝내기로 함.
2.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오늘(4/14)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모연창의장과 김동섭 사장이 자리를 마련해서 타결할수 있는 방법을 취하기로 함.

2. 질의회시

<조합운영에 관한 질의(삼노제96-21호)> 조합원중 현 집행권자에 이의 질의사안으로써 단협안에는 차량에 대한 문안은 없고 사원모집 공고시 차량제공으로 되어 노사협의 결과로 사측의 임대 차량제공으로 운행되어오고 있습니다. 앞 집행부시 5대에서 6대로 노사협의를 통해 제공되어 오다가 현 인원 50여명의 감소로 인해 1대줄이는 문제를 당 조합에서는 조직 기구를 통해 설명과 입장을 밝히면서 노사협의를 통해 카풀제 도입(해당차량 기름티켓 제공)과 전 조합원중 통근버스 이외의 노선에 대해 운임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원이 적은 1대를 줄이도록 하여 더 많은 조합원의 편의와 교통비를 지급받게 되어 더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보는데 이의 질의자는 앞전 부위원장으로써 주장하는 바가 단협에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단협안이고 대의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본 조합은 인원감소로 인해 발생한 이 문제를 조직기구를 통해 회사와 조합의 입장 설명을 통했고 단협에 대한 교섭시작 전에 노사협의를 통해 해결한 이 사항이 현집행권자가 잘못 결정한 처사였는지 아니면 이의 질의가 부당한 질의한 것인지요.

2. 본 조합의 96단협 갱신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써 고용에 대한 안정을 보장 받고자 1)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과 2) 정리해고에 관한사항을 교섭내용에 포함시켜 단협에 명시 결정되었습니다. 이사항이 조합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잘못되었는지요

본조합은 현 회사가 경영합리화와 경쟁력 확보라는 명목하에 생산라인을 축소하고 생산물량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사후 불안한 감원이 예고 되기에 이번 단협갱신안에 명시하였는데 이 또한 회사에 빌미를 제공하고 조합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잘못했다 하는데 해명바랍니다.

3. 현재 본 조합의 노보 즉 소식지가 발간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활동의 이모저모 기획행사, 전달사항, 통보사항등이 잘 이뤄지지 않아 해소방안의 하나로 발간 추진 과정을 밟고 있는데 공고를 통해 편집인을 구성했고 공고를 통해 편집내용을 확보했고 단지 소요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서 조합비가 아닌 별도 부분에서 조달하려고 합니다.

조합에서는 이전 회사를 통해 복지차원에서 자판기를 구입하게 하였고 조합에서 인수 관리하게 하여 얼마의 이익금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익금을 가지고 노보 소식을 발간해야 겠다고 홍보하고 대의원회를 통해 발간여부 동의에 이의없이 동의를 얻었고 이후 집행부에게도 같은 방법을 취하고 추후 추정 소요금액을 다시 논하자 하고 노보 소식지 발간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의 발언자는 조합비 외의 자판기 수익금 사용부분도 대의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본 조합은 지금까지 노보소식지를 발간할려 시도했던점과 지금 현 조합원들도 원하고 있는점으로 절차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대의원의 동의와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려 한 사항이지만 엄격히 논하자면 조합 규정에는 자판기 이익금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 없고해서 현 집행부의 소관이라고 보는데 어떠한지요.

<회사(금속노련법규제36호)> 질의 1)에 관하여 단협에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단협안이고 대의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 법에 위반된다고 할수 없으며 그 결정이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결정한 집행권자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전 부위원장 개인의 욕구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집행권자가 이해시킨다면 충분히 납득하리라 사료됩니다.

질의 2)에 관하여 금속연맹에서 지도한 바와 같이 앞으로 예견되는 정리해고의 난립을 막기위해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을 단협에 명시하도록 한것은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과 정리해고를 막기 위함으로 조합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한 이의 제기는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3)에 관하여 먼저 늦은감은 있지만 조합원의 귀가되는 소식을 발간한다는 귀 조합의 집행부에 찬사를 보냅니다. 자판기 수익금 사용이 조합 규약에 없다하더라도 그 사용처가 조합활동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면 법적 하자는 없으며 사용후 대의원 대회에서 추인을 받으면 된다고 사료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질의> 근로자의 쟁의행위중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시 쟁의행위기간도 삽입되는지 아니면 쟁의행위 이전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회시(금속노련법규제44호)> 질의에 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의행위에 따른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한다면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되어야 할것임. (1989. 9. 25 임금 32240-7820)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치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공장매각에 따른 질의(포스틸노조제96-02호)> 사안 가. 저희회사는 1984년 7월 1일에 창립하여 전남 순천에 강관공장 및 열인가공공장, 경북 포항에 S.T.S파이프공장, 냉연가공공장을 설립하여 1994년 9월까지의 생산제조부문을 중점에 두고 경영해 오다가 94년 10월 중순부터는 포항제철 구조조정에 따라 포항제철 내수 판매를 저희 회사로 흡수 이관하여 회사 상호도 (주) 경안실업에서 (주)포스틸로 변경되었으며 그에 따른 회사매출액도 약 15배 가량 상승되었습니다.

나. 1996 년 5월 현재 종업원수가 676명(조합원 158명)으로 내수판매 부문(378명) 및 생산 제조부문(298명) 으로 구성되어 유통(영업)과 생산제조 부문을 겸하고 있으며 내수판매(유통)부문을 본사로 규정하고 생산부문을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구성하였으나 동일 법인체로 되어 있는 단일 회사입니다.

다. 현재 매각 대상이 된 공장은 순천 강관공장 및 포항 S.T.S 파이프 공장입니다.

당사의 95년도 전체 매출액은 약 3조 4천억원으로서 그중 생산부문 매출액은 약 2,400억원을 달성했고 세전이익 역시 약 120억원을 달성 했던바 하등의 매각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는 ‘기업의 경영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2개 공장을 매각정리하려고 합니다.

다만, 생산 4개 공장중 S.T.S파이프공장의 경우 국내 S.T.S경기의 침체 및 다품종 생산설비의 부족으로 적자가 발생되었기는 하나 96 년 4월부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약 50억원을 투자해 현재까지 설비를 증설하고 있는 실정이며 증설공사가 채 완공되기도 전에 매각을 하려고하는 회사측의 경영방침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태이며

라. 저희 회사는 94년 10월 포항 강관공장, 95년 4월 광양 구조관공장을 정리했으며 96년 5월 현재는 2개공장을 또 정리하려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공장의 직원들의 고용안정 역시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마. 노동조합에서는 2개공장의 매각에 관한 당위성을 설명하라고 촉구했고 회사측은 시대적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조합에서는 노.사간 단체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회사측에 요구하였는바 회사측은 명예퇴직제 도입으로 인원정리 및 모든 사안들을 일방적 시행으로 강구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당 조합에서 궁금한 사항은 회사측에서는 명예퇴직제의 도입으로 노.사 교섭 없이 인원을 정리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이 사안이 노.사간에 교섭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또 대상인원, 적용시기, 명예퇴직금의 책정을 조합에서는 단체교섭으로 합의 할 사항으로 보는데 회사측의 일방적 시행이 합당한지 귀소의 견해 및 법률적 해석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10여년 이상 피와 땀으로 번창시켜온 회사를 지키고자 하는데 회사측의 매각에 관한 당위성이 타당하는지요

질의 2> 위의 사안 마)항과 관련 회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방법이 합법적인지요

질의 3> 회사측이 마)항과 관련사항으로 볼때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가 노동법상 정당하는지요

질의 4> 생산제조부문 직원들의 향후 고용안정 대책은 어떠한 방법이 있겠는지요?

질의 5> 기타 필요한 사항

(회사(금속노련법규제48호)> 질의1)에 관한 공장 매각의 당위성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 23조(재산권 보장)에 따르면 귀사 경영진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2개의 공장매각 자체에 대해서는 경영권으로 간주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영업승계의 경우) 영업승계의 경우에는 양도, 양수의 당사자간에 어떠한 합의가 있더라도 당연히 고용조건이 승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승계와 관련된 근로조건 등 노동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경영진과 논의하여 고용조건이 포괄 승계됨과 동시에 매각에 따른 손실 및 위로금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것으로 보이며(동진금속 사건, 대판 1994. 6. 28, 96다 33173)

1-2(설비만 매각하는 경우) 배치전환 및 정리해고 등 고용안정의 문제에 대해서 대비해야 할것입니다.

특히 정리해고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해고요건의 이행여부를 엄밀하게 검토하는 것과 함께 추후의 제소들 다툼에서 유리한 지위를 위해서라도 노조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구사노력과 대안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경영합리화를 위한 방안 중 매각이 아닌 다른 효과적인 방안이 있다고 판단될수 있는 대안을 노조가 제시할 경우에는 법원 등의 판정에서 사측의 권리 남용등 유리한 조건이 될수도 있으니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2)에 관하여 회사가 경영합리화의 방안으로 노동자를 해고하고자 할때 (정리해고), 기존의 판례에 따르면 다음의 4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동부화학서건:대판 94. 6. 14, 96다 48823)

- ①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②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및 신규채용금지, 일시퇴직,,희망퇴직자 선정 등 해고 회피 노력
-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처리기준의 설정에 의한 해고 대상자의 선별
- ④ 노조나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과거와는 달리 도산의 위기에 이르지 않더라도 생산성 증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합리화에 이르기까지 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①, ②, ③ 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④의 절차를 밟았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정리해고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가지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별첨 판례 및 해설 참조)

만일 귀문의 경우처럼 귀사가 ②,③,④의 요건을 미비한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추진하고 있다면 (이것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절차상의 하자로 무효를 다룰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1994년 한일개발사건(대판 1884. 8. 12, 94다 3216)에 의하면, 경영합리화를 위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사업부 폐지 결정 자체는 경영권의 범주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 후 배치전환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대상인원, 적용시기, 방법등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하다 할수 있음으로 당연히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노동조합법 제 39 조 제 3 호)

질의 4)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고유 임무는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보전 및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이러한 문제를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보장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귀 노조의 경우에도 정리해고 절차와 관련된 ④번 요건을 노조와 합의 또는 노조의 동의를 요한다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의 힘이 단결에 있다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내부의 조합원 간의 단결과 상급단체 등 노조간의 연대를 강화하여 대응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노사관계의 개선이나 회사의 경영상태를 호전시키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수 없습니다. 이를 위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노력은 만일의 경우 사법적인 다툼에서도 노동조합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것입니다.

<질의(한일제관노조)> 당 노동조합 규약의 제정 및 개정은 대의원 대회 기능으로 규약 제18조에 있습니다. 정기대의원 대회 개최는 본조와 지부에서 각각 개최하며 동 규약은 본조와 지부가 함께 적용됩니다. 현재 지부에서는 동 규약을 근거로 별도의 지부 운영규정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의1> 현재 본조 대의원 14명, 지부 대의원 12명, 합계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규약 제28조(회의의 성립과 결의)에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는 근거로 규약 제정 및 개정은 지부 대의원의 참석없이 본조 대의원만 참석하여 전체 구성 대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찬성 결의할수 있습니까?

질의2> 질의1> 에서 찬성결의 하였을 경우 본조 대의원만 참석하였으므로 지부 대의원이 무효라고 이의 제기시 유·무효여부?

질의3> 동 규약은 본조, 지부 함께 적용되지만 정기대의원대회 개최가 각각 개최되므로 지부 대의원은 본조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규약 제정 및 개정시 자격의 유·무?

<회시(금속노련법규제112호)> 대의원대회는 본조 대의원과 지부대의원이 함께 참석하여 개최되어야 하며 본조대의원만으로 개최될시 그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단체협약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평화산업노조)> 단체협약 제 3장 제 16조 2항

2)항 법정 공휴일 (단, 설날과 추석에는 법정 공휴일 이외에 1일의 유급휴일을 연장한다

	전일	추석	전후		
1996 년 9월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목)	(금)	(토)	(일)	(월)

29일까지 휴무가되는지 30일까지 휴무가 되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금속노련법규제110호)> 법정공휴일(단, 설날과 추석에는 법정공휴일 이외에 1일의 유급휴일을 연장한다)로 되어 있을경우 9월 26일-28일이 법정공휴일이고 1일의 유급휴일을 연장한다로 되어 있으면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29일(일요일)까지로 보아야 것입니다.

<단체협약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진흥철강노조)> 본 노동조합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갖는 유니온샵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일괄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하겠다는 연대서명을 해석, 회사에서는 연대 서명을 한 몇몇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비를 일괄공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조합에서는 단체협약 위반사항이 아닌지 구체적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노동부에 전화 질의를 해보니 조합비는 임금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일괄공제를 한다해도 본인 스스로 조합비 공제를 거부한다면 조합 규약상으로 처리 할 문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구체적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회사(금속노련)>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규약에서 정한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일괄공제제도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조합비 일괄공제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 노조규약상의 관련규정 또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있다면 사업주는 단체협약에 의거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상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노조규약상 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정권)를 받은 조합원도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야 할것으로 봅니다.

<규약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쌍중산노제11-07호)> 당 조합 대의원이 부서부장 겸직을 하고 있는바 노동조합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시<금속노련법규제 174호> 귀 노조의 규약 또는 규정에 대의원이 부서부장을 겸직할수 없다는 조항이 없는 한 부서부장을 겸직하여도 무방하며 노동조합법에도 저촉되지 않음을 회시합니다.

< 단체협약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현전노제96-03호)> 1. 단체협약 제43조(특별휴가) 3항(공무휴가)1호에 병역관계법에 의한 검사, 출두 및 근무소집,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일때 그 소요일수에 대해 공무휴가를 준다고 되어 있고

2. 단.협 제36조(근로시간) 1항에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 4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3. 당사 예비군 교육훈련 규정 제9조(교육훈련 근태처리)에

1) 예비군 교육훈련시 근태처리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교육기간은 공무휴가로 처리한다. 단, 일일 교육시간이 4시간 이하시 교육장과 회사간의 통상적 교통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2) 일과종료후 24:00(자정)이후까지 훈련이 계속되는 경우 익일 오전은 휴무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4. 3교대 근무시간은 A조(06:00-14:00), B조(14:00-22:00),C조(22:00-06: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교육시간(통상 08:30-16:30)이 8시간인데 회사의 주장은 교대근무자 중 B조와 C조는 훈련이 끝난후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위법이 아닌지 질의하오니 답변, 회신부탁드립니다.

<회시(금속노련법규제43호)> 귀 노조 단체협약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대하여 ‘그 소요일수에 대해 공무휴가를 준다’고 되어 있고 지금까지 2박 3일의 예비군 훈련에 대해 그 3일간 B,C조에 대해 근무를 면제하여 왔다면 소요일수가 1일인 예비군훈련에 대해서도 그 1일에 대해 근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 단체협약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수 있습니다.(‘소요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소요일수’의 개념이기 때문이며 2박 3일의 훈련에 대해서도 ‘소요일수’의 개념이 적용된 것으로 해석될 것임.) 또한 단체협약의 규정에 배치되는 예비군 교육훈련규정은 그 부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되는 부분은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노동관계법에 관한 질의(전금련연철노제 97-10호)> 노동쟁의 조정법(노동쟁의의 정의 문제)

1. 권리분쟁에 속하는 종류(내용)
2. 이익분쟁에 속하는 종류(내용)
3.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을 병행 또는 분리하여 쟁의행위를 할수 있는지 여부
4. 쟁의행위시 법적문제등을 알고져 하고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할수 있는지요

- ① 복지기금 출연 투쟁(경상이익이 날때)
- ② 인사소위원회 노조 참여투쟁
- ③ 회사가 타지역으로 이전시 고용승계 및 생존권 보상요구 투쟁
- ④ 회사가 업무를 통폐합시키고 종전업무가 아닌 타업무로 보직전환시킬때(기능직)
- ⑤ 증자없는 증설을 계속할때 근로자 사주 갖기 및 증자투쟁(13년째 증자안됨)
- ⑥ 임,단협 유효기간 투쟁(현재 임,단협 유효기간 1년 고수투쟁)
- ⑦ 회사 전용부두 폐쇄(항만청)에 대한 생존권 투쟁

<회시(금속노련법규제61호)> 1. 권리분쟁이란

법정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의 해석,적용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을 말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관계당사자간의 의견 불일치가 권리분쟁의 한 영역이 되는 것이며 권리분쟁 사항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 의거 쟁의대상이 안됨. 권리분쟁이란 통상 체결된 단체협약의 해석,이행방법에 관하여 노사간에 의견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2. 이익분쟁이란

근로조건의 결정을 둘러싼 노사간의 분쟁을 말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의견불일치’가 이에 해당됨. 통상 단체협약의 체결,갱신을 둘러싸고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이익분쟁사항의 경우 법의 범위내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음.

3.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을 병행 또는 분리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이익분쟁의 경우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음. 그러나 교섭기술상 권리분쟁사항을 타결이 어려운 이익분쟁사항과 결합하여 요구하면서 이익분쟁사항에 관하여 쟁의를 제기, 권리분쟁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쟁의를 이끌 수는 있음.

4.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

쟁의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의견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호소할 수 있는 수단임. 즉 단체협약의 체결.갱신시 유효기간이 아닌 기간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임. 경영.인사에 관한 사항은 쟁의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단지 쟁의.인사조치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수반할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조와의 사전협의(근로조건 개약의 경우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임.단 인사.경영사항이라도 본질적인 제약이 아닌한 그 절차등 제도에 대하여 단체협약화할 수 있는 것이며 기하 단체협약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함.귀 질의중 복지기금이나 회사 이전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 단체협약화, 우리사주 제도에 관한 사항의 협약화, 임단투 유효기간 결정을 둘러싼 분쟁등의 경우 쟁의에 호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이 경우도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뒤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임.

<조세공과금 공제산정내역에 관한 질의(전금련연철노 제97-09호)> 개별근로자 조세공과금 공제산정내역에 관하여

1. 시급제 근로자 월급여중 세금면제 하한선
2. 시급제 근로자 주 44시간 초과수당(연장수당), 심야수당, 특근(공휴일, 주휴일)수당등에서 조세공과금 기초 공제금액
3. 과세, 비과세 분류 및 금액
4. 학자금 지원금액(복지차원에서 지원되는 금액)의 과세내용
5. 연차, 월차의 세금공제
6. 성과급, 상여금등 연봉에 대한 세금공제
7. 연말정산내역
8. 월급여(소득세 기본세율표)초과시 세금 적용률(%)등 당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자의 조세공과금 공제내역에 대하여 알고져 하오니 조속한 시일내 회답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시(전금노련법규제62호)>

1. 시급제 근로자 월급여중 세금면제 하한선
근로소득공제 5백만원, 기본공제 1인 연간 100만원
2. 시급제 근로자 주 44시간 초과수당(연장수당), 심야수당, 특근(공휴일, 주휴일)수당등에서 조세공과금 기초 공제금액
연 240만원
3. 과세, 비과세 분류 및 금액
아래의 예 이외에는 전체 과세대상임.
 - 1)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12)
ex) 법령.조례등에 의한 무보수위원(학술원, 예술원의 회원포함)이 받는수당
승무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료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 2) 국외근로소득(소득세법시행령 §16)
국외(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의 선박 항공기 포함)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중 월100만원 이내금액 다만 그날의 급여가 100만원 이하일경우 그 부족액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출장, 연수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 받는 급여는 국외 근로소득이 아님) 공무원 및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자 포함)가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금액)
 - 3)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소득세법시행령 §17조)
비과세대상이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 ① 공장. 광산. 어선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자
 - ②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 ③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 이하인자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비과세 급여액 계산시 적용하는 월정액급여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한 생산수당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4) 비과세되는 식사대금(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 17조의 2)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

식사 또는 기타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현금)

ex) 매월 식사대로 8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5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은 과세함.

4. 학자금 지원금액(복지차원에서 지원되는 금액)의 과세내용

교육비 공제

○근로자본인 : 대학교(대학원 제외)까지의 교육비 전액

○배우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형제자매에 대한 인원제한 폐지

○직계비속.입양자에 대한 교육비 공제

유치원 : 1인당 연 70만원 한도로 공제

초.중 : 고교, 교육비 전액

대학교 : 1인당 연 230만원 한도로 공제

5. 연차, 월차의 세금공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금액(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기밀비.판공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연월차수당, 승무수당,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정근수당등 따라서 연월차수당은 세금공제대상이 아님.

6. 성과급, 상여금등 연봉에 대한 세금공제

문 5번의 답변 참조

7. 연말정산내역

① 근로소득(급여총액+상여총액)

② 근로소득공제

③ 근로소득금액

④ -기본공제 : 1인 100만원

-추가공제 : 1인 50만원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⑤ 특별공제

- 보험료공제 : 의료보험 전액공제(손해보험 연 100만원)

의료비공제 :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중 100만원 한도

- 교육비 : 문4의 답변 참조

- 주택자금공제 : 무주택자의 주택저축 불입금 전액, 무주택자의 주택자금 원리 상환액 전액

- 기부금 특별공제 : 소득 5/100한도내 기부금액

⑥ 기타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연금저축가입자 연 72만원

⑦ 과세표준

⑧ 기본세율

⑨ 산출세액

8. 월급여(소득세 기본세율표)초과시 세금 적용률(%)등 당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자의 조세공과금 공제내역

* 소득세기본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
1,000만원 이하	10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이하	20 %	1,000,000 원
4,000만원 초과 8,000만원이하	30 %	5,000,000 원
8,000만원	40 %	13,000,000 원

시간산정 판례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의 법 개정(89년) 이후

(1) 90 년 10월 1일부터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노동부 행정지침에 의한 월 소정근로시간 220시간 또는 서울대학교병원노조의 미지급 임금 청구사건의 대법 판례(91년)에 의한 월 소정근로시간 225.9시간으로 계산하며 이에 따른 3년동안의 미지급임금을 받을수 있다.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수당 산출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시간급)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것임.

(2) 이후 지침과 판례의 상이함으로 인해 노동부 지침 변경

종전 지침 : 일 소정근로시간(44시간/6일) * 30일 = 220시간

변경된 지침 : 일 소정근로시간(44+8)시간/7일 = 7.43시간

월 소정근로일 365일/12월 = 30.42일

즉, 7.43시간 * 30.42일 = 226시간

(3) 그러나 월소정근로시간 산정이 문제는 사업장별 근로형태에 따라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규정화하여야 한다.

*** 소정근로시간 산정원칙이란?**

1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에만 평균개념을 도입하여 52/7시간으로 산정(노동부)

*** 유형별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예시**

1) 주 6일(5일 8시간, 1일 4시간)근로하기로 하고, 1일은 유급휴일인 경우

주: $((8\text{시간} * 5\text{일}) + 4\text{시간}) + 8\text{시간(유급처리)} = 52\text{시간}$

월 : $52\text{시간}/7\text{일} * 365\text{일}/12\text{월} = 225.95\text{시간} = \text{약 } 226\text{시간}$

2) 일요일 8시간을 근로하기로 하고 초과근로 4시간에 대하여는 법정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주: $((8\text{시간} * 5\text{일}) + 4\text{시간}) + 8\text{시간} = 52\text{시간}$

월 : $52\text{시간}/7\text{일} * 365\text{일}/12\text{월} = \text{약 } 226\text{시간}$

3) 주 6일(5일 8시간, 1일 4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1일 4시간 근로일은 8시간 근로일로 유급처리하는 경우 근로제공없이 유급처리한 4시간에 대하여는 유급휴일과 같이 취급하여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주: $((8\text{시간} * 5\text{일}) + 4\text{시간}) + (4\text{시간} + 8\text{시간}) = 52\text{시간}$

월 : $56\text{시간}/7\text{일} * 365\text{일}/12\text{월} = \text{약 } 243\text{시간}$

4) 주 5일을 근무하기로 하고 1일은 유급휴일, 1일은 무급휴일로 처리하는 경우

주: $(8\text{시간} * 5\text{일}) + 8\text{시간} = 48\text{시간}$

월 : $48\text{시간}/6\text{일} * (365-52)\text{일}/12\text{월} = \text{약 } 208.66\text{시간} = \text{약 } 209\text{시간}$

5) 주 44시간제 근로를 기준시

주 : $44(40+4)\text{시간} / 7\text{일}$

월 : $(4\text{시간} * 1/7) * 365/12 = 191.19\text{시간}$

(4) 단위노조별 조사내용

1) 94년에 합의한 노조

ㄱ.범한금속 : 생산직일급제, 사무직월급제, 226시간, 적용-통상수당

ㄴ.부영공업 : 현장직일급제, 사무직월급제, 220시간, 적용-기본급

- ㄷ.화천기계 : 226시간, 통상수당,잔업,특근수당
- ㄹ.기아기공 : 226시간, 통상수당
- ㅁ.기아정기 : 기능직일급제, 226시간, 통상수당
- ㅂ.한국화낙 : 220시간, 통상급(기+수당)기준적용
- ㅅ.엘지산전 : 기능직일급제,226시간, 적용-시간외 야간,휴일 근무수당

2) 기 실시되고 있는 노조

두산기계, 한국웨스트 220시간

3) 소송중인 노조

- ㄱ.세일중공업 : 223시간 계류중(1심승소)
- ㄴ.한국중공업 : 96년 5월 창원지법 합의부(항소)판결
사무/기술직(갑) 226시간 승소판결, 기술직(을) 91시간 기각
* 사무기술직(갑) : 3급(대리), 4,5,6급

ㄷ. 현대정공 : 96 년 5월 191시간 승소판결(96. 5월 창원지법)

- 1) 시급제사원의 경우 :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따로 지급된다는 점)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입 191.19로 산출 → 토요일 오후 4시간과 일요일 8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주 44시간, 즉 실제로는 근무를 하지 않고도 유급으로 되어 있는 토요일 오후 4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으로 의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주 44시간/7일로

주 : 44시간/7일

월 : (44시간 * 17) * 365/12 = 191.19시간

즉 기본시급 + (고정수당/191.19)의 계산식으로 !

- 2) 월급제사원의 경우: 일요일이 유급휴일로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인데,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월통상임금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 일요일에도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논리적 조작을 거

터 $(44+8)/7 * (365/12)$ 즉 225.95로 나눈다. 즉 기본시급 + (고정수당/226)의 계산식으로!

(5) 판례

1) 주 6일 근로제공시 1일 4시간 근로제공일에 대하여 8시간 근무로 인정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95년 8월 인천지법/대우자동차)

= 월소정근로시간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수(56시간(44시간+12시가)* 17)에 월소정근로일수 (364일 *1/12)을 곱하여 계산한 243.3시간이 정확한 시간이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통상임금을 243.3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즉 원고 주장 ⇒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통상임금을 226시간으로 나누어야
판결요지 ⇒ 243.3시간으로 나누어야 한다.

2) 주44시간 근무제에서의 월소정근로시간은 225.9시간이다.

(94년 4월 부산지법(대법 기각)판결/효성금속)

근로기준법의 주44시간 근무제에서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근로시간은 240시간이 아닌 225.9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 중에는 주휴일에 대한 근로 간주시간 8시간에 상응한 주휴수당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 역월 월급제 하에서는 정산근로일은 물론이고 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주휴수당등 유급휴일수당)도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위와같은 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 나온 결론이다.

$$\text{시간급 통상임금} = \frac{\text{월급통상임금} - \text{월평균유급주휴수당}}{\text{월소정근로시간수}}$$

즉 원고주장 ⇒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시급 + (고정적 통상수당/191.19)]

판결요지 ⇒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시급 + (고정적 통상수당/225.9)]

3. 노동악법 철폐투쟁에 대한 평가 및 향후 투쟁방향

1) 목적

① 날치기노동악법 철폐를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향후 여야합의된 노동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한 실천가능한 투쟁방향을 제시함.

② 새로운 노동환경에 맞는 장기적인 노총의 운동방향을 정립함.

2) 투쟁내용

- 노동법 개악 반대 조합원 서명운동
- 신한국당앞 규탄집회 및 항의방문
- 신한국당 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
- 단식투쟁 및 철야농성
-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전국적으로 단위노조 대표자이상은 물론 일반조합원까지도 포함하여 5천여명 이상이 삭발투쟁을 전개함.

- 대중집회
- 총파업투쟁
- 최근 투쟁경과

1. 31. - 노동악법 철폐투쟁과 결합한 97임.단협 투쟁계획 발표(임금인상율)
2. 4. - 박인상 위원장, 김수환 추기경방문(노동법 등 당면 현안논의)
2. 5. - 국민회의와 정책간담회, 노동법 개정 방향 논의
2. 10. - 성명발표, 노동법 개정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
(2.17. 제 18차 임시국회 소집, 3월 18일까지 회기, 여야 총무단 2월 28일까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단일안 마련할 것을 위임)
2. 17. - 22. - 날치기 노동악법 무효화와 임.단투승리를 위한 지역순회교육
(전국 23개지역)
2. 18. - ‘노동악법 무효화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2. 19. - 20.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주최 ‘노동관계법에 대한 공청회’에 공술인 참가 (화학노련 박헌수 위원장)

2. 24. - 28.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개정 검토위원회’ 대응활동 전개(노총간부 및 산별 간부 국회에서 여야의원 및 실무진과 정책교섭)

(2.25. 김영삼 대통령 대국민 사과문 발표,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단일안 마련기대)

2. 26. - 성명서 발표, 노동관계법의 즉각적인 개정촉구

2. 28. - 성명서 발표, 노동관계법의 개정 촉구

(2.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 여야 노동법 단일안 마련포기 선언)

(2.28. 여야 총무회담, 3월 8일까지 여야 노동법 단일안 마련기로 재합의)

3. 3. - 6.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위원회 개최

3. 7. - 8. - 여야 3당 정책위의장 협상회의

3.8 오후 6시 20분 여야 단일안 마련

3. 3. - 9.- 국회노동법 검토위원회와 3당 정책위의장 협상회의에 참여하여 전임자임금, 무노동무임금, 정리해고, 변형근로 등 20여개 쟁점사항에 대한 전향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함.

3. 10. - 오전 10시 3당 정책위의장 단일안 공식발표

- 여야 3당 총무회담, 날치기 처리된 4개 노동관계법률을 폐지함과 동시에 3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단일안을 새로이 재정기로 합의함.

- 제183회 임시국회에서 4개 노동관계법률 의결

3) 투쟁의 평가

- 노총의 투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날치기 처리된 노동악법의 일부를 전향적으로 개정함.

- 조합원대중의 참여와 요구에 기초한 노동악법 철폐투쟁과정을 통해 한국노총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제고되었으며 정치, 사회적 위상이 강화됨.

-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노동악법 분쇄투쟁과정에서 속보발행, 대중집회, 총파업투쟁등 다양한 투쟁경험을 하고 조직적으로 훈련됨.
- 한국노총의 조직력과 투쟁력이 강화됨.

4) 투쟁의 성과

- 정리해고제의 요건 강화 및 2년 유예
- 연차수당 상한선 폐지
- 쟁의기간중 외부인력의 채용금지
- 쟁의기간중 도급 및 하도급 금지
- 쟁의기간중 임금지급의 자율화
-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은행사업(한국은행제외)을 2001년부터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함.
- 2001년 12월 31일까지 노조전임자 임금인정(부당노동행위로 보지않음)
- 노동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노조간부 참여기회 확대
-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명문화

5) 향후 투쟁방향

- ‘생존권사수및 노동악법철폐투쟁본부’를 ‘노동법의 민주적개정을 위한 투쟁본부’로 변경함.

- ① 97임단투를 통한 노동악법 무력화 투쟁
- ② 97대선과 연계한 노동법의 민주적 재개정 투쟁
- ③ 조직쇄신 및 강화투쟁

1) 노동법 개정 투쟁방향

구 분	일 정	투 쟁 내 용
시행령 보완작업 및 97임단투와 연계한 노동법 무력화 투쟁	3월 중순	○개정노동법 설명회 및 단협체결 지도를 위한 지역 순회 교육
	“	○‘개정노동법하에서의 단체교섭’책자발간
	3월말	○시행령 보완작업
	4월	○단위노조 쟁의권 상급단체에 위임
	5월1일	○노총 쟁발신고 ○노동법의 민주적 개정 및 97임단투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 장 소 : 여의도 광장 - 규 모 : 5만명
	6월 중	○97임단투 마무리
9월 정기국회 및 대선과 연계한 노동법개정 및 제도개선투쟁	7월-9월	○대선후보에게 노동법민주적개정 내용 담도록 촉구
	“	○9월정기국회에서 노동법의 민주적 개정촉구
	10월-11월	○지역정치 다파 노동자결의대회
	“	○공명선거캠페인
	“	○지역순회 정치교육 실시
	12 월	○노총과 견해를 같이하는 정당후보에 대한 공개적 이고 적극적인 지지활동 전개
	“	○새로 창출되는 정권으로 하여금 노동법을 민주적 으로 개정할수 있도록 촉구함

2) 조직쇄신.강화방안

(1) 정책활동

- ① 노동악법의 재개정을 위한 국회청원활동
 - 지역조직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 국제적 수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 청원
- ② 복수노총 시대를 맞아 타조직과 차별화 될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한국
노총 운동노선 정립

- ③ 한국노총 운동사 정리를 통한 역사성.정통성 확보
 - 역사편찬위원회 구성으로 80년대 이후의 운동사 정리
 - 여주교육원에 노동운동 박물관 설치
- ④ 개악된 노동법의 부당성에 대한 토론회 개최

(2) 조직강화 사업

- ① 무권리 상태에 놓인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
 - 신규조직 설립용 팸플렛 제작 및 주요공단지역에서 조직가입활동 전개
 - 미조직사업장에 대한 조직화 및 유령 휴면노조의 정상화
- ② 일상적인 현장활동의 강화로 기존조직의 강화
 - ‘조직강화지원반’운영
- ③ 민노총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상호비방 및 조직이탈작업 중지
 - 대정부 및 사용자에게 공동대응할수 있는 기구의 제도화
- ④ 산별노조의 건설을 위한 준비
 - 전임자임금지급중단, 무노동무임금, 대체근로 허용등으로 기업별 노조의 활동영역이 크게 제한됨
 - 가능성 있는 산별에서 구체적인 노력 필요
- ⑤ 상급단체 복수화에 따른 한국노총 가입조직의 업종별 세분화
 - 한국노총 규약개정을 통해 가입조직의 자격을 폭넓게 인정해야 함.

(3) 노사대책활동

- ① 산업별.업종별 공동교섭 및 대각선 교섭의 제도화
 - 산업별교섭 및 기업별 교섭의 대상에 대한 연구
- ②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쟁의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도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함.

(4) 홍보활동의 강화

- ① 경쟁조직과 대응할수 있는 홍보역량 강화
- ② 조합원이 직접참여하는 홍보활동 방안연구

- ③ 대국민, 조합원, 노조간부에 적합한 홍보활동 전개
 - 기관지 주간화 추진, 특보, 속보의 정기적인 발행
- ④ PC통신망을 이용한 홍보활동 전개
 - 산별, 지역조직과 통신망 구축

(5) 국제활동

- ① 복수노총 시대를 맞아 한국노총을 국제적으로 알릴수 있는 활동강화
- ② 한국노총 홍보물 번역 및 국제노동단체에 홍보
- ③ 인터넷을 통한 한국노총 홍보

(6) 교육활동

- ① 한국노총의 차별적인 정책과 운동노선을 조합원에게 알기쉽게 교육할 수 있는 교재발간
- ② 노동법 개악에 대처할수 있는 교육
- ③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교육교재 발간
- ④ 산별노조에 대한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로 분위기 확산

(7) 재정자립 방안 강구

- ① 맹비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연구
- ②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 연구원 및 산재센터에 대한 지원금의 효율적 관리
- ③ 복지매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④ 한국노총의 재정자립을 위한 조합원 모금운동 전개
- ⑤ 노총보유 부동산의 효율적인 활동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재정확보
 - 교육원의 전문대학원화 등
- ⑥ 노총간부의 전문화. 다기능화. 정예화
 - 컴퓨터 교육, 어학교육등 각종 업무관련 교육에 대한 노총차원의 지원
 - 전임직원 기획능력 실천능력 배양
 - 정년때까지 일하는 분위기 조성

⑦ 조합원 교육의 유료화

- 임투순회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함.

⑧ 노총 내부의 객관적 경영분석 필요

(8) 정치활동 강화

① 97년도 대선준비

② 98년도 지자체 준비

③ 복수노총 시대에 따른 제시민사회단체, 정당등과의 대외협력활동 강화

생존권 사수 및 노동악법 분쇄투쟁 현황

○ 배경

- 한국노총은 지난 5월 정부가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노사관계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노개위에 참여

- 한국노총은 5월 20일 산별대표자들과 「노사관계개혁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이 발표한 5대 덕목 공동선의 추구, 참여와 협력, 자율과 책임, 인간중시의 능력개발, 의식, 관행, 제도개선의 세계화, 국제화를 근간으로 하여 노사관계 개혁은 노동기본권의 보장, 참여의 제도화, 노사관계 민주화, 연대, 국민경제발전등 5대원칙에 입각하여 삶의 질 개선과 경쟁력강화에 기여함을 천명하고 노동기본권의 완전보장과 근로조건 저하 금지를 강력히 요구

- 그러나 노개위는 노총의 요구와는 달리 변형근로제,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등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입법도입 의지를 강고히 하면서도 노동기본권을 유보하는 개정안을 내놓음.

- 이에 노총은 노개위가 작성한 노동법 개정안에 동의할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노총의 요구를 관철해 내기위해 9월 4일 노총 노사관계 개혁추진위원회를 「노동법 개정 및 사회개혁추진 중앙대책본부」로 개편하고 전조직이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에 돌입

생존권 사수 및 노동악법 분쇄 결의대회

1. 목적

- 정부와 사용자의 노동탄압 음모부분쇄
-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투쟁선포
- 노동기본권 확보 및 생존권 사수
- 전 조합원의 단결력과 투쟁의지를 대.내외에 천명

2. 일 시 : 1996 년 11월 24일 (일) 13:00 - 17:30

3. 장 소 : 서울여의도 고수부지

4. 대 상 : 한국노총 산하 전조합원 및 가족

5. 규 모 : 10만명

6. 한국노총의 입장 정리

가.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 반대

- 완전한 노동3권 보장 및 공무원 교사의 단결권 보장
- 생존권 위협하는 정리해고제, 파견제, 변형근로제등 근기법 개악반대
-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개별적 노사관계법을 맞바꾸는 법 개악 반대

나. 해고자 양산하는 금융산업 고용조정제도 반대

다. 생존권 박탈하는 정부투자기관 임금동결 방침반대

라. 자동차 운수노동자 제도개선

7. 동원현황

- 동원인원 : 20,000 여명
- 버 스 : 146 대

8. 평 가

○ 각지역본부가 현장으로 뛰면서 교육과 독려를 해내므로서 전체조합원의 참여 열기가 확산되고 투쟁의지를 강고히 해냄

○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하는 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참가비를 각출하여 참석하므로서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돋보임.

○ 각 지역본부 및 가맹노조가 연맹의 방침에 적극 협조하여 20개 산별 중 최대동원을 해내는 성과를 얻어냄

○ 금속대형 깃발 2대, 만장 50개, 각 지역본부 투쟁깃발을 제작하여 시위하므로서 분노런 위상제고

○ 최대인원동원으로 금속노련의 투쟁성, 선명성, 집중성등의 위상제고와 대중동원 역량과시

○ 짧은 기간동안 조직동원, 버스예약, 깃발과 피켓제작, 식사, 음료수준비 등 행사 참석에 만전을 기함.

○ 마무리 집회현장(여의도광장)까지 대오 흠어짐없이 질서 정연하게 유종의미를 거둘수 있게 함.

○ 투쟁기금 모금 운동에도 적극성을 보여 생존권 사수와 노동악법 분쇄 결의의지를 확고히 함.

○ 조직동원 역량은 곧 금속노련이라는 인식을 확인시킴.

노동악법 분쇄 서명현황

노동조합	서명수	노동조합	서명수	노동조합	서명수
L G 전 자	2328	대 우 전 자	3846	한 덕 산 업	102
동 원 금 속	236	키스톤밸브	25	수 산 스 타	59
한국브레이크	254	한 일 전 기	379	한 국 일 선	94
성 신	428	동아건설청주	139	한국카시오	158
영 창 악 기	1468	신 호 스 텔	261	한국시티즌	156
퍼시픽콘트롤즈	305	서 울 제 강	219	한 국 중 천	333
진 흥 철 강	58	동 유 물 산	64	창 원 공 업	125
대 봉 전 선	70	동 양 철 관	53	대 동 금 속	217
기아특수강	1060	동 성 금 속	78	LG산전오산	36
한 국 샤 프	371	두산전자청주	155	우 진 전 자	107
성 우	260	한 국 야 금	175	대 동 기 어	231
서울라디에타	50	삼 화 전 기	587	화 신	375
삼 양 중 기	150	맥 슨 전 자	390	세 왕 금 속	133
풍 정 산 업	167	한국알미늄	104	신 아 금 속	181
강 남	155	국제종합기계	424	대농중공업	149
신한일전기	230	쌍 용 정 공	142	신 아 전 기	76
경 보 전 기	120	신 한 주 철	302	대 한 제 당	208
금 영 실 업	77	신 호 기 전	47	한 일 제 관	393
대 한 제 쇠	47	대 우 통 신	486	삼 성 정 밀	75
한영알미늄	156	세 일 기 계	43	삼 정 기 계	16
두원중공업	351	미 주 제 강	136	동 호 전 기	1621
대동시스템	253	한 일 튜 브	183	대 동 정 비	60
에 넥 스	157	영 풍 기 계	89	세 일 공 업	191
제 일 중 기	25	LG 산전청주	531	부 천 공 조	162

노동조합	서명수	노동조합	서명수	노동조합	서명수
세 방 전 지	468	세웅종합건설	61	세 진 전 자	241
삼 우 금 속	58	대 선 조 선	412	극 동 금 속	78
한 국 철 강	365	한 보 철 강	597	한 국 선 재	93
창원기화기	12	동 아 전 기	94	부 영 철 강	50
대한화학기계	38	태 광 밴 드	115	동 승 기 업	15
한국오르강침	161	한국주철관	306	동 진 전 기	30
내쇼날정공	26	동 아 건 설	98	고 성	51
적 고	230	현 진 공 업	53	태 양 금 속	53
대창크랭크	51	연 합 조 선	115	성 광 밴 드	173
부 산 전 기	60	한진섬유기계	71	신 동 방	46
대 한 제 강	30	오리엔탈정공	162	세 동 산 업	92
조 광 공 업	30	고려용접봉	112	경 동 산 업	37
경 신 공 업	605	서 울 차 룬	131	한 일 전 기	379
한 일 제 관	393	삼 양 중 기	186	키스톤발브	25
○○○○	196	○○○○	124	○○○○	124
○○○○	245	○○○○	307	○○○○	75
○○○○	235	○○○○	261	○○○○	283
○○○○	309				

※ ○○○○는 조합명이 기재되지 않은 노조임.

11/24 여의도 집회 연맹별 참가인원

회원조합명	배정인원	참석인원	비 스
철 도	2,910	1,200	10
섬 유	6,860	3,500	20
광 산	1,180	520	8
전 력	2,550	2,600	17
외 기	2,540	500	3
통 신	1,210	1,800	6
항 운	3,380	800	11
선 원	6,430	100	1
금 융	13,790	15,000	100
담배인삼	970	700	11
화 학	12,950	20,000	140
금 속	17,240	20,000	146
출 판	420	500	2
자 동 차	8,930	6,300	23
연 합	8,310	11,000	19
관 광	1,640	1,200	12
체 신	2,590	1,400	4
택 시	8,850	8,000	20
고무산업	890	470	1
도시철도	460	750	
계	104,100	96,340	554

4. 쟁의발생신고 사업장 현황

조	합	명	대 표 자	주 소
LG전자노동조합		나 찬 경	영등포구 문래동 6 가 36	LG강서 빌딩
경방기계노동조합		박 상 범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19 - 8	
남성텔레콤노동조합		오 갑 순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345 - 30	
대우전자노동조합		이 병 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노총회관 409
동아건설노동조합		김 상 수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20 - 23	
동일제강노동조합		진 대 환	서울시 구로구 구로 5 동 566 - 1	
동해노동조합		이 경 옥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81-2	
로움코리아노동조합		양 명 연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371 - 11	
롯데알미늄노동조합		전 기 흥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05	
롯데전자노동조합		안 재 현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33	
세진전자노동조합		문 광 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 - 19	
신한전기노동조합		범 상 철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5 가 27	
오톨노동조합		신 성 균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35 - 2	
제일중공업노동조합		선 기 노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 가 34	
청우공업노동조합		이 명 선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 가 96 - 1	
풍성전기노동조합		이 대 영	서울시 성동구 성수 1 가 656 - 335	
한국TDK노동조합		박 미 영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70 번지	
한국음향노동조합		김 종 화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371 - 41	
한국전자부품노동조합		이 병 원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79 - 2	
한국콘베어노동조합		정 영 찬	서울시 구로구 수궁동 72 - 1	
한국특수공구노동조합		서 갑 순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5 가 1	
경동산업노동조합		박 영 규	경기도 고양시 신원동 260 - 2	
기경실업노동조합		이 문 경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781 - 1	
기영산업노동조합		서 광 술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0-1 (2나 202호)	
남북노동조합		한 석 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초부리 80 - 1	

조	합	명	대 표 자	주 소
대광다이캐스트노동조합			김 수 룡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25
대기노동조합			이 강 훈	경기도 군포시 당동 7 - 5
대기산업노동조합			유 원 기	경기도 시흥시 장왕동 1264
대성전선노동조합			김 창 압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513
대한제작소노동조합			이 두 중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522
동신중공업노동조합			이 규 찬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백봉리 산 66
동아정기노동조합			조 동 진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북리 862 - 8
동화계량기노동조합			박 귀 배	경기도 김포군 대곶면 대농리 126 - 10
배영설비노동조합			이 병 도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상하리 472 - 7
범양냉방노동조합			한 기 흥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9 - 4
보원무역노동조합			하 병 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8 - 6
산내돌인슈노동조합			주 현 중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도림리 39-2
삼한노동조합			양 신 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00 - 5
삼화전자노동조합			유 일 열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장지리 211-1
서원풍력기계노동조합			최 상 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1 - 2
성문전자노동조합			김 정 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41-6
일진전기노동조합			안 승 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112 - 83
진영기전노동조합			백 용 연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하갈리 237 - 4
진우노동조합			최 정 철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사랑리 137 - 6
철도컨테이너정비노동조합			임 승 재	경기도 의왕시 삼동 163
코발트전기노동조합			한 재 결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409 - 1
퍼시픽콘트롤즈노동조합			장 현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원천동 288
한국가구노동조합			임 흥 순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풍무리 38 - 1
한국번디노동조합			양 봉 광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신리 206 - 1
한국브레이크노동조합			김 현 진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북리 608-23

조	합	명	대 표 자	주 소
고성산업노동조합			이 한 봉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 - 12
극동금속노동조합			김 대 복	부산시 사상구 감전4동 124 - 1
내쇼날정공노동조합			김 영 중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1467-3
대동조선노동조합			현 익 조	경남 진해시 원포동 139
대선조선노동조합			황 대 선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4 가 12
대성노동조합			류 대 열	부산시 금정구 화동동 151-4
대성사노동조합			변 진 섭	부산시 동래구 안락 2 동 107 - 16
대창단조노동조합			박 병 용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952 - 3
대창중기노동조합			이 규 대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508-5
대한제강노동조합			김 재 한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 - 16
동승기업노동조합			추 진 호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 1 동 791 - 1
동아금속노동조합			윤 상 의	부산시 사상구 확장동 279 - 7
동아전기노동조합			이 원 복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8
동영공업노동조합			서 병 준	부산시 사상구 확장동 748 - 1
부산링구노동조합			김 병 욱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503-1
부산수리조선노동조합			김 민 원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5 가 29
부산정기노동조합			김 규 호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521 - 3
부산주공노동조합			서 영 택	부산시 사상구 확장동 715
부영철강노동조합			박 호 길	부산시 사상구 확장동 724-5
삼공사노동조합			류 국 부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532
삼창중공업노동조합			남 상 록	부산시 사상구 확장동 732-2
성광밴드노동조합			배 명 렬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520
세동산업노동조합			전 체 목	부산시 남구 감만 1 동 254 - 48
세웅종합건설노동조합			김 용 민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5 가 29
세진노동조합			김 근 수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529

조	합	명	대 표 자	주 소
세운공업노동조합			박 용 도	울산시 중구 연암동 936
우영산업노동조합			연 기 섭	울산시 중구 연암동 714 - 15
정일공업노동조합			김 복 천	울산시 중구 효문동 212 -11
한진프라스틱노동조합			손 영 한	울산시 중구 연암동 728
대일공업노동조합			전 형 태	울주구 두서면 전음리 두서농공단지 302
경창산업노동조합			장 지 태	대구시 서구 종리동 1072
경창와이퍼시스템노동조합			백 영 식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400 - 86
경창정공노동조합			김 인 태	대구시 북구 검단동 887 - 13
금융기계노동조합			북 윤 규	대구시 북구 노원 3 가 666 - 1
남양금속노동조합			조 회 성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본리리 29
대철노동조합			남 달 회	대구시 북구 노원 3 가 205 - 1
대한소결금속노동조합			이 영 우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본리리 29 - 10
대한중석노동조합			이 용 대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동 304
동서물산노동조합			이 길 호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100 - 45
동원금속대구노동조합			윤 화 진	대구시 서구 이현동 42 - 6
미주실업노동조합			김 영 찬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소봉리 226-5
삼도기전노동조합			이 인 철	대구시 서구 이현동 45 - 55
삼성제침노동조합			주 태 화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997-2
삼익정공노동조합			오 탁 상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925-2 42 B - 3 L
상신브레이크노동조합			김 대 용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복리 1 - 37
쌍용중공업대구공장노동조합			이 경 문	대구시 달서구 성서 2차단지 1지구 18B 2L
아세아종합기계노동조합			윤 태 길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금동 168
영진노동조합			권 태 훈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100 - 52
영풍제관노동조합			이 성 곤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본리동 29 - 42
이수전자노동조합			최 진 회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본리동 29 - 54

조	합	명	대 표 자	주 소
평화발레노동조합		서 윤 배	대구시 달서구 장동	성서공단 105 B
평화산업노동조합		신 석 곤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본리리 29 - 17
평화오일쉴노동조합		유 길 호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본리리 29 - 88
평화정공노동조합		김 순 창	대구시 서구 중리동	1055
평화크랏치노동조합		김 연 국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597-10
동원금속노동조합		김 상 권	경북 경산시 진량면	양지동 330 - 1
세왕금속노동조합		이 동 구	경북 영천시 망정동	390
신아금속노동조합		손 순 석	경북 영천시 본촌동	440
화신노동조합		윤 승 오	경북 영천시 언하동	412
화신테크노동조합		조 동 권	경북 영천시 도남동	193
LG반도체노동조합		강 영 철	구미시 임수동	171
LG정밀노동조합		이 상 민	구미시 공단동	133
LG정보통신노동조합		이 규 성	구미시 공단동	299
고려전기노동조합		이 명 회	구미시 공단동	171
두산전자노동조합		이 상 근	구미시 구포동	644
새한전자노동조합		김 총 원	구미시 공단동	130 - 7
신성기업노동조합		김 동 환	구미시 공단동	153
실트론노동조합		김 유 연	구미시 임수동	274
오리온금속노동조합		김 우 철	구미시 공단동	148
일성기계노동조합		김 장 수	구미시 공단동	194
클레스트라하우저만노동조합		한 경 석	구미시 황상동	502 - 4
태평양금속노동조합		김 길 독	구미시 공단동	298
한국대화금속노동조합		김 현 철	구미시 공단동	128
한국델코전지노동조합		김 경 구	구미시 황상동	495
한국신영노동조합		김 진 설	구미시 공단동	162

조	합	명	대 표 자	주 소
서울라디에타노동조합			백 승 철	안산시 원시동 724, 반월공단 B1 - 21
성안기계노동조합			최 관 섭	안산시 성곡동 646 - 4 (602브럭)
성진산업노동조합			임 병 우	안산시 원시동 731 - 8 (4B, 9L)
세강물산노동조합			이 유 용	안산시 성곡동 638 - 4
세광알미늄노동조합			엄 종 국	안산시 초지동 9 브럭 651
신명전기노동조합			이 명 재	안산시 원시동 835-4 (반월공단 9B-1L)
신아전기노동조합			신 은 철	안산시 원시동 779 - 10
신일정밀노동조합			배 영 숙	안산시 사사동 123
신호기전노동조합			이 중 현	안산시 원시동 735
아메리칸스탠다드코리아노동조합			김 영 운	안산시 목내동 398 - 14
재원전자노동조합			서 문 숙	안산시 성곡동 646-6 반월공단 602-9B
진영공업노동조합			김 종 성	안산시 원시동 778-5
태양금속노동조합			이 병 욱	안산시 성곡동 595
한국캠브리지필터노동조합			이 한 규	안산시 원시동 781 - 5
한샘노동조합			한 승 인	안산시 성곡동 665 시화공단 5라 201 번지
금영실업노동조합			서 용 우	남동구 고잔동 639-1 남동공단2단지 70B-2L
대동시스템노동조합			양 승 중	인천시 남동구 남천동 607-2 남동공단 3B3L
대우통신노동조합			김 영 국	인천시 서구 가좌동 531 - 1
대한제당노동조합			손 종 흥	인천시 중구 북성동 1 가 6 - 14
도투락 인천공장노동조합			김 현 섭	인천시 서구 가좌동 577 - 3
미주제강노동조합			이 강 천	인천시 남구 도화동 696
부국철강노동조합			최 영 진	인천시 남구 도화3동 686
삼성공업노동조합			오 인 상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남동공단 4 B 1 L
삼성정밀노동조합			정 길 환	남동구 논현동 429-9 남동공단 21B-11L
서울제강노동조합			최 광 질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558 - 7

조	합	명	대 표 자	주 소
신동방노동조합			류 필 열	부산시 연제구 연산 1 동 581 - 4
연합조선노동조합			이 창 만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1 가 122
연합철강노동조합			강 진 호	부산시 남구 감만동 588 - 1
오리엔탈정공노동조합			권 동 재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 - 18
적고노동조합			이 승 우	부산시 사하구 감천 1 동 702
제일전기노동조합			조 성 래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 - 31
제일중기노동조합			이 우 승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519-3
조기노동조합			강 영 일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1 가 99
조선선재노동조합			전 용 구	부산시 남구 우암 1 동 39
태광벤드노동조합			양 재 권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534
태양금속노동조합			변 성 진	부산시 사하구 장림1동 1089-5
태양사노동조합			이 형 연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 267 - 1
한국선재노동조합			최 승 진	부산시 사상구 감전 1 동 148-1
한국오루강침노동조합			정 윤 국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660 - 1
한국주철관노동조합			차 윤 환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 - 19
한보 부산제강소노동조합			최 창 대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90
한일벨브노동조합			윤 승 제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154-1
한진섬유기계노동조합			오 봉 출	부산시 금정구 부곡4동 799 - 3
한창트랜스노동조합			박 경 덕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 158-6
형진공업노동조합			민 규 식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18 - 6
고려파이프노동조합			박 지 환	경남 창원시 성산동 65
대동기어노동조합			강 현 호	경남 사천군 사남면 유천리 71
대동정비노동조합			하 상 기	경남 진주시 상대 2 동 33 - 126
대신공업노동조합			윤 영 진	경남 사천군 사남면 월성리 413
대창크랭크노동조합			이 준 기	경남 김해군 생림면 나전리 685

조	합	명	대 표 자	주 소
세일기계노동조합			나 용 길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3 B 1 L
신호금속노동조합			김 학 배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74 86B - 1L
신호스틸노동조합			양 정 우	인천시 남구 학익동 468 번지
쌍용정공노동조합			권 태 연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94
영창악기노동조합			이 상 우	인천시 서구 가좌동 178 - 55
영풍기계노동조합			이 준 선	인천시 북구 십정동 557 - 3
이천전기노동조합			이 준 기	인천시 동구 화수동 5 - 5
한국사프노동조합			박 재 혁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418
한영알미늄노동조합			한 상 환	인천시 서구 가좌동 525 - 4
후지테크코리아노동조합			김 규 완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62-2 98B 3L
희성금속노동조합			허 규 선	인천시 서구 가좌동 180 - 12
세아중기노동조합			김 창 구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제4공단 11-2BL
남전기공노동조합			윤 익 병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450 - 10
대성공업노동조합			김 진 순	대전시 동구 성남 1 동 180 (7/5)
동방의료양행노동조합			박 회 국	대전시 동구 삼성동 302 - 128
동양강철노동조합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63 - 15
국제특수금속노동조합			이 흥 배	충남 연기군 동면 웅암리 산 666 - 8
금성정공노동조합			김 성 종	충남 당진군 순성면 광천리 산 18
대동브레이크노동조합			백 중 형	충남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306-1
동양철관노동조합			양 시 준	충남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57 번지
동일알루미늄노동조합			박 종 선	충남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378-1
두원공조노동조합			이 종 각	충남 아산군 읍봉면 원남리 산 16 - 1
부천공조노동조합			최 종 석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52-2
삼도산업노동조합			김 갑 성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산 58-3

조	합	명	대 표 자	주	소
한국에이.엠.피노동조합			이 성 근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양기리 451 - 9
한국열교환기노동조합			최 용 만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6리 517
한국일축노동조합			김 충 식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3-3
한국키스톤발브노동조합			주 택 근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계록리 270-4
현대엘리베이터노동조합			성 용 주	경기도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 산 136 - 1
현대전자노동조합			김 영 철	경기도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 산 136 - 1
희성전선노동조합			김 영 기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66
경원세기노동조합			심 재 윤	부천시 오정구 내동	222-22
대륙자원노동조합			함 중 원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58 - 3
루-보노동조합			이 원 근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29-13
반도기계노동조합			오 광 수	부천시 남구 송내동	409-3
삼양중기노동조합			이 성 수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	134
성신노동조합			유 진 화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56 - 5
신한일전기노동조합			이 준 덕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31
신한주철노동조합			윤 무 영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 3 동	135
흥진기연노동조합			안 회 철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65-6
경웅기계노동조합			송 두 영	안산시 성곡동 646 - 5	반월공단 B 602- 7
광명전기노동조합			이 명 구	안산시 묵내동 389번지	28-15
남성기계노동조합			이 철 수	안산시 신길동	1054-1
남양공업노동조합			노 춘 용	안산시 묵내동	390
대덕산업노동조합			김 광 호	안산시 묵내동	475 - 15 B
동성진흥공업노동조합			이 상 섭	안산시 묵내동	445 - 4, B 15 - 1
동성진흥노동조합			홍 원 상	안산시 성곡동 610 - 6 B	18-17 브력
삼기기공노동조합			장 인 권	안산시 원시동 726- 4,	반월공단 B 1 - 45
삼목강업노동조합			남 진 우	안산시 초지동 654 - 3	반월공단 9-71-2

조	합	명	대 표 자	주 소
삼신노동조합			강 한 우	충남 천안시 두정동 63 - 6
삼천리기계노동조합			신 경 선	충남 천안군 성환읍 성환리 419
수산정밀노동조합			김 관 태	충남 아산군 음봉면 월랑리 산 94
수산특장노동조합			이 광 세	충남 아산시 음봉면 쌍용리 산3-1
에프케이엘동화노동조합			심 수 경	충남 천안군 성환읍 대흥리 338 - 13
용암산업노동조합			김 주 영	충남 천안군 광덕면 신흥리 산 69
진로인더스트리즈노동조합			강 용 석	충남 천안군 풍세면 보성리 569
포스코홀스노동조합			전 수 문	충남 천안시 성거읍 오목리 27
한국쌍신전기노동조합			유 재 순	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 614 - 1
한성실업노동조합			안 성 환	예산군 음봉면 지성리 용봉농공단지 6BL
환영철강노동조합			홍 성 태	충남 당진군 석문면 삼화리 650-7
국제종합기계노동조합			조 준 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11 - 1
극동전선노동조합			안 승 필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95
뉴맥스노동조합			이 형 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7 - 15
대능중공업노동조합			이 관 회	충북 청주시 송정동 27-5
대성셀텍노동조합			이 형 기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313 - 1
동성금속노동조합			노 성 환	충북 영동군 웅산면 백자전리 160
동신오미아법랑노동조합			송 성 철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60 - 1
동아건설청주노동조합			한 규 정	충북 청원군 남야면 상발리 213-1
동유물산노동조합			홍 용 기	충북 음성군 삼성면 선정리 572-1
맥슨전자노동조합			조 잔 용	충북 청주시 향정동 125
에넥스노동조합			정 운 석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555
한국야금노동조합			왕 용 호	충북 청주시 송정동 53 - 16
강남노동조합			문 정 도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399
고려용접봉노동조합			김 회 근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21 - 3

조	합	명	대 표 자	주 소
동호전기노동조합		박 재 원	경남 진양군 지수면 송내리 산 58-1	
두원중공업노동조합		정 진 용	경남 사천군 축동면 구호리 650	
삼승노동조합		김 호 규	경남 창원시 성주동 52 - 3	
삼천리자전거노동조합		고 선 일	경남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289	
상능기업노동조합		문 열 주	경남 양산시 유산동 476 - 68	
세방전지노동조합		김 환 수	경남 창원시 남산동 601 - 2	
세신정밀노동조합		정 병 철	경남 양산군 양산읍 산막리 311	
세일공업노동조합		백 기 형	경남 진주시 상대동 33 - 50	
양지금속노동조합		곽 평 호	경남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3 - 4	
제일정밀노동조합		권 창 수	경남 창원시 내동 456 - 8, A 2 브록	
진흥철강노동조합		박 정 화	경남 양산시 유산동 333 - 4	
창원공업노동조합		이 동 수	경남 창원시 남산동 604 - 4	
태양코팅노동조합		김 회 열	경남 창원시 성산동 43	
한국시티즌노동조합		최 정 호	경남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654-4	
한국정상화성노동조합		심 문 보	경남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654-4	
한국중천노동조합		최 해 경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974 - 17	
한국카시오노동조합		육 태 봉	경남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654 - 4	
한덕실업노동조합		전 영 섭	경남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458 - 10	
한일제관노동조합		이 동 호	경남 양산시 유산동 211	
한진금속노동조합		김 현 옥	경남 진해시 남양동 360 - 1	
고려아연노동조합		조 한 제	울산시 울주구 온산면 대정리 505	
금강공업노동조합		백 동 현	울산시 울주구 삼남면 가천리 140-25	
덕양산업노동조합		김 우 배	울산시 중구 연암동 945	
동화산업노동조합		오 상 철	울산시 남구 개운동 218	
삼주기계노동조합		문 성 일	울산시 중구 효문동 750 - 1	

조	합	명	대 표 자	주 소
한국아이지모타노동조합			권 영 미	구미시 공단동 142
그린산업노동조합			강 학 중	포항시 남구 대도동 94 - 1 보훈후생관 5층
성우정공노동조합			강 진 유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28
세아제강노동조합			박 철 우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1
한금노동조합			오 정 희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74
화성기업노동조합			김 우 석	포항시 남구 해도1동 8-8
흥화공업노동조합			장 세 중	포항시 남구 괴동동 24
기아특수강노동조합			이 정 석	전북 군산시 소룡동 1 - 6
대봉전선노동조합			김 두 한	전북 이리시 팔봉동 839 - 1
성우노동조합			김 기 환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5-30
한일전기노동조합			우 태 율	원주시 우산동 공업단지 10 브럭

쟁의행위결의 사업장 현황

조	합	명	대 표 자	주 소
남성텔레콤노동조합		오 갑 순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345 - 30	
동아건설노동조합		김 상 수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20 - 23	
동해노동조합		이 경 욱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81-2	
롯데전자노동조합		안 재 현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33	
세진전자노동조합		문 광 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 - 19	
한국TDK노동조합		박 미 영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70 번지	
한국특수공구노동조합		서 갑 순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5 가 1	
기경실업노동조합		이 문 경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781 - 1	
기영산업노동조합		서 광 술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0-1 (2나 202호)	
남북노동조합		한 석 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초부리 80 - 1	
대기노동조합		이 강 훈	경기도 군포시 당동 7 - 5	
대기산업노동조합		유 원 기	경기도 시흥시 장왕동 1264	
동신중공업노동조합		이 규 찬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백봉리 산 66	
동아정기노동조합		조 동 진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북리 862 - 8	
배영설비노동조합		이 병 도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상하리 472 - 7	
진영기전노동조합		백 용 연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하갈리 237 - 4	
진우노동조합		최 정 철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사랑리 137 - 6	
한국번디노동조합		양 봉 광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신리 206 - 1	
한국브레이크노동조합		김 현 진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북리 608-23	
한국에이.엠.피노동조합		이 성 근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양기리 451 - 9	
한국열교환기노동조합		최 용 만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6리 517	
한국키스톤발브노동조합		주 택 근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계특리 270-4	
현대엘리베이터노동조합		성 용 주	경기도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 산 136 - 1	
경원세기노동조합		심 재 윤	부천시 오정구 내동 222-22	
투-보노동조합		이 원 근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29-13	

조	합	명	대 표 자	주	소
삼양중기노동조합			이 성 수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 134
성신노동조합			유 진 화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56 - 5
신한주철노동조합			윤 무 영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 3 동 135
경용기계노동조합			송 두 영	안산시	성곡동 646 - 5 반월공단 B 602- 7
광명전기노동조합			이 명 구	안산시	목내동 389번지 28-15
남성기계노동조합			이 철 수	안산시	신길동 1054-1
남양공업노동조합			노 춘 용	안산시	목내동 390
동성진흥공업노동조합			이 상 섭	안산시	목내동 445 - 4, B 15 - 1
동성진흥노동조합			홍 원 상	안산시	성곡동 610 - 6 B 18-17 브릭
삼기기공노동조합			장 인 권	안산시	원시동 726- 4, 반월공단 B 1 - 45
삼목강업노동조합			남 진 우	안산시	초지동 654 - 3 반월공단 9-71-2
성진산업노동조합			임 병 우	안산시	원시동 731 - 8 (4B, 9L)
신아전기노동조합			신 은 철	안산시	원시동 779 - 10
신호기전노동조합			이 중 현	안산시	원시동 735
한샘노동조합			한 승 인	안산시	성곡동 665 시화공단 5라 201 번지
영창악기노동조합			이 상 우	인천시	서구 가좌동 178 - 55
이천전기노동조합			이 준 기	인천시	동구 화수동 5 - 5
희성금속노동조합			허 규 선	인천시	서구 가좌동 180 - 12
남선기공노동조합			윤 익 병	대전시	대덕구 음내동 450 - 10
대성공업노동조합			김 진 순	대전시	동구 성남 1 동 180 (7/5)
동양강철노동조합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63 - 15
세아중기노동조합			김 창 구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제4공단 11-2BL
대동브레이크노동조합			백 중 형	충남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306-1
동일알루미늄노동조합			박 중 선	충남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378-1

조	합	명	대 표 자	주	소
두원공조노동조합			이 중 각	충남 아산군 음봉면 원남리 산 16 - 1	
부천공조노동조합			최 종 석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52-2	
삼도산업노동조합			김 갑 성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산 58-3	
삼신노동조합			강 한 우	충남 천안시 두정동 63 - 6	
삼천리기계노동조합			신 경 선	충남 천안군 성환읍 성환리 419	
수산정밀노동조합			김 관 태	충남 아산군 음봉면 월랑리 산 94	
수산특장노동조합			이 광 세	충남 아산시 음봉면 쌍용리 산3-1	
포스코홀스노동조합			전 수 문	충남 천안시 성거읍 오목리 27	
한성실업노동조합			안 성 환	예산군 음봉면 지성리 웅봉농공단지 6BL	
국제중합기계노동조합			조 준 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11 - 1	
극동전선노동조합			안 승 필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95	
대농중공업노동조합			이 관 회	충북 청주시 송정동 27-5	
동성금속노동조합			노 성 환	충북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 160	
에넥스노동조합			정 운 석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555	
한국야금노동조합			왕 용 호	충북 청주시 송정동 53 - 16	
고려용접봉노동조합			김 회 근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21 - 3	
고성산업노동조합			이 한 봉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 - 12	
극동금속노동조합			김 대 복	부산시 사상구 감전4동 124 - 1	
내셔널정공노동조합			김 영 중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1467-3	
대동조선노동조합			현 익 조	경남 진해시 원포동 139	
대선조선노동조합			황 대 선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4 가 12	
대성사노동조합			변 진 섭	부산시 동래구 안락 2 동 107 - 16	
대창단조노동조합			박 병 용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952 - 3	
대창중기노동조합			이 규 대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508-5	
대한제강노동조합			김 재 한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 - 16	

조	합	명	대 표 자	주 소
동승기업노동조합			추 진 호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 1 동 791 - 1
동아금속노동조합			윤 상 의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79 - 7
동아전기노동조합			이 원 복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8
동영공업노동조합			서 병 준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48 - 1
부산링구노동조합			김 병 옥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503-1
부산정기노동조합			김 규 호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521 - 3
부산주공노동조합			서 영 택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15
부영철강노동조합			박 호 길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24-5
삼창중공업노동조합			남 상 록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32-2
성광벤드노동조합			배 명 렬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520
세동산업노동조합			전 채 목	부산시 남구 감만 1 동 254 - 48
세웅종합건설노동조합			김 용 민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5 가 29
신동방노동조합			류 필 열	부산시 연제구 연산 1 동 581 - 4
연합조선노동조합			이 창 만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1 가 122
오리엔탈정공노동조합			권 동 재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 - 18
적고노동조합			이 승 우	부산시 사하구 감천 1 동 702
제일중기노동조합			이 우 송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519-3
조선선재노동조합			전 용 구	부산시 남구 우암 1 동 39
태광벤드노동조합			양 재 권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534
한국선재노동조합			최 승 진	부산시 사상구 감전 1 동 148-1
한국오루강침노동조합			정 운 국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660 - 1
한국주철관노동조합			차 윤 환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 - 19
한보 부산제강소노동조합			최 창 대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90
한일밸브노동조합			윤 승 제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154-1
한진섬유기계노동조합			오 봉 출	부산시 금정구 부곡4동 799 - 3

조	합	명	대 표 자	주	소
형진공업노동조합			민 규 식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18 - 6
대동기어노동조합			강 현 호	경남 사천군 사남면 유천리	71
대동정비노동조합			하 상 기	경남 진주시 상대 2 동	33 - 126
대신공업노동조합			윤 영 진	경남 사천군 사남면 월성리	413
동호전기노동조합			박 재 원	경남 진양군 지수면 승내리	산 58-1
두원중공업노동조합			정 진 용	경남 사천군 축동면 구호리	650
세일공업노동조합			백 기 형	경남 진주시 상대동	33 - 50
고려아연노동조합			조 한 재	울산시 울주구 온산면 대정리	505
세운공업노동조합			박 용 도	울산시 중구 연암동	936
정일공업노동조합			김 복 천	울산시 중구 효문동	212 -11
남양금속노동조합			조 회 성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본리리	29
이수전자노동조합			최 진 회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본리동	29 - 54
평화산업노동조합			신 석 곤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본리리	29 - 17
성우정공노동조합			강 진 유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28
기아특수강노동조합			이 정 석	전북 군산시 소룡동	1 - 6
성우노동조합			김 기 환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5-30
한일전기노동조합			우 태 율	원주시 우산동	공업단지 10 브럭

5. 집회참석 및 총과업 돌입 단위노조 현황

지역명	단위노조명	대표자명	지역명	단위노조명	대표자명
서울	L G 전자	나찬경	안산	경방기계	강영석
	대우전자	이병균		경용기계	송두영
	세진전자	문광주		광명전기	이명구
	제일종공	선기노		기린산업	차상목
	청우공업	이명선		남성기계	이철수
	풍성전기	이대영		대경화성	정근화
	한국특수공구	서갑순		대기산업	유원기
	롯데전자	안재현		대덕산업	김광호
	동아건설	김상수		대덕전자	송성수
	대한전선	강익화		동성진흥	홍원상
	거평시그네틱스	김원종		동성진흥공업	이상섭
	한국TDK	박미영		반도기계(지부)	박태영
	한국음향	김종화		삼기기공	장인권
	동 해	이경옥		삼도기전(지부)	오세광
	로움코리아	양명연		삼목강업	박용국
	신한전기	범상철		서울차륜	이쌍봉
	오 트 론	신성균		서울라디에터	백승철
	한국전자부품	이병원		성안기계	최관섭

지역명	단위노조명	대표자명	지역명	단위노조명	대표자명
경남	수산스타	김 용 환	충남	삼신	강 한 우
	한국시티즌	최 정 호		삼천리기계	신 경 선
	한국일선	조 영 칠		포스코홀스	이 승 재
	한국정상화성	심 문 보		동양철관	양 시 준
	한국중천	최 해 경		경신공업(아산)	강 홍 진
	한국카시오	이 선 중		부천공조	최 종 석
	한덕산업	전 영 섭		대기시트	김 갑 성
진주	대동기어	강 현 호		동일알미늄	박 종 선
	대동정비	하 성 기		LG금속(장항)	설 광 섭
	대신공업	윤 영 진		수산정밀	김 관 태
	동호전기	박 재 원		동아건설(천안)	류 근 식
	두원중공업	정 진 용		동아건설(온양)	정 세 영
	세일공업	백 기 형		금성정공	김 성 종
	동진전기	장 남 진		대동브레이크	백 중 형
	삼원금속	김 유 규		진로인더스트리	강 웅 석
	LG전자김해	김 권 하		진로인더스트리(목천)	강 태 근
	영진기계	김 익 수		쌍신전기	유 재 순
	적고	이 성 숙		수산특장	김 성 규
김 해	적고정밀	이 명 우		한성실업	안 성 환
	한국스핀들	김 성 천			

지역명	단위노조명	대표자명	지역명	단위노조명	대표자명
포항	동일철강	김형복	대구	미주금속	김춘중
	현대금속	김도론		대원기계	박인환
	홍화공업	강세종		영진	권태훈
	동성철강	양성용		삼협산업	김운이
	조선선재	전문종		화신지부	최장용
	동일기업	이동익		화신테크	손민호
	세아제강	박철우		화신	윤승오
	세아특수강	김병수		평화발레오	서윤배
	삼정강업	장형재		동해전장	정한근
	그린산업	강학중		삼성제침	주태화
	성우정공	강진유		평화크랏치	김연국
	한금	오정희		신아금속	손순석
	화성기업	김우석		동원금속경산	김상권
	포철산기	강기태		삼립정공	조채웅
	동일산업	조진석		세명기업	오재학
	포철로재정비	신갑식		유진전장	강환영
대구	경창와이퍼	백영식		상신브레이크	김대용
	평화정공	김순창		대동금속	김형호
	경동산업지부	정영욱		대한중석	이용대
	동국강재	공석철		성산	전봉진

지역명	단위노조명	대표자명	지역명	단위노조명	대표자명
경기	현대전자	김영철	광주	하남전자	박기출
	대광다이캐스트	김수룡		대우전자광주	박상민
	경원사업	강장규		서울차체지부	김형곤
	한국번디	양봉광		세방전지	이관우
	정일공업(지부)	정기열		일진산업	강성찬
	삼화제관	장동원		남선선반	김동희
	두원정공	박홍서		금성기계	문병주
	한국체인	최상봉		부국철강	장경식
	신라엔지니어링	김수영		한국번디	양봉광
	한국A.M.P	윤정일		한국신광전자	유영수
	한국키스톤발부	주택근		천기제강	이길남
	경동산업	박영규		태성기공	김상곤
	동아정기	조동진		부국산업	김동인
	삼화콘덴샤	조광용	부산	태양금속	변성진
	이화다이아몬드	서성원		태양사	이형연
	남성기계	이철수		한국선재	최송진
	남북	한석만		한국오루강침	정운국
	희성전선	김영기		한보철강	최창대
광주	화천기공	송웅규		한진금속	김현옥
	한국알프스	조삼담			

지역명	단위노조명	대표자명	지역명	단위노조명	대표자명
대구	경창산업	장지태	안산	태일정밀	송기선
	경창정공	김인태		한국캠브리지필터	이한규
	아세아산업	이희도		한일써키트	박상목
	아세아종합	윤태길		화일볼트	고인성
	한일밸브	윤승제		진영공업	김종성
전북	기아특수강	이정석		남양공업	노춘용
	대봉전선	김두한		신일정밀	배영숙
안산	세광알미늄	엄종국		신아전기	신은철
	오양공조기	조재천		아메리칸스텐다드	김영운
	범양냉방	한기홍		신호기전	이종현
	성진산업	임병우		서울차량지부	백정훈
경기	배영설비	이병도		삼목강업	박용국
	삼기기공	장인권		진영공업	김종성
	삼양중기	이성수	충북	맥슨전자	조잔용
	신한주철	윤무영		에넥스	정운석
	성신	유진화		삼화전기	전병준
	반도기계	오광수		동성금속	노성환
	풍정산업	안재식		한국야금	왕용호
충북	뉴맥스	이형일		대일OG	김기종
	제일공업	김영기		대농중공업	이관희

지역명	단위노조명	대표자명	지역명	단위노조명	대표자명
부산	강남	문정도	부산	부산링구	김병옥
	고려용접봉	김희근		부산정기	김규호
	고성산업	이한봉		부산주공	서영택
	대선조선	황대선		제일전기	조성래
	대동조선	현억조		한국주철관	차윤환
	성광밴드	안용길		조선선재	전용구
	세동산업	전채목		한진섬유기계	오봉출
	대성사	변진섭	인천	이천전기	이준기
	대일공업	정형태		대한제당	손종홍
	대창단조	박병용		서울제강	최광질
	대창중기	이규대		영풍기계	이준선
	대한제강	김재한		대우통신	김영국
	대창크랭크	이진기		도투락	김현섭
	연합철강	강진호		삼송공업	김철소
	오리엔탈정공	권동재		신호금속	박창옥
	동승기업	추진호		대한제쇄	한혜근
	동아건설지부	김덕갑		한일튜브	조병현
	적고	이승우		대동시스템	양승종
	동아전기	이원복	강원	도로코산업	유갑열
	태 광 밴 드	양재권		한일전기	우태율

지역명	단위노조명	대표자명	지역명	단위노조명	대표자명
안산	태일정밀	송기선	경기	대 기	이강훈
	한국캠브리지필터	이한규		기경실업	이금호
	한일써킷트	박상목		동양사	이순녀
	화일볼트	고인성		서진다이킨	서은억
	진영공업	김종성		기영산업	서광술
	남양공업	노춘용		신호기전	이종현
	신일정밀	배영숙		경용기계	송두영
인천	이천전기	이준기	안산	대경화성	정근화
	대한제당	손종홍		T.R.W	정상모
	서울제강	최광질		경방기계	강영석
	영풍기계	이준선	경기	삼아알미늄	신현철
	대우통신	김영국		세광알미늄	엄종국
	도투락	김현섭		신아전기	신은철
	삼송공업	김철소		신명전기	이명재
	신호금속	박창옥		오양공조기	조재천
	대한제쇄	한혜근		동성진흥	홍원상
	한일튜브	조병현		동성진흥공업	이상섭
	대동시스템	양승종		대원전선	배승천
	로알동도	한종윤		진우	최정철

지역명	단위노조명	대표자명	지역명	단위노조명	대표자명
울산	고려아연	조한제	구미	LG마이크로닉스	노승표
	덕양산업	김우배		LG반도체	장영철
	동희산업	김태년		LG정밀	이상민
	풍산(온산지부)	정명수		LG정보통신	이규성
	한진프라스틱	문부근		동국종합전자	신송근
	삼주기계	문성일		두산전자	이상근
	정일공업	김복천		새한전자	김충원
	부산기업	강성구		실트론	김유연
	우영기업	연기섭		오리온금속	김우철
	현대공업	최상돌		정화	김상일
구미	클.하우저만	한경석		일성기계	김장수
	델코	김경구		태평양금속	김길득
	한국IG모타	권영미		한국신영	김진섭
	고려전기	이명희		한국대화금속	김현철

현장조직이 요구하는 사항

- 1단계 투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왜 공백이 길어지는가
- 2단계 투쟁계획은 왜 늦어지는가?(현장열기가 떨어지고 있다)
- 이번엔야 말로 민노총을 압도할수 있는 좋은기회다. 노총에서 불을 죽이지 말라
- 지도부의 구속각오가 정말로 되어 있는가
- 산별위원장들의 투쟁의지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 전국대표자(삭발자)대회를 개최하여 투쟁의 불을 다시 지피자
- 머리까지 깎어놓고 총파업을 안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 노총지도부가 총파업에 부담이 가면 민노총과 연대해서 싸우자
- 이제부터라도 정확히 하여야 한국노총이 살수있다.
- 역사의 죄인이 되지말라

◎ 삭발자 명단 ◎

연맹상근 간부 전원

서울지역본부(10명)

대우전자 이병균 위원장, 박성구 부위원장, 전용구 인천지부장, 김정근 주안지부장, 장인환 구미지부장, 조정훈 광주지부장, 우택우 사무국장, 임권 기획실장/ 롯데전자 안재현 위원장, 박송기 사무국장

경기지역본부(36명)

하영일의장, 이종진부의장, 태양금속 이병욱위원장, 대륙전선 김영규위원장, 신아전기 신은철 위원장, 오양공조기 조재천 위원장, 동성진흥공업 홍원상 위원장, 동성진흥 이상섭 위원장, 서울차체 이쌍봉 위원장, 남성기계 이철수 위원장, 반도기계 박태영 지부장,

장진수 노충부천지부 의장, 반도기계 오광수 위원장, 삼양중기 이성수 위원장, 보아기계 이성기 위원장, 신한주철 윤무영 위원장, 신한일전기 이준덕 위원장, 현대엘리베이터 성용주 위원장, 세광알미늄 엄종국위원장, 대광다이캐스트 김수룡 위원장, 이화다이아몬드 성세현 위원장, 경원산업 강장규 위원장, 배영설비 이병도 위원장, 대기 이강훈 위원장, 희성전선 김영기 위원장, 대한제작소 이두중위원장, 철도콘테이너 임승재 위원장, 범양냉방 한기홍 위원장, 서울차량 백정훈지부장, 정일공업 정기열 지부장, 국제전기 최병면 위원장, 서울라디에타 백승철 위원장, 한일씨키트 백상목 위원장, 경방기계 강영석 지부장

인천지역본부(9명)

황창배의장, 삼성공업 오인상 위원장, 도투락 김현섭위원장, 한영알미늄 한상환 위원장, 대한제당 손종홍위원장, 한국샤프 박재형 위원장, 신호스틸 양종우 위원장, 대동시스템 양승종 위원장, 신호금속 김학배 위원장

충남지역본부 (32명)

강한우 의장, 최만정 사무차장, 동양철관 양시준 위원장, 동일알미늄 박종선 위원장, 부천공조 최종석 위원장, 삼신 박광규 위원장, 포스코홀스 전수문 위원장, 진로인더스트리 강웅석 위원장, 진로인더스트리 강태근 목천지부장, 삼천리기계 신경선위원장, 동아건설 류근식 지부장, 발레오테크놀로지스 이광호 위원장, LG하니웰 김원기 위원장, LG금속 설광섭 지부장, FKL동화 심수경 위원장, 쌍신전기 류재순 위원장, 대동브레이크 백중형 위원장, 수산정밀 김관태 위원장, 수산특장 이광세위원장, 삼도산업 김갑성 위원장, 상지전자 이철수 위원장,한성실업 안성환위원장, 경신공업 강홍집지부장, 금성정공 김성종위원장, 한영철강 홍성태 위원장, 두원공조 이종각위원장, 대륙제관 강성규 위원장, 대우공업 이홍제 위원장, 건화전기 김기준위원장, 평산공업 김진호 위원장, 성일산업 김춘호 위원장, 대흥정비 오수영 위원장

대전지역본부 (17명)

김두형 의장, 국제특수금속 이홍배 위원장, 남성기공 윤익병위원장, 대성 정순남 위원장, 대성공업 김진순위원장, 대아공업 김재동 위원장, 동방의료양행 박희국 위원장, 동양금속 김희종 위원장, 중앙공업 안진용 위원장, 진합정공 이남철위원장, 정품물산 양정규 위원장, 한국중기 나정만 위원장, 삼왕 신금교 위원장, 용암산업 김주영 위원장, 세아중기 김창구 위원장, 로옵코리아 최희섭 지부장, 동양강철 김용대 위원장

부산지역본부 (11명)

오봉출 의장, 이재섭 조직국장, 인합철강 강진호 위원장, 세동산업 전채복 위원장, 성광밴드 안용길 위원장, 한창트랜스 박경덕 위원장, 부산주공 서영택 위원장 김복식 사무국장, 한국오루강철 정운국 위원장, 대일공업 전형태 위원장, 대성사 변진섭위원장

경남지역본부 (12명)

강석수 의장, 세방전지 김환수 위원장, 세아제강 윤종삼 지부장, 한국GMB 유재현 부위원장, 미진금속 김철식 위원장, 창원기화기 조용환 위원장, 고려파이프 박지환 위원장, 제일정밀 권창수 위원장, 삼우금속 최경호 위원장, 삼선공업 남상규 지부장, 태주실업 이인호 위원장, 대동기어 강현호 위원장

울산지역본부 (4명)

김복천 의장, 노사대책국장 노현돈, 대한알미늄 남송희 위원장, 고려아연 조한재 위원장

대구경북지역본부(24명)

김무호 의장, 아세아농업기계 윤태길 위원장, 대동금속 김형오 위원장, 영풍제관 이성곤 위원장, 대한소결금속 이영우 위원장, 평화산업 신석곤 위원장, 평화오일셀 유길호 위원장, 상신브레이크 김대용 위

원장, 남양금속 조희상 위원장, 대한중석 이용대 위원장, 아세아산업 이희도위원장, 삼성제침 주태화위원장, 동해전장 정한근 위원장, 경동산업 정영욱 위원장, 영진 권태훈 위원장, 평화발레오 서윤배위원장, 평화정공 김순창, 일지산업 나영섭 위원장, 평화크랏치 김영국위원장, 화신 윤승오위원장, 신아금속 손순석위원장, 화신테크 조동권위원장, 세왕금속 이동구 위원장

포항지역본부 (13명)

백종부 의장, 동일철강 김형복위원장, 동성철강 양성용위원장, 세아제강 박철우위원장, 세아특수강 김병수위원장, 그린산업 강학중위원장, 조선선제 전문중 위원장, 현대종합금속 기도론 위원장, 홍화공업 장세종 위원장, 한금 오정희 위원장, 한국주철관 김말택 위원장, 화성기업 김무석위원장, 포철산기 강기태위원장

구미지역본부(3명)

고려전기 이명희 위원장, 일성기계 김장수위원장,
LG전자 천광희 구미1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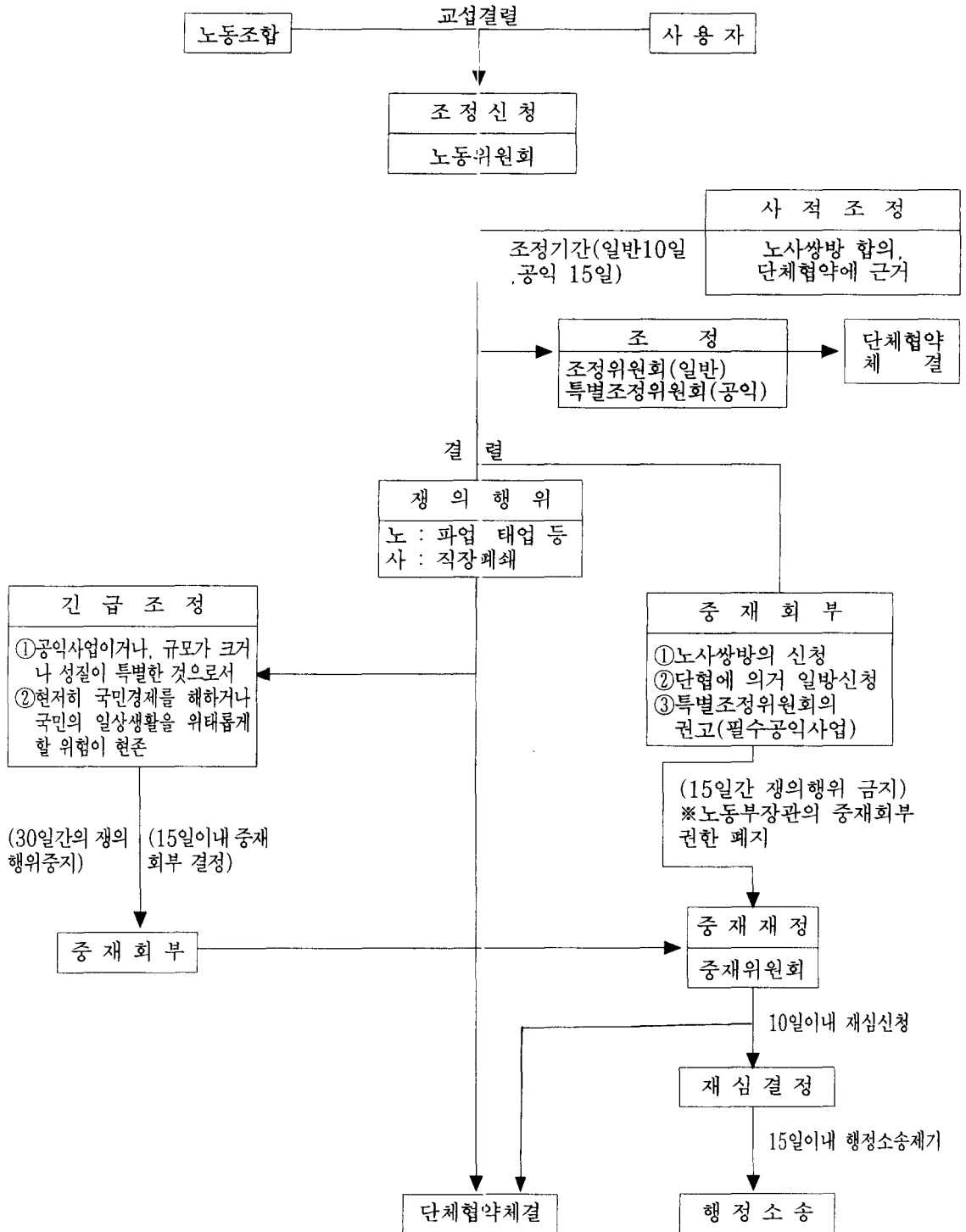
광주전남지역본부(12명)

정기춘 의장, 사무국장 신용석, 일진산업 강성찬위원장, 금성기계 문병주위원장, 부국산업 김동인위원장, 남선선반 김동희 위원장, 세방전지 이광우 광주지부장, 서울차체 김형곤 광주지부장, 한국번디 고주선 광주지부장, 한천기공 구명주위원장, 하남전자 박기출위원장, 한국알프스 조삼담 위원장

전북지역본부(7명)

백병기 의장, 기아특수강 이정석위원장, 희성전선 강철순 지부장, 동양기업 양남용위원장, 한화기계 김택수 지부장, 대봉전선 김두환 위원장, 신영 한상대 위원장

〈새 노동법에서 달라진 조정절차〉



6. 노동쟁의 지도지침

1) 목 적

- 산하조직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할 시 연맹. 지역본부간에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투쟁의 결실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파업기간 동안 무노동 무임금 적용, 손해배상청구, 노조간부구속, 수배등 노동조합의 피해가 급증될 것이 예상되는바 산하조직의 쟁의에 대한 올바른 지도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쟁의에 따른 노동조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동쟁의의 효용성을 높여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사용자의 편향적인 공권력 개입 및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견지하고 노동권을 확보하고자 함.

2) 쟁의지도지침

(1) 노동쟁의 발생보고

① 단위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45조 조정의 전치에 의거하여 노동쟁의 발생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역본부 및 연맹에 즉시 보고한다.

② 지역본부는 단위노조로부터 쟁의발생을 보고 받는 즉시 이를 연맹에 보고한다.

(2) 쟁의 지도

① 지역본부는 단위노조로부터 쟁의발생을 보고 받는 즉시 조정절차 준수 및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등 단위노조가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도를 한다.

② 지역본부는 단위노조가 조정절차를 거친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경우라도 회사 기물 파손, 폭력행위등 노조에 불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3) 쟁의행위 보고 및 지원

① 단위노조는 파업에 돌입할 경우 주요쟁점 및 교섭내용을 첨부 즉시 지역본부, 연맹에 보고하고 필요시 지원을 요청한다.

② 지역본부는 단위노조로부터 쟁의행위를 통보받는 즉시 이를 연맹에 보고하고 쟁의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산하 쟁의지도위원을 동원하여 쟁의를 지도, 지원한다.

③ 지역본부는 단위노조로부터 쟁의지원을 요청받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분규가 수습되지 않고 장기화 되는등 자체 노력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맹에 지원을 요청한다.

④ 지역본부는 지부로부터 쟁의지원을 요청받는 즉시 지부가 있는 지역은 지부와 협조하여 단위노조의 쟁의를 지도 지원하며 지역본부가 개입한 이후에도 노동쟁의가 수습되지 않는 등 자체 노력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쟁의 진행 상황을 첨부, 연맹에 지원을 요청한다.

⑤ 연맹은 지역본부로부터 쟁의지원을 요청받는 즉시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 사항을 파악하고 지역본부 및 지역조직과 연계하여 쟁의를 지도지원한다.

⑥ 연맹 및 지역본부, 지역조직은 쟁의중인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물론 악덕기업주에 의해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는 경우에도 쟁의 지도위원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간다.

(4) 쟁의기금 및 연대활동

① 단위노조는 자체예산으로 쟁의기금을 확보한다.

② 연맹 및 지역본부는 산하조직에서 쟁의행위에 돌입할 시 격려 방문 조직, 교육, 홍보, 선전활동 연대기금 모금 등 쟁의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한다.

(5) 선봉대 및 쟁의 지도위원

- ① 단위노조는 쟁의에 대비해 조직의 실정에 맞게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체 선봉대를 조직, 운영한다.
- ② 연맹은 쟁의지도위원에게 신분보장을 위해 임명장을 수여한다.

(6) 임.단투 추진본부

- ① 지역본부는 늦어도 4월까지 임.단투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임단투가 마무리 될때까지 운영한다.
- ② 임.단투 추진본부는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지도를 병행한다.

(7) 보고의무

- ① 단위노조는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의 주요 요구안이 확정될 경우와 임단협 협상이 타결되는 즉시 그 결과를 지역본부에 보고한다.
- ② 지역본부는 임단협 요구안과 타결내용을 취합하여 매주 금속연맹에 보고한다.

조사통제활동

◦ 평가와 개선방향

1. '96임투지원활동 - 임투사업장 방문

2. '96임투평가

1) '96임투정세

2) '96임투진행현황

3) '96임투 총괄평가

3. '97임투준비

1) 시장물가 조사

2) '97임금인상 실태조사

3) '97임투 자료집 발간

4) '97임투지침서 발간

5) '97임투교육실시

평가 및 개선방향

조사통계사업은 노동조합운동에 있어 주변의 환경이나 정세를 파악하여 정책결정의 뒷받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합활동에 과학적 기초를 가져다주는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 교육, 선전, 복지 등의 활동에 있어서도 조사활동은 그 활동을 떠나가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된다.

지난 1년간 조사통계부에서는 임투지원활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여 96년도 임투상황 집계, 96년도 임투평가, 생계비 물가조사, 97년도 임투자료집 및 지침서 작성을 하였다. 이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문제로 등장하는 것은 조사자료의 현실성이 실태에 의한 근거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나 연구기관의 통계자료에 대한 의존이 증대되는데 비해 연맹이 직접조사하는 실태조사의 설문지 회수율은 계속 떨어져 빈약한 회수율과 빈도를 기록한 실태조사가 객관성을 상실하게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것이지만 해결되지않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간부들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는 하지만 제출하지않는 이중성의 문제에 있으며 결국 기업별 노조의 조합이기주의 문화에 불요불식간에 젖고 있는 것이다. 설문수거율의 문제에 따라 작년도 설문조사의 양을 줄이고 문답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더불어 직접방문 방식의 조사를 취해 이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앞서 제기했던 바와 같이 이 문제의 완전해결을 위해서는 단위 노조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없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한편,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고용문제가 노사관계에 중심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고용안정과 사회복지, 교육훈련, 노동조건에 변화에 따른 변화양상, 그리고 사후대책과 과제 등을 다루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다.

1. '96 임투지원활동

1) 임투교육

- (1) 일 시 : 1996. 3. 28(목)
- (2) 장 소 : 노충 대전지역본부 대강당
- (3) 참석인원 : 59명
- (4) 강의내용 : ● 정세분석 및 연맹 임투요구안 해설
● 임금요구안 작성 및 전략전술
- (5) 목 적 : ● 단위 사업장의 임금교섭 지원
● 96년 임투의 통일적인 전술구사를 위한 계기마련

2. '96 임투평가

1) 임투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

가. 경제여건

(1) 세계자본주의 체제 편입

90년대를 접어들면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자본주의 체제를 중심으로한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져 주요 독점자본 사이의 경쟁이 격화되어가고 있다. 지난 95년 1월을 기점으로 하여 WTO체제로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돌입한 세계 경제는 국경의 장벽을 허무는 시장경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생존 방식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즉, 서구의 거대자본에 대항하기 위한 개도국 자본의 경쟁력 확보와 이를 둘러싼 자본의 노동시장 재편은 노동자의 권익과 지위를 상대적으로 약화시켜내고 있어 노자간의 치열한 공방을 야기시키고 있다.

(2) 재벌 경쟁력집중 심화 및 경기 양극화

국내적으로는 96년 정부가 OECD를 가입하면서 시장개방과 해외자본유입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어 한국경제의 세계자본주의 체제 편입이 심화되고 있다. 김영삼 정권은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를 기치로 규제완화와 자유경쟁 및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재벌위주의 성장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재벌들은 막대한 경제력을 집중해 정치적으로도 커다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경공업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하청계열화되거나 조업단축, 휴폐업에 내몰리고 있다.

나. 세계경제동향

선진국 경제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조정을 겪으면서 성장률이 다소 둔화 되는 가운데 2.4% 수준의 안정성장을 시현하고, 개도국들은 6%대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여 세계경제는 90년 들어 가장 높은 4.1%의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의 경우 베트남의 회원국 가입에 따른 지역내 시장 확대와 외국인 직접 투자 증대에 힘입어 8.1%의 성장률을 보였다.

국제 원자재 가격 전망 (단위 : %)

	1994	1995	1996
원 유	-2.4	7.8	-7.0
기타 원자재	12.4	13.8	-3.4
비 철 금 속	11.9	12.1	-0.3
공업 농산물	9.6	-1.8	-0.6

자료 : 국제통화기금 (IMF)

이러한 세계경제의 안정성장은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교역 장벽의 완화와 이에 따른 경쟁촉진, 가격파괴 현상 확대, 생산요소 이동의 원활화, 원유 등 원자재의 가격안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경제 성장률

(단위 : %)

	지 역	93년	94년	95년	96년
경제성장률	전세계 (%)	2.5	3.6	3.8	4.1
	선진국	1.2	3.1	2.5	2.4
	미국	3.1	4.1	2.9	2.0
	일본	-0.2	0.5	0.5	2.2
	EU	-0.4	2.8	3.2	3.1
	독일	-1.2	2.9	2.6	2.9
	개도국	6.1	6.2	6.1	6.2
	구소련및동구	-9.1	-9.5	-2.1	3.4
실업률	선진국전체	8.1	8.1	7.6	7.9
	미국	6.8	6.1	5.7	5.9
	일본	2.9	2.9	3.1	3.2
	EU	11.0	11.6	11.1	10.6
	독일	8.8	9.6	9.1	8.7
물가상승률	선진국전체	3.0	2.4	2.6	3.5
	미국	3.0	2.6	3.0	3.3
	일본	1.3	0.7	0.3	0.7
	EU	3.8	3.1	3.1	2.8
	개도국	43.1	48.1	19.5	13.0
	구소련및동구	675.2	301.3	147.7	25.4

IMF의 세계교역 증가율 전망

(단위 : %)

	94년	95년	96년
세계	10.5	8.0	6.6
선진국	10.0	7.1	5.5
미국	15.0	6.4	2.4
일본	13.7	13.6	5.3
개도국	12.1	11.8	10.2
아시아	14.2	11.8	12.9
중남미	34.6	-0.6	5.9
* 85년 - 95년 연평균 세계교역 신장률 : 6.0%			

한편, 올해 세계 무역을 이끄는 선진국의 자본재를 비롯한 설비투자용 수입이 줄어들어 무역 증가율이 4.5% 정도로 낮아지만,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른 자본재 수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개도국의 수입 신장률이 5.9% ~ 12.9%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교역 증가율도 지난해보다는 둔화되어 96년에는 6.6%대의 신장률을 보였다.

다. 국내 정세

1996년도는 95년 6월 지자체 선거를 시발로 96년 4월 국회의원 총선, 97년 12월 대통령 선거, 98년 6월 지자체 선거 등의 권력교체기의 정치 공간 속에서 놓여있다. 이렇듯 확대된 정치공간속에서 노동자와 국민의 자주적 권리의식이 한층 고양되고 정치적 진출이 가속화되어 노동악법의 개정, 사회개혁 요구의 실현 뿐아니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질적으로 이룩하는 역사적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계기의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과 신한국당은 정권 중후반기에 따른 권력재창출을 위해 96년도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독재를 마무리 짓게된다. 먼저, 95년 6월 지자체 선거에서의 참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외부인사 영입을 통해 4월 총선에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게된 김영삼 정권은 노동법 개정에서 다수의 횡포에 의한 반민주성을 드러내게되고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김영삼 정권의 기반이 자본가에 의해 지탱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경제는 대외적으로 WTO 체제의 수립에 따라 경제 개방이 확대되고, OECD 가입이 추진되는 등 경제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 관료의 부정부패로 인해 경제의 효율성과 경제운용의 합리성이 저해받고 있으며, 임금억제와 노동탄압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의욕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누적된 문제를 김영삼 정권은 규제완화, 시장경제 강화, 민간주도 경제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재벌 주도의 경제를 강화하여 우리나라를 재벌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

라. 자본동향

95년 민주노총의 출범과 한국노총의 노동계 통합제외에 따라 올해 노동계의 재편이

본격화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자본측은 96년에 펼쳐나아갈 노동정책을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기업에 대해 노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통제를 직접적으로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와 노조전임자 축소, 무노동무임금, 노동법을 끊임없이 개악해 나아가려는 정부와 자본측의 정책은 노조말살, 노동자 생존권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

1995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구도는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 우선, 1987년 이후의 노사관계 격동기를 통하여 지속적인 대립과 대결의 구도를 자본우위의 협력적 구도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는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력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요하다는 것 -를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95년 한해동안 2,800여개 사업장에서 노사화합 선언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하던 재야노조가 민노총이라는 전국조직을 출범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제2노총으로 정비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통신사건을 계기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가 뚜렷하게 부각되고 그동안 소홀히 해오던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를 재점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큰 흐름은 별다른 변화없이 96년에는 단지 모양새만 조금 변한채 드러난다.

즉, 정부는 세계화를 구실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노사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정책을 지속시키고 있다. 반면, 노사분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노동자에 대한 직접통제를 더욱 강화하여 노사자율원칙을 거스를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해²는 일례가 지난 95년 12월 노동부 장관이 정부가 올해부터 기업에 대해 노무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 주 내용은 노사관계에 선도적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 및 공기업에 대해 정부가 노무관리진단팀을 구성하여 노사관계의 갈등요인을 미리미리 점검, 개선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단순한 노사화합 결의대회를 독려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자본우위의 본격적인 협력적 노사관계의 신노사관계의 틀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판단되며 한편, 신경영전략이나 새로운 노동통제전술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자본측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있는 자본측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략산업에서의 경기호황을 반영하여 노동자들의 요구를 일정정도 수용하면서도 생산현장에 대한 노동통제를 강화하고 정규직을 축소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여 고용불안을 제도화

하며, 노동자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기업문화 운동을 확산하고, 능력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신경영전략과 노사화합 선언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개량화와 무력화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마. 국내경제 동향

(1) 연맹 임투 요구지침

임금

- 통상임금 기준 94,082원 14.0%(호봉승급분 제외)를 중심으로 요구
- 단위조합에서는 지침을 중심으로하여 자체의 요구안을 작성하되 기업의 사정이나 임금현황이 특이한 경우 현실적으로 감안하여 요구안을 작성하도록 함.

단체협약 및 정책제도 개선사항

- ◆ 임금인상 이외에 노동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 ◆ 노총의 정책·제도개선 사항을 지원하되 중심적인 부분이 관철되도록 한다.
- ◆ 임금을 제외한 정책·제도개선부분에 대하여 노사정간의 교섭을 선제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참다운 사회적 합의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노동시간 단축

- ▶ 2000년까지 연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단축
- ▶ 이를 위하여 97년까지 주당 소정노동시간을 42시간으로 단축
- ▶ 2000년까지 주당 소정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

②임금격차 완화

- ▶ 고졸 5년 근속자의 임금을 대졸 초임과 같게 한다.
- ▶ 동일학력의 생산직과 사무직의 임금을 같게 한다.
- ▶ 동일학력, 동일노동의 남녀임금을 같게 한다.
- ▶ 고졸초임을 대졸초임의 80%이상으로 한다.

③ 임금구조 개선

▶기본급 비중을 임금총액의 80%이상으로 한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한다.

④성과급 지급 ▶기업경영 성과를 연말에 성과급으로 지급

⑤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기업 순이익의 5%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적립

⑥경영참가의 확대

▶경영정부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노사공동의 경영참가위원회를 구성

정책제도개선 요구

임금인상 이외에 노동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도개선을 요구함.

①4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 ▶자영업자 및 5인미만의 영세사업장 노동자까지 가입대상 확대
- ▶급여요건의 완화와 급여수준의 인상
- ▶노사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확보
- ▶정부의 비용부담 확대(행정관리비 전액부담)
- ▶기금운영의 수익성 제고(공공부문 투자 축소)
- ▶기금운영의 민주화와 독립성 제고(공공자금관리기금의 노사참여)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 총보수에 의한 보험료 부과

- 지역의보 보험료 부담의 축소
- ▶급여범위와 수준의 상향조정
- 진료일수 제한 철폐
- CT와 MRI등 고가 진료항목의 급여대상 포함
- 필수 건강 진단의 의무화
- 본인부담금의 인하
-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통합운영
- ▶의료수가체계의 개선
- ▶의료기관의 접근성 확보

■ 산재보상보험제도의 개선

- ▶적용대상의 확대(전사업장의 보험가입)
- ▶보험료 부과와 사회연대성 확보
- ▶정부의 관리운영비 전액 부담
- ▶장기급여체계에 적합한 보험료를 책정방식 및 재정 운영방식으로의 전환
- ▶출퇴근 사고 및 과로사의 재해인정 범위의 확대
- ▶휴업급여 수준의 인상
- ▶재활사업의 확대 및 체계화
- ▶제도운영 및 의사결정에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 확대

■ 고용보험제도의 개선

- ▶고용보험제 대상사업장 범위 확대
- ▶고용보험제 소요비용의 정부부담 확대
-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완화와 수급기간의 연장
- ▶실업급여 지급수준의 인상
- ▶고용안정 사업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의 인상
- 휴업수당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전직훈련지원금, 지역고용촉진장려금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에 대한 전액지원

②실질소득의 보장

■ 근로자 주택건설 및 근로자 주택기금 확충

- ▶ 근로자주택 공급확대 및 분양면적의 확대(전용면적 18평으로)
- ▶ 장기저리의 근로자 주택융자금의 확대 실시(재특약기금의 평화은행 예치를 통한 기금조성 - 96년도 1,000억원 추가 예치, 목표 1조원)
- ▶ 대기업 사원주택 확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임대,분양

■ 공교육재정 확충으로 사교육 수요감축

- ▶ 독과점 대기업의 초과이윤이 교육투자화 되도록 유도
- ▶ 노동자 평생교육제도 도입

■ 근로자 재산형성 프로그램의 확충

- ▶ 재형저축 가입대상 근로자의 확대(월급여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 ▶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 형평성을 제고하는 조세제도 개혁으로 근로소득세 경감

- ▶ 각종 공과금액의 인상
- ▶ 교통비 공제 및 조합비 공제제도 신설
- ▶ 재형저축 가입대상 근로자의 확대(월급여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 ▶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대상을 전직종으로 확대

■ 물가안정

- ▶ 소비지물가 안정을 위한 노사정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 ▶ 공공서비스중 종회서비스(대중교통수단, 우편요금 등)관련 요금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낮추고 종량서비스(전기, 수도, 가스 등)관련 요금은 종량누진제 확대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 보장
- ▶ 주요 농산물 및 생필품은 물류개혁을 통하여 가격안정 실현
- ▶ 민간서비스요금은 규제완화, 조세개혁으로 지대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물가안정
- ▶ 중앙은행 독립으로 통화정책의 투명성 확보

③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확충

■저소득 노동자의 내집마련자금 융자 자금확보

■이전 취업자용 독신자 숙소 건립

▶독신자의 숙소로 7평형 3만호 건설

■근로자 종합복지타운 건립

▶가족호텔 및 여행근로자 숙박시설

▶쇼핑몰, 음식점 등 생활지원 시설

▶체육문화시설, 교육연수시설 및 위락시설

④산업민주주의 실현

■기업단위 작업환경 개선, 능력개발, 복지개선 등에 노조의 참여제도 도입

■기업단위 노동자의 참여경영의 확대

▶고용안정을 제고하는 노사의 사전협의제도 도입(외국인근로자, 정리해고)

▶작업장단위 의사결정에 노동자가 참여하여 산업민주주의 및 생산성 제고

■중앙단위 단위민주주의 제고

▶정부정책 입안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폭 확대

▶노총의 정치활동 보장

▶노사정 협의기구의 상설화

·업종, 지역단위 노사협의회 운영

·중앙단위 노사정 협의기구를 상설화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제정책에 대해 사전협의

(2) 연맹 '96임투활동

(1) 활동기조

①합법성 및 합리적 원칙을 견지함.

- ②지역별 공동투쟁체제를 강구함.
- ③임금억제정책이나 탄압이 강화될시 단호히 대응함.
- ④임투시기를 집중화시켜 냄.

1996년 4월 중순 요구안 제출완료 및 교섭개시

5월 하순 교섭마무리 타결, 전강이 불투명한 사업장 쟁의발생 결의

6월 초순 미타결노조 쟁의행위 돌입

(2) 연맹 지원활동

추진내용	일정
임투실태조사	1월말
임투관련자료 수집	11월-12월
임투자료 작성	12월-1월초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단 회의	12월 14일
중앙위원, 중집연석회의	96년 1월 8일
임투자료집 제작배부	96년 1월 26일
중앙위원, 중집연석회의	96년 3월 14일
(본노련 임금정책 및 임금인상요구율 확정)	
임투지침서 제작 배부	1996년 3월 19일
임투지원 전국 순회교육	1996년 3월
임투자료 제공	연중 수시로
임투진행 상황제공	6년 3월말-7월초
지역별 임투결의대회등 지원	금속통신을 통해)
임투, 쟁의사업장 방문	
임투평가회 개최	1996년 4-7월
	1996년 8월말

(3) '96 임금요구 및 타결현황

(1) 임금요구수준이 14.65%, 타결률이 한자리수 9.93%를 기록하여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

(2) 임금교섭 진행정도가 예년에 비해 다소 느리게 나타났으며, 교섭횟수는 평균 6.6회로 95년보다 늘어났으나 예년에 비해서는 줄어든 수치임. (4월 총선에 따른 교섭의

출발이 지연됨, 무교섭 타결 사업장의 증가에 따른 교섭횟수의 감소)

(3) 요구율과 타결률간의 격차가 축소되어 가고 있음.

(4) 단체협약중 주요사항으로는 주42시간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기존 대기업중심으로 행해지던 성과급지급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음.

(5) 쟁의행위 사업장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규모별 요구 및 타결현황

구 분 규 모	요 구		타 결	
	율(%)	액(₩)	율(%)	액(₩)
29인이하	12.63	88,203	9.77	70,485
30 ~ 99인	14.82	95,967	10.14	63,704
100 ~ 299인	14.82	83,213	10.09	58,368
300 ~ 499인	14.88	84,440	9.28	55,054
500 ~ 1000인	13.07	82,752	9.92	61,757
1,000인이상	14.88	92,271	8.48	60,691

요구율과 타결률간의 격차

단위:원,%

구 분 년 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요 구	88,262 (21.98%)	70,331 (15.92%)	72,968 (15.07%)	83,096 (15.44%)	87,530 (14.65%)
타 결	50,034 (12.46%)	37,953 (8.26%)	47,952 (9.63%)	53,711 (10.30%)	59,582 (9.93%)
격 차	38,228 (9.52%)	32,379 (7.30%)	25,016 (5.44%)	29,385 (5.14%)	27,948 (4.72%)

분과별 요구 및 타결 현황

(단위 : 원,%)

구분 분과	연도	요 구		타 결		
		요구액	요구율	타결액	타결률	관철률
기계금속	'96	108,745	15.5	64,318	10.19	59.2
	'95	86,754	15.47%	61,262	10.68%	69.0%
	'94	74,394	14.48%	49,782	9.39%	64.8%
	'93	74,503	15.95	40,796	8.66	54.3%
	'92	92,805	22.33	57,298	13.29	59.5%
전기전자	'96	74,085	13.67	63,912	9.86	86.3
	'95	75,093	14.62%	49,126	10.39%	71.1%
	'94	64,913	14.58%	45,344	9.67%	66.3%
	'93	63,847	15.40	36,626	8.95	58.1
	'92	76,765	20.94	47,370	12.57	60.0
자 동 차	'96	83,382	14.86	58,391	10.50	70.0
	'95	82,125	16.26%	59,580	10.89%	67.0%
	'94	75,839	16.23%	49,165	10.65%	65.6%
	'93	70,484	16.53	39,611	9.16	55.4
	'92	89,896	20.31	56,840	13.83	68.1
비철금속	'96	84,443	14.76	49,878	8.89	59.1
	'95	78,795	14.90%	48,590	9.61%	64.5%
	'94	69,475	15.61%	46,521	9.92%	63.5%
	'93	69,581	16.66	36,271	8.71	52.3
	'92	86,444	22.35	51,335	12.87	57.6
조 선	'96	113,498	15.45	68,623	9.80	60.5
	'95	75,978	12.6%	52,715	10.68%	84.8%
	'94	92,697	16.64%	55,226	9.14%	54.9%
	'93	90,887	16.15	38,691	7.09	43.9
	'92	103,823	23.77	59,379	13.03	54.8
철 강	'96	79,649	13.95	57,006	8.82	71.6
	'95	84,167	13.88%	48,540	9.08%	64.8%
	'94	71,142	14.24%	42,629	8.43%	59.2%
	'93	66,717	14.48	31,446	7.12	49.2
	'92	88,874	20.71	42,094	9.90	47.8
기 타	'96	88,403	14.92	49,878	8.89	56.4
	'95	83,995	16.31%	44,643	10.20%	62.5%
	'94	66,361	15.50%	50,114	11.02%	71.1%
	'93	69,880	16.89	38,015	9.16	54.2
	'92	82,608	22.21	49,625	13.23	59.6

3. '97임투준비

1) 시장물가 조사

① 조사목적

도시근로자가구가 사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실태가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도시근로자 생계비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함을 목적으로 함.

② 조사기간 : 1996. 10. 10 - 10. 20.

③ 조사대상 시장

전국 6대도시에서 도심지역 시장 1개소와 공단근처시장 1개소를 임의로 선정, 총 12개 시장을 조사하였다. 이중 본 연맹은 인천지역을 조사함.

서울: 남대문시장, 영등포시장 / 부산: 국제시장, 구포시장
대구: 팔달시장, 칠성시장 / 인천: 부평시장, 신포동시장
광주: 양동시장, 대인시장 / 대전: 중앙시장, 오정동시장

④ 조사대상 품목수

총 529개 품목

식품: 196개 / 가구, 가전제품: 47개 / 주방용품, 가정잡화: 75개 / 피복 및 신발: 118개
위생용품, 약품, 화장품: 42개 / 교양, 오락품: 9개 / 서비스요금: 42개

⑤ 조사내용

품목, 제조회사명, 상품명, 품질, 규격, 단위, 내구년수, 단가 등.

⑥ 조사방법

조사시 다음 방법으로 사용함

- ㄱ. 품목선정시 중간정도 품질의 상품을 선정한다.
- ㄴ. 동질인 상품에 여러 상표가 있을 경우 가장 많이 팔리는 대중적 상표를 선정한다.
- ㄷ. 규격은 미리 제시된 표준규격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2-3개 규격을 조사한다.
- ㄹ. 내구소비재의 경우 내구년수의 조사를 병행한다.
- ㅁ. 가공식품은 슈퍼마켓 가격으로 한다.

- ㄷ. 지역특성에 따른 할인가격은 정가대로 조사한다.
- ㄸ. 세일가격은 피한다.
- ㄹ. 동일품목의 가격차이가 심할 경우 둘 이상의 점포를 조사한다.

⑦ 조사결과와의 처리

조사된 상품의 가격을 평균하여 해당 품목의 가격으로 함.

2) '97 임금인상 실태조사

- ① 조사기간 ; 1996. 11월 ~ 1997. 1월말
- ② 조사방법 : 전조직을 우편으로 2회 발송
- ③ 분석개수 : 530개노조중 51부 수거 (9.6%)
- ④ 분석결과 내용

(1) '97임투 요구안 확정시기

'97. 2		'97. 3			'97. 4			'97. 5		'97. 8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중
1(2)	1(2)	6(12)	14(28)	11(22)	6(12)	3(6)	3(6)	3(6)	1(2)	1(2)

(2) '97임투 요구안 제출시기

'97. 3			'97. 4			'97. 5		'97. 8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중
3	5	11	11	8	2	5	4	1

(3) '97임투에서 예상되는 교섭횟수: 평균 8.3회

(4) 연맹차원에서 요구율(액) 제시여부

구분	제시하여야함	제시하면 안됨
응답자	90.2% (46)	9.8% (5)

(5) '97임투에서 상급단체가 사회개혁 요구 결합여부

구분	요구하여야 함	요구하면 안됨
응답자	94.1% (48)	5.9% (3)

(6) 요구율(액): 전체평균 14.0% (92,481원)

(7) 관철되어야할 인상률 : 전체평균 10.8% (65,733원)

(8) 조합원 월평균 임금실태

구분	기본급	통상수당	초과급여	기타수당	상여월할	임금총합계
총평균	616,369	129,912	276,134	56,059	375,683	1,361,825
남	621,237	111,048	258,819	46,831	384,580	1,338,462
여	501,583	98,739	190,067	46,547	309,953	1,080,024

(9)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

월(月) 노동시간		
단협상 기준노동시간	초과노동시간	총노동시간
207.4 Hr	57.70 Hr	261.59 Hr

(10) 연맹 임투교육 시기는 언제쯤?

'97. 1		'97. 2		'97. 3		'97. 4	
초	하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2.0%(1)	6.0%(3)	18.0%(9)	4%(2) 16.0%(8)	32%(16)	6.0%(3) 8%(4)	4%(2)	2%(1) 2%(1)

3) '97 임투 자료집 발간

① 발간일 : 1997년 2월 15일

② 목 차

제1장 국내외 정세전망

제1절 세계경제 전망

제2절 국내경제 전망

제3절 노동경제 전망

제2장 노동동향 및 금속산업의 업종별 동향

제1절 노동자의 생활

1. 임금

2. 고용

3. 노동시간

4. 산업재해

제2절 금속산업의 업종별 동향

1. 일반기계

2. 반도체

3. 통신기기

4. 가전

5. 자동차

6. 전기로제강

7. 전자부품(PCB)

8. 컴퓨터

9. 시스템통합

10. 조선

제3장 '97 임투의 방향과 목표

제1절 총론

1. 지난 96년 노동정세를 돌이켜 보며

제2절 임투의 방향과 목표

1. 주42시간 노동으로 생활임금 확보

2. 임금제도 및 임금구조 개선
3. 노동시간 단축
4. 고용안정 쟁취
5. 안전한 노동환경 쟁취
6. 노동법 개악에 따른 임금손실분 요구
7. 노동법 개악에 대비한 단협 갱신요구

<참고자료>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및 정보권 확보

노동조합의 환경운동

명예퇴직제 현황

제4장 기업경영분석

제1절 기업경영분석

제2절 '96년도 상반기 기업경영분석

제3절 '96. 3/4분기 기업경기조사 결과

제5장 12.26 날치기 노동악법

제1절 날치기 노동악법은 국민생존을 압살하게 된다

제2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절 근로기준법

제4절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제5절 노동위원회법

제6장 노총 도시근로자 생계비

제1절 생계비 모형의 개정

제2절 생계비 산출을 위한 소비자 물가조사

제3절 생계비 산출 모형의 설계

제4절 가구원수, 비목별 도시근로자 생계비 내용

<부록>

식품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③ 임투자료집 발간사

'97임투를 노동운동의 새지평을 열어갈 전환점으로 맞아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유재섭

정의에 민감하며 불의에 용감했던 금속노동자 여러분! 지난 12·26 새벽 날치기는 모든 만물을 얼어붙게 만들고 87년 6월항쟁으로 시작한 열살의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날벼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10살의 애절한 나이로 숨을 거둔 민주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국민주권 수호를 위하여 차가운 반도의 땅, 겨울공화국을 박차고 일어서 비좁은 사업장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거리 거리로 달려나왔고 수천수만이 하나되어 악법철폐! 김영삼타도!를 부르짖었습니다.

해방이후 최초, 최대의 정치총파업을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금속 노동자 여러분! 종로에서 여의도에서 태화강변에서 전국을 뒤흔들었던 노동자 총파업투쟁! 우리 노동자는 너와 내가 없음을 확인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구별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천만 노동자 단결하여 노동악법 분쇄하자!”를 외쳤습니다. 또한, 신부님과 수녀, 스님, 변호사, 교수, 청년학생, 넥타이 부대가 거리로 나서 부르짖었던 “악법철폐! 즉각 재개정”의 고동치는 투쟁의 함성은 마침내 독재정권의 귀를 뚫게 하였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개악된 노동법을 재개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는 국제적 기준에 걸맞게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전국 총파업과정에서 국민여론에 부응하지 못한채 당리당락에 젖었던 보수정당들에게 기대만을 걸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 대통령 선거로 이어지는 악법철폐 및 사회개혁의 과제 그리고 '97임단투를 하나의 투쟁판도 속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다시한번 김영삼정권과 신한국당이 악법으로 우리 노동자와 4천만 국민을 누르려한다면 우리 노동자는 3차, 4차로 이어지는 총파업투쟁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투쟁까지 이어지는 일년의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주를 기반으로 자주를 중심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금속 조합원 동지여러분! '97임투의 승리를 위한 최대의 과제는 언제나 처럼 우리 노동자의 강력한 단결과 연대 그리고 투쟁입니다. 연맹에서는 '97임투의 양대요구투쟁으로 단협갱신 핵심사항을 노동시간 단축, 경영참가 및 정보권 공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요구하였으며 사회적 요구사항으로 악법 철폐를 제시했습니다. 반드시 전국적 요구에 따른 집중점을 연맹으로 모아내고 투쟁속에서 조직강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97임투를 맞아합시다.

언제나 불요불굴의 의지로 전진하는 쇠붙이 노동자들의 앞에는 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97임투승리와 노동악법 철폐의 길로 달려나가는 97년 2월에

4)'97 임단투 지침서 발간

① 발간일 : 1997년 2월 28일

② 목 차

제1장 연맹 임투지침 요약

1. 임투의 주요 목표
2. 임투요구 지침
3. 임투활동 지침

제2장 '97년도 투쟁방침

1. '97년도 정세전망
 - 경제여건
 - 세계경제
 - 국내경제
 - 노동경제
 - 금속산업 동향
2. 임금결정액에 관한 동향
(임금인상률에 대한 여론)
3. 임금 및 임금인상 실태
 - 임금현황
 - 요구 및 타결현황
 - 임금실태
4. '97 임투의 방향과 목표
 - 임투의 방향과 목표
 - 임금요구안 작성
 - 노동법 개악에 따른 임금손실분 요구
 - 노동법 개악에 대비한 단협갱신 요구
 - 노동악법 철폐투쟁 교섭권 위임
 - 임투활동

제3장 참고자료

1. 노동법의 민주적 개정방향
2. 조합원 월 임금실태
3. 임금요구안 작성 및 교섭전략
 - 임금요구안 작성요령

•임금교섭의 전략과 전술

4. 노동통계 자료

5. 노동가 모음

③ 임단투 지침서 발간사

'97임단투 지침서를 발간하며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유재섭

연맹에서는 지난 2월20일 '97년도 임금정책과 관련지어 중앙위원·중앙집행위원 연석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결의한 결과 임금인상 요구를 통상 92, 567원(12.4%)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올해 임투의 방향으로서 노총을 중심으로한 공동임투를 전개할 것을 결의하면서 주요내용으로 생계비에 기초한 생활임금 확보, 주42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쟁취,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노동법 개악에 따른 단체협약 갱신,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및 정보권 확보로 설정 하였다. 이번에 요구한 12.4%는 금속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수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계비논리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며 오히려 현실을 감안한 소박한 요구이다.

임금인상 투쟁 및 단체협약 체결의 과정은 어느 해를 막론하고 쉽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할 수 없는 힘겨운 싸움이다. 특히, 올해는 노동악법 철폐라는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노동법이 또다시 개악된다면 하반기 대선으로까지 이어지는 정치투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보다 조직화된 투쟁만이 노동자의 권리와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연맹을 중심으로한 전국적 요구의 집중점을 모아나가할 줄로 믿습니다. 재차 강조하거니와 올해 임투는 노동악법 철폐와 정치권력 교체에 따른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통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는 전략 중 전술에 해당됩니다.

금속 조합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1월 총파업투쟁은 고난의 상처라기 보다는 새봄을 맞이하기 위한 잉태였습니다. 그 새봄의 시작은 임투로 출발하여 노동악법 완전 철폐, 자주적 민주정부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97임투승리와 노동악법 철폐로 가는 길 97년 2월에

④ 임투지침 요약 내용

임투의 방향과 목표

- 1) 생활임금 확보!
- 2) 노충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임투!
- 3) 주 42시간 노동시간 단축!
- 4) 고용안정 쟁취!
- 5) 안전한 노동환경 쟁취!
- 6) 노동법 개악에 대비한 단협 갱신요구!
- 7)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및 정보권 확보!

연맹 임투요구지침

1) 임금

- ① 통상임금 기준 92,567원·12.4%(호봉승급분 제외)를 중심으로 요구
- ② 작업중, 규모별로 12.4%에 해당하는 조건표를 작성하였으므로 해당업종 또는 규모 임금인상률을 참조하도록 함.
- ③ 단위조합에서는 지침을 중심으로하여 자체요구안을 작성하되 기업의 임금현황이 특이한 경우 현실을 감안하여 요구안을 작성하도록함.

2) 노동법 개악에 따른 추가 임금인상요구

12·26 날치기 노동법 개악으로 인하여 임금손실이 발생하는 바, 이를 97년 임투시 추가로 요구함. 그러나, 현재 노동법 재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므로 추가 법개정이 또다시 개악으로 흐를 경우, 특히 변형근로, 무노동무임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으로 인한 임금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즉시 추가 지침을 시달하기로 함.

3) 노동법 개악에 대비한 단체협약 갱신요구

노동법 개악으로 인하여 노동조건이 저하되거나 노조활동이 크게 제약 받을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생존권을 지키고 노조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단체협약 갱신과 아울러 정부와 사용자측의 날치기 노동법 개악 철회를 정치적 요구로 제출한다. 아직 단협으로 체결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자본의 공격이 계속될 것인 바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노동시간 단축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기준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임금 삭감효과는 축소. 기준노동시간이 주44시간인 사업장은 주42시간으로, 주42시간인 사업장은 주40시간으로 단축하여 노동조건을 개선.

㉡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

정리해고 사유를 명문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하도록

해고예고기간을 90일로 하고 예고가 없을 시에는 9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3인 이상 정리해고시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특별해고수당을 지급

㉢ 파업기간중 대체근로 금지 사항

파업기간 중에는 파업중인 노동자가 행하던 업무에 대하여 비조합원 및 신규입사자의 대체근로는 물론 하도급등 일체의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규정

㉣ 변형근로 및 임금저하 방지에 관한 사항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은 주당 노동시간 40시간과 노사합의를 전제로 하고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협약을 체결

㉤ 임금협약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날치기 노동법에 의하면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최고 2년까지로 연장시킬수 있게되어 있다. 임금교섭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시켜 임금의 삭감효과를 노리려는 술책이다. 단협에 1년으로 명문화 함.

㉥ 기업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현재의 퇴직금제도(누진제 포함)를 연금으로 전환하여 사외적립(금융기관 예치)하도록 협약을 체결하며 매월 납입하는 부금은 평균임금의 12분의 1이상의 금액이 되도록 하며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근속년수에 따라 부금의 액수를 증가시켜나감

㉦ 휴업수당의 상한선에 관한 사항

날치기 노동법에 의하면 휴업수당을 통상임금의 70%로 규정하고 있는바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로 명문화하여 협약 체결함

㉟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관한 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반드시 본인과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퇴직금 중간정산에도 불구하고 퇴직시 근속연수는 입사시부터 기산하도록 단체협약에 명문화함

㊦ 연차휴가 상한선에 관한 사항

연차휴가일수가 30일을 넘을 경우에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지급

㊦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이 종업원이 과반수를 포괄하는가는 여부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의 선출권을 갖도록 함

㊦ 2차 과제의 협약 명문화

이번 날치기 노동법에는 제외되어 있으나 2차과제로 선정된 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으로 명문화하여 추후 법개정에 대비함

▲ 생리휴가

여성노동자에게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하고 임신중인 여성노동자는 월 1일의 유급정기검진휴가를 주도록 한다.

▲ 산전산후휴가

산전·산후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4개월 미만의 임신기간중에 유산한 경우는 30일, 4개월 이상의 임신기간중에 유산한 경우는 60일의 유급휴가를 확보한다.

▲ 퇴직금제도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를 단체협약으로 명문화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요구한다.

3. '97임투활동지침

1) 활동기조

㉠ 전국적 요구에 따른 집중점을 연맹 차원에서 관장하고 투쟁속에서 조직강화 및 발전을 도모함.

단체협약의 내용중 노동시간 단축, 경영참가 및 정보권 공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요구하며 노동악법 철폐를 사회적 요구로 제시하여 양대 요구투쟁을 집중점으로 삼고 연맹의 관장력과 통일적 대응을 높여나간다.

㉠ 임단투 및 노동악법 분쇄, 제도개선 투쟁을 결합함

임금요구 확정시 각단위 결의기구에서는 노동악법 분쇄를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교섭권한을 연맹으로 위임할 것을 결의한다. 나아가 하반기 대통령선거 투쟁까지 결합시켜 나간다.

㉡ 임단투 시기를 집중시켜 전국적 전선을 형성하고 탄압이 있을시 이를 돌파함.

2) 연맹 지원활동

추진내용	일정
임투 실태조사	'96.11 ~ '97.1
임금관련자료 수집	'96.11 ~ 12
임투자료 작성	'96.12 ~ '97.2
중앙위원, 중집연석회의 (연맹 임금정책 및 임금인상요구율 확정)	1997. 2. 20
임투자료집 제작 배부	1997. 2. 25
임투지침서 제작 배부	1997. 2. 28
임투지원 전국 순회교육	1997. 3. 5 ~ 12
임투자료 제공	연중수시로
임투진행 상황제공	'97. 3말 ~ 7초 (임투속보,금속통신을 통해)
지역별 임투결의대회등 지원	'97. 3 ~ 4
임투, 쟁의사업장 방문	'97. 4 ~ 7
임투평가회 개최	'97. 8말

5) '97 임투 전국순회교육 실시

① 일시 : 1997년 3월

② 장소 :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경남 이상 노총본부 대강당

③ 참석인원 : 192개 사업장의 410명

④ 강의내용

- ▷ 노동법 개정과 노동정세
- ▷ 연맹 임단투지침 해설
- ▷ 임금요구안 작성 및 전략전술

⑤ 목적

- ▷ 단위사업장의 임금교섭 준비 지원
- ▷ '97 임투의 연맹을 중심으로한 통일적인 전술구사의 계기 마련

산업안전보건활동

- 평가 및 개선방향

1. 스웨덴 지원 산업안전보건세미나
2. 산업안전보건 담당간부 교육

평가 및 개선방향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은 각종 재해가 도사리고 있는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며 자주적인 활동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활동은 일반적인 여타의 사업과 활동에 비하여 크게 성과가 강조되지 못해왔고 현장간부 및 조합원의 인식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대개의 사업주가 안전보건의 문제를 비용으로 간주하여 의무무향인 법조차 위반해왔던 것이 비일비재 하였다.

지난 1년간 산업안전국에서는 산재예방과 대책을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스웨덴지원 산업안전보건 담당간부 세미나, 노총지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두차례에 걸친 교육을 통해 산업안전담당 간부의 전문화를 위한 계기 마련과 안전보건활동의 강화를 위한 연대와 단결의 장을 마련했다는 부분적 성과를 이루어내었지만 안전보건교육이 지나치게 획일적이며 일회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교육기회의 확대, 공통된 업종별 세부교육의 필요라는 한계적 측면도 제기되었다.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조합원들에게 산업안전보건의 문제는 중차대한 최우선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전체 산재발생중 금속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그 동안 연맹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이 교육중심의 활동으로 그나마 앞서 재기했던 것같이 일회성을 면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용과 수준을 달리하는 교육편성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교재 및 장비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특히 노동조합의 참여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단위노조활동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스웨덴 금속노조 지원 산업안전보건 담당간부 세미나

(1) 일시 : 1996년 10월 8일 ~ 11일

(2) 장소 : 노충 중앙교육원

(3) 참석인원 : 48명

(4) 목적 : 단위노조의 산업안전보건 활동 강화를 위한 전문간부 양성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전문화, 내실화를 위한 계기 마련
노동조합의 연대와 단결의식 고취

(5) 일정 :

10월 8일 13:00 ~ 13:30 개회식

13:30 ~ 18:00 자기소개, 산업안전실태 및 활동보고및논평

18:00 ~ 19:00 석식

19:00 ~ 20:00 단결의 밤

10월 9일 09:00 ~ 10:30 산업안전보건법 활용 강의

10:30 ~ 12:00 산재보상법 해설

12:00 ~ 13:00 중식

13:00 ~ 15:30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15:30 ~ 16:30 사례발표

16:30 ~ 18:00 노동조합의 환경운동

18:00 ~ 19:00 석식

19:00 ~ 20:00 안전관련 비디오 관람

10월 10일 09:00 ~ 12:00 사례별 산업안전 문제의 해결에 대한토론

12:00 ~ 13:00 중식

13:00 ~ 18:00 토론 계속

18:00 ~ 19:00 석식

19:00 ~ 22:00 노조의 산업안전활동에 대한 분임토의

10월 11일 09:00 ~ 10:30 스웨덴 노조의 산업안전보건활동

10:30 ~ 11:30 분임토의

11:30 ~ 12:00 평가 및 폐회

(6) 강사

유재섭 연맹 위원장,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박은주 노동과 건강연구회 사무국장, 양장일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차장, 스티그 그레암 스웨덴 금속노조 산업안전국장, 연맹 임원 및 직원 등

(7) 각 사업장의 산업안전실태 토론회 결과

- 동부제강 : 무재해운동 1500시간 달성
- 성신 : 알미늄 용해시 고온고열(700도)에 의한 화상문제
 강판절단시 소음문제 (93데시벨)
- 한국강관 : 소음문제
- 서울제강 : 소음, 화상, 요통환자 발생
- 현대전자 : 기계실작업자 ■ 소음 (96년 4건 발생)
 운반, 포장시 ■ 요통(96년 3건 발생)
- 서울차체 : 판넬 절단시 소음
- 대농중공업 : 크레인 조작시 로프절단 사고 발생
 중량물 취급에 의한 협착, 요통사고
- 동원금속 : 분진발생 (배기장치로는 감당하지 못함), 요통문제
- 대우전자 : 밀폐공간 소음문제
- 세방전지 : 소음, 연취급으로 인한 중금속 중독
- 연합철강 : 94년 54건의 산재사고 발생이후 회사와 노조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95년 97% 경감
- 동아정기 : 중량물 취급에 의한 협착, 요통발생
 용접으로 인한 유해가스, 분진발생
 기계가공에 따른 소음문제
- LG전자 :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병원 치료비 전액 회사부담
- 대한중석 : 금속분진 흡입이 20년동안 아무런 개선조치없이 방치되고 있음

2. 노총지원 산업안전보건 일꾼교육

(1) 일시 : 1996년 11월 26일(화) ~ 29일 (목)

(2) 장소 : 산업안전공단 교육원

(3) 참석인원 : 단위노조 산업안전 담당자 68명

(4) 일정

11월 26일	11:00 ~ 11:30	접수
	11:30 ~ 12:00	개강식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4:00	노조의 산업안전보건 활동
	14:00 ~ 16:00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16:00 ~ 18:00	산재보상보험법 해설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1:00	자기소개 및 노동문화활동
11월 27일	09:00 ~ 12:00	금속산업의 유해인자별 대책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4:00	산업안전보건정책방향
	14:00 ~ 16:00	안전보건교육훈련
	16:00 ~ 18:00	안전점검 및 개선요령
	18:00 ~ 19:00	저녁식사
11월 28일	09:00 ~ 12:00	작업환경측정 개요 및 실습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5:00	직업병의 예방대책
	15:00 ~ 16:00	기계설비의 안전대책
	16:00 ~ 18:00	노총의 산업안전보건활동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1:00	분임토의
11월 29일	09:00 ~ 11:00	무재해운동과 안전활동 요령
	10:30 ~ 11:30	전체토의 (분임토의)
	11:30 ~ 12:00	수료식

(5) 평가

-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확인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함
- 산안법 및 산재보상법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세부적인 법내용에 대한 이해를 다루어야 했음
- 업종별 또는 주요인자별로 나누어 세부교육을 진행하여 노조간 연대의 틀을 마련해야 함
- 교육장을 각지역별로 나누어 진행했으면 함.
- 안전공단의 강사들의 노동교육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매년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되풀이하는 것보다는 전문과정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교육일정을 좀더 늘렸으면 함
- 토론형식의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함. 강의형태의 교육이 매일 반복되어서 교육의 효과가 떨어짐

교 육 활 동

목 차

- 평가 및 개선방안
- 1. 지역순회 교육
- 2. 단위노조 대표자 및 사무국장교육
- 3. 상집간부실무 전문교육
- 4. 노총 주관 위탁교육
- 5. 각 지역별 교육지원현황

평가 및 개선방안

○ 지난 1년간 교육국에서는 대의원 대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으로 지역순회 교육 1 회, 신임대표자 및 신임 사무국장 교육 각 1회, 상집간부 실무전문교육 1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금년 교육사업에 있어서는 노동운동의 일반이론과 함께 노동자 최대의 초점이었던 노동관계법 개정국면을 맞아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와 노동법 개악저지투쟁에 총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투쟁국면에서의 조직동원, 파업투쟁의 투쟁동력을 키우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다보니 예년에 비해 교육열기도 높았고 참여율 또한 매우 높았던 한해 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일정과 지역순회 교육일정의 중복으로 수도권 지역에 순회교육을 실시하지 못한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노총 위탁교육인 정기간부 교육에도 총 750 명 배정에 531 명이 참석하여 71%의 높은 참석율을 기록하였으며 전체참석자(20개산별) 대비 31%로 본노련 교육생의 참가 비중이 매우높았다고 평가합니다.

○ 지난 한해 각 지역본부 및 단위노조 교육에 출강 지원한 횟수는 총 139회로 나타났으며 특히 97. 3월 35회는 개정노동법에 대한 출강요청이 많았음을 나타냅니다.

○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매년 되풀이 되는 문제점입니다만 교육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교육국 혼자만의 힘과 노력으로 개선될 사안이 아니며 이제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지역순회 실시 계획서

1) 목적

경제의 하강국면에 따른 경제 위기론을 기치로 한 임금총액 동결, 감원 등 자본의 공세가 격화되고 있고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추진 등 노동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전조직의 민주적인 의사결집과 이를 통한 강력한 조직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지역순회 교육 및 토론을 통한 단결력과 투쟁 역량을 고취하기 위하여 본교육을 실시함.

2) 방침

- 비합숙 일일 교육으로 실시
- 교육대상 인원은 1 회에 100명으로 한다.
- 교육대상자는 단위조합의 대표자급으로 한다.
- 교재 및 문구는 본노련이 부담한다.

3) 교육일정 및 장소

교육 일정	지 역	장 소	참가인원	주관지역본부
96.11.15.(월)	경남, 양산, 진주	노총경남강당 (창원)	100 명	경남지역본부
10.22.(화)	부산, 울산	노총부산본부강당	100 명	부산지역본부
10.24.(목)	대구.경북, 구미, 포항	금속대구본부 강당	100 명	경북.대구본부
10.25.(금)	대전, 충남, 충북	노총대전본부 강당	100 명	대전지역본부
11.29.(금)	서울, 인천	금속노련 강당	100 명	본 노 련
11.28.(금)	광주, 전남, 전북	노총광주지부 강당	100 명	광주.전남본부
11.26.(화)	경기, 안양, 안산	노총안양본부 강당	100 명	경기지역본부

4) 주요 교육과목 및 프로그램

시 간	배 정	교 육 내 용
10:00 - 10:40	30	등록,개강식 및 지역본부인사
10:40 - 11:50	70	노동정세와 우리의 대응
11:50 - 12:00	10	휴 식
12:00 - 13:00	60	노동법 개정문제 설명
13:00 - 15:00	120	중식 및 토론

5) 강사 및 토론자

유재섭 위원장 및 이진우 조직국장, 김홍룡 교육국장

6) 기 타

- 교육참가 통보는 각 지역본부에서 교육일정을 고려 직접통보 바라며
단위노조 대표자가 필히 참석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 지역본부는 교육일정에 맞춰 식당예약, 교육강당 예약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1-1 지역순회교육 실시 결과

1) 교육 일정 및 장소, 참가자

교육 일정	지 역	장 소	참가인원
96. 10. 22	부산, 울산	노총부산본부강당	위원장 37 명
96. 10. 24	대구.경북, 구미, 포항	금속대구본부 강당	위원장 45 명
96. 10. 25.	대전, 충남, 충북	노총대전본부 강당	위원장 17 명
96. 11. 15.	경남 전지역	노총경남본부 강당	위원장 41 명
96. 11. 26.	경기.안양.안산	※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관계로 실시보류 “ “	
96. 11. 28.	광주.전남.전북		
96. 11. 29.	서울. 인천		

2) 교육실시에 대한 평가

참석대상자를 대표자급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참석인원은 많지 않았지만 진지한 토론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조직결속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며 아울러 노동법 개정 진행상황을 널리 홍보하여 위기 의식을 고취시키므로써 차후에 진행된 투쟁국면에서 조직동원 및 투쟁동력을 배가 하였다고 평가함. 그러나 지역일정 관계로 수도권지역(서울, 경기.인천) 교육일정이 투쟁국면과 맞물려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던것은 아쉬움으로 평가함.

2. 단위노조 대표자 및 사무국장 교육 실시계획

□□□□ 본과정의 목적 □□□□

명예퇴직제, 정리해고등 고용불안이 그 어느때보다 심각한 현실과 노사관계 개혁 태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에서 단위노조의 핵심인 대표자와 사무국장의 역량과 책임이 요구되는 바 이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조직력 강화, 조합운영능력 함양, 단체교섭 능력배양을 기하고 지도자로서의 자세 확립은 물론 노동조합간의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를 통해 노동운동 진영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교육을 실시함.

□□□□ 본과정의 방침 □□□□

- 1) 본과정은 2 박 3 일간 합숙교육으로 실시한다.
- 2) 교육기간 동안 숙식, 교재, 문구는 본노련에서 부담한다.
(단, 참가비 20,000 원)
- 3) 교육인원은 80명으로 한다.
- 4) 대상자 : 1) 96년도 신입,신규임원(지부장 포함)
2) 96 년도 신입 사무국장(사무장 포함)

5) 교육일시 및 장소

교 육 명	일 시	장 소	대 상
신임대표자 교육	96. 11. 5 - 7	유성 경하호텔	96 신입,신규대표자
신임사무국장 교육	96. 11. 12 - 14		96 신입 사무국장

□□□□ 참 가 안 내 □□□□

1) 각 지역본부 배정(대표자 교육 및 사무국장 교육 각각임)

지 역	배정인원	지 역	배정인원
서울	5	부산	10
경기	20	경남	10
인천	10	대구.경북	5
충남	10	포항	5
충북	5	울산	5
전.남북	5	구미	5
		대전	5

2) 참가자는 금속노련 각 지역본부로 교육참가 신청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본노련 교육부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명단제출

① 각 지역본부는 수강생 배정표에 의거 아래 양식으로 96. 10. 30까지 본노련 교육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양 식

조 합 명	직 위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비 고

4) 주요교육내용

- ① 금속노련 운동방침
- ② 정세변화와 노동운동과제
- ③ 경제위기론과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
- ④ 노사관계 개혁 현황
- ⑤ 단체교섭론 및 노사관계론
- ⑥ 지도자의 자세
- ⑦ 사례발표
- ⑧ 노동조합 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
- ⑨ 노동조합론 연구 및 노동문화
- ⑩ 연맹과의 대화

□□□□ 참 고 사 항 □□□□

- 1) 교육참가자는 교육당일 13:00까지 교육장에 도착할 것
- 2) 교육기간중 수강에 편리한 복장과 세면도구 지참할 것
- 3) 정보교류를 위한 임금교섭자료와 단체협약서를 준비할 것

2-1. 단위노조 대표자 및 사무국장 교육 실시결과

1) 교육일정 및 장소, 참가자

교 육 명	일 시	장 소	참 가 자
신임대표자 교육	96. 11. 5 - 7	유성경하호텔	신임대표자 62명참석
신임사무국장 교육	96. 11. 12 - 14	“	신임사무국장 76명 “

2). 교육실시에 대한 평가

① 신임 대표자 교육

예년에 비해 신임대표자들의 참석율이 대단히 높았으며 교육열의 또한 진지했다고 평가하며 특히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상황설명을 통해 추후 진행된 투쟁국면에서 신임 대표자들의 역량을 크게 증가시켰다고 평가되며 평가서에 의하면 교육생들이 대단히 유익한 교육이었으며 단위노조를 이끌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술하였으며 연맹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와 발전에 동참할 것임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교육사업을 요구함.

② 신임사무국장 교육

일주일 간격으로 비슷한 내용과 과목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였음.

사무국장 교육 역시 예년에 비해 참석율이 대단히 높았으며 교육열의 또한 진지하였고 본노련의 조직결속과 강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함. 특히 사무국장 교육에서는 단위노조의 실무운영능력 향상에 역점을 두고 교육한 결과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으며 지속적인 연대와 교류에 대한 결의가 있었음.

3.상집간부 실무 전문교육계획서

1) 목적

본교육을 통하여 노동자 의식함양과 단위조합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집간부들의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노동조합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노동조합간의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목표

- ① 노동조합 일반이론에 대한 이해
- ② 조직관리 능력 배양
- ③ 교육활성화 및 수행능력 배양
- ④ 조사통계 업무능력 배양
- ⑤ 여성간부의 권리의식 함양 및 노동운동에 참여할수 있는 동기부여
- ⑥ 간부로서의 자세확립
- ⑦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
- ⑧ 홍보선전능력 배양
- ⑨ 노사대책업무의 효율화

3) 방침

- ① 본 교육은 2박 3일간 합숙교육으로 실시한다.
- ② 교육기간동안 숙박비, 교재, 문구는 본노련이 부담한다.
(단, 참가비 20,000원)

4) 대상 및 인원

단위조합의 조직, 교육, 조사통계, 홍보, 여성, 노사대책담당자 각 20명씩
총 120명

5) 교육일시 및 장소

- ① 일 시 : 1996 년 12월 10 일 - 12 일(2박 3 일)
- ② 장 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약도 별첨)

6) 수강신청

- ① 접수처 및 신청방법:본노련 각 지역본부에 아래양식에 의거 선착순접수
- ② 양 식

조 합 명	직 위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비 고

7) 참고사항

- ① 수강생은 교육당일 오후 13:30 까지 교육장에 도착할 것.
- ② 교육기간중 수강에 편리한 복장과 세면도구 지참할 것.
- ③ 조사통계 담당자는 소형계산기를 지참할 것.

상집간부 실무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 1 일(12. 10)

시 간	배정	내 용	비 고
13:30-14:00	30	등 록	유재섭 위원장
14:30-14:30	30	개강식(사진촬영)	
14:30-16:00	90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공통과목)	
16:00-16:10	10	휴 식	각 반별로
16:10-18:00	110	3분 스피치(자기소개)	
18:00-19:00	60	석 식	
19:00-21:00	120	노동문화 (공통과목)	문광주 국장

제 2 일(12. 11)

시 간	배정	내 용	비 고
07:00-08:00	30	기상,운동 및 세면	조직,조사,여성,교육,홍보,노사대책국
08:00-09:00	60	조 식	
09:00-12:00	150	각 반별프로그램 진행(전문과목)	
12:00-13:10	60	중 식	조직,조사,여성,교육,홍보,노사대책국
13:00-18:00	200	각 반별프로그램 진행(전문과목)	
18:00-19:00	60	석 식	
19:00-20:00	50	각 반별프로그램 진행(전문과목)	조직,조사,여성,교육,홍보,노사대책국
20:00-21:00	60	다과회	

제 3 일(12. 12)

시 간	배정	내 용	비 고
07:00-07:30	30	기상,운동 및 세면	김홍룡 교육국장
07:30-08:30	60	조 식	
08:30-10:30	90	노동법 개정문제 설명(공통과목)	
10:30-10:40	10	휴 식	노총 정영숙 여성국장
10:40-12:10	110	노조간부의 자세(공통과목)	
12:10-12:20	10	휴 식	
12:20-12:40	20	종합평가서 작성	
12:40-13:00	20	종강식	
13:00-		식사후 출발	

3-1. 상집간부 실무전문교육 실시 결과

1) 교육일정 및 장소, 참가자

교육 일정	장 소	참 가 자
96. 12. 10 - 12.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교육담당 20 명 조사.노사담당 30명, 총 101명 여성담당 20 명 조직담당 21 명 홍보담당 10 명

2) 교육실시에 대한 평가

본교육은 단위조합에서 핵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집간부들의 실무능력을 전문적으로 배양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으며 단위조합의 조직, 교육, 조사통계, 홍보, 여성, 노사대책담당 상집간부들을 부서별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본노련의 담당 실국장에 의해 집중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공통과목은 전체가 모여서 실시하고 전문부서 과목은 부서단위로 실시되었음.

노총중앙교육원 시설에서만 실시가 가능한 교육이며 단위조합 상집간부들에게도 호응도가 대단히 좋았으며 맡고 있는 업무와 역할등에 교육이 집중되어 상집간부로서의 긍지를 느낀다는 평가가 있었고 특히 노동법 개정 투쟁국면에서 진행된 교육이라 열기가 대단했고 교육종료후 단식중인 노총위원장을 교육생들이 단체방문하여 위로한바 있으며 교육종료시 투쟁기금을 즉석에서 모금하여 노총 위원장에게 전달하였음.

4. 노총주관 위탁교육

- ① 교 육 명 : 정기노조 간부교육
- ② 일 시 : 1996. 5. 7. - 96. 11. 15.
- ③ 장 소 : 노총중앙교육원
- ④ 교육기간 : 3 박 4 일

기수	배정인원	참석자		비 고
		금속	전체	
290	50	7	63	96. 5. 7 - 5.10
291	50	22	67	96. 5. 14 - 5.17
292	50	42	117	96. 5. 28 - 5.31
293	50	37	136	96. 6. 11 - 6.14
294	50	41	134	96. 6. 18 - 6.21
295	50	36	155	96. 6. 25 - 6.28
296	50	59	155	96. 7. 9 - 7.21
297	50	37	149	96. 8. 27 - 8.30
298	50	50	145	96. 9. 10 - 9.13
299	50	43	95	96. 9. 17 - 9.20
300	50	45	115	96.10. 8 -10.11
301	50	26	111	96.10. 15 -10.18
302	50	28	102	96.10. 22 -10.25
303	50	33	98	96.11. 5 -11. 8
304	50	25	74	96.11. 12 -11.15
계	750	531	1,716	

※ 배정인원 대비 본노련 참석율은 71%임.

※전체 참석자 대비 본노련 참석율은 31%로 전체 참석자의 1/3를 차지함.

5. 각 지역별 교육지원(출강) 현황

월별 지역	96. 4	5	6	7	8	9	10	11	12	97. 1	2	3	계
서울	3	6		1		1	4	1			3	11	30
경기	3		2		2			4	1		1	9	22
인천		2		4			4		4				14
충남	1		1	2		1							5
충북					2		1	4	2		4	1	14
경남	1		2					1			1		5
부산	2					3			2				7
울산		1									3	3	7
대구.경북	4				1		3	3				4	15
구미	1										2		3
광주.전남		1									1	2	4
포항	1											1	2
전북			7									4	11
계	16	10	12	7	5	5	12	13	9		15	35	139

※ 출강횟수를 산출하였음.

홍 보 활 동

목 차

○ 평 가 및 개 선 방 안

1. 금 속 노 보 발 행

2. 기 타 선 전 활 동

평가 및 개선방안

지난해 주요 홍보물의 종류는 네가지였다. 금속노보, 금속노련속보, 금속통신, 특보 등이다. 금속노보는 월간으로 발간되어 단사에 우편으로 배포되었으며 금속노련속보는 작년 하반기부터 비정기적으로 만들어서 이지팩스로 단사에 전달되었다. 금속통신은 매달 2번씩 당시의 주요노동관련 기사를 스크랩하여 단사에 우편으로 우송되었다. 특보는 노동계 주요사안이 있을 때 대자보형식으로 내보내며 우편으로 우송되었다.

금속노보는 홍보물의 가장 중요한 수단임에도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적, 재정상의 문제로 신문지면을 유익하고 다양하게 채우지 못하는 문제도 있으며 한달에 한번씩 발행됨으로써 신속하게 소식을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또한 재정 문제로 단사에 5부씩밖에 배포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원들이 금속노보를 접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인적, 재정상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기존의 인적자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깊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금속노보가 큰사업장이나 작은 사업장에 관계없이 5부씩 배부되고 있는데 기본은 5부로 하더라도 큰사업장의 경우 원칙을 정해 조금더 많은 부수를 보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금속노련속보는 현재 노련의 소식이나 노총의 방침, 노동계의 현안 등을 주로 다룬다. 작년 11월에 처음 시도된 금속노련속보는 전화국을 통한 팩스서비스방식으로 단사에 전해진다. 따라서 보내는 즉시 단사에서 받을 수 있다(신속성)는 이점이 있다. 이에 작년 총파업투쟁과정에서 노총투쟁속보, 노련소식을 단사에 지체없이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전화국에서 일괄적으로 동시에 전송하기 때문에 우리 단위노조 중 자동팩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노조에 자동팩스가 있어 노련에 등록되어 있는 노조수는 소속조합중 3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위해서는 향후 단사의 팩스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금속통신은 작년말부터 제대로 제작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91년 5월 노동관련 매체가 덜 발달되었을 때 상당히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관련 정보매체도 많고 또한 쉽게 접할 수 있어 그 유효성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따라서 만약 본노련이 앞으로 금속노련통신 제작을 중단하게 된다면 그 기능은 적절한 방법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한가지 방법으로 금속통신이 그동안 수행해 왔던 주된 기능 중 하나인 자료제공은 필요한 때 빨리 간단한 자료집으로 제작해 내보내고 그외의 주요내용은 금속노련속보를 내실있게 운영해 당시 쟁점들에 대해 신속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특보는 노동계의 쟁점사항에 대해 노련 및 노동계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 대자보형식으로 지난 1년간 6회정도 내보냈다. 경제위기론과 노동법 개정 관련문제가 특보의 주된 내용이었다.

특보는 조합원들이 자주 지나다니고 눈에 띄는 게시판에 붙여놓음으로 조합원들 다수에게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당시 쟁점사항에 대해 노련 및 노동계주장을 특보에 실음으로써 노동자의식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특보방식의 홍보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것도 신문과 마찬가지로 사업장규모에 관계없이 똑같은 부수를 배포해왔으나 앞으로 원칙을 정해 대규모사업장에는 좀더 많은 수량을 보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위의 4가지 공식적인 매체 이외에 일상적인 홍보방식은 노동관련 매체에 팩스로 매주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다. 소속 단위노조행사나 노련소식을 일주일전에 미리 정리하여 노동관련 매체에 보내 본노련의 동정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동안 관련매체의 협조로 비교적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노련자체의 활동도 좀더 강화하고 노련에서 단위노조와 긴밀한 관계속에서 현장소식을 좀더 적극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홍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노련은 위와 같이 여러가지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해왔지만 이것이 조합원중심의 홍보활동이었는가 하는 데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신문한장, 유인물 한장이라도 과연 조합원들 입장에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조합원중심의 홍보활동을 위해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국내적으로는 노동운동이 복수노조시대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향후 노동운동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노동운동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단지 의식차원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홍보활동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지금은 기존 홍보매체를 더욱 내실화하면서 더욱 현장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홍보활동이 뭔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절실한 시점이다.

1.금속노보발행

- 판형 : 대판
- 발행부수 : 4천부
- 발행실적 : 1996년 5월 30일 제142호
6월 30일 제143호
7월 31일 제144호
9월 5일 제145호
10월 25일 제146호
1997년 2월 15일 제147호
4월 5일 제148호

2.기타선전활동

- 각종 보도자료 및 특보제작
- 노동관련 전문지 및 가맹노조 노보 편집분류
- 금속노련속보 제작

'98년 부활절
조직가와 및 단체들
금속노보에
원금 및 근로조기 개선
신원제에 주위
정적 활동 가의

금속노동자
중단결로 노동조합
분해하자!!

금속노보

<주요 기사>
유재섭 동지 위원장 당선 1면
민주금속 만나 적극 대화제의 2면
참여 협력 민주적 노사관계의 전망과 과제 3면
산업안전 선진화기단의 과제 4면

발행인/박인성 편집인/정창영 발행처/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150-02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전화 864-2901~2

FAX 864-0457

(비밀물)

"현장을 발로 뛰고 아픔같이 나누겠다"

유재섭 동지 위원장 당선...87.6% 지지속에 영예



본노련위원장에 LG전자 유재섭 노조위원장이 당선됐다. 이것은 본노련이 지난 5월15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8층강당에서 개최한 '96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선거는 찬여당이 1.12%, 무효 3표로 87.6%의 높은 지지속에 연맹위원장에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LG

전자 유재섭위원장 단독입후보로 치러진 이날 보궐선거에는 참석인원 375명(재직인원 118명)으로 이 중 투표에는 357명이 참가하여 이루어졌다. 그결과 유재섭위원장이 찬성 313표, 반대 25표, 기권 12표, 무효 3표로 87.6%의 높은 지지속에 연맹위원장에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LG



발행처인 IMF 사무총장, 세이코 고시마 IMF동아시아 사무소장, 유우오 아시아 IMF-JC 사무소장, 하이라이 후 IMF-ROCC 위원장, 김봉수 국회의원, 조성은 국회의원, 안병필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각국의 내외한 동 세이코에 참석 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날 대회를 통해 박인

상위원장은 우선 "오늘은 고별의 자리가 될 동시에 새로운 만남의 자리가 되기도 한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한국 노동운동 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절제하고 우리 모두가 이기주의와 자제를 버리고 대동단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심

명부가 힘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하며 오는 대회를 기점으로 전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금속노련 체제가 갖추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금년도 임무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맹위원장에 당선된 유재섭위원장은 "신뢰적인 지지를 해준 대회원들에게 감사한다"며 "현장을 발로 뛰고 아픔을 같이 나누는 금속노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의 개혁과 노동계 통합을 위해 애쓰는 박인상 노총위원장의 성격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 일년간 한국노련의 위상정립은 물론 노동계 통합을 위해 일심일치의 자세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후 이날 새로 당선된 유재섭위원장의 주재하에 중앙위원 23명에 대한 보선과 내년도 노총과연대회의 125명에 대한 선출이 있었다. 또한 금년도 사업계획수립과 예산 수립에 관한 토의가 이어졌다.

예산수립과 관련하여는 현재 400원인 임비를 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노총맹비인상금 50원을 우선 감당하고 교육활동화

나,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교육활동 강화에 힘쓰는 자세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후 이날 새로 당선된 유재섭위원장의 주재하에 중앙위원 23명에 대한 보선과 내년도 노총과연대회의 125명에 대한 선출이 있었다. 또한 금년도 사업계획수립과 예산 수립에 관한 토의가 이어졌다.

힘있는 금속 통합주도의 금속을 위해 헌신할 터

전국 각지의 노동현장에서는 수고와 애로인 동지 여러분!

먼저 여러 분께 저를 금속노련의 심부름꾼으로 전폭적으로 주신 것에 대해 정말로 감사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기 많은 기간을 앞으로 1년이라는 길잡이 나만 이이 공약한 대로 집중받는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재능자립한 특수, 무당노동회에 대한 강대, 지역본부 강화, 금속노동자 통합기관 구축, 중소기업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약속드린 바 있으며 이를 실천을 위해 헌신을 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 방안은 임부가 7월초에 개최될 정책세미나에서 마련될 것임이 단언한 바 있습니다. 수직적일 일제 방안을 일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금속, 자동차총연, 한총연동맹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소극적, 방어적이지 아니라 적극적, 선도적 방법으로 활동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조를 부활

하는 약력 기업주에 대해서도 성실한 선택에 강하게 통질할 것이며 노조에 대해

갈채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선택이 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본 노련 차원에서 분과 동과 상의를 거쳐서 구체적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을 전개로 나가게 하겠습니다. 아직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유재섭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유재섭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민주금속과의 관계개선 재정자립도 논의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5월 29일 오후 3시 본노련 회의실에서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가 있었다. 신임 유재섭위원장이 본노련 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처음으로 이번 회의에서 유위원장은 위원장 선거를 비롯한 사업수행에 대해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새가치 사활 속 향후 민주금속연맹과의 관계개선과 본노련의 주도적인 역할, 조직제정비문제, 연맹의 재정자립도를 위한 수직사업 전개 등에 관해 간단한 언급했다.

특히 유위원장은 국제금속노련 마르셀로 말판타기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마련된 지난 5월 16일 본노련, 민주금속, 자동차총연, 한총연 대표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금속산업 노동자의 통합을 위해 서로가 적극 노력하고 상호간 신뢰회복을 위해 마음열고 대화하고자 제안했으며 각 참석자들도 이에 적극 호응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또한 빠른 시일내에 이들 사활을 정책토론회에 부쳐

하심판회까지 토론, 연맹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제안했다. 이에 이날 회의참석자들은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토론의 장을 마련, 함께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어서 유위원장 취임 이후의 신규조직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즉 상용공업업 산기사업부 노조포스크로 금속노조인내성정공노조부 산부업산업노조 등의 노조실정 파악과 노사분쟁에 대한

한편 이날 자리를 함께 한

노총의 박인상위원장은 "그간의 성원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총의 개혁과



<5월29일 본노련 주회로 열린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노총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근로자가 행복한 나라- 근로복지공단이 만들어갑니다

1,200만 근로자 여러분의 마음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1,200만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근로복지공단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공은 근로복지 증진사업에 비로소 전체보험의 보강과 징수업무는 물론 전체 근로자의 요양, 휴양, 의료보장 및 기업재정사업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흘리는 땀이 소중한 의미로 그 근로보다 장antly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찾아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여러분 곁에는 언제나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 | | | |
|---------|-----------|---------|
| 신 재 보 험 | 근로자문화예술제 | 근로자책임장 |
| 복 지 복 권 | 근로복지어린이집 | 근로복지야외트 |
| 근로복지장학금 | 근로복지지식충 | |
| 젊은우리들 | 근로복지스포츠센터 |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4101B

불안성 문제가 각사업장
장차 핵심으로 서서히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하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저자 박기락의 저서 **없고 어떻게 지**
지가 아니라 **있**을 수 있었던 건가?
 사반을 돌리니 **없고**도 산만큼 지형
 붙어는 소름도 빠질만큼 뜨거운
 이따기다 그 거울에는 열광할만큼 작
 이 메달이 그 거울도 비도 내리다다
 아아못듯한 것은 온유로
 이온은 대동과 이민족의 침략을 막
 이다. 생로한기 위해서는 변경을
 구위해는 박기락의 지능이 없고
 할까 하단 말인가

작은 연을 가는데서 의미를
여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은 더욱 중요한데 생각한다.

이제 도사관도 개혁 위원회가 술
형하고 사학에 따라 조직에 따라 때
형한식의 의거가 무성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식이나 유럽식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철 우리
의에 붙는 우리나라식 도사관 제의
요를 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와 같은 국민을 먼저 뵈었다면
미국 나라들의 시정개혁을 가한
단순히 도사관과 봉급개혁을 제대한 공예
가는데 시정개혁이 마땅하다.

다른 나라의 도사관 제는 참고를
만 우리 정부는 우리가 찾아내야 하
것이다.

20

— 6월 말 현재 —

**정부와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단결권을 완전 보장하고
삼성은 전근대적 무노조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이 기회에 삼성에 대해 무조건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1세기
의 문턱에 다가가고 있는 지금에도 전근대적 무노조정체기 속성된다면 삼성의 국제적
출세도 무의할 것이며 기업의 명譽를 훼손함으로써 국민도 제후할 것이다. 만약 무
조건 정책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삼성에 자르는 모든 것만을 쫓기 위해 각계와 연대하여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우리는 노사관계개선위원회와 정부에 대해 기업사관에
서 유명노조보다 이 이상 비호성 수 없도록 단건임을 완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1996년 6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44노동시간 파괴, 노시간 뜨거운 논쟁"

대우전자, 우진공업, 고신연관리, 대철, 풍정산업 등

40시간 12시간제 등 노조가 주장하는 44시간제에 대해 대우전자, 우진공업, 고신연관리, 대철, 풍정산업 등 5개 기업이 노조와 합의했다. 이들 기업은 노조가 주장하는 44시간제에 합의했다. 대우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44시간제에 합의했다. 우진공업은 노조가 주장하는 44시간제에 합의했다. 고신연관리는 노조가 주장하는 44시간제에 합의했다. 대철은 노조가 주장하는 44시간제에 합의했다. 풍정산업은 노조가 주장하는 44시간제에 합의했다.

한국샤프 노조임투

위원장 등 간부 단식농성

7월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한국샤프노조는 7월 8일, 임의투표에 관한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7월 8일, 임의투표에 관한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7월 8일, 임의투표에 관한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7월 8일, 임의투표에 관한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7월 8일, 임의투표에 관한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비록 찬반투표는 실시되었지만,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와 대표로 회의를 참가한 노조위원장과 노조위원들

IMF, 중앙위원회 참석

대우전자, 우진공업, 고신연관리, 대철, 풍정산업 등 5개 기업이 노조와 합의했다. 이들 기업은 노조가 주장하는 44시간제에 합의했다. 대우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44시간제에 합의했다. 우진공업은 노조가 주장하는 44시간제에 합의했다. 고신연관리는 노조가 주장하는 44시간제에 합의했다. 대철은 노조가 주장하는 44시간제에 합의했다. 풍정산업은 노조가 주장하는 44시간제에 합의했다.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와 대표로 회의를 참가한 노조위원장과 노조위원들

IMF, 중앙위원회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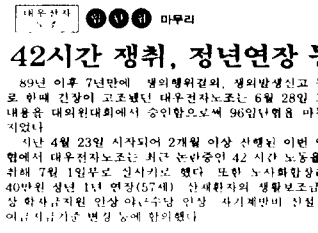
대우전자, 우진공업, 고신연관리, 대철, 풍정산업 등 5개 기업이 노조와 합의했다. 이들 기업은 노조가 주장하는 44시간제에 합의했다. 대우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44시간제에 합의했다. 우진공업은 노조가 주장하는 44시간제에 합의했다. 고신연관리는 노조가 주장하는 44시간제에 합의했다. 대철은 노조가 주장하는 44시간제에 합의했다. 풍정산업은 노조가 주장하는 44시간제에 합의했다.



노조와 대표로 회의를 참가한 노조위원장과 노조위원들

IMF, 중앙위원회 참석

대우전자, 우진공업, 고신연관리, 대철, 풍정산업 등 5개 기업이 노조와 합의했다. 이들 기업은 노조가 주장하는 44시간제에 합의했다. 대우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44시간제에 합의했다. 우진공업은 노조가 주장하는 44시간제에 합의했다. 고신연관리는 노조가 주장하는 44시간제에 합의했다. 대철은 노조가 주장하는 44시간제에 합의했다. 풍정산업은 노조가 주장하는 44시간제에 합의했다.



노조와 대표로 회의를 참가한 노조위원장과 노조위원들

IMF, 중앙위원회 참석

대우전자, 우진공업, 고신연관리, 대철, 풍정산업 등 5개 기업이 노조와 합의했다. 이들 기업은 노조가 주장하는 44시간제에 합의했다. 대우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44시간제에 합의했다. 우진공업은 노조가 주장하는 44시간제에 합의했다. 고신연관리는 노조가 주장하는 44시간제에 합의했다. 대철은 노조가 주장하는 44시간제에 합의했다. 풍정산업은 노조가 주장하는 44시간제에 합의했다.

"유령노조는 안된다"

- 삼성중공업 노조...6년법정투쟁 -

1 노동조합법 위반 관련
삼성중공업 노조는 1994년 6월 28일,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노조는 1994년 6월 28일,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노조는 1994년 6월 28일,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노조는 1994년 6월 28일,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노조는 1994년 6월 28일,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포스코출소노조

노조로서 첫걸음...걸코 흔들림 없이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형사고발, 손해배상청구, 해고, 정직, 감봉에 이르기까지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42시간 쟁취, 정년연장 등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장외지도위원 구성

파업현장에 투입, 투쟁효율성 고조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장외지도위원 구성

파업현장에 투입, 투쟁효율성 고조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44시간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96년 종로사업
조직(19) 및 단체(19)
비밀(19) 및 단체(19)
비밀(19) 및 단체(19)
비밀(19) 및 단체(19)

금속노동자
종단결로 노동조합
분쇄하자!!

금속노보

〈주요 기사〉
노동법 개정과 지지 투쟁계획 발표 1면
본노련, 금속통합위해 노력 2면
노개위에 대한 노동의 대응을 강력히 지지한다! 3면
96임투, 아직 끝나지 않았다 4면

노개위탈퇴...민노총과 공투 고려

노총 '노동법개악저지 투쟁계획' 발표



▲근로자파견제, 변형근로제 도입 반대한다!



한국의노총(위원장 박인상)이 노사관계개선위원회(이하 노개위) 탈퇴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이같은 결정은 정부의 노사관계개선 발표이후 노동조합의 노개위 탈퇴 및 분할과 관련, 지난 7월 19일 오후 2시 노총대회와 관련해 개

발한 줄기에서 근로노조가 현재까지 저지된 것만 아니라 임시적의 승가로 노동조합 설립자책가 위협받는다. 노동조합의 정체를 중대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노총은 노동법 개악을 강력히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추진위원회는 노동법개악저지 중앙대책본부로 하고 산하 시노조지부 및 지부에 노총본부부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노동법의 민주적 개정 및 사회개혁을 위한 투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노동조합 5년제정계획을 발표한다.

반대...금속통합위해 노력

본노련 96년 정책세미나서 결의



▲본노련 주최로 열린 96년 정책세미나

본노련은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근로자파견제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금속노동자의 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7월 9일부터 10일까지(1996년 7월 9일) 본노련 본부에서 열린 '96년 정책세미나'에서 결의한 사항이다. 이번 노총회는 내지않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본노련은 또한 96년 임투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이번 노총회는 내지않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본노련은 또한 96년 임투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이날 본노련 부위원장인 1국 1단원 1노조는 노동운동의 대원칙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통합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위해서 금속노동자의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서로 마음을 열고 노동운동을 하자는 데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위해 유선 임금 등 국제사업 공동추진 임금 공동정책추진 추진 상설노동자 협회에 대한 공동 대응 등 함께 사업을 해나가면서 통합분회 설립을 만들어 나가자고 역설했다. 이어서 본노련 김준호 노사대책국장 이 96년투쟁과보고를 하며 최근 파업준비중이거나 파업중인 노조들의 현황을 보고하자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이어서 마지못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추진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본노련의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대회 이후에 유선 임금추진위원회가 설립된 후 처음으로 열린 정책세미나이다. 또한 노사관계개선에 노동조합의 힘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였다.

LG전자-세제에서 가장 친절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친절함이 세계 초우량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노동자와 경영자가 한마음이 되어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기업문화로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겠습니다.

- 친절을 위한 고객감동 서비스
친절을 위한 고객감동 서비스
친절을 위한 고객감동 서비스
친절을 위한 고객감동 서비스



대동금속
96임단투

쟁취하자 42시간!

투쟁수위 조절하며 임단투



6월 25일 78.57%로 생의행위를 결의했다

대동금속측은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노동쟁취를 시도했다. 7월말 현재 노동쟁취 임단투를 42시간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해모위원장 등 노조측이 현대 대우 등에 남용하는 자동화부분 생산공정간접직을 인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회사측은 오히려 이 점을 악용한데다, 대우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하고 최대쟁취를 42시간으로 결정된 대우가 현대 대우를 고이로 밀치고 있다.

한편 대동금속노조는 대동금속(주)이 대동공업 대동기여와 같은 그룹의 계열회사에서 이금노조와 연대하여 투쟁을 할 것을 결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7월말 현재 대동공업(주)의 경우는 적정배과상대에 있다.



'대한중석노조 긴장 고조되다'

7월29일 긴장협회의 부결로 8월13일 미집회한투표가 예정되었다

단식농성, 쟁의행위 93.3%찬성

롯데일미농
노조임투

노사 임금 전격타결

쟁의행위권리와 신고 위반 등 다발로 쟁의행위 93.3% 찬성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쟁의행위 농성으로 출발했던 롯데일미농노사와 임금교섭이 지난 7월 20일 거의 2개월만에 전격적으로 타결됐다.



유재집위원장은 롯데일미노조를 격려 방문하였다

이와 관련 김해모위원장 등 노조측이 현대 대우 등에 남용하는 자동화부분 생산공정간접직을 인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회사측은 오히려 이 점을 악용한데다, 대우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하고 최대쟁취를 42시간으로 결정된 대우가 현대 대우를 고이로 밀치고 있다.

한편 롯데일미농노사와 임금교섭이 지난 7월 20일 거의 2개월만에 전격적으로 타결됐다.

이와 관련 김해모위원장 등 노조측이 현대 대우 등에 남용하는 자동화부분 생산공정간접직을 인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회사측은 오히려 이 점을 악용한데다, 대우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하고 최대쟁취를 42시간으로 결정된 대우가 현대 대우를 고이로 밀치고 있다.

'96 임투를 마치고

전 기 (롯데일미농 노조위원장)

이와 관련 김해모위원장 등 노조측이 현대 대우 등에 남용하는 자동화부분 생산공정간접직을 인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회사측은 오히려 이 점을 악용한데다, 대우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하고 최대쟁취를 42시간으로 결정된 대우가 현대 대우를 고이로 밀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해모위원장 등 노조측이 현대 대우 등에 남용하는 자동화부분 생산공정간접직을 인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회사측은 오히려 이 점을 악용한데다, 대우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하고 최대쟁취를 42시간으로 결정된 대우가 현대 대우를 고이로 밀치고 있다.

유재집위원장

임투사업장 격려, 지역순회

이날지역에서 임투사업장을 방문하고 지역노조간담회와 지역노조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지역에서 임투사업장을 방문하고 지역노조간담회와 지역노조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일미농 노동조합에서 간부들과 임투현황을 논의

대동브레이크노조임투
노조무력화시도 단결로 막아내다

--- 첫단추 제대로 거다 ---



이런 임투사업장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조의 부흥과 함께 시작된 대동브레이크노조는 12월 12일 쟁의행위 결의에 93.3% 찬성으로 결정되었다. 이 결의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5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해모위원장 등 노조측이 현대 대우 등에 남용하는 자동화부분 생산공정간접직을 인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회사측은 오히려 이 점을 악용한데다, 대우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하고 최대쟁취를 42시간으로 결정된 대우가 현대 대우를 고이로 밀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해모위원장 등 노조측이 현대 대우 등에 남용하는 자동화부분 생산공정간접직을 인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회사측은 오히려 이 점을 악용한데다, 대우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하고 최대쟁취를 42시간으로 결정된 대우가 현대 대우를 고이로 밀치고 있다.



본노련본부소속 노조대표자들은 7월11일 오후3시 건화전기 부당하고유단대회를 가졌다

금속노련 창립 제35주년 축하 유료광고 안내

(1961. 8. 25 ~ 1996. 8. 25)

오는 8월 25일은 본노련이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금속노보」는 여러분의 축하광고를 기다립니다. 모두 동참하여 힘있는 금속노련을 만듭시다!!

금속노련 창립35주년을 축하합니다. ○노조조합

금속노련 창립 35주년 기념 35주년 "만들고도 권리를 지키고 근로자적인 법니다" ○노조조합

선제없는 세상을 버리며 - 금속노련 창립 35주년 - ○노조조합

광고문의는 본노련 홍보부로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홍보부

현장을 가다

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하루나 선노기업을 중심으로 42시간을 원할지 못하게 줄이는 본노는 노에서 이를 입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기한 내 입안에 내 노노조에서는 단적으로 주 10~42시간을 제기한다.

유한성과 관련해서는 현장 노동조합이 두차례의 파업 전개하여 고용안정분배에 노사간 합의할 이루어보 97명에 대한 인사대가 만 시를 철회시켰다. 이밖에 시그네티스 등의 사업장에

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진풍이 있었다.

간인 구조의 조장, 해적이란 등에 따른 고용문제는 정부 주 리나라 경제 및 노동운동에 있어 중요 정책사항으로 부각될 것임을 올해 입안하고 있다. 정부원장을 보면 의정 기으로 전수면에서는 비노동 수급을 고려해가면 대용면에서 는 청년노와 다량 노정을 적니 고 있다. 그 당시기간이 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났으며 단체 행동의 유형이 간과파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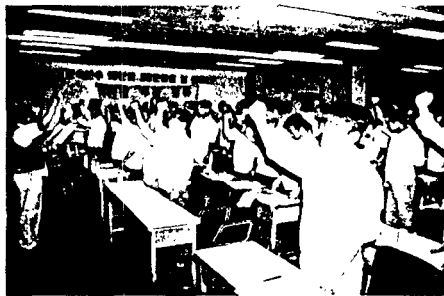
시그네티스노조

부정! 임금상-해고자 원적복직을 위해 '불법적인 직장폐쇄 철회하라!!'



대우전자노조

전지업계 최초 주42시간 쟁취!!



건화전기노조

부당해고 철회하라!!



영창악기노조

'부당 인사조처 전면 철회시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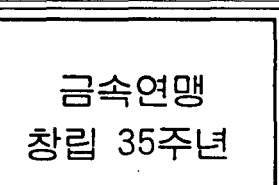
세신금공노조



한보철강노조



대동기어노조



롯데알미늄노조

단식농성

해!!

결단식동 주다

조직지도자 지역순회
임투사업장 격려

“축” 노사공존공영의 노사문화 창달에
밀거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속연맹 창립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96 금합산업문장 수상 경장산업(주)
노동조합 장 지 태

노사공존공영의 노사문화 창달에
밀거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속연맹 창립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삼합산업노동조합/(주)삼합산업

축 금속연맹
창립 35주년

노사공존공영의 노사문화 창달에
밀거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쌍용중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식
대구공장 노동조합 위원장 이경문
산기사업부 노동조합 위원장 김선기

축 금속연맹창립 35주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부국산업노동위원회장 김동민

금속노동자 총단결로
노동계 통합 이룩하자!
환경기공노동위원회장 구영주

축 금속연맹 창립 35주년
건설하지 산별노조 /
쟁취하지 노동기본권 /
실현하지 인간다운 삶 /
이를 위해 우리 한일전기
노동조합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일전기노동조합

금속연맹 창립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삼합산업노동조합

◇금속연맹 창립35주년 축하◇
분회!! 노동약법
쟁취!! 노동기본권
기아맥수강노동조합

축 금속연맹 창립 35주년
노동약법철폐하여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삼합전기노동조합

금속노동자 총단결하자!
축 금속연맹 창립 35주년
쌍용중공업노동조합기사업부
분회!! 노동약법
쟁취!! 노동기본권
임진노동조합

“우리 노동자는 하나다”



김무호
(대구 김복부외장)

노동법개정은 노동자들이
생존권보호와 직결되는 중대
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중대
한 사건을 두고 형식에 맞도
록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해야
한다.

특히 한국노동총연맹, 민주노
총지회 등 각단체위원장들이
참여하고 설계, 기획 등 각계
에서 참여한 가운데 대통령령
을 제정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노동자들은 하나
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들은
하나가 되어 노동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서로 단결할 필요
성을 느끼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속노총을 위해 만
단히 노력할 예정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하나다. 이를 위
해 한국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
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하나다. 이를 위
해 한국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
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한국노동총연맹, 노동금속노
총지회 등 각단체위원장들이
참여하고 설계, 기획 등 각계
에서 참여한 가운데 대통령령
을 제정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노동자들은 하나
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들은
하나가 되어 노동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서로 단결할 필요
성을 느끼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부에 와닿는 연맹이기를



김복천
(울산본부외장)

노동관계법제정위원회에서
변경하고 있는 노동법개정
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자의 한사람으로 분노를
감할 수 없다. 우리는 노동법
개정에 전면 반대하며 이같이
외국에 나가서도 노동법 개
정을 반대한다.

한편 우리 노동자들은 비롯
한 모든 노동자들은 하나다.
이를 위해 한국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노력할 것
이다.

한편 우리 노동자들은 비롯
한 모든 노동자들은 하나다.
이를 위해 한국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노력할 것
이다.

강한 상급조직의 위상 세우야



오봉술
(부산본부외장)

21세기 노사관계를 위한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이다.

한편 우리 노동자들은 비롯
한 모든 노동자들은 하나다.
이를 위해 한국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노력할 것
이다.

한편 우리 노동자들은 비롯
한 모든 노동자들은 하나다.
이를 위해 한국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노력할 것
이다.

“금속의 하나됨이 절실하다”



정기준
(광주 전남본부외장)

노동조합의 근본목적은 노
동자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한편 우리 노동자들은 비롯
한 모든 노동자들은 하나다.
이를 위해 한국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노력할 것
이다.

한편 우리 노동자들은 비롯
한 모든 노동자들은 하나다.
이를 위해 한국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노력할 것
이다.

삶의 질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백종부
(포항본부외장)

산업구조조정 공정의 해
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우리 노동자들은 비롯
한 모든 노동자들은 하나다.
이를 위해 한국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노력할 것
이다.

한편 우리 노동자들은 비롯
한 모든 노동자들은 하나다.
이를 위해 한국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노력할 것
이다.

“상여금과 법정수당 제외한 모든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노총,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책건의

한국노동총연맹 20일,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정책건의서로 노동부에 제출
하고 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예규 150호 1998.1.14)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사업장단위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에 관한
논란과 갈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총은 이 문제, 해결
되지 않고서는 최근 노사관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여와 임의적 급여
제 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이같이 건성하였다.
노총은 건의서에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실질을 갖는 모든 급여에서 상여금과
법정수당을 제외한 모든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
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임금의 실질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 판례

유급휴일이 포함된 주 토요일의
8시간 근무병역의 근기법위반 여부

(사건)

부당징역 914.1406.1992.10.9 선고
대법원 914.1406.1992.10.9 선고

(판례요지)

근로기준법 제42조, 부칙 제3항, 노동조합법 제 39조

(판례요지)

일요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의 근로시간은 일간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야 할 것이므로 해당 주 토요일에 한하여 8시간의 근무를 병역이라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주당 근무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일요일을 휴일로 근무에 관한 표결방법으로 문제가 된 노동
법에 6시간만 근무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6시간 근무를 하기로 한다면 이는, 위법
한 결의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 등에 대한 징역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고 보기는 어렵다.

주6일 근로제공시 '1일 4시간 근로제공일'에 대하여
8시간 근무로 인정할 경우 월소정 근로시간수

(사건)

항고
인정제법원 94가판35977 1995.8.31

(판례요지)

년제휴약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을뿐이고, 토요일 4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하나, 원고가 주 5일에는 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1시간
근무하면서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토요일에 노동조합 없이 유급
처리한 4시간에 대하여도 유급휴일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
어서는 월소정 근로시간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참여협력적인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금속연맹 창립 35주년 ●

세일공업노동조합
(주)세일공업

노사양립제 문화향상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 금속연맹 35주년 축하 ●

대동정비노동조합
(주)대동정비

● 금속연맹 창립 35주년 ●
노동법상 철폐하고
노동기준을 보장하라

금속연맹, 포항지회본부

“금속연맹 창립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동일기업노동조합

노사공존공영의 노사문화 창달에
필거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속연맹 창립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아제강노동조합/(주)세아제강
*세아제강은 (주)부산파이프의 세아그룹입니다

21세기
선진적인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요.

금속연맹
창립 35주년을 축하합니다.

LG전자부품노동조합
(주)LG전자부품

노사공존공영의 노사문화 창달에
필거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속연맹 창립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동기어노동조합/(주)대동기어

산재추방에 우리 모두
앞장 섭시다.

신재원은 세상의 실편을 위하여
상능기업노동조합/(주)상능기업

21세기 선진적인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동호전기노동조합/(주)동호전기

**참여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 금속연맹 창립 35주년
두원중공업노동조합/(주)두원중공업

정리해고제, 병행근로제,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법 개악기도를 적극 철회하라!!
금속연맹 창립 35주년 축하드림
한국중전노동조합

**노사공존공영의 노사문화 창달에
밑거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속연맹 창립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일공업노동조합/(주)정일공업

금속연맹 창립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동국제강 노사 일동

**노사공존공영의 노사문화 창달에
밑거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 금속연맹 창립 35주년 하◆
한보철강노동조합

**산재추방에 우리 모두
앞장 섭시다.**

산재없는 세상을 꿈꾸며

금속연맹 창립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산업안전공단

경 금속연맹 창립 35주년 축

우리 모두는 금속연맹 제35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현장을 뛰게 여러분에게 최대한
으로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1996년 8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임원/지역본부의장/상근임직원 일동

**건설하자 산업노조 /
쟁취하자 노동기본권 /
실현하자 노사관계민주화 /**

축하 금속연맹 창립 35주년
덕양산업노동조합

"창립 35주년을
축하드리며
금속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오루강점노동조합
(주)한국오루강점

노사공존제 문화형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축 금속연맹 창립35주년 하
대신공업노동조합
(주)대신공업

노동법개악 저지하여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LG정보통신노동조합

축 금속연맹 창립 35주년 하

정부는 노동악법을 철폐하고 4인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을 적극 적용하라!!

동국종합전지노동조합

**공동안명체의 노사문화 창달에
밑거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속연맹 창립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G마이크론 노동조합

**노동악법 분쇄하여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강력한 투쟁으로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축 하
금속연맹 창립35주년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축 금속연맹 35주년

산재추방을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재없는 세상을 꿈꾸며
(주)우림산업
노사인마음 주전위원회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산업노동조합/(주)동일산업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창립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LG전자 모터, 펌프 전문점
금형제작, 모터, 펌프 부품가공 제조

경동산업·경동기전
대표 김 형 복

**전만노동자 총단결로
사회개혁 쟁취하고
노동복지 확충하자!!**

금속연맹의 창립 3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속연맹의 창립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가오는 21세기,
합리적인 노동운동 활성화와
노사공영의 밑거름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 동 찬

쟁점-우리의 파업은 정당하다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이익위한 불가피한 선택

날치기 통과와 위법성에 항의하는 저항권 행사

순수 정치파업이 아니다

노동법 제4조의 파업권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대한 근로자의 불복에 대한 집단적 행동으로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다.

독, 정치파업 적법성은 근로조건 관련여부가 관건

일, 근로자 관련사항에 대한 정치적 항의파업 보장

국회 의원들 옹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회 내 노동조합과 헌법 제119조의 다수결에 의거한 경제

국회 의원들 옹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회 내 노동조합과 헌법 제119조의 다수결에 의거한 경제



이런 파업이 정치적 행위를 파업이 아니라, 하지만 이것은 순수정치파업이 아니고 경제

국회 의원들 옹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회 내 노동조합과 헌법 제119조의 다수결에 의거한 경제

국회 의원들 옹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회 내 노동조합과 헌법 제119조의 다수결에 의거한 경제

"조합원과 함께 하면 보람 느낄 수 있다"

김우배 (덕일산업노동 위원장)

노동운동이 한창이던 88년도에 입사하여 그해 8월 노동조합 1대 조직부장으로 노동운동과 인연을 맺기 시작

이런 일찍 노동자 사투리 문화를 만들고 아낌 헌신



이제 이. 김우배는 조합원들

그 결과 우리 3대집행부가 65%의 지지를 받으며

조합원들이 한창이던 88

이제 이. 김우배는 조합원들

"등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감사드립니다"

부투정금년 조합원

대한전선 대한전선 조합원

부투정금년 조합원

대한전선 대한전선 조합원

국회 의원들 옹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회 내 노동조합과 헌법 제119조의 다수결에 의거한 경제

국회 의원들 옹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회 내 노동조합과 헌법 제119조의 다수결에 의거한 경제

'96.11-'97.1 연맹주요 행사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11월 13일 14:00-17:00

신인양전보전교육

11월 24일 13:00부터 17:30까지

신임대표자 신임사무국장 교육 실시

본노련은 11월 30일

금속노조특보 발행

본노련은 11월 30일

신임본부장 직무교육 실시

본노련은 11월 30일

금속노조특보 발행

본노련은 11월 30일

신임본부장 직무교육 실시

본노련은 11월 30일

금속노조특보 발행

본노련은 11월 30일

신임본부장 직무교육 실시

본노련은 11월 30일

금속노조특보 발행

본노련은 11월 30일

신임본부장 직무교육 실시

본노련은 11월 30일

금속노조특보 발행

본노련은 11월 30일

신임본부장 직무교육 실시

본노련은 11월 30일

금속노조특보 발행

본노련은 11월 30일

신임본부장 직무교육 실시

본노련은 11월 30일

금속노조특보 발행

본노련은 11월 30일

신임본부장 직무교육 실시

본노련은 11월 30일

금속노조특보 발행

본노련은 11월 30일

신임본부장 직무교육 실시

본노련은 11월 30일

금속노조특보 발행

본노련은 11월 30일

Advertisement for Pingwa Easys Fund (평화 에이스 부금). It features a large illustration of a hand holding a coin, with text promoting high interest rates and easy deposits. The text includes '자유롭게 예금하는데 정기예금보다 이자가 훨씬 높습니다!' and '보통예금과 신탁의 좋은점만 모았습니다.'



노동탄압 분쇄!

금속노련속보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96 중점사업

조직강화 및 연대
교육선전 활동강화
임금 및 근로조건개선
산업재해 추방

발행인 유재섭 · 편집인 정문주 · 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우편번호 150-02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 864-2901 ~ 2 · Fax (02) 864-0457

노총, 노동법개악 저지 투쟁계획 확정!

11월24일, 여의도에서 10만규모 전국 노동자집회 개최

한국노총에서는 11월12일 긴급 전국산별대표자회의와 지역분·지방장회의를 잇달아 개최하여 정부의 노동법개악 기도에 대해 강도높은 투쟁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는 정부와 신한국당이 10일 당정고위회의를 통해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이하 노개위)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안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성함에 따라 이뤄진 결과이다.

이번 대표자회의에서는 “노사개혁위원회(이하 노개위)의 합의사항마저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노동법을 개악하겠다는 정부와 신한국당의 반노동자적 처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지난 50년간 일관되게 지켜온 한국노총의 운동이념을 전면 수정해야 할 때가 왔다. 이제 대화와 협상의 시기는 지났다. 오직 투쟁으로 전체 노동자와 노동조직을 사수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10만 규모의 대중집회 개최, 정치선언 및 투쟁, 총파업 등 단계별 투쟁을 벌이기로 하였다.

◎ 생존권사수 및 노동약법

분쇄 결의대회 ◎

이날 노총은 노동법 개정은 노개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친 ▲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 공무원·교사의 단결권을 비롯한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정치활동 보장 등 국제노동기준의 집단적 노사관계 보장과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근로자파견제 등 개별근로조건 저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노개위 합의사항과 자신의 공약마저 철저히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데 대해 노총은 ‘조합원의 생존권과 노동조직의 사활을 건다’는 비장한 각오로 노동법 개악 저지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기로 했으며, 당초 11월22일 88체육관에서 8천명 규모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의 규모와 장소, 명칭을 변경하여 11월 24일(일) 오후 2시 여의도 고수부지(금성 옥외무대앞)에서 10만명을 동원한 ‘생존권 사수 및 노동약법 분쇄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정치활동 선언 및 대정치투쟁 전개 ◎

정부의 노동법개악 기도는 전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천2백만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반국민적인 행태이다.

이에 노총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정치권이 이러한 정부의 반노동자적, 반국민적 정책을 저지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170만 조직 노동자와 1천2백만 전체노동자의 결집된 의지를 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11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여야 각 정당의 중앙당 및 지구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동시다발적으로 방문하여 노동계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특히 노총은 정치투쟁선언을 통해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정당이 97년도 대선에서 장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지지·대표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이를 찬성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전개한다는 정치투쟁의 목표와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총파업 돌입 ◎

정부의 노동법 개악 방침이 확정되는 11월초부터 노총과 산별연맹 지역본부 노조간부가 동시에 철야농성에 돌입하며, ▲ 12월 1일부터 각 사업장별로 파업결의 및 쟁의발생신고에 돌입한다. ▲ 12월 중순부터는 노총 사상 초유의 총파업을 단행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

금속노련 11월일정

12(화)~14(목)

신임사무국장교육

13(수) 임원 및 지역본부의 장단 회의

14(목) 두산전자대회, 한국CMB총회

15(금) 지역순회교육(경남) 성공밴드 총회

16(토) 서울본부 문화제

18(월)~20(수)

韓日 금속노조회의

24(일) 노총 전국결의대회

26(화) 지역순회교육(경기)

26(화)~29(금)

산업안전보건교육

28(목) 지역순회교육(전남북)

29(금) 지역순회교육(인천)

연맹 임원 및 지역본부 의장단 회의 노동악법 분쇄외안

대중투쟁 강력전개키로

우리연맹은 13일(수) 오후2시 노총 대전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노개위 활동결과를 보고받은 후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자세를 토론하였다.

이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 노동법개정에 대하여 노동조

합을 말살하려는 정책으로 간주하고 11월24일 노총 전국결의대회에 적극적인 조직동원을 결의하였다. 또한, 향후 정치투쟁을 병행하면서 12월 총파업투쟁을 전개할 것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 합의하는 것으로 이날 회의는 마감되었다.

전국 지역순회교육 성황리에 진행중!

연맹 교육국에서는 지난 10월 22일을 시발로 하여 전

국 지역순회교육을 진행중에 있다. 이번 교육일정은 10월 22일 부산, 울산지역 24일 대구경북, 포항, 구미지역 25일 대전, 충남북지역을 이미 마쳤으며 오는 11월15일 경남지역, 26일 경기지역, 28일 광주, 전남북지역 29일 인천지역으로 이어진다.

한편, 강의내용은 현시기 노동정세와 고용불안에 따른 노조의 대응전략, 노개위 활동에 따른 경과보고 및 향후 대응책, 연맹활동에 대한 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과 노동조합의 대응 ▲ 노동조합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 ▲국제경쟁력시대의 비법적인 노사관계 ▲ 노동조합 연구원 ▲ 지도자의 자세 및 역할 등이 강의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노개위 활동에 대한 현황 및 향후 노동조합의 투쟁전략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단체협약 제출

연맹 조사통계부에서는 단위노조의 단체교섭을 지원키 위해 단체협약 분석 및 실전 노동조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각 단위노조중 아직까지 단체협약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11월말까지 단체협약 사본 1부를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참가자 신청

오는 26일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3박4일간 진행될 예정인 산업안전보건 담당간부교육이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10명에 한하여 신청순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노총 향후다계별 투쟁방향

- 11/13~ ▶ 노동법개악저지 중앙투쟁본부 운영 (산별 연맹간부 참석, 24시간 상활상 운영)
- 11/13~21 ▶ 단위노조 결의기구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회의 개최
 - 노동법 개악 잔대결의 및 조합원 서명운동
 - 한국노총 투쟁방향 지지결의
 - 집회참석결의
 - 투쟁기금 모금 활동전개
 - 총파업지지 결의
 - 노동법 개악 찬성정당 내년 대선시 반대운동 결의
- 11월 중순 ▶ 정부의 노동법 개악방향이 발표될 경우 노총, 회원조합, 지역본부 상근간부 200여명 노총강당에서 철야농성 돌입
- 11/24 ▶ 생존권 사수 및 노동악법 분쇄 전국결의대회
 - 여의도 고수부지, 조합원 및 가족 10만 참석
 - 총파업투쟁결의
 - 노동법 개악 찬성정당 내년 대선시 반대운동 결의
- 11/24~30 ▶ 각급 조직 정당(지구당)방문 및 국회의원 방문활동
 - 노총: 각 정당 지도부 방문
 - 지역조직: 각 정당 당직자 방문(해당 지역 조직에서 40명규모 상경방문)
 - 노동환경위: 국회의원 방문(해당 지구당 방문 및 지역조직에서 40명 규모 상경방문)
 - 노동법개악 지지위원 사무실 농성
- 12/1~18 ▶ 노총 위원장 단식농성 돌입 및 총파업 선언

신임 대표자교육, 신임 사무국장교육 사흘동안 열띠게 열려

지난 11월5일부터 7일까지 3박4일간 대전 경화장에서는 신임 대표자 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대표자교육이 개최되었으며 12일부터 14일까지는 신임 사무국장교육이 같은 장소에서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교육에서는 신임대표자를 위한 ▲ 단체교섭준비 및 실무 ▲ 고용문제의 본질

생존권 사수 및 노동악법 분쇄를 위한

전국 결의대회

가자! 여의도로,
노동악법 분쇄하러!

정권과 자본은 경제위기를 앞세워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노동기본권마저 짓밟으려하고 있다. 이제 전국의 노동자는 다시금 머리를 두루고 대열을 가다듬을 때가왔다. 정권과 자본이 스스로 시신의 위기를 불렀음을 노동단결을 통해 보일때다!

● 일시: 1996년 11월 24일(일) 오후2시

● 장소: 여의도 고수부지 (금성 야외대입)



노동악법 분쇄!

금속노련속보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96 중점사업

조직강화 및 연대
교육선전 활동강화
임금 및 근로조건개선
산업재해 추방

발행인 유재섭 · 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우편번호 150-02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 864-2901 · Fax (02) 864-0457 · 전리인 FKMTUNO

노총, 전조직 비상사태돌입 선포

19일,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등 대정부투쟁 공식선언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은 19일 오전 11시 '생존권 사수 및 노동악법 분쇄'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정부투쟁을 대내외 선포하였다.

노총 집행부와 산별연맹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박인상 위원장은 산하 전국 조직이 19일 이후로 비상사태에 돌입했음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계속 강행할 경우 노개위 탈퇴는 물론 2차 개혁과제에 노총이 전면거부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정부가 일방적 법개정을 통해 근로조건의 악화를 가져오는한 노총은 김영삼 정권과 신한국당의 재집권 지지 및 정권타도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투쟁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시기를 전후하여 부분파업을 거쳐 12월 중순이후에는 전국적인 총파업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 기자회견문(요약) ●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사

자치와 자율을 무시한채 노개위가 6개월여의 진통끝에 합의한 사항마저 파기하면서 일방적으로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어떠한 고통과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를 끝까지 저지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는 전체 노동조직이 비상사태임을 선포하고 향후 정치투쟁과 총파업 등 '단계별 투쟁'에 돌입하기로 한다.

이에 우리는 전체 노동자의 반발을 무릅쓴 '정리해고제'가 우리 경제를 희생시킬 수 없으며, 변형근로제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현재의 경제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부정부패의 척결과 경제체질의 개선, 노동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개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비상사태 선포 ●

노총산하 전조직은 19일 이후 '생존권 사수 및 노동악법 분쇄'를 위한 비상사태

에 돌입하며, 아래와 같은 비상사태 조직행동 지침을 실천해 나간다. ▲ 각급 조직은 노동법 개정 '대책본부'를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며, 전노조전임자는 간편한 투쟁복장 및 머리띠를 착용한다. ▲ 각급조직은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며 일일상황보고를 통해 조직의 투쟁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한다. ▲ 상황이 비상하게 전개될 경우 전노조전임자는 즉각 철야농성에 들어간다. ▲ 각 단위노조는 출퇴근시간대에 가두투쟁을 전개하며 노동

법개악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전과 서명 및 모금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 정치투쟁 ●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 입법 예고와 동시에 한국노총과 산하 조직은 전면적인 정치투쟁체제로 돌입한다.

▲ 노동법 개악 입법예고 즉시 노총은 정부와 일체의 대화와 협상채널을 중단한다. ▲ 노개위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향후 노개위가 2차 과제로 추진중인 '의식과 관행의 개혁'에 관한 활동을 전면 거부한다. ▲ 집권당에 대한 반대운동 및 노동개입장을 지지하는 정당과 정책·조직적 연대를 전개하며 내년 대선시 이를 적극 실천한다. ▲ 한국정부가 OECD 가입의 전체조건으로 약속한 완전한 결사의 자유

노총 총파업지침

- 11.18~23 단위노조 쟁의발생 결의
- 11.26~30 쟁의발생신고서 산별연맹에 보고
- 12월 2일 산별연맹 쟁의발생신고
- 12.2 ~3 쟁의발생신고 결과 노총에 보고
- 12월중순 총파업돌입
- 1단계: 전조직 1시간 부분파업 실시
- 2단계: 전조직 2시간 부분파업 실시
- 3단계: 전조직 24시간 부분파업 실시
- 4단계: 전면파업
- (시기 및 방법은 노총 결의기구에서 결의함)

보장, 제3자개입금지 철폐, 공무원·교사의 단결권을 이행하도록 OECD TUCA(경제협력 개발기구 노동조합 자문위원회)와 연대하여 압력과 투쟁을 병행해 나간다.

● 총파업투쟁 ●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는 시기를 전후하여 단계별 총파업을 전개한다.

▲ 정부 개악안 입법예고 발표 즉시 산하 6,500 단위노동조 긴급총회(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파업을 결의한다.

▲ 쟁발신고는 단위노동조에서 소속 산별연맹으로 결집하며 산별연맹에서 노동부 및 중노위에 일괄 처리한다.

▲ 쟁발요건은 완전한 노동3권 보장, 공무원·교사 단결권 보장,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파견제반대로 명시한다. ▲ 12월중순 1단계로 산하 전조직이 1시간 부분파업 단행 및 단계별 총파업을 거쳐 ▲ 12월말 전국 총파업에 돌입한다.■

연맹, 노동악법 본쇄투쟁 결의 분출!

연맹, 투쟁본부 설치, 20일부터 비상계급 돌입

단위노동조 입시총회 준비, 집회참석 결의!

연맹 임직원 20일 아침 가두선전전 전개

연맹은 18일 상근 임직원 주간회의를 열면서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을 잠깐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동악법 본쇄투쟁은 그 어느 투쟁보다 조직적인 싸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아 실무국을 중심으로한 투쟁본부를 구성하였다. 또한, 20일부터는 비상 근무체계에 돌입하여 저녁 9시까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맹 임직원은 가두선전을 20일(수) 아침에 신림동 지하철역 주변에서 전개하여 노동법개악 저지투쟁을 대중적으로 선전하였다.

한편, 24일 전국 노동자집회 참석과 총파업을 위한

결의가 단위 사업장마다 속속들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임시 대표자모임이 진행되었으며 단위사업장마다 입시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현재, 연맹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부산지역의 경우 사업장의 30%정도가 이미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결의를 모아 오는 24일 전국결의대회 참가의지를 높이고 있다. 특히, 부산주공, 오리엔탈정공, 한국오류강침 노동조합은 노개위 활동기간 동안 일상 선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다.

또한, 안산지역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도 총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용기계 노동조합의 경우 오는 22일 비상총회를 개최기로 예정되어 있고 이미 전채조합원 45명 전원이 24일 노동자대회 참석을 결의한바 있다.■

금용노련

19일 전대회에서 총파업 결의!

정부의 노동법 개악기도에 대한 노총의 총파업지침이 시달된 이후 금용노련에서는 19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27명 대의원 만장일치로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금용노련(위원장 이남순)은 이날 "정부와 신한국당이 노

동법 개악과 금융산업노동조정에 맞서 13만 4천 노동자의 선두에서 투쟁하는 한국노총의 단호한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고 "금융노동자의 간절한 호소와 건의, 그리고 지속적인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법 개악과 금융산업의 고용조정제도를 도입할 경우 부득이 금융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금융산업의 자율적인 발전을 위해 어떠한 희생물도 무릅쓰고라도 조직의 운명을 건 비상한 각오로 단호히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집회참가자 안내

24일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생존권사수 및노동악법분쇄를 위한 전국결의대회"는 지방본부별 지시에 따라 상경을 하되 기차나 전철을 이용하는 참석자는 영등포역에서 하차하여 고수부지까지 운행하는 순환버스를 이용(11:00-13:00)하면 편리하다. 또한, 교통혼잡시 여의도행 버스(좌석:60,119번 / 일반:30,48,112,119번)를 이용하면 10분정도에 행사장까지 도착할 수 있다.

당일 집회참석시 각조직은 ▲ 깃발과 피켓을 준비하고, ▲ 집회 행사장앞 금용노련 깃발앞으로 집결하고, ▲ 강바람에 대비 두툼한 외투를 준비하고, ▲ 연맹 질서요원(자주색 투쟁조끼착용)의 지시에 따른다.

노동자가 동돌리때

어떻게 정권이

바뀌는지 똑똑히

보여 줘시다!

노총 총파업투쟁지침 (쟁의행위절차)

1. 긴급 입시총회(대의원대회) 개최

쟁의 발생결의는 긴급 입시총회(불가피할 경우 대의원대회)를 거쳐 쟁의발생신고에 찬성함. 쟁의행위돌입 시기 및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노총지침을 참고하며 참석자 모두에게 노동법 개악저지 이유를 설명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과 모금운동을 전개함.

2. 쟁의발생신고

단위노동조는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에 대해 결의한 후 쟁의발생신고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사용자측 당사자는 노동부장관, 내용은 노개위 합의안을 무시하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공무원·교사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함은 물론, 정부가 정리해고제, 파견제, 변형근로제 등 사용자에게 유리한 노동법 개악을 일방적으로 강행해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심각하게 저하된다고 명시함. 요구조건은 1)완전한 노동3권보장 2)공무원·교사의 단결권보장 3)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파견제 반대

3. 쟁의발생신고서는 개별접수하지 않고

연맹으로 11월 30일까지 보고



노동악법 분쇄!

금속노련속보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96 중점사업

조직강화 및 연대
교육선전 활동강화
임금 및 근로조건개선
산업재해 추방

발행인 유재섭 · 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우편번호 150-02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 864-2901 · Fax (02) 864-0457 · 전리인 FKMTUNO

여의도를 뒤덮은 10만의 함성, 노동악법 분쇄투쟁은 이제부터!

총파업투쟁과 대선투쟁 선포, 본노련 조합원 2만명 참가!

노동법개정을 둘러싸고 '총파업 투쟁과 사법처리에 따른 강경대응' 등 노동계와 정부간의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24일(日) 오후1시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10만5천명의 전국 노동자,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생존권 사수와 노동악법 분쇄를 위한 전국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대정부투쟁의 막이 올랐음을 대외에 선포하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전체 규모 10만명이 운집하여 휴일 지방에서 상경하는 버스가 600여대에 달해 고속도로는 온종일 체증현상 보였으며 본노련이 집계한 금속노련 소속 조합원만 2만명에 달했다.

노총 50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옥외집회로 열린 이날 대회는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근로자파견제 등 이른바 '3제' 도입을 규탄하고, 복수노조의 완전한 자유, 공무원·교사의 단결권 보장, 제3자 개입금지 철폐, 및 정치활동 보장 등 국제기준의 노사관계 개혁

을 촉구하였다.

이날 행사는 오후 1시 식전행사를 필두로 시작하여 2시부터 4시까지 본대회가 진행되었다. 박인상 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노총은 노개위에서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노개위 합의사항을 파기 하면서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오늘 집회를 계기로 전국 동시다발 대중집회, 총파업을 거쳐 내년도 입단투시기, 대선때 노동법 개악을 찬성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반대운동 등 조직적인 투쟁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는 투쟁방침을 밝혔다.

또한, 이날 대회 참석자들은 투쟁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근로자파견제 도입저지와 복수노조 금지조항 등의 완전철폐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고 다짐하였다.

한편, 본노련 유재섭 위원장은 국제노동단체에

서 보낸 메시지를 낭독하였다. 메시지는 "한국정부의 노동법 개악을 반대하고 한국노총의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 연대한다"는 제하로 국제자유노련(I CFTU),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자조함자문위원회(OECD-TUAC), 국제금속노련(IMF), 국제상업사무전문기술노련(FIET), 국제공익노련(PSI) 등 15개 국제노동단체에서 보내왔다.■

투쟁본부 소식

쟁의발생신고서

속속들이 접수되기 시작!

24일 노동자대회를 전후로 연맹 투쟁본부로 속속들이 단위노조 쟁의발생신고서와 서명운동, 모금운동의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활기를 띠고 있다.

25일까지 연맹에 보고된 단위노조 투쟁활동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한제당 도급30만원

대한제당 노동조합 손종흠 위원장은 25일 연맹을 방문하여 쟁의발생신고서

를 접수하면서 조합원 서명 208명, 투쟁기금으로 모금한 303,420원을 연맹에 전달하였다.

삼양중기 쟁의신고 결의

삼양중기 노조는 11월 19일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쟁의발생신고 결의를 갖고 조합원 170명(산재자를 제외한 전원)이 서명에 참가하였다.

삼천리자전거 대외개조

삼천리자전거 노조는 11월 25일 조합원총회를 소집하여 쟁의발생신고 결의에 들어간다.

신한주철 쟁발준비

신한주철 노조는 조합원 서명에 300명이 참가하였으며 26일 쟁의발생신고 결의에 들어간다.

세진전자 서명운동

세진전자 노동조합은 지난 주말부터 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 상집간부를 중심으로 대의원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대우통신 48만원도급

대우통신 노조는 조합원 1인당 1천원씩 모금하여 48만원을 투쟁기금으로 모금하였다.

이 이외에도 단위노조에서 쟁의발생신고 결의를 위해 조합원 총회, 대의원대회를 소집, 모금운동, 서명운동을 전개중인 곳은 연맹으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악법 분쇄!

금속노련속보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96 중점사업

조직강화 및 연대
교육선전 활동강화
임금 및 근로조건개선
산업재해 추방

발행인 유재삼 · 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우편번호 150-02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 864-2901 · Fax (02) 864-0457 · 전라민 FKMTUNO

노총, 12일 「노동법개악분쇄집회」 국회앞 개최, 백만인 서명부 전달

전국 단위사업장은 13일 12시 중식집회, 파업 찬반투표 실시

노동법개정을 둘러싸고 박인상 위원장 단식투쟁 및 전국 노조간부(1천명)철야농성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12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동법개악 반대 서명부 전달 및 생존권사수 결의대회'를 갖고 국회의장 면담을 요구하였다.

노총 이주완 사무총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국회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노동법개악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국회가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의 화합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에 달라"고 요구하였다.

노총은 "노동법 개악 분쇄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1차분 72만2천6백17명에 관한 서명부를 전달하고 노동법개악을 반대하는 조합원의 결의를 의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노총은 ICFIU(국제자유노련)와 공동으로 "한

국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더욱 개악되면서 결사의 자유 등을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다"며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자유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집회에는 수도권지역 노조간부 4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 연맹에서는 서울·인천·경기 노조간부들과 상간간부 교육을 마치고 상경한 교육생등 120여명 참석하였다.

13일(12시)

파업찬반투표의 날

11일(木) 노총 박인상 위원장은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기자회견을 갖는 가운데 노동계의 연대투쟁을 민주노총에 제안하고 노총산하 전조직이 13일 파업찬반투표에 들어가 연대의 범위를 넓혀 나가도록 지시하였다.

박인상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함께 파업연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양대노총이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등의

실천방안을 제시하면서 민주노총이 파업을 전개하는 13일(金) 12시에 중식시간을 이용해 노총산하 전조직은 일제히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연대규탄집회를 개최하여 범노동계의 연대를 과시하도록 산하조직에 투쟁계획을 지시하였다.

12월14일까지 총파업찬반투표 결과 보고!

연맹산하 전조직은 12월14일 18시까지 정의행위찬반투표 결과를 전화, 팩시, 우편 등의 신속한 방법을 통해 연맹 투쟁본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총 비상전대회 쟁의기금모금 결의

지난 12월9일(月) 노총 대강당에서는 비상임시대의원대회가 개최하여 대의원 만장일치 결의로 총파업기금(1인당 1만원)조성을 전조직 12

월 급여 또는 상여금에서 인가공제하여 연맹을 통해 노총에 납부하기로 하였다.

계좌는 제일은행 376-10-009048 / 평화은행 001-25-0005-190, 예금주는 금속노조

노총 1,506개

노조 쟁발신고

노총은 10일(火) 산하 1,506개 노조(조합원438,796명) 쟁의발생신고서를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일괄 제출했다.

노총의 쟁의발생신고 현황에 따르면 도시철도, 통신, 금융, 버스, 택시등 공공사업장이 포함되었으며 액지전자, 대우전자, 기아특수강, 영창약기, 성원세기, 액지전선, 연합철강, 한국타이어, 동양맥주, 해태제과 등 대기업 제조업이 쟁발신고를 낸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우리연맹은 464개 노조(조합원9만2천명)이 접수하였다. 또한, 10일이후 쟁발신고결의를 한 노조에 서는 계속해서 연맹으로 즉시 보고해 주기 바람.■

각 단위노조에서는 노동법 개악 분쇄투쟁의 사례를 연맹 투쟁본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된 내용은 투쟁본부에서 제작하는 투쟁수보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연맹 투쟁본부 소식

단위조합 총파업금 땀, 총파업찬반투쟁 준비 분주!!

김 영삼 정권과 신한국당의 노동법 개악 연내 처리방침이 확정되어진 가운데 전국의 모든 노동조합에서는 16일부터 전국적인 총파업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파업준비에 분주한 것으로 연맹에 보고되고 있다. 연맹에 보고된 단위노조 활동결과는 아래와 같다.

연맹, 상집간부

11일부터 철야농성 돌입

우리 연맹은 이미 11일부터 상집간부 진원이 철야농성에 돌입하여 비상운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각 시도 지역본부

철야농성투쟁 전개!

11일을 기점으로 노총산하 상급조직(산별연맹, 시도 지역본부)에서는 철야농성을 전개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우리 연맹의 시도지역 본부도 본격적인 철야농성투쟁에 돌입하고 있다.

12일 현재,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있는 시도지역본부는 경기(의장:하영일), 인천(의장:황창배), 충남(의장:강한우), 대전(의장:김두형), 경남(의장:강석수/ 30여명의 노조간부 동참), 울산(의장:김복천), 구미(의장:박병도), 포항(의장:백중부), 광주전남(의장:정기춘), 부산(의장:오봉출)등 10개 본부이며 창원시지부, 양산지부, 마산, 진주 등지에서도 철야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충북(의장: 김홍수)도 본부는 13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창원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항의방문

창원지역의 금속노조 간부들은 12일 창원지역구 의원인 황낙조, 김종호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노동법 개악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등 신한국당의 노동법 개악 연내처리 방침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에따라 두 의원은 내일(13일)까지 팩스를 통해 본인들의 입장을 노조간부들에게 밝히기로 약속하였다.

마산지역 강삼재

사무실 항의방문

마산의 수출자유지역에 위치한 금속 노조간부 45명은 12일(木) 강삼재(신한국당 사무총장)의원 사무실을 항의방문하였다.

항의방문단은 신한국당의 노동법 개악 방침에 강력히 항의하고 강삼재 의원의 개인입장을 물었으며 향후 김정권과 신한국당을 반노동자적 집단으로 규정할 것임을 밝혀 두었다.

영창악기 노조

12일 파업결의

영창악기 노조(위원장: 이상우/인천)는 12일 쟁의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전체 조합원 1,937명이 참석한 가운데 1,907명(98.45%)의 찬성으로 파업투쟁을 결의하였다.

대우전자노조

투쟁기금 모금

대우전자 노조(위원장:이병균/서울)는 지난 12월10일 본조 사무실에서 중집회의를 개최하여 쟁의발생 투표를 통해 쟁발결의를 하였다.

또한, 조합원 전원이 참여하는 1인당 1만원 투쟁기금 모금운동을 결의하였으며 투쟁속보를 발행하는 등 선전홍보활동을 분주히 전개하고 있다.

LG전자 노조

모금 서명운동

엘지전자 노조(나한경/서울)는 10일 쟁의발생신고서

를 연맹에 전달한 가운데 서명 및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맹, 상집간부 교육생

투쟁기금 전달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연맹이 실시한 상집간부 교육(장소: 여주 노총교육원)에서는 총 101명의 단위노조 실무자가 참석하여 노동악법 분석을 위한 투쟁기금을 모금하였다.

12일 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은 노총 박인상 위원장을 방문한후 투쟁기금 31만2천원을 전달하였으며 국회의사당앞 집회에 전면 참석하였다.■

노동부의 총파업 방해 공작사태 수검

1천2백만 전국 노동자와 3천만 노동가족들의 노동악법 분쇄투쟁의 열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중에 김영삼 정권과 신한국당은 이를 방해파탄시키기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을 총동원하여 노-노간 갈등을 부추기고 노총과 민주노총의 지도부를 전복하려는 이간질, 음해, 밀실공작정치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월 9일(月)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내에 총파업투쟁 대책반을 비밀리에 구성하고 방해공작계획을 수립하여 비밀리에 추진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본내용에 의하면 청와대내에 데스크포스를 설치, 총리 직속의 관계대책기구를 구성하여 기존 노동차관 주재의 공기업 대책회의도 청와대 데스크포스가 직접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노총의 현 지도부를 보수세력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내부분열책을 강구하고 지도부 개혁세력은 단순히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경우 전현직 집행부간의 갈등이 잠복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강경파 격리 및 외부세력과 차단, 차별대처하고 온건합리적인 전현직 간부를 12월중 조직화한다는 구대타계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각 지역의 단위노조에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회사측에 노조의 정당한 쟁의절차에 의한 총파업 투쟁을 공무집행 방해조로 고발하려는 등 사주하고 있는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회사는 이를 빌미로 노조의 단체행동을 불법쟁의라는 등 공공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에 총파업 방해공작 사례를 수집하여 노동부의 작태를 성명서 등을 통해 지상에 보도하는 등 강력히 응징할 뿐만아니라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고발코져 하오니 각 단위노조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연맹 투쟁본부로 즉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파업 투쟁 D-2

금속노련속보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노동악법 분쇄

반대! 변형근로제
철폐! 정리해고제
분쇄! 무노동무임금
쟁취! 교원노동3권

발행인 유재섭 · 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우편번호 150-02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 2 / ☎ (02) 964-2901 · Fax (02) 964-0457 · 전리인 FKMTUINO

들불처럼 타오르는 총파업투쟁 열기!

12일 영창악기에 이어 13일 412개 노조 쟁의행위 결의

기아특수강·연합철강·대동조선·한보철강 등 네개 조합결의, 16일 총파업투쟁 계획대로!

총파업투쟁 예정일을 3일 앞두고 있는 13일 현재 쟁의행위를 결의하는 사업장들이 속속들이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인 총파업투쟁의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3일 현재, 연맹 투쟁본부에 집계한 총파업 결의 내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12개 단위 사업장(조합원수: 7만8천5백42명 / 평균 92.5% 찬성)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투쟁을 결의하였다.

파업을 결의한 사업장은 12일 영창악기 노조를 선두로 13일 기아특수강, 연합철강, 대동조선 등 40여 노동조합에서 일제히 찬반투표를 전개하여 13일 오후 연맹 투쟁본부로 보고, 집계되었다.

또한, 14일(토) 쟁의행위찬반투를 예정하고 있

는 단위노조들이 계속 줄을 잇고 있어 16일 총파업투쟁까지는 현재보다 더 많은 사업장이 가세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9일(月) 노총 비상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총파업투쟁 계획은 다음과 같다.

▶ 12월 16일(月) 13:00~14:00: 1시간 시한부 파업 단행 ▶ 12월 19일(木) 09:00~12:00: 오전시간 파업 단행

19일 이후의 파업 계획은 추후 노총 투쟁본부 지침을 통해 통보할 예정이다.

노총 13일

간부결의대회

노총은 박인상 위원장의 '단식농성투쟁' 3일째를 맞아 13일 오후 2시 노총회관 앞에서 3백여명의 노조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박인상 위원장 단식투쟁 지지와 노동법개

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노총은 김영삼 정권에게 노동법 개악 기도를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노총, 13일(12시)

단위노조 규탄집회 실시

노총은 11일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을 선언하며 13일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에 연대하기 위하여 전사업장에 연대규탄집회를 개최할 것을 지시하였던 바 민주노총이 13일 총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13일 12시 단독으로 규탄집회를 개최할 것을 각단위 사업장에 수정 지시하였다.

국회의원 항의방문

14일 노총 산별위원장단

노총은 14일 오전 9시30분 산별연맹 위원장들로 구성된

방문단을 구성하여 국회의원 회관내 신한국당 의원사무실을 방문하며 노동법 개악관련 의원 개인입장을 확인하고 신한국당의 연내처리방침에 항의와 경고 보낼 계획이다.

노총, 규탄집회 개최

14일 신한국당 당사앞

노총은 14일 오후 3시 30분 신한국당 당사앞에서 노조간부와 조합원이 참석하는 '정부의 노동법 개악 저지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속보는 노동법 개악 분쇄투쟁을 위해 연맹 투쟁본부에서 제작하고 있으며 기입팩스를 통해 단위노조로 전송됩니다.

미치 기입팩스번호를 보고하지 않아 속보를 받아보지 못하는 노조는 연맹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노조의 투쟁사태는 즉각적으로 연맹 투쟁본부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동단결 대동투쟁

금속노련속보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노동악법 분쇄

반대! 변형근로제
철폐! 정리해고제
분쇄! 무노동무임금
보장! 노동 삼권

발행인 유재섭 · 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우편번호 150-02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 ☎ (02) 864-2901 · Fax (02) 864-0457 · 전리안 FKMTUNO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자!

우리의 투쟁은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쇄하기 위한 싸움인 것!

투쟁으로 이룬 작은 성과!

노총은 지난 15일 밤8시 산별연맹 위원장, 지역본부 및 지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 결단식을 갖고 총파업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개최된 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각 정당 대표로부터 정기국회에서 노동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총파업을 유보하는 고려에 찬 결단을 내렸다.

이에 참석자들간의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총파업을 유보하는 대신 16일 중식시간에 전조직이 규탄집회를 진행하고 전간부의 가열찬 투쟁의지로 삭발투쟁을 단행한다는 결의사항을 도출했다.

한편, 지난 16일 오후 3시 신한국당 유용태 원내 부총무와 이강희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단식중이던 박인상 위원장을 방문하여 '노동법 연내 처리를 유보하는 대신 내년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토론회

공청회를 거쳐 노동자를 비롯한 전국민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겠다'는 공식입장과 박인상 위원장의 단식투쟁 중단, 총파업투쟁의 자체를 요구함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박인상 위원장은 단식투쟁을 해제했다.

긴호흡 넓은시대로 다음 투쟁준비할 때

우리들의 투쟁은 정부여당으로 하여금 노동법 개악의 시기를 정기국회에서 임시국회로 지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약한 대다수의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이룬 결과였다.

그러나, 법개정을 불과 20여일을 지연시킨 것을 놓고 우리가 투쟁을 다한 것처럼 들떠있기에는 전열이 흐트러지기 쉽다. 이번 투쟁의 주목표는 분명히 노동법 개악을 분쇄시켜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노동자 대오는 그동안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을 진단하고 향후 투쟁

을 준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은 셈이다. 긴호흡 넓은 시야로 역량이 충분한 곳은 덮고 부족했던 곳을 채워 다음 투쟁을 세워나가자!

또한, 1차 투쟁의 결과를 놓고 벌써부터 비판과 옹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비판은 조직의 발전을 위한 거름의 역할을 하지만 지금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정권은 우리의 단결을 깨기 위해 분열공작을 자행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분열을 바라고 있다. 이제, 너나 할것없이 사심없는 단결을 이루

고 대오를 조직하자! 통큰단결은 승리를 부르는 원천임을 잊지말자!

연맹 20일(금)

중앙위·집행위 연석회의

우리 연맹은 법개악이 연가됨에 상관없이 투쟁본부를 계속해서 24시간 운영키로 했으며, 오는 20일(金) 오후3시 연맹 지하강당에서 중앙위원·집행위 연석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노동법 개악 분쇄투쟁에 대한 주체역량 진단 및 향후 투쟁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

단위조직 투쟁지침

- ▶ 상황실을 계속운영하고 지역본부는 철야농성을 계속 유지할 것
- ▶ '97년도 임금인상 투쟁지침 작성에 돌입할 것
- ▶ 위원장, 조합간부는 필히 삭발투쟁에 동참할 것 (연맹으로 명단보고 할것)
- ▶ 조합원 교육 및 대국민 선전활동을 계속 전개할 것
- ▶ 정의발생 결의 또는 행위천만투표는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연맹으로 즉시 보고할 것
- ▶ 투쟁기금 모금활동과 지역구 신한국당 의원사무실 형의방문을 계속 전개할 것
- ▶ 팩스수신이 않되는 단위노조는 연맹 투쟁본부로 즉시 보고할 것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수는 없다! 전간부 총력투쟁 다짐하는 식발투쟁전개

오늘 우리들의 투쟁은 내일의 승리를 향해 진군하는 힘찬 발걸음!

전국적으로 노동법 개악 분쇄 투쟁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식발투쟁을 단행하는 동지들의 대오가 계속해서 줄을 잇고 있다.

또한, 롯데전자 (위원장: 안재현 /서울소재)는 17일 상집간부 및 대의원들이 소집한 가운데 위원장이 직접 본인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며 노동법 개악 분쇄투쟁의 결의를 드높였다. 또한, 박송기 사무국장이 식발투쟁에 동참하여 조합간부들은 김정권에 대한 울분을 금치 못했으며 불타는 투쟁 결의를 다졌다.

한편, 연맹은 16일 유재섭 연맹위원장을 비롯한 전간부가 식발투쟁을 단행하였으며 각 지역본부별로 식발을 단행하거나 결의를 모아내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연맹 투쟁본부로 보고되었다.

●식발자 명단●

연맹 상근간부 전원 서울지역본부 (10명)

대우전자 이병균 위원장, 박성규 부위원장, 전용구 인천지부장, 김정근 주안지부장, 장인환 구미지부장, 조정훈 광주지부장, 우택우 사무국장, 임권 기획실장 / 롯데전자 안재현 위원장,

박송기 사무국장

경기지역본부(36명)

하영일 의장, 이종진 부의장, 태양금속 이병욱 위원장, 대륙전선 김영규 위원장, 신아전기 신은철 위원장, 오양공조기 조재천 위원장, 동성진흥공업 홍원성 위원장, 동성진흥 이상섭 위원장, 서울차체 이쌍봉 위원장, 남성기계 이철수 위원장, 반도기계 박태영지부장, 장진수 노충부천지부 의장, 노충부천지부 이내청 사무처장, 반도기계 오광수 위원장, 삼양중기 이성수 위원장, 보아기계 이성기 위원장, 신한주철 윤무영 위원장, 신한일전기 이준덕 위원장, 현대엘리베이터 성용주 위원장, 세광알미늄 임종국 위원장, 대광다이케스트 김수룡위원장, 이화다이아몬드 성세현위원장, 경원산업 강장규위원장, 배영설비 이병도 위원장, 대기이강훈위원장, 희성전선 김영기위원장, 대한제작소 이두중위원장, 철도콘테이너 정비 임승재 위원장, 범양냉방 한기홍 위원장, 서울차량 백정훈 지부장, 정일공업 정기열 지부장, 국제전기 최병면 위원장, 서울라디에이터 백승철 위원장, 한일써킷 백상목 위원장,

경방기계 강영석 지부장

인천지역본부 (9명)

황창배 의장, 삼성공업 오인상 위원장, 도투락 김현섭 위원장, 한양알미늄 한상환 위원장, 대한제당 송종홍 위원장, 한국사프 박재형 위원장, 신호스틸 양종우 위원장, 대동시스템 양승중 위원장, 신호금속 김학배 위원장

충남지역본부 (32명)

강한우 의장, 최만정 사무차장, 동양철관 양시준 위원장, 동일알미늄 박종선 위원장, 부천공조 최종석 위원장, 삼신 박광규 위원장, 포스코폴스 전수문 위원장, 진로인더스트리 강웅석 위원장, 진로인더스트리 강태근 목천지부장, 삼천리기계 신경선위원장, 동아건설 류근식 지부장, 발레오테크놀로지스 이광호 위원장, LG하니셀 김원기 위원장, LG금속 설광섭 지부장, FKL동화 심수경 위원장, 쌍신전기 류재순 위원장, 대동브레이크 백중형 위원장, 수산정밀 김관태 위원장, 수산특장 이광세위원장, 삼도산업 김갑성 위원장, 상지전자 이철수 위원장, 한성산업 안성환위원장, 경신공업 강홍집지부장, 금성정경 김성종위원장, 환영철강

홍성태 위원장, 두원공조 이종각위원장, 대륙제관 강성규 위원장, 대우공업 이홍제 위원장, 진화전기 김기준위원장, 평산공업 김진호 위원장, 성일산업 김춘호 위원장, 대흥정비 오수영 위원장

대전지역본부 (17명)

김두형 의장, 국제특수금속 이홍배 위원장, 남성기공 윤익병위원장, 대성 정순남 위원장, 대성공업 김진수위원장, 대아공업 김재동 위원장, 동방의료양행 박희국 위원장, 동양금속 김희종 위원장, 중앙공업 안진용 위원장, 진합정공 이남철위원장, 정풍물산 양정규 위원장, 한국중기 나정만 위원장, 삼왕 신금교 위원장, 용암산업 김주영 위원장, 세아중기 김창구 위원장, 로음코리아 최희섭 지부장, 동양강철 김용대 위원장

부산지역본부 (11명)

오봉출 의장, 이재섭 조직국장, 연합철강 강진호 위원장, 세동산업 전채목 위원장, 성광밴드 안용길 위원장, 한창트랜스 박경덕 위원장, 부산주공 서영택 위원장, 김복식 사무국장, 한국오토강침 정운국 위원장, 대일공업 전형태 위원장, 대성사 변신섭위원장

경남지역본부 (12명)

강석수 의장, 세방전지 김화수 위원장, 세아제강 윤종삼 지부장, 한국GMB 유재현 부위원장, 미진금속 김철식 위원장, 창원기화기 조용환 위원장, 고려퍼이프 박지환 위원장, 제일정밀 권창수 위

통큰단결은 승리를 부르는 원천!

모든 단위노조는 비상체제 계속유지

앞으로 20여일간 승패를 좌우하는 귀중한 시기!

원장, 삼우금속 최경호 위원장, 삼선공업 남상규 위원장, 태주실업 이인호 위원장, 대우기어 강현호 위원장
울산지역본부 (4명)
김복천 의장, 노대국장 노헌돈, 대한알미늄 남송희 위원장, 고려아연 조한제 위원장

대구경북지역본부(24명)
김무호 의장, 아세아농업기계 윤태길 위원장, 대동금속 김형오 위원장, 영풍제관 이성곤 위원장, 대한소결금속 이영우 위원장, 평화산업 신석근 위원장, 평화오일셀 유길호 위원장, 상신브레이크 김대용 위원장, 남양금속 조희상 위원장, 대한중석 이용대 위원장, 아세아산업 이희도 위원장, 삼성제침 주대화위원장, 동해전장 정한근 위원장, 경동산업 정영욱 위원장, 영진 권태훈 위원장, 평화발레오 서윤배위원장, 평화정공 김순창, 일지산업 나영섭 위원장, 평화크랏치 김영국위원장, 화신 윤승오 위원장, 신아금속 손순석위원장, 화신테크 조동권 위원장, 세왕금속 이동구 위원장

포항지역본부 (13명)

백중부 의장, 동일철강 김형복위원장, 동성철강 양성용위원장, 세아제강 박철우

위원장, 세아특수강 김병수 위원장, 그린산업 강학중 위원장, 조선선재 전문중 위원장, 현대종합금속 기도론 위원장, 흥화공업 장세중 위원장, 한금 오정희 위원장, 한국주철관 김말택 위원장, 화성기업 김무석위원장, 포철산기 강기태위원장

구미지역본부(3명)

고려전기 이명희 위원장, 일성기계 김장수위원장, LG전자 천광희 구미1지부장

광주전남지역본부(12명)

정기춘 의장, 사무국장 신용석, 일진산업 강성찬위원장, 금성기계 문병주위원장, 부국산업 김동인위원장, 남선선반 김동희 위원장, 세방전지 이광우 광주지부장, 서울차체 김형곤 광주지부장, 한국번디 고주선 광주지부장, 한천기공 구명주위원장, 하남전자 박기출위원장, 한국알프스 조삼담 위원장

전북지역본부(7명)

백병기 의장, 기아특수강 이정석위원장, 희성전선 강철순 지부장, 동양기업 양남용위원장, 한화기계 김택수 지부장, 대봉전선 김두환 위원장, 신영 한상대 위원장

12월 18일 13시 현재,
연맹 투쟁본부

집계사항 201명!

16일 중식시간

규탄집회 개최

16일 1시간 시한부 파업이 유보됨에 따라 중식시간 규탄집회가 진행되었다.

아래는 연맹 투쟁본부로 보고된 규탄집회 개최 사업장이다. 이 이외에 보고되지 않은 사업장을 감안한다면 그 규모는 더 될것으로 판단된다.

발레오테크놀로지스(위원장: 이광호/ 충남), LG하니엘(위원장:김원기/ 충남), LG금속(지부장:설광섭/충남), 경신공업(지부장:강홍진/ 충남), 금성정공(위원장:김성중/ 충남), 환영철강(위원장:홍성태/ 충남), 대륙제관(위

원장:강성규/ 충남), 대우공업(위원장:이홍재/충남), 평산공업(위원장:김진호/충남), 성일산업(위원장:김춘호/ 충남), 동양철관 (위원장:양시준/충남), 동일알미늄(위원장: 박종선/충남), 삼신(위원장:박광규/충남), 포스코홀스(위원장:전수문 / 충남), 진로 인더스트리(본조 위원장:강용석, 강태근 지부장/충남), 동아건설(지부장 류근식/충남), 대동브레이크(위원장:백중형/충남), 수산정밀 (위원장: 김관태 / 충남), 수산특장(위원장:이광세/충남), 삼도산업(위원장:김갑성/충남), 부천공조(위원장:최종석/충남), 두원공조(위원장:이종각/충남)

이상은 연맹 투쟁본부로 보고된 규탄집회 개최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16일 오후1시 일부 사업장에서는 실제로 시한부파업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의 K공업과 P사업장에서는 16일 1시간동안 파업을 전개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



금속노련속보

발행인 : 유재섭
 편집인 : 정창영
 주소 :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전화 : (02) 864-2901
 팩스 : (02) 864-0457
 천리안 ID : FKMTJUNO

1997년 2월 22일(토) 제7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주요소식 본노련 임금인상률 12.4% 결정

임금인상률 12.4%(통상 92,567원) 결정

주42시간·고용안정 쟁취, 노총중심으로 한 공동임투 결의
 노동법개정으로 인한 임금손실분은 법개정후 다시 결정

본노련은 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본노련회의실에서 임원·지역본부의장회의와 오후 2시부터 열린 제118차 중앙위원회 및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97년도 임금인상률 12.4%와 임투방향을 결정했다. 또한 5월 정기대회의전까지의 97년도 가예산 수립과 회계처리규정, 여비지급규칙 등에 관한 개정안 심의가 있었다.

이날 금년도 임금인상률은 최근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12.4%(통상임금 92,567원)로 결정했다.

또한 노동법개정으로 인한 임금손실분요구 및 교섭권위문제등은 노동법개정추이를 지켜보면서 추후 별도의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금년 임투의 방향과 목표는 생활

임금확보, 노총을 중심으로 한 공동임투, 주42시간·고용안정 쟁취, 노동법개약에 따른 임금손실분 요구 및 단협갱신요구 등이다.

한편 본노련의 임투지원활동은 작년 11월-1월 임투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2월말까지 임투자료집과 임투지침서를 제작배부하며 3월초 임투지원 전국순회교육, 4월-7월 지역별 임투결의대회, 임투쟁의사업장 방문 등, 8월말 임투평가회 개최

본노련 '93-'96노동판례집 발간

본노련은 1월말 노동판례집을 발간하였다. 지난 93-96년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엮은 이 판례집은

91년, 93년에 이어 세번째 작업이다. 2월중 25일 발간되는 임금자료집과 함께 배포될 것이다.

전국순회 '97임투교육 실시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정세와 전망(유재섭 본노련 위원장) ▲연맹 '97임투지침해설(정문주 본노련 조사통계차장) ▲임금요구안작성 및 임금교섭(김순호 본노련노사대책국장)

■ 금속노련 충북본부 대의원대회

26일 14시 지역본부강당

■ "올바른 노동법개정촉구결의대회"

22일 14시30분 온양온천역광장, 충남지역본부·노총아산지부 공동주최

본노련 97년도 전국순회 임투교육 일정

일자	일시	대상지역	장소
3/5(수)	13:00-17:00	대전,충남북,광주전남,전북	노총대전본부강당
3/6(목)	13:00-17:00	대구,경북,구미,포항	금속대구본부강당
3/7(금)	13:00-17:00	부산,울산	노총부산본부강당
3/10(월)	13:00-17:00	경기전지역	노총안양지부강당
3/11(화)	13:00-17:00	경남전지역	노총경남본부강당
3/12(수)	13:00-17:00	서울,인천,강원	금속노련강당

< 단위노조소식 >

- 25일 화산대회(11시)/고려야연대회(11시)/동원금속(경산)대회(14시)/효성기계대회(15시)/평화정공총회(16시)
- 26일 삼화전기대회(11시)/덕양산업대회(11시)/세방전지대회(14시)/신호스틸대회(15시)/오토평대회(15시)
- 27일 이천전기대회(10시)/대기산업총회(11시)/이화다이아몬드총회(14시)/대한제당대회(14시)/LG전자부품대회(10시)
- 28일 맥슨전자대회(14시)/서울제강대회(14시30분)/LG기공대회(16시)



금속노련특보 <노동법개정>

1996년 7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유재섭

이것도 '삶의 질' 향상인가?

정리해고제 → 고용불안 조래, 노조 약화
변형근로제 → 잔업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삭감
파견근로제 → 인신매매·중간착취 합법화, 노조 약화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 '삶의 질' 향상

한국은행이 금년 4월에 발표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추이와 1만달러 시기의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는 비록 '선진국'이나 복지수준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3년도에 '건설의 망치소리'가 울려 퍼진 이래 우리나라의 GNP는 167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1인당 GNP 1만불 시기의 각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우리나라가 60.7%인데 비해 미국은 73.8%, 일본 68.9%, 대만 65.2%로 우리나라가 제일 뒤떨어진다. 또 같은 시기의 주당 노동시간을 보면 우리나라가 50시간인데 비해 미국 40.4시간, 일본 41.7시간, 대만 47.2시간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길다.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이 지금 듣고 있는 북장터질 소리는 무엇인가? 바로 '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고 휴일 휴가수가 너무 많다는 것,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우하면서도 근로의욕이 낮다고 기회만 있으면 포아대고 밥을 고쳐야 한다고 국민을 부추기고 있다.

기업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정부 경제부처

기업처럼 정부 경제부처들은 기획만 있으면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파견근로제, 파트타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9월에는 통산부가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를 죽이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법'의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파견근로제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노동계의 일치된 반대로 결국 국회에서 폐기되었다. 그런데 노사관계개혁작업이 한창인 지금 재경원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보고에서 이들 악법을 다시 도입할 방침임을 밝혀 노동계뿐만 아니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도 반발까지 샀다. 그러자 대통령이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모든 문제를 논의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재경원장이나 통산부장관은 여전히 이들 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열심히 밝히고 있다.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파견근로제란?

정리해고제란 기업이 필요할 경우 감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노동자의 목소리는 파리목숨이 된다. 특히 임금수준이 높은 중고령 노동자나 노조활동으로 미운털이 박힌 사람들은 단칼에 날아갈 것이다.

변형근로제란 1주나 한달의 노동시간을 평균하여 8시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일거리가 많을 때는 전업수당 안주고 일을 시키고 일거리가 없을 때는 평균임금 70%를 주도록 되어 있는 휴업수당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임금이 줄어들게 되며 결국 평균임금도 줄어들어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산재세의 휴업급여나 퇴직금이 줄어든다. 또 일하는 시간이 들쭉날쭉해 사회생활이 지장받는다.

파견근로제란 사람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사업에 허가장을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가능한 한 정식 사원수를 줄이고 대신 파견근로제를 이용해 고용이 불안해지며 조합원수도 줄어들고 조합원은 파업을 해도 파견근로자들이 대신 일하기 때문에 파업의 약발도 별로 나지 않게 된다. 또 파견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가능한 한 이윤을 많이 남기려 할 것이므로 중간착취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에도 손해

이들 악법이 도입되면 단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될 것이다. 이 악법이 도입되면 우선 노동자들은 분노할 것이다. 협력할 마음도 근로의욕도 사라질 것이다. 또 정리해고든 변형근로제든 '애사심'이나 '기술·기능숙련'과 정면 배치된다. 동료가 쉽게 목찰리는 것을 보면서 어찌 자신의 장래를 그 회사에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겠는가? 파견근로자들이 자기가 파견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할 턱이 있겠는가? 또 그런 와중에 무슨 '기술·기능숙련'이 가능하겠는가? 기업은 차라리 노동자에게 성의를 다해 인간적 대우를 함으로써 노동자의 근로의욕이나 애사심을 높이고 또 회사가 어려울 때는 서로 상의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서양의 노동자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우리의 요구 *

- 정부는 정리해고제 도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모든 해고에 대해 사전에 노동자 대표에게 통보하여 노사협의하에 실시도록 하라!
- 정부는 변형근로제 도입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주40시간 노동제를 도입하라!
- 정부는 중간착취형식의 파견근로제 도입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정리해고·변형근로·파견근로제 도입시도 즉각 철회하라!



금속노련특보 <경제위기론>

1996년 9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유재섭

‘경제위기론’을 기치로 한 공세를 경계하자!

- 사용자측의 악용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

또 노동자만 동네북이 되고 있다. 일 해주고 뺨맞고...

지난 8월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바뀐지 한가지가 크게 바뀌었다. 7월만 하더라도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대통령이 단언했는데 9월이 되자 경제위기라고 부총리가 진단했다. 그리고 ‘9·3경제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임금억제와 임금체계 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이다.

정부발표가 있자 3일 뒤에는 전경련이 30대 그룹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임금총액 동결’을 결의했다. 임금이냐 감원이나의 선택을 강요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

분위기는 매우 과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개정에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근로자 파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었는가 하면 어떤 그룹의 모사장은 “오늘의 경제위기는 대항해고가 일어난 후에야 해결될 문제”라고 극단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언론들도 일제히 임금이 너무 높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면서 임금억제와 감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대량생산하고 있다.

끝없이 재발되는 고질병. “임금이 경제위기의 주범”이라는 주장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관료의 저의 독점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은 ‘경영권’이라는 미명하에 경영자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 노동자는 그 틀 안에서 시키는 대로 코박 코박 일만 할뿐이다. 때문에 경제위기의 대부분의 책임은 경제관료나 경영자가 져야 한다.

물론 임금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임금이 거대한 불로소득이나 지하경제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가? 임금은 한편으로는 노무비용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사기에 영향을 미쳐 생산성과 품질개선에 영향을 준다. 모두가 ‘임금’을 공격하고 있을 때 한 그룹의 회장은 ‘품질만 있으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과연 임금이 그토록 문제였는가? 91년부터 95년까지 볼 때 부가가치증가율은 15.8%였는데 1인당 인건비 증가는 14.0%였다. 뺄셈을 만든 과일중 노동자의 몫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91년도에 54.3%이던 노동소득분배율이 매년 계속 떨어지고 있다. 95년에는

47.7%로 95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했다. 제조원가 중 노무비도 91년 11.6%에서 95년 10.8%로 감소했다.

대· 90년대 노동자의 몫은 떨어지고 노무비 비율은 줄어듦

항 목	연 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인당 부가가치증가율		15.2%	12.6%	14.0%	18.1%	19.2%
1인당 인건비증가율		18.8%	12.0%	10.5%	15.7%	12.8%
노동소득 분배율		54.3%	54.1%	52.6%	51.2%	47.7%
노무비 비율		11.6%	11.7%	11.6%	11.5%	10.8%

(자료출처: 한국은행)

새로운 반노동자적 공격의 시작. 법개악·임금억제·감원을 위해

경제가 어려워면 책임자가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에게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반성과 협력요청이 아니라 책임전가와 협박이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위기론은 어떻게 악용될 것인가?

첫째, 지금 진행중인 노사관계개혁의 방향을 완전히 반노동자적으로 바꾸어 정리

해고나 파견근로제 변형근로제를 도입하려 할 것이다.

둘째, 공격적인 감원을 해 나갈 것이다.

셋째, 내년도 임금교섭시 임금을 억제하고 능률급 성과급 등 임금체계 개편을 공격적으로 개시할 것이다.

노동자도 경제 외면 않는다. “제발 사기 좀 죽이지 말라!”

경제가 어려워면 결국 그 피해자는 노동자다. 경제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노동자는 없다. 사장이 부도내고 도망치면 그 회사를 살려내는 것은 결국 노동자가 아니었는가? 그럼에도 노동자를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단정하면 사장은 백관심도 달라질 것이다.

같은 갈등 갈등이 꼬리를 물 것이다.

제발 노동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발상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진정한 경제위기의 처방이 될 것이다.

총체적 반노동 공세, 총단결로 물리치자!



11만 함성으로 경고, “노동법 개악 절대 불가” ‘총파업투쟁’과 ‘대통령 선거투쟁’ 선언



▶ 11. 24 노총 여의도 집회. 전국 방방곡곡에서 11만명, 우리 금속노련 조합원은 2만명이 모여 정부와 자본의 일방적인 노동법 개악기도를 규탄했다



왜 11만명이 모였는가?

노동법개악을 막기 위해서

왜 정부는 일방적 노동법 개악을 기도하는가?

노동자가 분열되어 싸울 힘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투쟁은 승리할 것인가?

반드시 승리한다

여의도 집회에 모인 11만명의 함성이 그 증거다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가?

모든 노동자가 반노동자적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고 하면 된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령탑인 노총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정부와 자본축이 우리의 일거일동을, 우리가 사령탑의 지시대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감시하고 있다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정부와 정당, 자본축은 우리를 겁내게 된다

서명 및 투쟁기금 모금운동에 적극적 동참을 호소합니다



금속노련특보

(노동법개악 저지투쟁)

1996년 12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유재섭

“흑시나” 했더니 “역시나”

정부 노동법 개정안, 기업익권 완전 반영

법[이]대로 개정되면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없다

법으로는 정리해고 사유와 절차를 두고 있지만 사실상 어떤 경우든 정리해고 가능하다. 또한 노조나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협의’란 ‘합의’와 달리 기업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은 고임금자인 말인들은 사람, 노조활동에 앞서는 사람을 잘라내고 근로자 고건법이나 파견사업법이 보장하는 비정규직 인력을 쓰게 된다.

법[이]대로 개정되면 노동자 임금도 삭감된다(노동부·연간 29조원)

변형근로에 의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업수당이 줄어들고 휴업수당 자체도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어 연월차용기의 강제사용으로 연월차용기 수급도 감소할 것이며 정액행위에 대한 무임금 적용으로 정액기간에 대해 한 톨도 못받게 된다. 정리해고 제에 의한 간헐과 저임금의 비정규직 사용으로 노무비가 더욱더 삭감된다. 전임자 임금도 없어진다고 기업주의 주머니로 연간 29조원 이상이 들어간다.

법[이]대로 개정되면 정액행위는 효과가 거의 없어진다

정액기간종료 대체고용을 하거나 하청으로 때내어버리는 것이 가능하여 유년은 숨의 경우 새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액행위 해도 안에서는 기계가 그대로 돌아간다. 또한 정액행위 해도 살아있는 건 노동 조실조심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행위가 된다. 정액기간종료 임금도 무방하고 발령이 지연 법안이 되기 때문에 자기 저축을 까먹으면서 정액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주들은 교섭할 때 양해를 하지 않으려 하고 정액하라면 하라고 다리를 뻗게 된다.

법[이]대로 개정되면 도주는 더욱 악화된다

정리해고 파견근로, 파견사업제 도입으로 인해 조합원수는 더욱더 줄어들고 전임자 임금이 지금도 지 없음을 따라 조합비로 전임자 급여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노조의 활동자금도 빈약해진다. 또 정액행위의 효과가 거의 없어짐에 따라 노조의 힘도 약화되고 그에 따라 조합원의 조합이탈현상도 심해질 것이다.

법[이]대로 개정되면 정부의 민주화는 정체를 띤다

정부가 민주화되면서 공무원들의 노조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리, 부정행위가 감도 땅기질 수 있다. 또한 교육이 통치자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노조가 보장되어야 한다. 교원을 노조가 아닌 교원단체로 조직하려 하는 것은 일반 노조와 교원단체의 힘을 동시에 약화시키게 된다. 교원들의 노조로의 조직은 커나가는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산 교육이 되는데 그 가능성이 차단되고 있다.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 1 단계 : 법개악 이전의 단계

노총의 결의와 지시에 따라 100%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제 2 단계 : 법개악 이후의 단계

'97년 하반기 임박과 경찰개혁 고용노동장 정치 미관과 임금삭감률 보충을 위한 단계이다.

세금에 전조치가 미진하여 총파업을 위한 공동행동을 마련해 간다.

'97년 하반기 법개악에 협조한 정당 및 정치인들을 응징하기 위한 정치교섭과 대동행

선거투쟁을 전개한다.

전 계 계 미조직 사업장 조직

현행노동법과 개악된 정부안 비교

조 문 영	현 행	개 악 안	노동자익권 미치는 영향
유고노동 무임금	노조나 합의에 따라 정리해고 할 수도 있고 연월 수도 있음	정리해고 사유를 제한해서 노조나 합의 없이도 정리해고 가능하게 함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조를 무력화함
변형근로제 도입	노 44-1 조로 변형근로에 의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업수당이 줄어들고 휴업수당 자체도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다	변형근로에 의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업수당이 줄어들고 휴업수당 자체도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다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조를 무력화함
정액기간종료 대체고용	정액기간종료 대체고용을 하거나 하청으로 때내어버리는 것이 가능하여 유년은 숨의 경우 새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액기간종료 대체고용을 하거나 하청으로 때내어버리는 것이 가능하여 유년은 숨의 경우 새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조를 무력화함
정리해고 대폭완화	정리해고 사유를 제한해서 노조나 합의 없이도 정리해고 가능하게 함	정리해고 사유를 제한해서 노조나 합의 없이도 정리해고 가능하게 함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조를 무력화함
연월차용기 수급도 감소	연월차용기 수급도 감소	연월차용기 수급도 감소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조를 무력화함
정액기간종료 임금도 무방	정액기간종료 임금도 무방	정액기간종료 임금도 무방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조를 무력화함
교원들의 노조로의 조직은 커나가는	교원들의 노조로의 조직은 커나가는	교원들의 노조로의 조직은 커나가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조를 무력화함

행동통일 총력투쟁으로 노동법개악 저지하자!



개정노동법, 무엇이 달라졌는가?

개정노동법은 노동자 권익 무시한 악법. 전노동계 요구 목살한 정치권 아합의 산물!

노동조합결성관련 조항

-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은 따로 법으로 정함
- 기업별 복수노조는 2002년부터 인정하되 나머지 복수는 바로 인정함

전임자 임금의 단계적 삭감 및 지급금지

- 2002년부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며 2001년까지는 노사협의에 의해 단계적인 삭감을 위해 노력토록 하고 있으며 삭감된 금액은 노조재정지급금으로 활용토록 함
- 앞으로 서로 결성되는 노조의 경우 지급부터 전임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음

해고자 조합원 자격은 중노위 판정까지만 유지

- 해고된 조합원이라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내고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내면 대법원 확정 판결시까지 조합원자격이 유지되었으나 새로운 법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시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음

노동조합운영관련 조항

- 총회(대의원회)공고기간 : '15일'을 '7일'로 단축
- 대의원임기 : '1년'을 '최고 3년'으로 연장(3년내에서 규약으로 정함)
- 임원당선 종전에는 '선거인 과반수'를 획득해야 했으나 이제 1차투표에서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2차투표에서 최고득점자가 2인을 놓고 결선투표를 하여 과반수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다수 득표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함
- 2개이상 노조에 전임으로 겸직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철폐

쟁의권 관련 조항

-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하여만 쟁의를 할 수 있음(단체협약의 해석, 이행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함)
- 노조의 공식 결정없이 조합원 의의로 하는 쟁의행위는 불법
- 파업중 비파업자의 정문출입을 강제로 막는 것은 위법
- 파업중이라도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계속해야 함
- 방산의 경우 전력, 용수, 방산물자의 원소에 필요한 제초, 가공, 조립, 정비, 재생, 개량, 성능검사, 열처리, 도장, 가스취급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할 수 없음
-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 전기·전산·통신시설, 철도의 차량·선로, 건조·수리·정박중인 선박(선원은 무방), 항공기·항공보안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화물·화물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보관·저장 장소
- 쟁의행위기간중 타회사 노동자를 임시채용하여 파업노동자의 일을 대신 시키지 못하며 파업부서의 일을 하청할 수 없음
-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 조정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을 더 연장할 수 있음)이 지나야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음

정치활동금지조항삭제

- 노조의 정치활동이 완전히 가능하기 위해서는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이 아울러 고쳐져야 함

단체교섭권 관련조항

-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명시
- 협약조인전 조합원 인준투표가 불응될 경우 생략 가능
- 임금협약 최장 유효기간을 1년내에서 2년내로 연장(2년내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함)
-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라도 노·사 어느 일방이 협약을 새로 갱신하려 하면 자동연장의 효력이 없어짐
- 교섭권 위임 : 위임의 범위를 한정해 위임할 수 있으며 종전처럼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정하지 않음

근로조건 관련조항

여러 개정법들이 단체협약보다 못함 경우는 단체협약이 적용됨.

- 정리해고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시, 노사협의로 결정한 바에 따라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후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행해야 함
- 변형근로제 1 :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의해 2주단위 88시간 범위내에서 한주에 48시간까지 잔업수당 없이 근로를 시킬 수 있음 노동부장관은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의 제출을 기업에 요구하거나 확인할 수 있음
- 변형근로제 2 : 노사간 합의가 있을시 1월 이내의 범위내에서 특정주에 56시간까지 잔업수당없이 근로를 시킬 수 있음 노동부장관은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의 제출을 기업에 요구하거나 확인할 수 있음
- 파트타임(단시간 근로) : 처우, 주휴, 생리휴가는 완전히 주휴 연월차는 시간비례로 지급 주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주휴, 연월차 휴가 규정을 적용함
- 퇴직금 중간청산제 : 퇴직이전이라도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시 퇴직금을 중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퇴직금 정산을 위한 근속년수계산은 중간청산일 이후부터 계산함
- 휴업수당 : 평균임금 70%로 하되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 100%보다 많은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함

노사협의의법률관련조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 설치외무사업의 범위 :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을 '3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함
- 근로자 과반수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종전처럼 노조가 노조측 노사협의위원을 위촉하나 과반수가 안되는 경우는 전출위원이 선출
- 협의위원의 임기는 '1년'을 '3년'으로 연장
- 협의회의 의결 의무사항이 의결되지 않을시나 의결사항의 해석, 이행에 다툼이 있을시에는 노사협의로 결정한 자에 의한 중재로 결정할 수 있음
-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키지 않을 때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금속노동자 하나되어 노동계통합 이룩하자!



금속노련특보 (개정노동법 대응)

1997년 4월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유재섭

개정노동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노동계 대통합으로 노동법재개정투쟁 전개! 산별노조 만들어서 노동자 정치역량 강화하자!

노동법재개정투쟁을 전개하자!

날치 기 노동악법에 대한 우리 노동자의 패기는 총파업투쟁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은 재벌의 눈치를 보는 여의의 정치적 흥정 속에서 별 개선없이 끝났다. 정리해고, 신규조직사업장의 전임자임금 등 조항에 따라서는 더 악화된 부분도 있다.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적 힘을 강화하여 차기정권개치는 기필코 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

단체협약작성기초새로온대응장치를 마련하자!

노동 법 개악에 따라 각 기업들은 단체협약을 개악시키기 위해 형편없는 안들을 내놓고 공격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기업의 백인 정부가 청사가 없어 본격적인 공격이 없을 수 있으나 새 정부가 들어선 새 정부의 힘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공격을 해줄 것이다. 또 금년도의 경우에도 경제위기의 선봉이 국민에게 먹히면 거세게 공격해줄 것이다. 우리 노동자는 마음 단단히 먹고 이 공세를 물리쳐야 하며 또 정리해고나 변형근로제 등 도입에 따른 대응장치를 단체협약에 못박아야 한다.

신규조직에 박탈을 가하자!

현재 조직률은 14%로 인되고 그것도 두껍기나 있다. 노동조합이 정부나 사용자로부터 무리시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머리숙자가 많이 있다. 조직률이 적어도 20~25%는 봐야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시기는 노조를 조직할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이번 노동법 개정으로 노조가 없는 곳은 노동조건이 개악되고 고용이 불안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이들 노동자를 노조로 이끌어내야 한다.

노동자의 정치역량을 절대적으로 강화시키자!

차기 정권까지 노동법을 다시 고치려면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자의 단결된 실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일급역제, 고용안정, 단체협약개악을 앞으로 있을 총자본축의 대대적인 공격을 막아내려면 노동자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기업편을 들기 쉽고 또 지금은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영문도 없다. 정부가 완전히 기업편이 되어 주면 노동자는 공격을 감당해 낼 수가 없다. 따라서 노동자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노동자의 투쟁은 고립될 것이며 승리의 길은 험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총파업투쟁을 통해 노동자 단결의 위대성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대통령도 고개숙이게 만들었지 않았겠는가? 이 산정함을 바탕으로 정치역량 강화에 총력을 집중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정치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중앙의 결정에 따라 표를 모으겠다는 각오가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운동원으로 열심히 뛰어야 한다. 이번 인선의 보결선거는 노동조합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지금부터 조합원을 교육하자! 지역간집국복운동을 전개하자! 후보들에게는 공개적으로 요구하자! 노조의 선거명칭을 정하여 실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모두가 껌뻑 놀라도록!

노동법강화하고노동계통합을앞당기자!

정치 전선 강화를 위해 노조를 강화시키자! 현재의 기업별노조체제하에서 기업별 단위노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단위노조만 눈에 들어오지만 기업별 노조가 버릴 수 있는 것은 뒤에 보이지 않는 전국적 노동자의 단결과 노조 산별연맹, 지역조직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런 뒷 배가 있어도 다 해낼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막상 백이 없어지면 기업단위노조는 버티기에도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있을 총자본의 공세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공세를 막고 법도 다시 고쳐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기업지원에서 벗어나 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회기행투쟁 제도개선투쟁을 통해 얻어야 한다. 이번에 대통령이 고개 숙인 것은 노동자가 전국적으로 하나가 되어 투쟁했기 때문이다. 마음으로는 조직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노동조합에 박자를 가해야 한다.

산별노조체제구축하고금속노동자의통합을이루어야!

노동 운동이 힘을 발휘하는 외국서는 기업별 노조를 어용노조라 하여 노조취급도 않는다.

노동자가 산별별로 전국 단위노조를 만들지 않고 기업별로 쪼개져 있으면 힘쓰기도 어렵고 총자본과 정치권력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상적 목표가 아니라 당장 살기 위해서 산별별 노조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행법으로는 5년이 되면 노조 전임자의 임금이 없어진다.

전임자가 없어지면 현실적으로 많은 노조들이 무너져가나 유령무실해질 것이다. 더구나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노조들은 지금부터 아예 전임자임금이 없어진다. 노조를 만들어도 전임자가 없으면 노조를 지키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살기 위해 산별로 가야 한다. 단장이라도 각 지역본부 직속의 지역별 노조를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신규조직의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다.

산별노조 구축을 위한 지혜를 하루 빨리 모아 구체화시켜 나가자! 또한 지금 내조기기가 나오는 금속노조들을 통합시키자!

선진국 어느 나라든 금속노동자의 통합없이 노동운동의 발전은 없다.

금속노동들이 하나로 통합되면 힘이 막강해진다. 그래서 정부나 사용자들은 금속노조를 자동화, 철강, 전기전자 등 소산별로 쪼개려고도 해왔다.

우리는 앞당기를 만지는 모든 금속노동자가 하나의 것발아래 뭉치는 대산별노조를 주장한다. 이것만이 금속노동자를 힘있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노조의 재정자립방안을강구하자!

설사 산별체제가 되더라도 기업단위에 노조 전임자가 있어야 한다. 노조운동의 생명은 바로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조직해내는 활동가가 없으면 안된다.

그래서 산별노조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도 산하 각 현장에 직장위원들 활동가들을 두어 현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파업을 해도 대부분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파업기금을 조성하고 아울러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자.

이번 법개정에는 노·사·장이 기금형성에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전임자임금금지금지 조항을 없애주었다.

따라서 사내 자판기 사업 운영, 회사 고철 인수, 기금형성을 위한 회사의 기부 기타 증원된 대상의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파업기금을 형성하는 등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해나가야 한다.

경영진의주체적협력을강요할기회를강화하자!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 고용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경쟁이라는 현실이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다.

기업주가 굶든 믿든 '경쟁'은 노동자의 현실이기도 하다.

경쟁에서 낙오하면 그 불안은 가장 먼저 노동자에게 떨어진다.

무도화 폐업, 집원, 공장의 해외이전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생존권 박탈로 다가온다.

따라서 노동자도 경쟁을 남의 일로 무시할 수가 없다.

이제 우리 노동자도 억지로 하는 일장이 아니라 주체적 입장에서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와 사용자 언론이 파묻는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경영자의 잘못도 무엇이 지적하고 고쳐나갈 수 있으며 노조의 주장이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무시되지 않을 것이다.

또 노조가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면 기업도 노조와의 대화를 보다 공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노조의 경영참가도 보다 쉽게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노동계통합 없이 노동운동의 발전은 없다!

여 성 . 문 화 활 동

목 차

◦ 평가 및 개선방안

1. 여성취업실태에 관한 남녀 조합원의식조사
2. 전국여성노동자 대회 - 노총주관 -
3. I.M.F 여성 워크숍
4. 회의활동 및 각종토론회
5. '97 3. 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 노총주관
6. 노동문화 지도자 양성교육
7. 노동가 테이프 3집제작

평가 및 개선방안

1987 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이후 여성노동자들의 임금, 근로조건, 교육훈련, 승진 등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내용을 홍보 및 교육에 힘입어 여성노동자들의 의식이 높아졌다.

특히 90년대 들어 산업구조의 변화속에서 여성의 인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여성노동자들의 사회참여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연맹산하 여성노동자들의 수요는 한국기업의 외국으로 투자, 중소기업의 폐업등으로 인하여 감소되었으며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낄수 있는 변형근로제, 임시직, 파견제등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바탕으로 향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것이다. 여성국에서는 '96년도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세웠으나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한점을 스스로 반성한다.

그러나 예산상의 부족으로 인하여 계획했던 만큼 결과를 거두기가 무척 어려웠다.

1. 조사연구사업 : 금속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실태조사는 연맹 독자적으로는 실시하지 못했지만 노총의 실태조사사업에 적극참여하여 금속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한바있다. 그러나 독자적인 사업으로 하지 못해 많은 사업장이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노총의 실태조사사업중 금속부분만을 정리해 자료로 제공하였다.

2. 교육활동 :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성간부 교육을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고 상집간부 전문 교육으로 대신하였다. 따라서 많은수가 참여할수 없었고 여성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노동문화 교육은 년 1회 하다보니 인원이 장소에 비해 너무 많아서 울동등 교육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전반적으로 좋았다.

3. 노동가테이프 제작 : 노동악법 철폐 투쟁으로 조합원의 단결력 고취와 투쟁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집회 및 교육에서 많이 부르는 노동가로 제 3집 제작을 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든 노래가 없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제작된 노동가 테이프를 무료로 배부하지 못하고 제4집 제작을 위해 유상판매를 했다.

개선방향 : 예산상의 문제로 이미 계획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수 없었다. 여성임원 및 여성위위원 세미나 여성극기 훈련 노동문화제등이 그것이다. '97년도 사업계획을 만들때 여성관련단체 협약 분석 설문조사분석을 토대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좀더 효과적으로 활동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 취업실태에 관한 남녀 조합원 의식조사

1) 목 적

노동조합 운동과 여성활동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와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급변 실태조사는 급변하는 환경변화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들의 고용문제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있고 제조건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노동자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여성정책의 기본자료와 방향 수립의 토대로 삼고자 함.

2) 기 간 : 96. 9. 10 - 96. 10. 2

3) 조사방법 : ① 지역별, 업종별, 조합원수와 비례한 표본조사로 실시
② 설문지를 사용하되 설문지에 대한 조사. 담당자의 설명을 통하여 직접 면담방법을 택했음.

4) 참가사업장 및 인원수

적고, LG전자, 한국TDK,롯데전자, LG전자부품, 대우전자, 태평양금속, LG정보통신, 한국일선, 한국씨티즌, 한국중천, 한국카시오, 한국음향, 현대전자, 뉴맥스, 롯데알미늄, 맥슨전자, 오토론, 세진전자등 19사업장
297 명

여성취업실태에 관한 남녀 조합원 의식조사 분석결과 -주요부분만 발췌-

1. 귀하의 성은 ?

- 1) 남 (99명 33.33%) 2) 여 (198명 66.67%)

2. 귀하의 근속년수는 ? 평균 5.29년

3. 귀하는 현재의 직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평생직장으로 알고 계속 다니겠다. (74명 24.92%)
2) 직장을 옮기는것도 생각해보고 있다. (195명 65.66%)
3) 늘 옮길 생각을 하고 있다. (27명 9.09%)
4) 무응답 (1명 0.34%)

4. 어떤 조건을 특히 고려하시겠습니까

- 1) 월급이 많은곳 (30명 13.51%)
2) 근무시간이 짧은곳 (8명 3.60%)
3) 장래성이 있는곳 (113명 50.9%)
4) 출퇴근 거리가 짧은 곳 (5명 2.25%)
5) 업무량이 적은 곳 (4명 1.80%)
6)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곳 (31명 13.96%)
7) 인간관계가 좋은 곳 (22명 9.91%)
8) 노동조합 활동이 잘되고 있는 곳 (3명 1.35%)
9) 무응답 (6명 2.70%)

5. 귀하의 노조 직위는 무엇입니까

- 1) 평조합원(201명 71.28%) 2) 노조간부 (81명 28.72%)

6. 노조가 직장내에서 일반근로자들의 이익을 향상시켜 주는지

- 1) 전적으로 그렇다 (63명 21.21%)
2) 그런편이다 (134명 45.12%)
3) 그저그렇다 (73명 24.58%)
4) 그렇지 않은편 (11명 3.70%)
5) 전혀 그렇지 않다. (5명 1.68%)
6) 무응답 (11명 3.70%)

7. 노조가 직장내에서 여성근로자들의 이익을 향상시켜 주는지

- 1) 전적으로 그렇다 (40명 13.47%)
- 2) 그런편이다 (108명 36.36%)
- 3) 그저그렇다 (87명 29.29%)
- 4) 그렇지 않은편 (33 명 11.11%)
- 5) 전혀 그렇지 않다. (16명 5.39%)
- 6) 무응답 (13 명 4.38%)

8. 귀하의 노조활동의 장애요인은 무엇입니까.

- 1) 어려움이 없다. (29명 9.76%)
- 2) 집안일이 많아 노조활동에 시간을 내기 어렵다.(25명 8.42%)
- 3) 작업시간이 길고 피곤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렵다 (45명 15.15%)
- 4) 노조활동이 남자 중심이기 때문이다. (24명 8.08%)
- 5) 남편, 부모등 가족이 노조활동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6명 2.02%)
- 6) 여자가 앞장서서 일하는 것이 여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명 1.01%)
- 7) 집행부가 책임지고 잘하리라 생각되어서 (28 명 9.43%)
- 8) 집행부에 불만이 있어서 (4 명 1.35%)
- 9) 참여하려해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22명 7.41%)
- 10) 참여하려해도 무슨일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42명 14.14%)
- 11) 조합활동을 하는것이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11명 3.70%)
- 12)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것 같아서 (9명 3.03%)
- 13) 무응답 (13 명 4.38%)

9. 귀하는 조합내에 여성노동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아니오 (141 명 47.47%)
- 2) 예 (130명 43.77%)
- 3) 무응답 (26명 8.75%)

10.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조합간부들이 여성노동자들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이다.(17명 12.06%)
- 2) 여성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94명 66.67%)
- 3) 여성의 요구를 전담할만한 대표자가 없기 때문이다.(29명 20.57%)
- 4) 무응답 (1명 0.71%)

11. 노조내에 여성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1) 있다 (209명 70.37%)
- 2) 없다 (71명 23.91%)
- 3) 무응답 (17명 5.72%)

12. 여성부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대단히 활발하다 (2명 0.96%)
- 2) 활발한 편이다. (41명 19.62%)
- 3) 그저그렇다 (96명 45.93%)
- 4)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40명 19.14%)
- 5) 거의활동하지 않는다 (25명 11.96%)
- 6) 무응답 (5명 2.39%)

14. 귀하는 다음중 노조의 여성부에서 꼭해야 할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노동법개정, 구속자석방등의 정치적 활동(8명 2.69%)
- 2) 남녀 차별대우 시정 (108명 36.36%)
- 3) 탁아소 설치 (31명 10.44%)
- 4) 여성의 차별 현실에 대한 교육 (53명 17.85%)
- 5) 연애, 결혼을 위한 강좌 (7명 2.36%)
- 6) 건강, 자녀교육등에 대한 교육 (14명 4.71%)
- 7) 탈춤, 등산반등 적극성을 높이는 취미 활동 실시 (14명 4.71%)
- 8) 성.연애.결혼문제에 대한 상담 (4 명 1.35%)

- 9) 가족프로그램 실시 (2명 0.67%)
- 10) 성교육 (2명 0.67%)
- 11) 생활예절, 꽃꽂이등 교양을 높이는 취미활동 실시 (19명 6.40%)
- 12) 무응답 (35명 11.78%)

15. 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228명 76.77%)
- 2) 없다 (69명 23.23%)

16. 그러면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1) 내용까지 잘알고 있다. (8명 3.51%)
- 2) 내용을 어느정도는 알고있다. (101명 44.30%)
- 3) 이름만 들어본 정도이다 (118명 51.75%)
- 4) 무응답 (1명 0.44%)

17. 남녀고용평등법이 여성의 취업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도움이 되었다. (3명 1.38%)
- 2) 다소 도움이 되었다 (23명 10.55%)
- 3) 영향 없음. (56명 25.69%)
- 4) 다소 부정적 (118 54.13%)
- 5) 매우부정적 (18명 8.26%)

18. 귀하는 회사에서 성차별로 인한 부당한일을 당했을때 어디에 호소하겠습니까.

- 1) 노조 (174명 67.97%)
- 2) 회사내 고충처리 기구 (14명 5.47%)
- 3) 회사상사 (12명 4.69%)
- 4) 노동부 지방사무소 (13명 5.08%)
- 5) 여성단체 (36명 14.06%)
- 6) 법률상담소, 법원 (7명 2.73%)

19. 취업한 여성이 직장일과 가사, 양육의 양립이 어려운 이유는?

- 1) 아이를 맡길데가 없어서 (140명 47.14%)
- 2) 탁아비용이 부담스러워서 (22명 7.41%)
- 3) 파출부나 가정부를 구하기 어려워서 (8명 2.69%)
- 4) 파출부나 가정부에게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 5) 직장일과 가사의 양립이 신체적으로 힘들어서 (75명 25.25%)
- 6) 시부모를 돌보아 드릴수 없어서 (1명 0.34%)
- 7) 남편 출근시간이나 아이들 등교시간인 아침시간에 출근하는 것이 어려워서 (13명 4.38%)
- 8) 기타 ()
- 9) 무응답 (36명 12.12%)

20.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저렴한 비용 (62명 20.88%)
- 2) 탁아비용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 (49명 16.50%)
- 3) 자질을 갖춘 보육사 (35명 11.78%)
- 4) 안전하고 교육적인 시설 (94명 31.65%)
- 5) 출.퇴근 교통수단의 제공 (14명 4.71%)
- 6) 기타 ()
- 7) 무응답 (43명 14.48%)

21. 귀하는 탁아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국공립 보육시설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 (133 명 44.78%)
- 2) “ ” 질을 높여야 한다. (52 명 17.51%)
- 3) 소득의 차이에 따라 탁아비용을 차등화 해야 한다. (12명 4.04%)
- 4) 자녀가 두명이상일 경우 탁아 비용을 감면해 주어야 한다. (10명 3.37%)
- 5) 탁아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야한다 (23명 7.74%)

6) 육아 휴직제도의 충실 및 강화를도모 (23명 7.74%)

7) 기 타 (44명 14.8%)

22. 귀하는 생리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50명 50.51%)

2) 필요하다 (80명 26.94%)

3) 그저그렇다 (28명 9.43%)

4) 불필요하다 (1 명 0.34%)

5) 전혀불필요하다 (1명 0.34%)

6) 무응답 (37명 3.54%)

23. 생리시 작업장애를 느끼십니까

1) 예 (163명 82.32%)

2) 아니오 (28명 14.14%)

3) 무응답 (7명 3.54%)

24. 통증과 장애를 느끼는 기간은 어느정도입니까

1) 1 일 (60명 36.81%)

2) 2-3일 (95명 58.28%)

3) 4-6일 (5명 3.07%)

4) 7일이상 (2명 1.23%)

5) 무응답 (1명 0.61%)

25. 작업장애를 느끼신다면 어떤 장애를 느끼십니까

1) 집중이 안돼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83 명 50.92%)

2) 서서 일하기 힘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가 힘들다 (82명 50.31%)

3) 일하기가 더 힘이든다 (91명 55.83%)

4) 화장실 출입이 잦아져 불편하다 (98명 60.12%)

- 5) 피로감이 쉽게 느껴진다 (112명 68.71%)
- 6) 물건들이기가 힘들다 (49명 30.06%)
- 7) 작업량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52 명 31.90%)
- 8) 아예일을 할수가 없다 (12 명 7.36%)

26. 생리휴가가 있습니까

- 1) 있다 (188명 94.95%)
- 2) 없다 (1명 1.01%)
- 3) 잘모르겠다 (8명 4.04%)

27. 생리휴가를 휴가로 사용하십니까. 수당으로 받습니까

- 1) 휴가로만 쓴다. (16명 8.51%)
- 2) 수당으로만 받는다 (63명 33.51%)
- 3) 주로 수당으로 받고 가끔 휴가로 사용한다. (92명 (48.94%)
- 4) 주로 휴가로 사용하고 가끔 수당으로 받는다 (17명 9.04%)

28. 1년에 몇회정도를 생리휴가로 사용하십니까

- 1) 12 회이상 (7명 3.72%)
- 2) 9-12회 (8명 4.26%)
- 3) 6-9회 (25명 13.30%)
- 4) 3-6회 (37명 19.68%)
- 5) 3회미만 (48명 33.51%)
- 6) 수당으로 (63명 33.51%)

29. 생리휴가를 생리시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생리휴가를 사용한다. (18명 9.57%)
- 2) 생리시 고통이 크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다 (67명 35.64%)
- 3)휴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리휴가를 필요시 적절히 사용한다.(62명 32.98%)
- 4) 수당으로 받기 위하여 참는다 (27 명 14.36%)
- 5) 무응답 (14명 7.45%)

30.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할때 나타날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심한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설수없다(91명 48.40%)
- 2) 임금총액이 줄어들어 생활이 더 어려워진다. (17명 9.04%)
- 3) 생리휴가 무급화로 월차.연차휴가등 다른휴가도 점차 없어질수있다.
(69 명 36.7%)
- 4) 건강한 2세 출산에 장애가 될수 있다. (2 명 1.06명)
- 5) 무응답 (9명 4.79%)

2. 전국여성노동자 대회 - 노총주관 -

1) 대회목적

여성노동운동의 민주화를 성취하고 여성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경제 안정을 위한 고용안정, 모성보호, 탁아시설확충을 위하여 총력을 강화하고 단결의 자주성을 확보한다.

2) 대회 주제

“ONE + ONE 여성의 힘”(조직확대)

- 고용안정, 모성보호, 탁아시설 확충

3) 대회 개요

- ① 대회명 : '96 전국여성노동자 대회
- ② 일 시 : 1996. 10. 11(수) (14:00 -17:00)
- ③ 장 소 : 노총 대강당
- ④ 참석자 : 거평시그네텍스 위원장 외 136명 참석
- ⑤ 표 창 : 공로상 현대전자 여성부장 강경민
정무2장관상 LG전자 여성부장 최유경

4) 노동가 경연대회

최우수상 : 현대전자 나선주외 8 명
참 가 상 : “ 허장우외 11 명
참 가 상 : IG모타 박미숙 외 3 명

3. I.M.F 여성워크숍

- ① 일 시 : 96. 10. 28. (월) - 11. 1 (금) (4박 5일)
- ② 장 소 : 아카데미 하우스(수유리)
- ③ 참가국 : 독일, 일본, 태국, 한국
- ④ 참석자 : 한국중천 위원장 외 7명
- ⑤ 주요내용
 - 노사관계발전
 - 독일의 노사관계
 - 노동조합의 여성노동자 조직화 방안 및 경험
 - 노사관계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 노동권과 여성권
 - 여성노동자의 조직화 및 여성권 개선의 방안과 수단
 - 여성노동자의 조직화 및 여성권 개선에 대한 I.M.F에 정책건의

4. 회의활동 및 각종 토론회

1) 노총 여성국 회의

- ㉠ 일시 : 1996. 4. 4. (14:00)
- ㉡ 장소 : 노총 7층 회의실
- ㉢ 안건 : ① 노총 여성위원회 제6차 회의에 관한 사항
 - ② ICFTU-APRO지원 제2차 여성노동문제 포럼의 건
 - ③ 기타토의사항

2) 노총 여성위원 회의

㉞ 일시 : 1996. 5. 6 (월) 14:00 - 17:00

㉞ 장소 : 노총 7층 회의실

㉞ 안건 : ① 노총 여성위원회 규정검토에 관한사항
② 노총여성위원회 총회 개최에 관한사항
③ 기타토의

3)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안) 의견수렴회의

㉞ 일시 : 1996. 5. 28 (화) 14:00

㉞ 장소 : 노총 6층 여성국

㉞ 안건 : ① 여성발전 기본법 시행령(안) 검토 및 의견개선
② 기타토의

4) 노사관계 개혁방안과 노동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

㉞ 일시 : 1996. 7. 8. 14:00 - 18:00

㉞ 장소 : 국회의원 회관 1층 소회의실

㉞ 발제 : ①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여성노동정책의 방향
② 유연화 정책이 여성노동에 미치는 영향
③ 여성관련 노동법 개정의 방향

5) 노총 여성국 회의

㉞ 일시 : 1996. 7. 11.(목) 14:00-18:00

㉞ 장소 : 노총 7층 회의실

㉞ 안건 : ① 여성관련법안 개정방향에 관한 사항
② 조직여성노동자 실태조사에 관한사항
③ 지역여성위원회 설치에 관한사항
④ 기타토의

6) 산별여성국(부)장 및 여성대표자(간부) 간담회

㉞ 일시 : 1996. 7. 19 (금) 14:00

㉞ 장소 : 노총회관 8층강당

- ㉞ 안건 : ① 여성관련 법안 개정 방향에 관한사항
② 지역여성위원회 설치에 관한사항
③ 기타토의

7) 노총 여성국 회의

㉞ 일시 : 1996. 8. 26. 14:00

㉞ 장소 : 노총 7층 회의실

- ㉞ 안건 : ① 제31회 여성노동의 평등 및 인권보장 강조기간 행사의 건
② 조직여성노동자 실태조사 관련의 건
③ 기타토의

8) 노동조합.여성단체 초청 간담회

㉞ 일시 : 1996. 8. 28. 10:00

㉞ 장소 : 국회의원 회관 822호

㉞ 주최 : 이미경 국회의원(민주당)

㉞ 토론내용

- ① 여성노동 관련 주요법안에 대한 개정방향토론
- 근로기준법중 여성노동사안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방향
- 기타여성노동사안에 대한 법적 개선방향
②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토론
③ 기타토의

9) 신한국당과의 여성관련 현안문제 간담회

㉞ 일시 : 1996. 9. 3. 11:00 - 14:00

㉞ 장소 : 국회 귀빈 식당

㉞ 안건 : ① 여성노동정책 의견 교환

② 신한국당 신임여성당직자와 상견례 및 유대강화

③ 연맹의 현안문제

10) 노총 여성국 회의

㉞ 일시 : 1996. 10. 4.(금) 14:00

㉞ 장소 : 노총 6층 회의실

㉞ 안건 : ① '96 전국여성노동자 대회 준비에 관한사항

- 인원동원의 건

- 결의문 낭독자 선정의 건

② 노동가 경연대회에 관한사항

③ 기타토의

11) '96남녀 고용평등의 달 행사

㉞ 일시 : 1996. 10. 16. 10:00

㉞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㉞ 표창 : 대통령 표창 연맹 여성국장 문광주

노동부장관상 LG전자부품 부위원장 이미숙

12) '96 남녀 고용평등의 달 세미나

㉞ 일시 : 1996. 10. 17.(목) 09:30-12:30

㉞ 장소 :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㉞ 주최 : 한국여성개발원, UNDP

㉞ 주제 :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보험 분담방안

13) '96 남녀 고용평등의 달 기념 정책 토론회

- ㉠ 일시 : 1996. 10. 30.(수) 14:00 - 17:30
- ㉡ 장소 : 이화여대 인문대 교수연구관 111호
- ㉢ 주최 : 한국여성노동자 협의회
- ㉣ 주제 : 여성의 직업교육, 훈련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14) 노총여성국 회의

- ㉠ 일시 : 1996. 11. 8. 11:00 - 15:00
- ㉡ 장소 : 노총 7층 회의실
- ㉢ 안건 : ① 제31회 강조기간 활동 평가
 - 96 전국여성노동자 대회 결과
 - 각산별 및 산하 조직 활동결과② 기타토의

15) 여성인력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세미나

- ㉠ 일시 : 1996. 11. 7 (목) 11:00
- ㉡ 장소 : 한국노동연구원 대회의실(중소기업 회관 10층)
- ㉢ 주제 : ①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과 고용증대방안
 - ② 육아비용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16) 노총 여성국 회의

- ㉠ 일시 : 97. 2. 14
- ㉡ 장소 : 노총 7층 회의실
- ㉢ 안건 : ① 97. 3. 8 세계여성의날 행사관련의 건
 - ② 기타토의

5. '97. 3. 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 노총주관 -

1) 목 적

날치기 노동악법으로 인하여 전체노동자는 물론 특히 여성노동자에게 집단적해고와 실업, 조기퇴직과 고용불안정, 비정규직, 모성보호등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또한 여성노동을 주변화 시키는 요인과 파견제 확산등으로 인하여 여성노동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문제가 전체노동문제에 묻혀서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받을수 있고 날치기 노동악법이 여성조직뿐 아니라 조직운동에 심각한 위협이 될것이라는 인식하에 3.8 세계 여성의 날을 전국여성노동자 등반대회를 함.

2) 개 요

- ① 행사명 : '97. 3. 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 전국여성노동자 등반대회 -
- ② 일 시 : 1997. 3. 8(토) 13:00 ~ 17:00
- ③ 장 소 : 관악산
- ④ 참석자 : 로움코리아 위원장 외 150명

6. 노동문화지도자 양성교육

1) 목 적

노동문화활동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을 변화시키고 단한 마음들을 알수 있도록 해주며 단결력 및 협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동지간의 믿음이 왜 필요한가를 알게 해줄뿐 아니라 노동문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표력이 향상되고 자신감을 갖게 될수 있기 때문에 목적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 교육일시 및 장소 참석인원

- ① 일 시 : 1997. 3. 18 - 3. 20 (2박 3일)
- ② 장 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 ③ 참석인원 : 97명

3) 주요교육내용

- ① 노동정세와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 ② 팀워크훈련 및 민속무용 촛불의식
- ③ 레크레이션 지도력 개발
- ④ 간부의 자세와 역할
- ⑤ 노동가 및 율동
- ⑥ 공동체 놀이 및 단결협동놀이

4) 교육평가

교육은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했으며 교육이 다양하고 시간이 짧아서 확실하게 습득할 기회가 부족했으며 너무 많은 율동을 한꺼번에 알려주니 제대로 익힐수가 없었다. 교육인원이 예상인원보다 너무 많아 장소가 비좁아 율동등 교육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으며 많은 내용을 전달해 주려고 하기보다도 한가지라도 반복해서 확실하게 익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추가하고 싶은 교육내용은 축구, 족구등 체육활동과 극기훈련과 율동의 경우 형태나 내용을 도면화하여 배부해 줄것과 교육을 야외에서 해줄것등과 노동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교육기간도 좀더 길게 해야하고 교육횟수도 늘렸으면하고 율동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여 판매할 것등을 요구하였다.

7.노동가 테이프 제 3 집제작

1) 목 적

노동조합의 문화활동은 일상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 노래이기도 하다.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 노동가는 우리의소리뿐만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며 단결과 동지에, 그리고 언제 어느때나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노래, 결의를 하나로 묶어 단결력을 고취시키고 조합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노동가 테이프를 제작하였음.

2) 테이프 수록곡

앞 면	뒷 면
국민의례	
1. 노총가	1. 금속노련가
2. 바위처럼	2. 딸들아 일어나라
3. 서울에서 평양까지	3. 또다시 앞으로
4. 사람이 태어나	4. 다시 또 다시
5. 노동악법 철폐가	5. 노동탄압 분쇄가
6. 철의노동자	6. 진짜 노동자 2
7. 단결투쟁가	7. 내일의 여성을 위해
8. 내사랑 민주노조	8. 쟁취! 단결의 자유
9. 가야하네	9. 한걸음씩
10. 희망의 노래	10. 새로운 선택
11. 민들레처럼	11. 내일엔 내일의 태양이
	12. 함께 가자 우리 이길을

○ 제작수 : 1000 개

○ 판매가격 : 3,000원

※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료로 배부할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활동

목 차

1. 금속연맹 협동사업실태조사
2. 금속노련 복지 사업실시
3. 연맹 복지사업 현황

1. 금속연맹 협동사업 실태조사

- 1) 기간 : 96. 6. 10- 96. 7. 4
- 2) 대상 : 연맹 가맹사업장 전체 (536개 단위노동조합)
- 3) 제출사업장 : 87개사업장 제출분석

협동사업 실태조사서 분석결과

I. 모집단의 분포정도

1. 조합원수에 따른 분포

인원규모	대상	전체대비(%)
50인이하	12	14.0
51 ~ 100	16	18.6
101 ~300	38	44.2
301 ~500	10	11.6
501 ~999	4	4.7
1000인이상	6	7.0
전체	86	100%

2. 사원수에 따른 분포

인원규모	대상	전체대비(%)
50인이하	1	1.2
51 ~ 100	11	13.1
101 ~300	35	41.7
301 ~500	14	16.7
501 ~999	13	15.5
1000인이상	10	11.9
전체	84	100%

3. 지역별 분포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대전	충북	전북	전남	대구경북	구미	포항	울산	부산	경남	강원	기타	전체
9	21	4	15	1	3	3	1	5	1	0	4	8	8	2	1	87
11.5	24.1	4.6	17.2	1.2	3.5	3.5	1.2	5.8	1.2	0	4.6	9.2	9.2	2.7	1.2	(100%)

II. 각문항 분석

1. 노조에서 기념품을 정기적으로 제작하는지 여부

정기적으로 제공	부정기적
69 (81.2%)	14 (18.8%)

2. 노조의 연간 정기적 기념품 제작회수 및 평균가격대

회수(단위:1년)	대상사업장	평균가격대
1회	19(27.4%)	19,865원
2회	38(55.9%)	
3회	7(10.3%)	
4회이상	4(5.9%)	

3. 회사에서 기념품을 정기적으로 제작하는지 여부

정기적으로 제공	부정기적
76 (89.4%)	9 (10.6%)

4. 회사의 연간 정기적 기념품 제작회수 및 평균가격대

회수(단위:1년)	대상사업장(%)	평균가격대(W)
1회	10 (25.75%)	29,498원
2회	17 (25.75%)	
3회	22 (33.3%)	
4회이상	17 (25.8%)	

5. 회사가 기념품 선정시 노조의 참여정도

노사합의	노조의견 청취	회사일방
37 (43.6%)	33 (38.8%)	15 (17.6%)

5-1. 노사합의 및 노조의견청취시 년중 기념품제작회수

회수	노조의견청취시 년중 기념품 제작 회수	노사합의시 년중 기념품 제작 회수
1회	6 (18.2%)	3 (8.3%)
2회	8 (24.2%)	14 (38.9%)
3회	8 (24.2%)	7 (19.4%)
4회이상	7 (21.2%)	3 (8.3%)
무응답	2 (6.1%)	2 (5.5%)
기타	2 (6.1%)	7 (19.4%)

6. 연맹에서 기념품 추진시 단위노조의 참여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음	진행 상황을 살핀본후 참여하겠음	참여할 수 없음
24 (28.2%)	59 (69.4%)	2 (2.4%)

7. 자사의 생산품을 연맹 기념품사업으로 납품할수 있는지 여부

생산품이 성격에 맞지 않음	납품하겠음	납품하기 어려움
64 (75.3%)	13 (15.3%)	8 (9.4%)

8. 연맹 기념품사업으로 납품할수 있는 제품은?

사 업 장	제 품 명
도루코산업	식도, 과도, 보온병, 보온도시락
동양매직	가스렌스, 보온병외 50종
세신실업	주방기구, 수저 일체
동국종합전자	미니텔레비전,CD CP체인저
LG전자	가전제품 일체
풍우실업	철제가구
롯데알미늄	호일, 랩
LG금속	귀금속, 금은반지 등
맥슨전자	무선전기, 호출기 등
오토론	전화기

9. 현재 조합원의 승용차 보유여부 : 조합당 평균 173.3대

9-1. 노총 자동차보험사업에 참여의사가 있는 조합:

44개 사업장의 8,400대(평균190.9대)

10. 노총 보험사업(생명보험,자동차보험)에 대한 이해정도

잘알고있음	잘모름
22 (25.6%)	64 (74.4%)

11. 노총 보험사업에 참여의사 여부

참여하겠음	참여할수가 없음
44 (57.9%)	32 (42.1%)

※ 강원(도루코산업, 한일전기), 서울(LG전자, 청우공업, 오토론, 롯데알미늄, 경방기계, 제일중공, 풍우실업, 동부제강, 세진전자), 경기(반도기계, 대기산업,오양공조기, 대덕산업, 한국가구, 삼한, 계선산업, 서울라디에타, 신일산업, 삼영전자, 동성진흥, 우진전자,성진공업, 신호금속, 진영공업, 삼양중기, 희성전선, 한관산기, 동양매직, 경원세기, 태양금속), 인천(대한제당, 쌍용정공, 신호스틸, 삼성정밀), 충남(두원공조, 동양철관,한국쌍신전기, 한성실업, 수산특장, 수산정밀, 연합전선, 동일알루미늄, 부천공조, 금성정공, LG하니엘, 삼신, 환영철강, 용암산업), 대전(대성), 충북(동아건설청주,대농중공업, 맥슨전자), 전북(우민주철, 기아특수강, 대봉전선), 광주전남(부국철강), 대구경북(평화오일셀, 신아금속, 삼립정공, 대동금속, 동해전장), 구미(동국종합전자),부산(세동산업,조광공업, 태광밴드, 고성산업, 동승기업, 강남, 신동방), 울산(LG금속, 우영산업, 덕양산업, 정일공업), 경남(한일기계, 창원기화기, 한국중천, 동호전기, 두원중공업, 세신실업, LG전자부품, 한진금속)

2. 금속노련 복지사업 실시

1) 목적과 취지

- ① 재원확보를 통한 재정 자립에 기여
수익사업을 전개함으로서 재원확보를 통해 연맹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② 소비조합기능
중간이윤을 줄이므로서 저렴한 가격과 고품질의 상품을 제공한다.
- ③ 연맹과 단위노조의 연대의식 고취 및 시도지역본부 활성화 도모

2) 복지사업 추진 현황

- ① 연맹의 재정자립방안으로 수차례에 걸쳐 여러분야(인쇄사업, 기념품사업, 특판사업, 통신판매)에 대한 조사와 내부 토의를 진행함.
- ② '96년도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정책세미나 (96. 7. 9 - 7. 10)에서 심도깊은 토의를 통해 기념품사업, 특판사업, 통신판매사업부터 점진적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음
- ③ 연맹회관에 입주한 업체에게 복지사업을 주관하게 하고 수익사업의 일부를 연맹의 복지사업위원회에 납입하는 운영형태를 취하기로 함.
- ④ 연맹 중앙위원회, 중집연석회의(96. 8. 23)를 통해 복지사업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함.
- ⑤ 본노련과 대형업체간의 계약체결
96. 10. 1 - 97. 9. 30(1년간)

3) 복지사업 방법

① 기념품사업

노동조합 또는 회사가 각종행사시(조합설립일,총회(대의원대회),회사창립일, 명절등) 기념품을 제작할 경우 다양한 상품을 알선하여 제공한다.

② 특판사업

특판 희망사업장(단위노조, 지역본부)을 접수받아 사업장 또는 지역본부가 희망하는 장소에 일정기간(3일전후)동안 판매대를 설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특판사업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접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시중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며 제품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 방식은 단위노조, 지역본부로부터 특판 희망사업장을 접수 → 특판참여 제품 선정 → 사업장 구내, 지역본부 희망장소에서 직접판매(판매기간은 일반적으로 3일전후로 하며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③ 통신판매

년중 일정한 기간(명절, 연말연시, 휴가철, 졸업, 입학철, 어버이날, 어린이날등)동안에 특판사업본부가 선정한 기획상품을 카다로그를 인쇄하여 가맹사업장에 배포하는 방식이다.

방식 : 특판사업본부에서 기획상품을 선정 → 가맹사업장에 상품안내 카다로그 발송 → 사업장별로 구매신청접수 → 상품제조업체에 주문 상품통보 → 주문상품의 구매를 희망하는 사업장에 배달

④ 각종집회용품 알선

T셔츠, 조끼, 머리띠, 리본, 만장, 깃발제작등

3. 연맹복지사업 현황

No	조 합 명	품 목	수 량	비 고
1	롯데알루미늄	자전거	220	
2	금 성 정 공	T-셔츠	70	
3	금 속 연 맹	넥타이	200	
4	경기도지부	T- 스폰	230	
5	금 속 연 맹	스카프	50	
6	금 속 연 맹	조끼	50	
7	금 속 연 맹	약자	22	
8	로움코리아	조끼	50	
9	L G 전 자	깃발	12	
10	현 대 전 자	시계외	200	
11	기아특수강	현수막	7	
12	L G 전 자	비표	10,600	
13	L G 전 자	조끼	600	
14	기아특수강	머리띠	2,000	
15	세 진 전 자	구이판	300	
16	삼 양 중 기	조끼	150	
17	금 속 연 맹	현수막	1	
18	금 속 연 맹	머리띠	200	
19	세 진 전 자	현수막	1	
20	현 대 전 자	볼펜	1,000	
21	대 우 통 신	핸드드릴	616	금속연맹산하 LG산전 사업장 생산제품
22	평화(역삼)	통장CASE외1	1,200	
23	한 국 노 총	조끼,머리띠	650/350	
24	한 국 노 총	스카프	650	
25	현 대 전 자	넴비SET	8100	